

KUMPUL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INDUSTRI KONTEN INDONESIA

인도네시아 콘텐츠 법령집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Indonesia Korean Cultural Center



한국콘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비즈니스센터





KUMPUL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INDUSTRI KONTEN INDONESIA

인도네시아
콘 텐 츠
법 령 집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Indonesia Korean Cultural Center

KOCCA 한국콘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비즈니스센터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Content

들어가는 말

이 법령집에 수록된 인도네시아 콘텐츠 관련 법령의 한국어 번역본은 참고용일 뿐이며 법적 효력은 인도네시아어로 된 관련 법령의 원문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각 법령 원문은 인도네시아 정부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법인권부 <https://www.dgip.go.id>
- 정보통신부 <https://kominfo.go.id>
- 문화교육기술연구부 <https://www.kemdikbud.go.id>

- 영화위원회 <https://www.bpi.or.id>
- 관광창의경제부 <https://www.kememparekraf.go.id>

차 례

발간사	6
1. 방송에 관한 법률 2002년 제32호	9
2. 방송사업허가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정보통신부 장관령 2016년 제18호	33
3.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에 관한 규정 2014년 제01/P/KPI/07호	60
4. 지상파 시스템을 통한 디지털 TV 방송서비스사업 절차 및 허가요건에 관한 정보통신부 장관령 2013년 제28호	88
5. 전기통신서비스의 유료기능사용에 관한 정보통신부 장관령 2017년 제10/PER/M.KOMINFO3호	94
6. 도서출판 제도에 관한 법률 2017년 제3호	97
7.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의 납본에 관한 법률 2018년 제13호	120
8. 영화에 관한 법률 2009년 제33호	133
9. 영화배급, 상영, 수출 및 수입에 관한 문화교육부 장관령 2019년 제34호	160



10. 영화기록물에 관한 문화교육부 장관령 2019년 제41호	170
11. 외국제작자의 국내 영화제작 장소사용 허가에 관한 문화교육부 장관령	180
2018년 제48호	
12. 인도네시아 영화 및 국내자원사용 우선에 관한 문화교육부 장관령	186
2019년 제30호	
13. 영화심의원에 관한 정부령 2014년 제18호	192
14. 영화 및 영화광고의 심의지침 및 기준, 시청연령 분류 및	208
배급 철회에 관한 문화교육부 장관령 2019년 제14호	
15. 정치활동 신고 및 기타 사회활동, 대중군집활동의 허가 및	218
감독 절차에 관한 정부령 2017년 제60호	
16. 저작권에 관한 법률 2014년 제28호에 대한 해설	229
17. 전기통신에 관한 법률 1999년 제36호에대한 해설	240
18. 관광에 관한 법률 2009년 제10호에 대한 해설	250

발간사

인도네시아는 신남방의 핵심 국가로서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치,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특히 한류의 열기가 가장 뜨거운 나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K-Pop의 인기는 두 말할 나위가 없고 TV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통해 방영되는 한국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과 영화는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민의 한류 사랑은 우리나라와의 교류협력과 우호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어 국제관계에서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합니다.

한국 드라마로 시작된 인도네시아의 한류는 케이팝과 한식을 거쳐 이제 영화, 웹툰, 게임, 출판 등으로 그 범위를 계속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진출 초기, 자원개발과 노동집약산업부터 시작했던 한국 기업들은 이제 고부가가치의 다양한 콘텐츠 분야에 활발히 진출 중입니다. 앞으로도 인도네시아에 한국문화 상품과 한국 콘텐츠 산업의 진출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는 것은 물론 사전에 현지의 관련 법령을 숙지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에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비즈니스센터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콘텐츠 관련 한국기업의 사

업 및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법령을 모아 「인도네시아 콘텐츠 법령집」을 처음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이 법령집에는 저작권, 방송, 통신, 영화, 출판, 공연 등 총 18개의 법률과 부속 법령이 번역·수록되어 있습니다.

외국어를 우리말로 옮기는 일은 언제나 어려운 작업이지만 특히 콘텐츠 관련 전문용어의 번역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이다영 선생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부디 「인도네시아 콘텐츠 법령집」이 한국 콘텐츠 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과 한류 확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장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참사관 김용운

방송에 관한 법률 2002년 제32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2 TAHUN 2002
TENTANG PENYIARAN

전능하신 신의 은총으로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은

고려함:

- a. 지역 사회, 민족, 국가의 삶에서 인권의 구체화로서 방송을 통해 의견을 표명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유는 팡차실라(Pancasila) 및 1945 인도네시아공화국 헌법을 기반으로 한 권리 행사의 자유와 평등 사이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책임감 있게 행사된다.
- b.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은 제한된 공공재로 국가가 보호하여야 하며 1945년 8월 17일 선언문의 이상에 따라 국민의 가장 큰 번영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는 국가 자산이다.
- c. 국가 통합, 인도네시아 사회의 다양성, 지방자치의 이행을 위해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의 공정하고 공평하며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균형 잡힌 국가 정보 질서의 창출을 보장하는 국가방송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 d. 방송기관은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중전달매체이며 정보, 교육, 오락, 통제 및 사회적 가교를 위한 미디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자유와 책임이 있다.
- e. 방송은 동시에 자유롭게 방송되고 수신되어 대중의 의견, 태도 및 행동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방송 사업자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정의롭고 문명화된 인류를 기반으로 한 도덕적 가치, 도덕, 문화, 인격 및 민족적 통일성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 f. a, b, c, d 및 e의 고려 사항에 따라 방송에 관한 1997년 법률 제24호는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폐지하고 새로운 방송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

검토함:

- 1. 1945년 헌법의 4차 수정안에 의해 수정된 1945년 헌법 제20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21조제1항, 제28조F,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3조제3항 및 제36조
- 2. 영화에 관한 법률 1992년 제8호(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1992년 제32호, 추가 관보 제3473호)
- 3. 독점 관행 및 불공정한 사업 경쟁 금지에 관한 법률 1999년 제5호(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1999년 제33호, 추가 관보 제3817호)
- 4.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999년 제8호(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1999년 제42호, 추가 관보 제3821호)
- 5. 지방 정부에 관한 법률 1999년 제22호(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1999년 제60호, 추가 관보

- 제3839호)
6. 통신에 관한 법률1999년 제36호(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1999년 제154호, 추가 관보 제3881호)
 7. 인권에 관한 법률1999년 제39호(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1999년 제165호, 추가 관보 제3886호)
 8. 언론에 관한 법률1999년 제40호(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1999년 제166호, 추가 관보 제3887호)
 9. 저작권에 관한 법률2002년 제19호(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2002년 제85호, 추가 관보 제4220호)

인도네시아공화국 국회(DPR)의 동의하에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결정함:

확정: 방송에 관한 법률

제 1 장 통칙

제 1 조

이 법률에서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1. 방송(Siaran)은 방송 수신 장치를 통해 수신할 수 있는 상호작용 여부에 관계없이 사운드, 이미지 또는 사운드 및 이미지 형태 또는 그래픽, 문자 형태의 메시지 또는 일련의 메시지이다.
2. 방송활동(Penyiaran)은 방송 수신 장비로 전파에 의해 동시에 수신되는 지상파 케이블 및/또는 기타 매체를 통해 무선주파수대역을 사용하여 지상, 해상 또는 대기에서 방송 및/또는 송신 수단을 통해 방송을 송출하는 활동이다.
3. 라디오 방송(Penyiaran Radio)은 일반적이고 공개적 음성의 형태로 아이디어와 정보를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형태로 전달하는 청각 대중전달매체이다.
4. TV 방송(Penyiaran Televisi)은 시청각 방송 콘텐츠물로 일반적으로 음향과 이미지의 형태로 아이디어와 정보를 공개적이든 폐쇄적이든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형태로 전달한다.
5. 광고방송(Siaran Iklan)은 관련 방송기관에 대한 보상 여부에 관계없이 대중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상품 및 아이디어의 가용성에 관한 상업적 성격 및 공공 서비스의 정보를 방송하는 것이다.
6. 상업광고방송(Siaran Iklan Niaga)은 소비자가 제공되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대상 고객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소개, 대중화 및/또는 홍보하기 위해 라디오 또는 TV 방송을 통해 방송되는 상업광고방송이다.
7. 공익광고방송(Siaran Iklan Layanan Masyarakat)은 아이디어, 이상, 제안 및/또는 기타 메시지를 대중에게 소개, 대중화 및/또는 홍보하여 광고 메시지에 따라 대중의 행동

- 및/또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행해지는 라디오 또는 TV 방송을 통한 비상업적 광고방송이다.
8. 무선주파수대역(Spektrum Frekuensi Radio)은 인위적인 전달 수단없이 공중과 대기에서 방송 및 전파에 사용되는 전자기파로, 공공재이자 유한한 자원이다.
 9. 방송기관(Lembaga Penyiaran)은 공영방송기관, 민영방송기관, 지역방송기관, 유료방송기관 등의 방송 사업자로서 그 직무, 기능,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현행 법규에 따른다.
 10. 국가방송시스템(Sistem Penyiaran Nasional)은 Pancasila와 1945년 인도네시아공화국 헌법에 명시된 국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국가 방송의 원칙, 목적, 기능 및 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방송시스템이다.
 11. 공정하고 균등하며 균형 잡힌 국가 정보 질서(Tatanan informasi nasional yang adil, merata, dan seimbang)는 특히 중앙과 지역 간, 인도네시아 지역 간, 그리고 인도네시아와국제 사회 간 방송에서 정보 또는 메시지의 흐름과 관련하여 질서 있고 규칙적이며 조화로운 정보의 조건이다.
 12. 정부(Pemerintah)는 대통령 또는 주지사가 임명한 장관 또는 기타 공무원이다.
 13.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Komisi Penyiaran Indonesia)는 방송 부문에 대한 대중 참여의한 형태로 이 법에서 의무와 권한이 규제되는 중앙 및 지역에 있는 독립적인 국가 기관이다.
 14. 방송위원회(Komisi Penyiaran Indonesia)는 국가가 방송 운영을 허가하기 위해 방송기관에 부여하는 권리이다.

제 2 장 원칙, 목적, 기능 및 방향

제 2 조

방송은 Pancasila와 1945 년 인도네시아공화국 헌법에 따라 효용성, 공정성 및 평등, 법적 확실성, 보안, 다양성, 파트너십, 윤리, 독립성, 자유 및 책임의 원칙을 기반으로 수행된다.

제 3 조

방송은 국가 통합 강화, 신실하고 경건한 국민의 인격과 정체성 함양, 국민 생활 교육, 공공 복지 증진, 자주적이고 민주적이며 정의롭고 번영하는 사회를 구축하며 인도네시아 방송 산업을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제 4 조

- (1) 대중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서의 방송은 정보, 교육, 건전한 오락, 통제 및 사회적 가교를 위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
- (2)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방송은 경제적, 문화적 기능도 갖는다.

제 5 조

방송은 다음을 지향한다.

- a. Pancasila의 이행과 1945년 인도네시아공화국 헌법을 지지한다.

- b. 도덕성과 종교적 가치 및 국가 정체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킨다.
- c. 인적 자원의 질을 향상시킨다.
- d. 국가의 통합과 무결성을 유지하고 강화한다.
- e. 준법 및 국가 규율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 f. 여론을 전달하고 국가 개발과 환경에서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장려한다.
- g. 독점 소유권을 방지하고 방송에서 공정한 경쟁을 지원한다.
- h. 세계화 시대에 평등을 증진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 i. 진실하고 균형 잡힌 책임감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 j. 국가 문화를 발전시킨다.

제 3 장 방송사업

제 1 부 통칙

제 6 조

- (1) 방송은 하나의 국가방송시스템에서 수행된다.
- (2) 제1항의 국가방송시스템에서 국가는 국민의 최대 이익을 위해 방송에 사용되는 무선주파수대역을 통제한다.
- (3) 국가방송시스템에는 방송기관과 공평하고 통합된 네트워크 형태가 있으며, 이는 네트워크 방송국과 지역 방송국을 구축하여 개발된다.
- (4) 방송 사업을 위해 방송위원회가 구성된다.

제 2 부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

제 7 조

- (1) 제6조제4항의 방송위원회를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 (약칭 KPI)라 한다.
- (2)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는 독립적인 국가 기관으로서 방송에 관한 사항을 규제한다.
- (3) 방송위원회는 중앙 차원에서 설립된 중앙방송위원회와 지방 차원에서 설립된 지역방송위원회로 구성된다.
- (4) 기능, 임무, 권한 및 의무를 수행할 때 중앙방송위원회는 인도네시아 국회가 감독하고 지역방송위원회는 지방의회가 감독한다.

제 8 조

- (1) 방송위원회는 방송에 대한 열망을 수용하고 공익을 대표하는 공공 참여 기능의한 형태이다.
- (2) 이 조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할 때 방송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 a. 방송프로그램표준을 수립한다.
 - b. 규정 수립 및 방송행동강령을 수립한다.

- c. 규정, 방송행동강령 및 방송프로그램표준의 이행을 감독한다.
 - d. 규정, 방송행동강령 및 방송프로그램표준 위반에 대한 제재를 부과한다.
 - e. 정부, 방송기관 및 대중과의 조정 및/또는 협력한다.
- (3) 방송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의무가 있다.
- a. 대중이 인권에 따라 적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 b. 방송 인프라 구축에 도움을 준다.
 - c. 방송기관과 관련 산업 간의 건전한 경쟁 구축에 참여한다.
 - d. 공정하고 공평하며 균형 잡힌 국가 정보 질서를 유지한다.
 - e. 방송 사업에 관한 대중의 불만, 이의제기, 비판 및 평가를 수용, 연구 및 후속조치를 한다.
 - f. 방송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인재 육성 계획을 수립한다.

제 9 조

- (1) 중앙방송위원회의 위원은 9인, 지역방송위원회는 7인이다.
- (2)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3) 중앙방송위원회 및 지역방송위원회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다음 임기 1번에 한해 재선될 수 있다.
- (4) 방송위원회는 국가가 자금을 지원하는 사무국의 지원을 받는다.
- (5) 업무 수행에 있어 방송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6) 중앙방송위원회 자금은 국가예산에서 제공되며 지역방송위원회 자금은 지역예산에서 제공된다.

제 10 조

- (1) 방송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a. 능숙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도네시아공화국 국민
 - b. Pancasila(pancasila)와 1945년 인도네시아공화국 헌법을 성실히 따르는 자
 - c. 학사 학위가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지적 능력이 있는 자
 - d.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자
 - e. 품위 있고 정직하며 공정하며 비난 받는 행동을 하지 않은 자
 - f. 방송 분야에 대한 관심, 지식 및/또는 경험이 있는 자
 - g. 대중 매체 소유권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자
 - h. 입법부 및 사법부의 구성원이 아닌 자
 - i. 공무원이 아닌 자
 - j. 정당원이 아닌 자
- (2) 중앙방송위원회 위원은 인도네시아공화국 국회에서 선출되고 지방 방송위원회는 공개적으로 적합하고 적절한 테스트를 통해 지역 사회의 추천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선출된다.
- (3) 중앙방송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국회의 추천에 따라 요건을 갖춘자를 임명하고 지역방송위원회 위원은 주지사가 지방의회 추천에 따라 요건을 갖춘 자를 임명한다.
- (4)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방송위원회 위원은 면직된다.
 - a. 임기 종료
 - b. 사망

- c. 사임
- d. 영구적 법적 효력이 있는 법원 판결에 따라 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 e. 더 이상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

제 11 조

- (1) 방송위원회위원이 제10조제4항b,c,d,e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기에서 사임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임시위원으로 교체된다.
- (2) 중앙방송위원회위원의 교체는 대통령이 인도네시아공화국 국회의 권고에 따라 전형으로 결정하고 지역방송위원회 위원의 교체는 주지사가 지방의회의 권고에 따라 전형으로 결정한다.
- (3) 제1항의 방송위원회 위원 교체 절차에 관한 규정은 방송위원회에서 추가로 정한다.

제 12 조

제8조의 방송위원회의 권한 및 업무 분담에 관한 세부규정, 중앙방송위원회와 지역방송위원회간의 관계 조정 및 제11조의 방송위원회 위원 교체에 관한 규정은 중앙방송위원회의 결정으로정한다.

제 3 부
방송 서비스

제 13 조

- (1) 방송 서비스는 다음으로 구성된다.
 - a. 라디오 방송 서비스
 - b. TV 방송 서비스
- (2) 제1항의 방송 서비스는 다음 기관에서 제공한다.
 - a. 공영방송기관
 - b. 민영방송기관
 - c. 지역방송기관
 - d. 유선방송기관

제 4 부
공영방송기관

제 14 조

- (1) 제13조제2항제a의 공영방송기관은 국가가 설립한 법인 형태의 방송기관으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며 비상업적이며 대중의 이익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 (2) 제1항의 공영방송기관은 인도네시아공화국 라디오(RRI)와 인도네시아공화국의 수도에 중앙 방송국이 있는 인도네시아공화국 TV (TVRI)로 구성된다.
- (3) 주, 군 또는 도시 지역에 지역 공영방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 (4) 공영방송기관의 감독 이사회와 이사회는 현행 법규에 따라 구성한다.

- (5) RRI 및 TVRI의 감독 이사회는 정부 및/또는 시민 사회로부터 공개적으로 적합하고 적절한테스트를 거친 후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결정하고, 지역 공영방송기관의 감독이사회는 정부 및/또는 시민 사회로부터 공개적으로 적합하고 적절한 테스트를 거친 후 지방의회의추천을 받아 주지사, 군수 또는 시장이 결정한다.
- (6) RRI 및TVRI의 감독 이사회는 5인이며 지역 공영방송기관의 감독 이사회는 3인이다.
- (7) 이사회는 감독 이사회가 임명하고 결정한다.
- (8) 공영방송기관의 감독이사회 및 이사회는 임기가 5년이며 다음 임기 1번에 한해 재선될 수 있다.
- (9) 중앙 차원의 공영방송기관은 인도네시아공화국 국회가 감독하고, 지역 차원의 공영방송기관은 지방의회가 감독한다.
- (10)공공방송기관에 관한 세부규정은 정부와 함께 방송위원회가 수립한다.

제 15 조

- (1) 공영방송기관의 자금 출처는 다음과 같다.
 - a. 방송 수신료
 - b. 국가예산 또는 지역예산
 - c. 공공 기부
 - d. 광고방송
 - e. 방송 사업과 관련된 기타 합법적인 사업
- (2) 매 회계 연도 말에 공영방송기관은 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재무 보고서를 수립하고그 결과를 대중매체를 통해 발표한다.

제 5 부 민영방송기관

제 16 조

- (1) 제13조제2항b의 민영방송기관은 인도네시아 법인 형태의 민영방송기관으로 사업 부문은 라디오 또는TV 방송 서비스만을 제공한다.
- (2) 외국인은 재무 부문과 기술 부문을 제외하고 민영방송기관의 임원이 되는 것이 금지된다.

제 17 조

- (1) 제16조제1항의 민영방송기관은 인도네시아 국민 및/또는 인도네시아 법인이 전액 출자한 초기 자본으로 설립된다.
- (2) 민영방송기관은 총 자본의 20% 이하이고 최소 2인의 주주가 소유한 외국 자본에서 발생한 자본을 충당하기 위하여 추가 및 개발 할 수 있다.
- (3) 민영방송기관은 직원이 회사 지분을 소유하고 회사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18 조

- (1) 하나 또는 여러 방송 영역에서 한 사람 또는 하나의 법인에 의한 민영방송기관의 소유권및

지배의 집중은 제한된다.

- (2) 라디오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영방송기관과 TV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영방송 기관간, 민영방송기관과 인쇄 매체 회사 간 및 민영방송기관과 기타 민영방송기관간의 교차 소유권은 직간접적으로 제한된다.
- (3) 라디오 방송 서비스와 TV 방송 서비스 모두에 대한 지역, 지방 및 전국 방송 지역의 수와 범위에 대한 규정은 방송위원회와 정부가 편성한다.
- (4) 제1항에 따른 소유권 및 지배 제한 및 제2항에 따른 교차 소유권 제한에 관한 세부규정은 정부와 함께 방송위원회가 수립한다.

제 19 조

민영방송기관의 자금 출처는 다음과 같다.

- a. 광고방송
- b. 방송 사업과 관련된 기타 합법적인 사업

제 20 조

민영방송기관의 라디오 방송 서비스 및 TV 방송 서비스는 1방송 권역에서 1방송 채널로 1 방송만 수행할 수 있다.

제 6 부 지역방송기관

제 21 조

- (1) 제13조제2항c의 지역방송기관은 특정 공동체가 설립한 독립적이고 비상업적이며 저출력으로 제한된 수신지역범위를 가진 해당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인도네시아법인 형태의방송기관이다.
- (2) 제1항의 지역방송기관은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
 - a. 이익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일부가 아니다.
 - b. 문화, 교육 및 국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정보를 다루는 이벤트 프로그램을 이행하여 지역 사회의 번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하고 발전시킨다.
- (3) 지역방송기관은 다음과 같은 초당파적 공동체 조직이다.
 - a. 국제 사회뿐만 아니라 외국 조직이나 기관을 대표하지 않는다.
 - b. 금지된 조직과 관련이 없다.
 - c. 특정 단체나 계층의 선전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제 22 조

- (1) 지역방송기관은 특정 공동체 기부금에서 얻은 수수료로 설립되어 해당 공동체의 소유가 된다.
- (2) 지역방송기관은 합법적이고 구속력이 없는 기부, 기증, 후원 및 기타 출처로부터 자금 출처를 얻을 수 있다.

제 23 조

- (1) 지역방송기관은 외국 당사자로부터 초기 설립 및 운영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2) 지역방송기관은 공공서비스 공표를 제외한 광고방송 및/또는 기타상업방송이 금지된다.

제 24 조

- (1) 지역방송기관은 윤리 강령 및 행동 규칙을 만들고 공동체 및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 (2) 윤리강령 및/또는 행동규칙위반과 관련하여 공동체 또는 다른 공동체로부터 불만이 있는 경우 지역방송기관은 해당 지침 및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제 7 부 유선방송기관

제 25 조

- (1) 제13조제2항d의 유선방송기관은 인도네시아 법인 형태의 방송기관으로, 케이블 방송 서비스만을 운영하고 먼저 케이블 방송사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 (2) 제1항의 유선방송기관은 방송물을 라디오, TV, 멀티미디어 또는 기타 정보 매체를 통해 가입자에게 구체적으로 방송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

제 26 조

- (1) 제25조의 유선방송기관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 a. 위성을 통한 유선방송기관
 - b. 케이블을 통한 유선방송기관
 - c. 지상파를 통한 유선방송기관
- (2) 방송사업과 관련하여 유선방송기관은 다음을 충족하여야 한다.
 - a. 방송 및/또는 배포될 모든 방송콘텐츠에 대한 내부 심의를 수행한다.
 - b. 공영방송기관 및 민영방송기관에서 프로그램을 배포하기 위해 채널 용량의 10% 이상을 제공한다.
 - c. 10개의 해외제작방송채널 중 최소한 1개 이상의 국내 제작 방송 채널을 제공한다.
- (3) 유선방송기관에 대한 자금출처는 다음과 같다.
 - a. 가입비
 - b. 방송 사업과 관련된 기타 합법적인 사업

제 27 조

- 제26조제1항a의 위성을 통한 유선방송기관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a. 인도네시아공화국 영토에서 수신할 수 있는 방송 범위에 있다.
 - b. 인도네시아에 방송제어 스테이션이 있다.
 - c. 인도네시아에 위성 송신 스테이션이 있다.
 - d. 인도네시아에 착륙할 수 있는 위성을 이용한다.
 - e. 가입자만 방송을 수신하도록 보장한다.

제 28 조

제26조제1항b 및 c의 유선 및 지상파를 통한 유선방송기관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a. 주어진 허가에 따라 하나의 서비스 지역을 관할하는 방송 범위가 있다.
- b. 가입자만 방송을 수신하도록 보장한다.

제 29 조

- (1) 제16조제2항, 제17조, 제18조, 제33조제1항 및 제7항,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유선방송기관에도 적용된다.
- (2) 제2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절차 및 요건에 관한 세부규정은 정부와 함께 방송위원회가 수립한다.

제 8 부 외국 방송기관

제 30 조

- (1) 인도네시아에는 외국 방송기관의 설립이 금지된다.
- (2) 생방송이든 녹음이든 인도네시아에서 언론 활동을 수행할 외국 방송기관 및 외국 방송 사무소는 현행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3) 외국 방송기관 취재 지침에 관한 세부규정은 정부와 함께 방송위원회가 수립한다.

제 9 부 방송국 및 방송 범위

제 31 조

- (1) 라디오 방송 서비스 또는 TV 방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방송기관은 네트워크 방송국 및/또는 지역 방송국으로 구성된다.
- (2) 공영방송기관은 인도네시아공화국의 모든 지역을 망라하는 네트워크 스테이션 시스템으로방송할 수 있다.
- (3) 민영방송기관은 제한된 지역 범위의 네트워크 스테이션 시스템을 통해 방송할 수 있다.
- (4) 네트워크 스테이션 시스템의 이행에 관한 세부규정은 정부와 함께 방송위원회가 수립한다.
- (5) 지역 방송국은 인도네시아공화국 내 특정 위치에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위치로 방송 범위가제한된다.
- (6) 지역 방송국의 초기 자본 소유 및 관리의 대부분은 지역 방송국이 위치한 지역의 공동체에우선권이 주어진다.

제 10 부 방송기술기본계획 및 방송장비의 기술요건

제 32 조

- (1) 방송의 모든 구축 및 운영은 방송기술기본계획 및 방송 장비의 기술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방송 기술 기본 계획 및 방송 장비의 기술 요건에 관한 세부규정은 현행 법규에 따라 정부와 함께 방송위원회가 추가로 편성한다.

제 11 부 허가

제 33 조

- (1) 방송기관은 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방송사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 (2) 허가 신청자는 운용할 방송의 명칭, 비전, 미션 및 형식을 명시하고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3)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허가 발급은 대중의 관심, 이익 및 편의에 근거한다.
- (4) 방송 사업의 허가 및 연장은 다음을 획득 후 국가가 부여한다.
 - a. 신청자와 방송위원회 간의 청문회 평가결과
 - b. 방송위원회에서 방송의 적격성에 대한 권고
 - c. 방송위원회와 정부 간 허가를 위해 특별히 개최된 합동회의 결과
 - d. 방송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무선주파수 대역을 할당하고 사용할 수 있는 허가
- (5) 제4항c의 결과에 따라 방송위원회 전형을 통해 국가가 방송사업허가를 부여한다.
- (6) 방송사업허가 및 방송사업허가 연장은 제4항 c의 합동 회의 포럼의 합의 후 근무일 기준 30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한다.
- (7) 방송기관은 국고를 통해 방송사업허가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 (8) 방송사업허가요건 및 절차에 관한 세부규정은 정부와 함께 방송위원회가 수립한다.

제 34 조

- (1) 방송사업 허가는 다음과 같이 부여된다.
 - a. 라디오방송사업허가는 5년 동안 부여된다.
 - b. TV방송사업허가는 10년 동안 부여된다.
- (2) 제1항a 및 b의 허가는 각각 연장할 수 있다.
- (3) 상설방송사업 허가 취득 전, 라디오방송기관은 6개월 이하의 방송시범기간을 거쳐야 하며 TV 방송기관은 1년 이하의 방송시범기간을 거쳐야 한다.
- (4) 방송사업 허가는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5)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방송사업 허가는 취소된다.
 - a. 정해진 방송시범기간을 통과하지 못함
 - b. 정해진 무선주파수대역 및/또는 방송서비스 지역의 사용을 위반
 - c. 방송위원회에 통보하지 않고 3개월 이상 방송활동을 하지 않음
 - d.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
 - e. 방송 기술 기본 계획의 규정 및 방송 장비의 기술 요건을 위반하는 행위
 - f.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원 판결 후 방송 프로그램 표준에 관한 규정 위반
- (6) 방송사업허가는 허가가 만료되고 갱신되지 않으면 종료가 된다.

제 4 장 방송의 이행

제 1 부 방송 콘텐츠

제 35 조

방송 콘텐츠는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5)조의 방송의 원칙, 목적, 기능 및 방향에 따라야 한다.

제 36 조

- (1) 방송 콘텐츠는 지성, 인격, 도덕, 선진화, 국력, 통합과 단결을 지키고 인도네시아의 종교 및 문화적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정보, 교육, 오락 및 효용성을 포함하여야 한다.
- (2) 민영방송기관 및 공영방송기관에서 운영하는 TV 방송 서비스의 방송 콘텐츠는 국내 프로그램을 6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3) 방송 콘텐츠는 적시에 프로그램을 방송함으로써 특별 시청자, 즉 아동과 청소년에게 보호와 권한을 부여 할 의무가 있으며, 방송기관은 방송 콘텐츠에 따라 시청자의 분류를 포함 및/또는 언급할 의무가 있다.
- (4) 방송 콘텐츠의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해서는 아니된다.
- (5) 방송 콘텐츠는 다음이 금지된다.
 - a. 중상 모략, 선동적, 오도 및/또는 거짓말
 - b. 폭력, 음란, 도박, 마약 및 불법 약물 남용의 요소를 강조
 - c. 민족, 종교, 인종 및 계층 간 적대
- (6) 방송 콘텐츠는 종교적 가치, 인도네시아의 인간 존엄성 또는 국제 관계를 손상시키는 조롱, 비하, 괴롭힘 및/또는 무시하는 것이 금지된다.

제 2 부 방송언어

제 37 조

방송의 주요 언어는 올바르고 정확한 인도네시아어 이어야 한다.

제 38 조

- (1) 지방어는 현지 콘텐츠 방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특정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매개어로 사용할 수 있다.
- (2) 외국어는 방송 프로그램의 필요에 따라 매개어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제 39 조

- (1) 외국어 방송 프로그램은 원래 언어로 방송될 수 있으며 특히 TV 방송 서비스의 경우 인도네시아어 자막을 제공하거나 특정 프로그램의 필요에 따라 인도네시아어로 선택적으로

- 더빙하여야 한다.
- (2) 인도네시아어로 외국어 더빙은 방송되는 외국어 프로그램 수의 최대 30%로 제한된다.
 - (3) 청각 장애인을 위한 특정 프로그램에서 수화를 사용할 수 있다.

제 3 부 중계 및 공동 방송

제 40 조

- (1) 방송기관은 국내외 방송기관을 포함하여 다른 방송기관의 방송을 중계할 수 있다.
- (2) 국내 및 해외에서 정규 프로그램으로 사용되는 방송 중계는 제한된다.
- (3) 특히 해외 방송기관에서 발신하는 방송 콘텐츠 중계의 경우 프로그램의 상영시간, 유형 및 수에 제한이 있다.
- (4) 방송기관은 국가, 국제 및/또는 선정된 프로그램의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 비정기적으로 다른 방송기관의 방송 중계를 할 수 있다.

제 41 조

방송이 정보에 대한 독점과 의견 형성에 대한 독점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방송기관 간에는 협력하여 함께 방송할 수 있다.

제 4 부 언론활동

제 42 조

전자미디어 활동을 수행하는 방송기자는 언론 윤리 강령 및 법령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 5 부 방송권

제 43 조

- (1)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은 방송권이 있어야 한다.
- (2) 방송 프로그램에서 방송기관은 방송권을 명시하여야 한다.
- (3) 제2항의 방송권의 소유권은 프로그램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 (4) 각 방송 프로그램의 방송권은 현행 법규에 따라 보호된다.

제 6 부 방송의 정정

제 44 조

- (1) 방송 및/또는 뉴스의 내용에 오류 및/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방송 내용 및/또는 뉴스에 반박이 있는 경우 방송기관은 정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2) 정정 또는 시정은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지며,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정정은 가능한 빠른 시일에 이루어지며 최우선적으로 처리 된다.
- (3) 제2항에 따른 정정 또는 시정은 불만을 느끼는 당사자가 제기한 책임 또는 법적 청구를 면책하지 않는다.

제 7 부 방송 기록물

제 45 조

- (1) 방송기관은 영상, 음성, 사진 및 문서 기록물 등 방송 자료를 방송 후 최소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2) 역사적 가치, 정보 가치 또는 방송 가치가 높은 방송 자료는 현행 법규에 따라 지속 가능성유지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부 광고방송

제 46 조

- (1) 광고방송은 상업광고방송과 공익 광고방송으로 구성된다.
- (2) 광고방송은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5조의 방송의 원칙, 목적, 기능 및 방향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상업광고방송은 다음을 금지한다.
 - a. 종교, 이념, 개인 및/또는 집단의 가르침과 관련된 홍보, 타 종교, 다른 이념, 타인 또는 기타 집단의 존엄성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행위
 - b. 주류 등 및 중독성 물질 또는 약물의 홍보
 - c. 담배의 형태를 보여주는 담배 홍보
 - d. 공중도덕 및 종교적 가치에 반하는 문제
 - e. 18세 미만 아동 착취
- (4) 방송기관을 통해 방송되는 광고방송 물은 방송위원회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5) 상업광고 방송은 방송기관이 책임을 진다.
- (6) 아동용 방송 프로그램으로 방송되는 상업 광고는 아동용 방송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7) 방송기관은 공익 광고를 방송하기 위한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8) 민영방송기관의 상업광고방송 시간은 총 방송 시간의 최대 20%, 공영방송기관은 최대 15%이다.
- (9) 민영방송기관의 공익 광고방송 시간은 상업광고방송의 최소 10% 이상이어야 하고, 공영 방송기관은 광고방송의 최소 30% 이상이어야 한다.
- (10) 방송사의 방송 시간은 광고방송을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어떠한 목적으로도 구매할 수 없다.
- (11) 광고방송 자료는 국내 자원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 9 부 방송 콘텐츠 심의

제 47 조

영화 및/또는 광고 형태의 방송 콘텐츠는 공인 기관으로부터 심의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제 5 장 방송행동강령

제 48 조

- (1) 방송에 대한 방송행동강령은 방송위원회에서 정한다.
- (2) 제1항의 방송행동강령은 다음을 근거로 하여 수립한다.
 - a. 유효한 종교적, 도덕적 및 법적 가치
 - b. 일반 대중 및 방송기관에서 적용하고 수용하는 기타 규범
- (3) 방송위원회는 방송행동강령을 방송기관 및 일반대중에게 배포할 의무가 있다.
- (4) 방송행동강령은 최소한 다음과 관련된 방송 콘텐츠의 표준을 결정한다.
 - a. 종교적 견해에 대한 존중
 - b.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존중
 - c. 예의와 품위
 - d. 성적인 장면, 폭력 및 가학성에 대한 제한
 - e. 어린이, 청소년 및 여성 보호
 - f. 시청자의 나이에 따라 프로그램 분류
 - g. 외국어 방송 프로그램
 - h. 뉴스 프로그램의 정확성과 중립성
 - i. 생방송
 - j. 광고방송
- (5) 방송위원회는 방송 윤리 강령의 수립을 지원한다.

제 49 조

방송위원회는 법령의 개정과 사회에 적용되는 규범의 발전에 따라 제48조 제3항의 방송행동강령을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제 50조

- (1) 방송위원회는 방송행동강령 이행을 감독할 의무가 있다.
- (2) 방송위원회는 방송행동강령 위반을 인지한 개인 또는 단체의 불만을 접수할 의무가 있다.
- (3) 방송위원회는 제8조제3항 e의 근본적인 성격의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불만에 대해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51 조

- (1) 방송위원회는 제50조제2항의 불만 사항이 사실로 입증된 경우 방송기관에 불만 관련진술을 방송 및/또는 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2) 모든 방송기관은 방송행동강령에 의거한 방송위원회의 결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 6 장 공동체 참여

제 52 조

- (1)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은 공영 방송 실시에 대한 권리, 의무, 책임을 가진다.
- (2) 비영리 조직, 비정부 조직, 대학 및 교육계는 방송기관의 문해력 및/또는 모니터링 활동을 개발할 수 있다.
- (3) 제1항의 공동체는 유해한 프로그램 및/또는 방송 콘텐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7 장 책임

제 53 조

- (1) 기능, 권한, 임무 및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중앙방송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으며 인도네시아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 (2) 기능, 권한, 임무 및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지역방송위원회는 주지사에게 책임이 있으며 지방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 54 조

방송기관 법인의 장은 일반적으로 방송 운영을 총괄하며, 각 프로그램에 대한 담당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다.

제 8 장 행정제재

제 55 조

- (1) 제15조제2항,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제2항, 제27조, 제28조, 제33조제7항, 제34조제5항a,c,d,f, 제36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제39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6조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및 제1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행정제재를 받는다.
- (2) 제1항의 행정제재는 다음과 같은 형태일 수 있다.
 - a. 서면 경고
 - b. 특정 단계를 거친 후 문제 프로그램 일시 중단

- c. 방송 상영 시간 및 시간 제한
 - d. 행정 벌금
 - e. 일정 기간 방송 활동 정지
 - f. 방송사업허가의 연장 불가
 - g. 방송사업허가 취소
- (3) 제1항 및 제2항의 행정제재의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세부규정은 정부와 함께 방송위원회가 수립한다.

제 9 장 수사

제 56 조

- (1)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는 형사 소송법에 의거 수행된다.
- (2) 특히 제34조제5항b 및 e의 규정 위반과 관련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이 조사를 실시한다.

제 10 장 형법

제 57 조

다음을 위반한 자는 라디오 방송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및/또는 Rp1,000,000,000.00 (십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TV 방송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및 / 또는 Rp10,000,000,000.00(백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a. 제17조제3항의 규정 위반
- b. 제18조제2항의 규정 위반
- c. 제30조제1항의 규정 위반
- d. 제36조제5항의 규정 위반
- e. 제36조제6항의 규정 위반

제 58 조

다음을 위반한 자는 라디오 방송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및/또는 Rp500,000,000.00(오억 루피아)이하의벌금에처하며,TV방송의경우 2년이하의징역및/또는Rp5,000,000,000.00 (오십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a. 제18조제1항의 규정 위반
- b. 제33조제1항의 규정 위반
- d. 제34조제4항의 규정 위반
- d. 제46조제3항의 규정 위반

제 59 조

제46조제10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라디오 방송의 경우 Rp200,000,000.00(이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TV 방송의 경우 Rp2,000,000,000.00(이십억 루피아)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11 장 경과규정

제 60 조

- (1) 이 법의 시행과 함께 방송 부문의 모든 기존 시행 규정은 새로운 규정과 위배되지 않거나 대체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 (2)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존재했던 방송기관은 여전히 그 기능을 계속 수행할 수 있으며, 이법이 공포된 이후 라디오 방송 서비스의 경우 최대 2년, TV 방송 서비스의 경우 최대 3년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 (3) 이미 중계국을 보유하고 있는 방송기관은 이 법 공포 전과 조정 기간 종료 후에도 정부와함께 방송위원회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기관과 네트워크로 연결된 지역국이설립될 때까지 최대 2년간 중계국을 통해 방송할 수 있다.

제 12 장 부칙

제 61 조

- (1) 방송위원회는 이 법이 공포 된 후 1년 이내에 설립되어야 한다.
- (2) 첫 방송위원회 위원에 대한 추천은 정부가 시민사회의 추천을 받아 인도네시아공화국 국회에 제출한다.

제 62 조

- (1) 제14조제10항,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3항, 제31조제4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8항, 제55조제3항 및 제60조제3항의 정부와 함께 방송위원회가 수립한다는 조항은 정부령으로 정한다.
- (2) 제1항의 정부령은 방송위원회 및 정부에 의해 수립된 후 60일 이내에 확정되어야 한다.

제 63조

이 법이 시행될 때, 방송에 관한 법률1997년 제24호(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1997호 제72호, 추가 관보 제3701호)는 폐지한다.

제 64 조

이 법은 제정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이 법률의 제정을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에 게재할 것을 명한다.

2002 년 12월 28일
자카르타에서 승인됨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

서명

(메가와띠 수까르노푸트리)
MEGAWATI SOEKARNOPUTRI

2002년 12월 28일
자카르타에서 제정됨

인도네시아 내각국무부 장관

서명

(밤방 쾀소위)
BAMBANG KESOWO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2002년 제139호

방송에 관한 2002년 법률 제32호에 대한 해설

1. 해설

의견을 표현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얻을 수 있는 자유는 국민의 주권에서 비롯되고 민주 사회, 국가 및 국가의 삶에서 인권을 구성한다. 따라서 방송의 독립성 또는 자유는 국가가 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1945년 인도네시아공화국 헌법은 이를 인정하고 보장하며 보호한다. 한편, 인도네시아 독립 선언문의 이상에 따라 이러한 독립은 국가 통합을 유지하고 종교적 가치, 진리, 정의, 도덕과 윤리를 수호하고, 공공 복지를 증진하고, 인도네시아 국민을 깨우치는 노력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자유는 팠짜실라(Pancasila)와 1945년 인도네시아공화국헌법에 근거한 권리 행사의 자유와 평등 사이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책임감있게 행사되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기술의 발전은 알 권리와 정보에 대한 권리를 점점 더 요구하는 사회를 탄생시켰다. 정보는 사회의 기본적인 필요가 되었으며 사회, 국가 및 사회 생활에서 중요한 필수품이 되었다.

정보 채널로서의 방송과 여론 형성은 특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점점 더 전략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방송은 대중, 방송기관, 비즈니스 세계 및 정부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었다. 이러한 발전으로 인해 방송 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충분했다.

특히 방송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통신 운영의 일반 원칙과 분리될 수 없다.

이를 바탕으로 방송 규제가 필요하다.

이 법률은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기반으로 제정되었다.

1. 방송은 정의, 민주주의 및 법치의 원칙에 기초한 창조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구두 및 서면으로 표현 또는 생각을 표현하는 자유를 보장하고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2. 방송은 개인 /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방해하지 않음으로써 각 개인 / 개인의 인권을 포함하여 지역 사회 또는 정부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조정함으로써 정의와 민주주의를 반영하여야 한다.

국가와 국민의 삶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여 방송을 국가 및 국제 규모에서 중요하고 전략적인 경제 기관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디지털 기술, 압축, 컴퓨터 화, 케이블 TV, 위성, 인터넷 및 기타 특수한 형태의 방송과같은 방송 부문에서 통신 및 정보 기술의 발전을 예상한다.

지역 사회가 사회적 통제하고 공영 방송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는 대중의 열망을 수용하고 방송에 대한 공익을 대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3. 방송은 제한된 천연 자원을 구성하는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 및 정지 위성 궤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그 활용도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
4. 방송의 발전은 양질의 방송 제작하고 존엄성을 지키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다

양한 공동체의 열망을 반영하여 외국 문화 가치의 악영향에 대한 공동체의 억제력을 높이는 것을 지향한다.

2. 각 조별 해설

제 1 조 ~ 제 5 조

충분히 설명됨

제 6 조

- (1) ~ (2) 충분히 설명됨
- (3) 공평하고 통합된 네트워크 형태라고 하는 것은 지역 간, 지역과 센터 간의 정보 균형을 반영한 것이다.
- (4) 충분히 설명됨

제 7 조

- (1) ~ (3) 충분히 설명됨
- (4) 감독이 의미하는 것은 방송위원회의 의무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이 법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통제 받는 것이다.

제 8 조

- (1) 충분히 설명됨
- (2) a. 충분히 설명됨
b. 방송행동강령은 방송 협회 / 공동체가 방송위원회에 제안한다.
c. 규정이행 감독이란 방송위원회가 정한 규정 이행 감독을 의미한다.
d. 규정, 방송행동강령 및 방송프로그램표준 위반에 대해 부과될 수있는 제재
e. 충분히 설명됨
- (3) 충분히 설명됨

제 9 조 ~ 제 16 조

충분히 설명됨

제 17 조

- (1) ~ (2) 충분히 설명됨
- (3) 지분 소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주식이 대중에게 판매될 때이다.

제 18 조 ~ 제 20 조

충분히 설명됨

제 21 조

- (1) 공동체는 공동체 스테이션의 허용 전송 전력 범위 내에 있는 공동체다.

(2) ~ (3) 충분히 설명됨

제 22 조 ~ 제 23 조

충분히 설명됨

제 24 조

- (1) 윤리 강령은 지역 방송의 행동강령이다.
- (2) 충분히 설명됨

제 25 조 ~ 제 30 조 충분히 설명됨

제 31 조

- (1) ~ (5) 충분히 설명됨
- (6) 우선권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그 지역 또는 그 지역 출신의 공동체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라는 의미이다. 지역 방송국의 초기 자본 소유 및 관리의 대부분은 지역 사회가 관심이 없는 경우지역 외부의 당사자에게만 주어질 수 있다.

제 32 조 ~ 제 33 조

충분히 설명됨

제 34 조

- (1) ~ (3) 충분히 설명됨
- (4) 방송사업허가를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예를 들면 주어진 방송사업허가를 특정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이나 개인에게 판매 또는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 (5) ~ (6) 충분히 설명됨

제 35 조

충분히 설명됨

제 36 조

- (1) 충분히 설명됨
- (2) 해외에서 들어온 방송 콘텐츠는 종교, 교육, 과학 및 기술, 문화,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와 관련하여 우선권이 있다.
- (3) ~ (6) 충분히 설명됨

제 37 조 ~ 제 38 조

충분히 설명됨

제 39 조

- (1) 인도네시아어 자막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TV 방송 서비스에만 적용된다.

- (2) TV 매체를 통해 방송될 수 있는 영화에 관한 규정은 영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조정된다.
- (3) 이 조항은 TV 방송 서비스에만 적용된다.

제 40 조

- (1) ~ (2) 충분히 설명됨
- (3) 방송콘텐츠 유형에 대한 제한이란 부적절한 장면을 보여주는 뉴스 방송과 음악방송프로그램 및 가학적인 장면을 보여주는 스포츠 방송 프로그램이다.
- (4) 충분히 설명됨

제 41 조 ~ 제 42 조

충분히 설명됨

제 43 조

- (1) 충분히 설명됨
- (2) 방송권이란 저작권 소유자 또는 제작자로부터 합법적으로 획득한 특정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을 방송하기 위해 방송기관이 소유한 권리이다.
- (3) ~ (4) 충분히 설명됨

제 44 조 ~ 제 45 조

충분히 설명됨

제 46 조

- (1) 충분히 설명됨
- (2) 충분히 설명됨
- (3) a. ~ d. 충분히 설명됨
 - e. 착취의 예는 개인, 가족 또는 단체의 수익을 얻기 위해 아동을 착취, 이용 또는 강탈하는
- (4) ~ (10) 충분히 설명됨
- (11) 국내 자원이 의미하는 것은 국내에서 공급되는 광고 제품의 배우와 배경이다.

제 47 조

이 조항의 심의인증서는 TV 방송 서비스에만 적용된다.

제 48 조 ~ 제 49 조

충분히 설명됨

제 50 조

- (1) ~ (3) 충분히 설명됨
- (4) 이 조항의 답변할 권리는 실수를 정정하고 시정할 권리를 포함한다.
- (5) 충분히 설명됨

제 51 조

충분히 설명됨

제 52 조

(1) 충분히 설명됨

(2) 방송기관의 모니터링이란 방송기관이 수행하는 방송 운영을 감시하는 것이다.

문해력 활동이 의미하는 것은 지역 사회의 비평적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학습 활동이다.

(3) 충분히 설명됨

제 53 조

(1) 기능, 권한, 임무 및 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통령에 대한 책임이 의미하는 바는 행정 및 재정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해당 규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제출된다. 인도네시아 국회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방송위원회의 기능, 권한, 임무 및 의무의 이행이 포함된다.

(2) 기능, 권한, 임무 및 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주지사에 대한 책임이 의미하는 바는 행정 및 재정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해당 규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제출된다. 지방의회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지역 기능, 권한, 임무 및 의무의 이행이 포함된다.

제 54 조 ~ 제 64 조

충분히 설명됨

인도네시아공화국 추가 관보 제4252호

**방송사업허가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정보통신부 장관령 2016년 제18호
PERATURAN MENTERI KOMUNIKASI DAN
INFORMATIKA REPUBLIK INDONESIA
NOMOR 18 TAHUN 2016
TENTANG PERSYARATAN DAN TATA CARA
PERIZINAN PENYELENGGARAAN PENYIARAN**

**전능하신 신의 은총으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보통신부 장관은**

고려함:

- a.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방송사업허가의 절차는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 b. 방송사업허가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정보통신부장관령 제28/P/M.KOM INFO/09/2008 호의방송사업허가 절차는 더 이상 방송사업 발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장관령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 c. a, b. 에서 언급된 고려 사항을 기반으로 방송사업허가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정보통신부 장관령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검토함:

1. 통신에 관한 법률1999년 제36호(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1999년 제154호, 인도네시아 공화국 추가 관보 제3881호)
2. 방송에 관한 법률2002년 제32호(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2002년 제139호, 인도네시아 공화국 추가 관보 제4252호)
3. 국가 부처에 관한 법률 2008년 제39호(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2008년 제166호, 인도네시아공화국 추가 관보 제4916호)
4. 무선주파수대역 및 위성궤도의 사용에 관한 정부령 2000년 제53호(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2000년 제108호, 인도네시아공화국 추가 관보 제3981호)
5. 공영방송기관의 방송사업에 관한 정부령 2005년 제11호(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2005년 제28호, 인도네시아공화국 추가 관보 제4485호)
6. 인도네시아공화국 라디오 공영방송기관의 방송사업에 관한 정부령 2005년 제12호(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2005년 제29호, 인도네시아공화국 추가 관보 제4486호)
7. 인도네시아공화국 TV 공영방송기관의 방송사업에 관한 정부령 2005년 제13호(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2005년 제30호, 인도네시아공화국 추가 관보 제4487호)
8. 민영방송기관의 방송사업에 관한 정부령 2005년 제50호(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2005년

- 제127호, 인도네시아공화국 추가 관보 제4566호)
9. 커뮤니티방송기관의 방송사업에 관한 정부령2005년 제51호(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2005년 제128호, 인도네시아공화국 추가 관보 제4567호)
 10. 유료방송기관의 방송사업에 관한 정부령 2005년 제52호(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2005년 제129호, 인도네시아공화국 추가 관보 제4568호)
 11. 정보통신부에 적용되는 비과세 국가 세입의 유형 및 세율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80조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2005년 제246호, 인도네시아공화국 추가 관보 제5749호)
 12. 내각국무부에 관한 대통령령2015년 제7호(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2015년 제8호)
 13. 정보통신부에 관한 대통령령2015년 제54호(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2015년 제96호)
 14. 정보통신부 조직 및 업무 절차에 관한 정보통신부 장관령 2016년 제1호(인도네시아공화국관보 2016년 제103호)

결정함:

확정: 방송사업허가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정보통신부 장관령

제 1 장 총칙

제 1 조

이 장관령에서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1. 방송(Siaran)은 방송 수신 장치를 통하여 수신할 수 있는 상호작용 여부에 관계없이 사운드, 이미지 또는 사운드 및 이미지 형태 또는 그래픽, 문자 형태의 메시지 또는 일련의 메시지이다.
2. 방송(Penyiaran)은 방송 수신 장비로 전파에 의해 동시에 수신되는 지상파, 케이블 및/또는 기타 매체를 통하여 무선주파수대역을 사용하여 지상, 해상 또는 대기에서 방송 및/또는 송신 수단을 통하여 방송을 송출하는 활동이다.
3. 방송형식(Format Siaran)은 방송기관이 방송하는 주요 방송 프로그램 장르이다.
4. 무선주파수대역(Spektrum Frekuensi Radio)은 인위적인 전달 수단 없이 공중과 우주에서 방송 및 전파에 사용되는 전자기파로, 공공재이자 한정된 자원이다.
5. 방송기관(Lembaga Penyiaran)은 공영방송기관, 민영방송기관, 커뮤니티방송기관, 유료방송기관 등의 방송사업자로서 그 직무, 기능,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현행 법령에 따른다.
6. 공영방송기관(Lembaga Penyiaran Publik, 약칭 LPP)은 국가가 설립한 법인 형태의 방송기관으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며 비 상업적이며 대중의 이익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7. 지역 공영방송기관 (Lembaga Penyiaran Publik Lokal, 약칭 LPP Lokal)은 지방 정부가 설립한 법인 형태의 방송기관으로 라디오 방송 또는 TV 방송 활동을 운영하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며 비 상업적이며 대중의 이익을 위해 인도네시아공화국 라디오(RRI)와 인도네시아공화국 TV (TVR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8. 민영방송기관(Lembaga Penyiaran Swasta, 약칭LPS)은 인도네시아 법인 형태로 상업적인성격의 방송기관으로 사업 부문은 라디오 또는 TV 방송서비스만을 제공한다.
9. 지역방송기관(Lembaga Penyiaran Komunitas, 약칭LPK)은 인도네시아 법인 형태의라디오 또는 TV 방송기관으로, 특정 커뮤니티가 독립적이고 비 상업적으로 설립하고지역대전파 송출로 제한된 영역 범위를 가지며 지역 사회의 이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10. 유료방송기관 (Lembaga Penyiaran Berlangganan, 약칭LPB)은 인도네시아 법인의형태로 상업적인 성격의 방송기관으로, 사업 분야는 유료방송서비스만 제공한다.
11. 청문회평가(Evaluasi Dengar Pendapat, 약칭 EDP)는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에서 시행하는식별, 설명 및 검증 프로세스이다.
12. 방송적격승인 (Rekomendasi Kelayakan Penyelenggaraan Penyiaran, 약칭 RKPP)은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에서 정한 결정서이다.
13. 합동회의포럼 (Forum Rapat Bersama, 약칭FRB)은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와 방송사업허가의신청 및 갱신을 거부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정부 간의 조정 포럼이다.
14. 신청자(Pemohon)는 방송사업허가를 신청하는 인도네시아 법인이다.
15. 선발(Seleksi)은 방송 작업을 위한 무선주파수대역 사용자의 선별이다.
16. 방송사업의 기본허가(Izin Prinsip Penyelenggaraan Penyiaran, 약칭 기본허가)는 시범방송을할 수 있도록 장관이 방송기관에게 승인한 것이다.
17. 방송사업허가(Izin Penyelenggaraan Penyiaran, 약칭 IPP)는 방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방송기관에 부여하는 권리이다.
18. 납부명령서(Surat Perintah Pembayaran, 약칭 SPP)는 사무국이 발급한 방송사업허가 및 기본허가 비용 청구서이다.
19. 송신소(Stasiun Pemancar)는 방송 전송 장비가 라디오 또는 TV 방송을 하는 기능을하는 곳이다.
20. 방송서비스지역(Wilayah Layanan Siaran)은 주어진 허가에 따른 방송서비스 지역이다.
21. 무선 주파수 채널(Kanal Frekuensi Radio)은 무선국에 대해 결정된 무선주파수대역의 일부이다.
22. 라디오방송국허가(Izin Stasiun Radio, 약칭ISR)는 특정 요건에 따라 라디오 주파수 채널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허가이다.
23. 방송시범평가(Evaluasi Uji Coba Siaran, 약칭 EUCS)는 IPP를 획득하기 위한 시범 방송 운영에 대한 평가이다.

제 2 조

이 장관령의 범위는 다음을 포함하는 방송사업허가 요건 및 절차를 규제한다.

- a. 기본허가
- b. 방송사업허가
- c. 방송사업허가 갱신

제 2 장 방송사업허가 유형

제 3 조

방송기관은 방송사업 전 방송사업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제 4 조

제3조의 방송사업허가는 다음으로 구성된다.

- a. 인도네시아공화국 라디오 공영방송기관 방송사업허가
- b. 인도네시아공화국 TV 공영방송기관 방송사업허가
- c. 라디오 방송서비스지역 공영방송기관 방송사업허가
- d. TV 방송서비스지역 공영방송기관 방송사업허가
- e. 라디오 방송서비스 민영방송기관 방송사업허가
- f. TV 방송서비스 민영방송기관 방송사업허가
- g. 라디오 방송서비스 지역방송기관 방송사업허가
- h. TV 방송서비스 지역방송기관 방송사업허가
- i. 라디오 방송서비스 유료방송기관 방송사업허가
- j. TV 방송서비스 유료방송기관 방송사업허가

제 5 조

제4조c에서 f까지의 방송기관은 방송사업허가를 취득하기 전에 먼저 기본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제 6 조

제4조의 라디오 방송서비스 방송사업허가는 5년 동안 유효하며 TV 방송서비스는 10년 동안 유효하며 갱신할 수 있다.

제 3 장 설립 및 허가 요건

제 1 부 설립 요건

제 1 절

공영방송기관의 설립 요건

제 7 조

(1) 공영방송기관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 a. 인도네시아공화국 라디오 공영방송기관

- b. 인도네시아공화국 TV 공영방송기관
 - c. 지역 공영방송기관
- (2) 제1항c의 지역 공영방송기관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 a. 라디오 방송서비스 지역 공영방송기관
 - b. TV 방송서비스 지역 공영방송기관

제 8 조

인도네시아공화국 라디오 공영방송기관 및 인도네시아공화국 TV 공영방송기관은 방송에 관한 법률 2002년 제32호와 그 시행령에 따라 설립되고 공영방송기관으로 지정된 방송기관이다.

제 9 조

- (1) 지역 공영방송기관의 설립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a. 지역 사회의 추천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자치 법규에 따라 지방정부가 설립한 법인의 형태이다.
 - b. 해당 방송서비스 지역에 인도네시아공화국 라디오 및/또는 인도네시아공화국 TV 방송국이없다.
 - c. 법령 규정에 따라 정해진 방송 주파수 마스터 플랜에 따른 무선 주파수 채널이 준비되어 있다.
 - d. 라디오는 하루에 최소 12시간, TV는 하루에 3시간 이상 균형잡힌 방송 자료를 가지고 방송할 수 있도록 지역 공영방송기관의 전문인력 및 기타 자원이 준비되어 있다.
 - e. 방송 운용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 (2) 제1항a 지역 사회의 추천은 주지사 또는 지자체 장에게 보내는 개인, 조직 및/또는 사회 단체의 서면 추천 형식이어야 한다.

제 2 절

민영방송기관의 설립 요건

제 10 조

민영방송기관의 설립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a. 인도네시아 국민이 설립한다.
- b. 법률 및 인권 분야의 정부 업무를 관리하는 장관이 승인한 유한 책임 회사의 인도네시아 법인 형태이다.
- c. 사업 부문은 정관에 명시된 대로 라디오 또는 TV 방송서비스만 제공한다.
- d. 사업의 모든 초기 자본은 인도네시아 국민 및/또는 인도네시아 법인이 소유하며, 모든지분은 인도네시아 국민이 소유한다.

제 3 절

지역방송기관의 설립 요건

제 11 조

- (1) 지역방송기관의 설립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a. 인도네시아 국민이 설립한다.
 - b. 관할 당국에 의해 승인된 협동조합 또는 협회 법인의 형태이다.
 - c. 초당파적 조직이다.
 1. 국제 사회뿐만 아니라 외국 조직이나 기관을 대표하지 않는다.
 2. 금지된 조직과 관련이 없다.
 3. 특정 단체나 계층을 위한 선전을 위한 것이 아니다.
 - d. 활동은 정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역 방송을 구체적으로 운영한다.
 - e. 경영진은 인도네시아공화국 국민이다.
 - f. 사업의 모든 초기 자본은 지역 사회 구성원들에게서 조달된다.
- (2) 지역방송기관은 전체 성인 인구의 51% 이상 또는 250인 이상의 서면 승인으로 설립되고 마을 책임자/현지 촌장 수준인 정부 공무원의 서면 승인으로 공고된다.

제 4 절

유료방송기관의 설립요건

제 12절

유료방송기관의 설립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a. 인도네시아 국민이 설립한다.
- b. 유한 책임 회사 형태의 인도네시아 법인 형태이다.
- c. 사업 부문은 가입자 방송서비스만 제공한다.
- d. 사업의 모든 초기 자본은 인도네시아 국민 및/또는 인도네시아 법인이 소유하며, 모든 지분은 인도네시아 국민이 소유한다.

제 2 부 허가 요건

제 1 절

공영방송기관의 허가 요건

제 13 조

- (1) 인도네시아공화국 라디오 공영방송기관 및 인도네시아공화국 TV 공영방송기관은 해당 존재에 대해 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함으로써 중앙 방송국과 모든 지점에 적용되는 방송 사업허가를 취득한다.
- (2) 네트워크 개발을 위해 인도네시아공화국 라디오 공영방송기관 및 인도네시아공화국 TV 공영방송기관은 주파수 사용 신청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4 조

지역 공영방송기관의 방송사업허가 신청은 다음 요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 a. 신청서
- b. 구비요건은 다음과 같다.
 - 1. 설립의 목적과 배경 및 운용할 방송의 명칭, 비전, 사명 및 형식을 포함
 - 2. 지역 공영방송기관 법인 설립에 관한 지역 규정의 사본
 - 3. 방송사업 조직 및 운영자의 이름
 - 4. 각 업무팀의 근무 체계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가장 높은 업무팀에서 가장 낮은 업무팀까지의 조직 구조에 대한 설명
 - 5. 통신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 주소, 담당자, 전자 메일 주소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및 기타 유효한 신원
 - 6. 경영진의 신분증(KTP) 사본
 - 7. 납세자 식별 번호(NPWP) 사본
 - 8. 거주 증명서 사본
- c. 방송 프로그램의 필수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방송 시간 설명
 - 2. 프로그램 비율
 - 3. 방송 프로그램 편성
 - 4. 프로그램 소스의 출처
 - 5. 대상 시청자
- d. 기술 데이터의 필수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사용할 시설 및 인프라 목록 (스튜디오 및 송신기 장비, 스튜디오 수 및 유형, 투자 비용 계산 포함)
 - 2. 스튜디오 및 송신소 설계도, 스튜디오 및 송신소 위치 지도, 커버리지 지역 및 서비스 지역
 - 3. 제안된 무선 주파수 채널 및 원하는 등고선도
 - 4. 장비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램과 함께 사용할 기술 사양 및 장비 시스템

제 2 절

민영방송기관의 허가 요건

제 15 조

민영방송기관의 방송사업허가 신청은 다음 요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 a. 신청서
- b. 구비요건은 다음과 같다.
 - 1. 설립의 목적과 배경 및 운용할 방송의 명칭, 비전, 사명 및 형식을 포함
 - 2. 법인의 승인 또는 관할 당국에 등록된 회사 정관 및 개정의 사본
 - 3. 방송사업 조직 및 운영자의 이름
 - 4. 타당성 조사 및 사업 계획
 - 5. 자본 측면에 관한 설명
 - 6. 가입자 회비 수입 예상 및 방송사업과 관련된 합법적 기타 수익에 관한 설명
 - 7. 신청자가 소유한 인쇄 매체, 라디오 방송서비스 민영방송기관 및/또는 TV 방송서비스

민영방송기관의 목록

8. 각 부서에 할당된 근무 체계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상급부서부터 하위부서까지의 조직도에대한 설명
 9. 통신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 주소, 담당자, 전자 메일 주소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및 기타 응신 가능한 수단
 10. 방송사업허가 비용 납부 약정서
 11. 법령의 규정에 따라 방송 운영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서약서
 12. 경영진의 신분증(KTP) 사본
 13. 납세자 식별 번호(NPWP) 사본
 14. 거주 증명서 사본
- c. 방송 프로그램의 구비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방송 시간 설명, 방송 프로그램 소스의 출처, 대상 시청자 및 경쟁력,
 2. 전체 방송 프로그램의 비율, 음악 방송의 세부 사항, 일간 및 주간 방송 편성계획
- d. 기술 데이터의 필수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용할 시설 및 인프라 목록 (스튜디오 및 송신기 장비, 스튜디오 수 및 유형, 투자 비용 계산 포함)
 2. 스튜디오 및 송신기 스테이션 레이아웃 도면, 스튜디오 및 방송국 위치 지도, 커버리지 지역 및 서비스 지역
 3. 제안된 무선 주파수 채널 및 원하는 등고선도
 4. 장비 시스템의 블록 다이어그램과 함께 사용할 기술 사양 및 장비 시스템

제 3 절

지역방송기관의 허가 조건

제 16 조

지역방송기관의 방송사업허가 신청은 다음 요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 a. 신청서
- b. 구비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설립의 목적과 배경 및 운용할 방송의 명칭, 비전, 사명 및 형식을 포함
 2. 법인의 승인 또는 관할 당국에 등록된 회사 정관 및 개정의 사본
 3. 방송사업 조직 및 운영자의 이름
 4. 타당성 조사 및 사업 계획
 5. 자본 측면에 관한 설명
 6. 각 업무팀의 근무 체계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가장 높은 업무팀에서 가장 낮은 업무팀까지의 조직 구조에 대한 설명
 7. 통신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 주소, 담당자, 전자 메일 주소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및 기타 유효한 신원
 8. 경영진의 신분증(KTP) 사본
 9. 납세자 식별 번호(NPWP) 사본
 10. 거주 증명서 사본

- c. 방송 프로그램 구비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방송 시간 설명, 방송 프로그램 소스의 출처, 대상 시청자
 2. 전체 방송 프로그램의 비율, 음악 방송의 세부 사항, 일간 및 주간 방송 프로그램의 형태
- d. 기술 데이터의 구비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사용할 시설 및 인프라 목록 (스튜디오 및 송신기 장비, 스튜디오 수 및 유형, 투자 비용 계산 포함)
 2. 스튜디오 설계도 및 방송국 위치 지도, 송신소 설계도 및 위치 지도, 방송 커버리지 지역 지도 및 방송서비스 지역
 3. 장비 시스템의 블록 다이어그램과 함께 사용할 기술 사양 및 장비 시스템
 4. 무선 주파수 채널 및 원하는 전송의 윤곽선도 제출

제 4 절

유료방송기관의 허가 조건

제 17 조

유료방송기관의 방송사업허가 신청은 다음 요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 a. 신청서
- b. 구비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설립의 목적과 배경 및 운용할 방송의 명칭, 비전, 사명 및 형식을 포함
 2. 법인의 승인 또는 관할 당국에 등록된 회사 정관 및 개정의 사본
 3. 방송사업 조직 및 운영자의 이름
 4. 타당성 조사 및 사업 계획
 5. 자본 측면에 관한 설명
 6. 가입자 회비 수입 예상 및 방송사업과 관련된 합법적 기타 수익에 관한 설명
 7. 신청자가 소유한 인쇄 매체, 라디오 방송서비스 민영방송기관 및/또는 TV 방송서비스 민영방송기관의 목록
 8. 각 업무팀의 근무 체계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가장 높은 업무팀 에서 가장 낮은 업무팀까지의 조직 구조에 대한 설명
 9. 통신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 주소, 담당자, 전자 메일 주소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및 기타 유효한 신원
 10. 경영진의 신분증(KTP) 사본
 11. 납세자 식별 번호(NPWP) 사본
 12. 거주 증명서 사본
- c. 방송 프로그램 구비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방송 시간 설명, 방송 프로그램 소스의 출처, 대상 시청자 및 경쟁력
 2. 채널 / 프로그램 수, 방송될 프로그램 이름 및 내용
 3. 일간 및 주간 방송 프로그램의 패턴
- d. 기술 데이터의 구비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투자 비용 계산이 포함 된 사용할 시설 및 인프라 목록
 2. 방송서비스지역지도 및 위치 지도, 운영실, 제어실 및 송신실 설계도

3. 장비 시스템의 블록 다이어그램과 함께 사용할 기술 사양 및 장비 시스템
4. 특히 지상파를 통한 유료방송기관의 경우 무선 주파수 채널 및 원하는 전송의 윤곽선도 제출

제 3 부 특수 목적 방송기관

제 18 조

- (1) 장관은 특수 목적 방송기관의 설립에 우선 순위를 둘 수 있다.
- (2) 제1항의 특별 목적에는 다음 부문이 포함된다.
 - a. 교육
 - b. 공중위생
 - c. 재난

제 19 조

- (1) 제18조 제1항에 따라 특수 목적으로 설립된 방송기관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 a. 제9조의 설립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공영방송기관
 - b. 제10조의 설립 요건을 충족하는 민영방송기관
 - c. 제11조의 설립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방송기관
- (2) 특수 목적으로 설립된 방송기관은 제1항의 요건에 추가하여 교육, 보건, 재난 부문의 공무를 수행하는 관계 기관의 권고를 받아야 한다.

제 20 조

- (1) 장관은 공공의 필요, 주파수 채널의 가용성 및/또는 특수 목적을 위해 설립된 방송기관의 준비 및 일반적인 운영 타당성을 고려하여 특수 목적으로 설립된 방송기관을 결정하여야 한다.
- (2) 특수 목적으로 설립된 방송기관의 인허가 절차는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진행된다.

제 21 조

- (1) 특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방송기관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방송 프로그램을 전체 방송 프로그램의 80% 이상으로 방송하여야 한다.
- (2) 특수 목적으로 설립된 방송기관이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방송기관의 방송 사업허가는 방송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

제 4 장 허가 절차

제 1 부 총칙

제 22 조

- (1) 장관은 지상파를 통하여 민영방송기관 및/또는 유료방송기관의 방송 시행 기회를 공지한다.
- (2) 제1항의 지상파를 통한 민영방송기관 및/또는 유료방송기관의 방송 시행 기회 공지는 정부 공식 홈페이지, 인쇄 및/또는 전자 매체를 통하여 공개된다.
- (3) 제1항의 공지는 최소한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a. 방송서비스 지역
 - b. 신청서 제출 기간
 - c. 사용 가능한 무선 주파수 채널 수
- (4) 제1항의 민영방송기관 방송 시행 기회 공지는 제18조 제2항에 따른 특수 목적 및/또는 소외 지역, 국경 지역 및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최외곽 지역은 면제된다.

제 23 조

- (1) 지상파를 통한 민영방송기관 및 유료방송기관에 대한 방송사업허가 신청은 제22조제3항b의 방송 시행 기회 공지에서 결정된 기간에 따라 제출된다.
- (2) 방송사업허가 신청은 방송 시행 기회 공지 없이 제출이 가능하다.
 - a. 위성을 통한 유료방송기관
 - b. 케이블을 통한 유료방송기관
 - c. 지역 공영방송기관
 - d. 지역방송기관
- (3) 장관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제2항에서 언급한 방송사업허가 신청을 일시 중지 (모라토리움) 할 수 있다.
 - a. 공정한 사업 경쟁
 - b. 투자 보호
 - c. 선진국과 저개발국 지역
 - d. 지역의 이익
 - e. 균형 잡힌 커뮤니티 요구 (수요 측면)와 서비스 가용성 (공급 측면) 비교
 - f. 국가의 효율성
- (4) 제1항 및 제2항의 방송사업허가 신청은 지역방송위원회를 통하여 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제 24 조

- (1) 제23조제4항의 방송사업 허가신청은 지역방송위원회용 서류 1부와 장관 용 서류 1부로 각 2부씩 작성되어야 한다.

- (2) 지역방송위원회는 지역방송위원회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6일 이내에 중앙방송위원회를 통하여 신청 문서를 장관에게 전달한다.
- (3) 제2항에 명시된 신청 서류는 지역방송위원회에 의한 신청 등록 증명과 함께 완성된다.

제 2 부 방송사업허가 신청의 구비요건 및 충족 여부 점검

제1 절 총칙

제 25 조

방송사업허가 신청 구비요건 및 필수 준비사항 충족 여부 점검은 다음과 같다.

- a. 지역방송위원회는 방송 프로그램 측면을 점검한다.
- b. 장관은 방송 기술 데이터와 행정 측면을 점검한다.

제 2 절

방송 프로그램 구비요건 및 충족 여부 점검

제 26 조

- (1) 지역방송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방송 프로그램구비요건 및 필수 준비사항 충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2) 신청이 방송 프로그램의 구비요건 및 필수 준비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역방송위원회는 신청자가 구비요건 및 필수 준비사항을 충족하도록 근무일 기준 2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 (3) 신청자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15일 이내에 제2항의 방송 프로그램 구비요건과 필수 준비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 (4) 신청자가 제3항의 기간 내에 방송 프로그램 구비요건과 필수 준비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자는 해당 신청을 취소 및/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3 절

방송 기술 데이터 구비요건 및 필수 준비사항 충족 여부 점검

제 27 조

- (1) 장관은 제24조제2항의 중앙방송위원회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방송 기술 데이터 구비요건 및 필수 준비사항 충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2) 신청이 방송 기술 데이터 구비요건 및 행정 요건의 이행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선언되는 경우 장관은 신청자가 구비요건과 필수 준비사항을 충족하도록 근무일 기준 2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 (3) 신청자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15일 이내에 제2항의 방송 기술 데이터 구비요건 및 필수 준비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 (4) 신청자가 제3항의 기간 내에 방송 기술 데이터 구비요건 및 필수 준비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자는 그 신청을 취소 및/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된다.
- (5) 신청서가 방송 기술 데이터 구비요건 및 필수 준비사항을 충족한다고 확인되는 경우, 장관은 근무일 기준 2일 이내에 지역 방송위원회에 서면으로 발송하고 중앙방송위원회에 참조로 보낸다.

제 4 절 청문회평가

제 28 조

- (1) 청문회평가는 신청자가 제26조의 방송 프로그램 구비요건 및 필수 준비사항 그리고 제 27조의 방송 기술 데이터 구비요건 및 필수 준비사항을 충족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6일 이내에 방송위원회에 의해 시행된다.
- (2) 지역방송위원회는 청문회평가 시행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실행 불가능 사유를 첨부하여 방송에 부적합하다고 선언되는 신청자에 대해 서면으로 장관에게 통보하고 중앙 방송위원회에 참조를 제출한다.
- (3) 지역방송위원회는 방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확인된 신청에 대해 방송적격 승인을 발급 하고이를 청문회평가 시행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6일 이내에 중앙방송위원회를 통하여 장관에게 전달한다.
- (4) 제3항의 방송적격승인은 최소한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a. 방송기관 명
 - b. 명칭
 - c. 방송사업 서비스의 유형
 - d. 무선주파수대역 운용계획에 따라 지상파를 통한 지역 공영방송기관, 민영방송기관, 지역방송기관 또는 유료방송기관에 대한 무선주파수대역 사용 제한
 - e. 방송서비스지역
 - f. 방송형식
 - g. 사무실 주소
 - h. 스튜디오 주소
 - i. 송신소 주소
 - j. 송신소 주소 좌표
- (5) 제1항의 청문회평가 시행에 관한 추가 조항 및 제4항f의 방송형식에 관한 추가 조항은 방송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29 조

- (1) 지상파를 통한 민영방송기관 및/또는 유료방송기관에 대한 방송적격승인 발급은 방송 사업 기회 공지에 따라야 한다.
- (2) 방송위원회는 방송사업 기회에 맞지 않는 신청을 거부할 의무가 있다.
- (3) 방송위원회는 방송사업 기회 공지 후 지상파를 통한 민영방송기관 및/또는 유료방송기관 신청만 받는다.

- (4) 지상파를 통한 민영방송기관 및/또는 유료방송기관에 대한 방송적격승인은 방송 시행 기회 공지와 맞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처리되지 않는다.

제 5 장 합동회의포럼

제 1 부 통칙

제 30 조

장관은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방송위원회로부터 방송적격승인을 수령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에 합동회의포럼을 개최한다.

제 31 조

- (1) 제30조의 합동회의포럼 참여자는 교육부처 및 방송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 (2) 필요한 경우 장관은 합동회의포럼에 참석하도록 관련 기관을 초청할 수 있다.

제 2 부 합동회의포럼 결정

제 32 조

- (1) 제30조의 합동회의포럼은 장관 또는 임명된 공무원이 주도한다.
- (2) 합동회의포럼의 결정은 방송사업허가 신청 및/또는 방송사업허가 갱신의 승인 또는 거부 형태이다.
- (3) 합동회의포럼은 제한된 무선주파수 채널의 경우 지역방송기관과 다른 지역방송기관 및/또는 커뮤니티 간에 방송 시간을 공유하는 계약을 요구함으로써 지역방송기관 방송사업 허가신청의 승인을 결정할 수 있다.
- (4) 제2항의 합동회의포럼의 결정은 합동회의포럼 지도부와 중앙방송위원회 위원장이 서명한 공식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다.
- (5) 제2항의 합동회의포럼의 결정은 장관이 다음을 발급하는 근거가 된다.
 - a. 기본허가
 - b. 방송사업허가 신청의 거부
 - c. 방송사업허가 갱신
 - d. 방송사업허가 갱신 신청 거부

제 33 조

1개의 방송서비스 지역에서 방송적격승인을 획득한 신청 수가 방송 기회에 규정된 무선 주파수 채널 수를 초과하는 경우 합동회의포럼은 선발을하기로 결정한다.

제 3 부 선발

제 1 절 일반

제 34 조

- (1) 제33조에 따른 선발은 장관이 구성한 선발팀이 수행한다.
- (2) 제1항의 선발은 다음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 a. 비교 평가 방법
 - b. 무선 주파수 사용 경매
- (3) 제2항a에 따른 비교 평가 방법에 의한 선발은 제33조에 따른 방송회의포럼 결정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4일 이내에 실시한다.
- (4) 제2항b의 무선 주파수의 사용은 장관이 규정한다.

제 35 조

- (1) 제34조제2항a의 비교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된 평가부서에서 시행한다.
 - a. 중앙방송위원회 위원과 지역방송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최대 4인의 방송위원회
 - b. 최대 5인의 정부 부처 공무원
- (2) 제1항의 선발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a. 선발 일정 마련
 - b. 선발 서류 준비
 - c. 선발 서류 평가 및 심사 수행
 - d. 선발 결과의 순위 결정
 - e. 선발 결과를 합동회의포럼에 보고
- (3)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발팀은 사무국의 도움을 받는다.

제 2 항 비교 평가 자료

제 36 조

- (1) 제34조제2항a에 따른 평가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수행된다.
 - a. 사업
 - b. 방송 기술
 - c. 방송 프로그램
- (2) 제1항a와 b의 방송의 사업 및 기술적 측면은 교육부처가 수행한다.
- (3) 제1항c의 방송 프로그램 측면은 방송위원회가 수행한다
- (4) 제1항a의 사업 측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a. 자본 적정성
 - b. 사업 계획의 타당성

- c. 인적 자원의 적정성
 - d. 소유권과 교차 소유권
- (5) 제1항b의 방송 기술의 측면에는 다음 계획이 포함된다.
- a. 구축될 시설 및 인프라
 - b. 사용할 장치
 - c. 송신소 및 방송국 (스튜디오)의 설계도 및 레이아웃 도면
 - d. 송신기 및 안테나 시스템의 구성을 기반으로 방송서비스 지역과 예상 방송 지역 커버리지 간의 적합성
- (6) 제1항c의 방송 프로그램 측면에는 다음 계획이 포함된다.
- a. 방송 시간에 대한 설명
 - b. 방송 프로그램 용 소스 자료
 - c. 대상 시청자
 - d. 방송 프로그램의 경쟁력
 - e. 전체 의제 비율
 - f. 방송 세부 사항
 - g. 방송형식
 - h. 일간 및 주간 방송 이벤트 형식

제 3 항

비교평가 선발의 수행

제 37 조

비교평가 선발 방법은 다음 조건으로 수행된다.

- a. 선발팀의 모든 구성원은 부패, 공모, 족벌주의 및 조작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성명을 포함하는 청렴 협약에 서명하여야 한다.
- b. 선발팀은 다음과 같은 비중으로 신청 서류의 자료를 심사한다.
 - 1. 사업 측면 비중이 30%
 - 2. 방송 기술 측면 비중이 30%
 - 3. 방송 프로그램 측면 비중이 30%
- c. 선발팀은 b의 심사의 요약을 기반으로 선발 결과를 결정하기 위해 본회의를 실시하며 등급에 따라 정리한다.
- d. c의 심사 결과는 선발 결과에 대한 공식 보고서에 포함된다.
- e. 선발팀은 합동회의포럼에 심사 결과를 보고한다.

제 38 조

- (1) 제37조e의 합동회의포럼은 선발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시행되어야 한다.
- (2) 제1항의 합동회의포럼은 선발 등급에 따라 방송 신청을 승인 또는 거절하여야 한다.

제 6 장 방송사업의 기본허가

제 39 조

- (1) 국장은 합동회의포럼 결정 후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합동회의포럼에서 신청이 승인된 신청자에게 기본허가 수수료 납부명령서를 발급한다.
- (2) 신청자는 납부명령서 발급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에 기본허가 수수료를 전액 납부하고 납부 증빙 자료를 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제2항의 기본허가 수수료는 지정된 정부 은행에서 총국의 수취인 재무 계좌를 통하여 국고에 납부된다.
- (4) 제2항에 따른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에 신청자가 기본허가 수수료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납부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장이 신청자에게 서면 경고를 보낸다.
- (5) 제4항에 따른 서면 경고는 제2항에 따른 마감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국장이 발급한다.
- (6) 제5항에 따른 서면 경고 발급 후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신청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되며 관련 합동회의포럼 승인은 무효화된다.

제 40 조

- (1) 장관은 기본허가 수수료 납부 의무 이행 및 납부 증명 제출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기본허가를 발급한다.
- (2) 제1항의 기본허가는 발급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2일 이내에 장관이 중앙방송위원회에 전달하여야 한다.
- (3) 기본허가는 제2항의 중앙방송위원회가 장관으로부터 수령 후 근무일 기준 2일 이내에 지역방송위원회에 전달하여야 한다.
- (4) 기본허가는 제3항의 지역방송위원회가 중앙방송위원회로부터 수령 후 근무일 기준 2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 41 조

- (1) 장관은 합동회의포럼 결정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합동회의포럼에서 거부된 신청자에 대해 방송사업허가 신청 거부 결정서를 발급한다.
- (2) 제1항에 따른 거부 결정서는 발급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2일 이내에 장관이 중앙방송위원회에 전달하여야 한다.
- (3) 거부 결정서는 제2항의 장관으로부터 거부 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2일 이내에 중앙방송위원회가 지역방송위원회에 전달하여야 한다.
- (4) 거부 결정서는 제3항의 지역방송위원회가 중앙방송위원회로부터 수령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2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 42 조

- (1) 기본허가는 라디오 방송서비스는 6개월, 텔레비전 방송서비스는 1년 동안 유효하다.
- (2) 제1항의 기본허가는 갱신할 수 없다.

제 43 조

제42조의 기본허가는 다음 용도로 사용된다.

- a. 인프라 개발 수행
- b. 무선주파수대역을 사용하려는 신청자를 위한 라디오 방송국 허가 관리
- c. 외국 위성을 사용하려는 신청자를 위한 위성 사용권 조정
- d. 시범 방송 시행
- e. 방송 시범 운영 평가 신청

제 44 조

- (1) 기본허가 유효기간 동안 방송 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된다.
 - a. 상속으로 인한 권리 이전으로 인한 주주 소유권 변경
 - b. 공익 광고 방송을 제외한 광고 방송 운영
 - c. 방송 운영비와 관련된 수수료를 징수
- (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거 제재를 받는다.

제 7 장 라디오방송국허가 및 위성 사용권

제 45 조

- (1) 신청자는 라디오방송국허가 신청서를 서면으로 장관에게 제출한다.
- (2) 라디오방송국허가 신청은 무선주파수대역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 (3) 방송기관이 무선주파수대역 및/또는 지정된 방송 커버리지 영역의 사용을 위반하여 라디오방송국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해당 방송기관의 방송사업허가가 취소된다.
- (4) 방송기관이 방송 위반 행위를 하여 방송사업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해당 방송기관의라디오방송국허가가 취소된다.

제 46 조

- (1) 외국 위성을 이용한 방송사업은 위성 운영권을 취득할 의무가 있다.
- (2) 위성 운영권 신청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 8 장 시범 방송

제 1 부 통칙

제 47 조

기본허가를 취득한 후, 기본허가 보유자는 제42조의 기본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시범 방송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제 48 조

시범 방송 기간 동안, 기본허가 보유자는 방송 프로그램 제안 및 방송 기술 데이터에 따라 라디오 방송서비스의 경우 매일 최소 5시간, 텔레비전 방송서비스의 경우 매일 최소 2시간동안 방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 49 조

- (1) 기본허가 보유자는 방송시범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장관을 참조로 하여 서면으로 사무총장, 우편 및 정보 장비 및 자원 국장, 중앙방송위원회 위원장, 해당 지역방송위원회 위원장 및 지역 무선주파수대역 모니터링 기술 구현 부서 책임자에게 제출한다.
- (2) 제1항의 방송시범평가 신청서는 기본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장관에게 접수되어야 한다.
- (3) 제2항의 기한 내에 방송시범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기본허가 보유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된다.
- (4) 기본허가 보유자가 제3항에 따라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기본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기본허가가 만료되고 라디오방송국 허가는 취소된다.

제 50 조

제49조제1항의 방송시범평가 신청은 다음 요건을 포함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 a. 행정 요건은 다음이 포함된다.
 1. 유효한 기본허가 사본
 2. 유료방송기관 방송권 사본
 3. 주식 소유권 이외의 데이터 변경 (있는 경우)
 4. 상업적이 아닌 데이터 정확성에 대한 진술서
- b. 방송 프로그램은 다음이 포함된다.
 1. 라디오 방송서비스 방송기관의 경우 다음으로 구성된다.
 - a) 청취자 세분화
 - b) 방송형식
 - c) 방송 구성
 - d) 방송 자료, 및
 - e) 방송 자료의 형태
 2. 텔레비전 방송서비스 방송기관의 경우 다음으로 구성된다.
 - a) 방송형식
 - b) 방송 비율 (국내 및 해외)
 - c) 방송 의제 분류
 - d) 방송 자료의 출처
- c. 방송 기술 데이터는 다음이 포함된다.
 1. 유효한 라디오방송국허가 사본
 2. 장비 인증 사본
 3. 사용되는 시스템 (스튜디오에서 라디오 방송국까지 포함) 구축
 4. 각 방송 스튜디오의 레이아웃 도면

5. 각 라디오 방송국의 레이아웃 도면

제 2 부 방송시범평가 시행

제 1 절 방송시범평가단

제 51 조

- (1) 장관은 다음 구성원으로 구성된 방송시범평가단을 구성한다.
 - a. 행정적 측면 평가를 위한 총국
 - b. 방송 기술 데이터 측면 평가를 위한 우편 및 통신사업총국
 - c. 방송 프로그램 측면 평가를 위한 방송위원회
- (2) 국장은 직권으로 제1항의 방송시범평가단의 단장이 된다.
- (3) 방송시범평가팀 구성원은 부패, 공모, 족벌주의 및 조작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성명을 포함하는 청렴 협약에 서명하여야 한다.
- (4) 국장은 방송시범평가 신청 접수 후 근무일 기준 2일 이내에 행정적 측면, 방송 기술 데이터측면 및 방송 프로그램 측면을 평가하기 위해 방송시범평가 이행에 대한 통지를 방송시범평가단에 제출한다.

제 2 절 합격 심사

제 52 조

- (1) 제51조제1항의 방송시범평가팀은 제50조의 요건의 충족 및 구비요건에 대한 합격 심사를 이행하고, 국장으로부터 방송시범평가 이행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각 기관에 따라 운영 타당성을 평가한다.
- (2) 제1항의 합격 심사는 방송시범평가단의 각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
- (3) 방송시범평가단은 신청자가 합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평가하였지만 기본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까지 최소 30일이 남아 있는 경우 신청자에게 기본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 달력일 기준 20일까지 방송시범평가 합격 요건 및 구비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회를 준다.
- (4) 신청자가 제3항의 기간 내에 요건 및 구비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 방송시범평가단은 요건의 구비요건을 수령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합격 심사를 이행한다.

제 3 절 방송시범평가 본회의

제 53 조

- (1) 국장은 합격 심사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2일 이내에 제52조의 합격 심사 결과에 따라신

- 청자의 합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본회의를 개최한다.
- (2) 신청자가 제52조제3항의 기간 내에 요건과 구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방송시범평가단구성원은 신청자가 해당 측면의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명시한다.
 - (3) 방송시범평가팀 구성원이 제1항의 방송시범평가 본회의가 개최될 때까지 제52조제1항 및 제3항의 합격 심사 결과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 방송시범평가팀 구성원은 신청자가 해당 측면의 평가를 합격했다고 명시한다.
 - (4) 제1항의 방송시범평가 본회의 결과는 공식 보고서에 기록되고 방송시범평가 단장이장관에게 보고한다.
 - (5) 제1항의 방송시범평가 본회의 결정은 방송시범평가 본회의 시행 후 근무일 기준 3일이 내에 방송시범평가 단장이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제 54 조

- (1) 장관은 제53조제5항에 따른 방송시범평가 본회의 결정에 따라 합격하지 못한 신청자의 기본허가를 취소한다.
- (2) 제1항에 따른 기본허가 취소 결정은 장관이 방송위원회를 통하여 신청자에게 제출한다.
- (3) 제1항에 따른 기본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무선주파수대역을 사용하는 관련 방송기관의 라디오방송국허가는 취소된다.

제 5 부 방송사업허가 발급

제 55 조

- (1) 국장은 방송시범평가 본회의 결정이 발표된 후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방송시범평가를 통과한 합격자에게 방송사업허가 수수료 납부명령서를 발급한다.
- (2) 신청자는 납부명령서 발급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에 방송사업허가 수수료를 전액 납부하고 납부 증빙 자료를 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제2항의 방송사업허가 수수료는 지정된 정부 은행에서 총국의 수취인 재무 계좌를 통하여 국고에 납부된다.
- (4) 제2항의 근무일 기준 1일 이내에 신청자가 방송사업허가 수수료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납부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장은 신청자에게 서면 경고를 보낸다.
- (5) 제4항에 따른 서면 경고는 제2항에 따른 마감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이사가 발급한다.
- (6) 신청자가 제4항의 서면 경고 발급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되며 신청자에 대한 방송시범평가 합격 결정은 무효화된다.

제 56 조

- (1) 장관은 제53조제5항의 방송시범평가를 합격한 신청자가 방송사업허가 수수료 및 납부 증명증빙 제출의무 이행 후 근무일 기준 7일 이전에 방송사업허가를 발급한다.
- (2) 제1항의 방송사업허가는 발급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2일 이내에 장관이 중앙방송위원회에

전달하여야 한다.

- (3) 제2항의 방송사업허가는 중앙방송위원회가 장관으로부터 수령 후 근무일 기준 2일 이내에 지역방송위원회에 전달하여야 한다.
- (4) 방송사업허가는 제3항의 지역방송위원회가 중앙방송위원회로부터 수령 후 근무일 기준 2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 9 장 방송사업허가 갱신

제 57 조

- (1) 제6조에서 언급한 방송사업허가를 갱신할 방송기관은 방송사업허가 만료 13개월 이전 및 늦어도 12개월 이전에 방송사업허가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 (2) 방송사업허가 갱신의 유효기간은 제6조의 방송사업허가의 유효기간에 따른다.
- (3) 제1항의 방송사업허가 갱신 신청은 다음 요건을 포함하여 장관 용 서류 1부와 방송위원회 용 서류 1부로 각 2부씩 작성되어야 한다.
 - a. 필수 준비사항은 다음이 포함된다.
 - 1. 법인으로 승인된 회사 정관 및 개정의 사본
 - 2. 방송사업 조직 및 운영자의 이름
 - 3. 소유한 인쇄 매체, 라디오 방송서비스 민영방송기관 및/또는 TV 방송서비스 민영방송기관의 목록
 - 4. 네트워크 방송국의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방송국, 특히 네트워크 방송국 구성 원에 의해 중계되는 방송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주 네트워크 방송국의 구성원 목록
 - 5. 승인서 사본 또는 방송사업허가 데이터 변경 기록
 - 6. 이전 방송사업허가 사본 및 모든 방송사업허가 수수료 의무에 관한 납부 증명 사본
 - 7. 라디오방송국허가 보유자에 대한 모든 주파수 사용 권한 의무에 관한 라디오방송국 허가 사본 및 납부 증명 사본
 - 8. 재무 보고서, 특히 자본 시장이나 상장 회사를 통하여 증권을 제공한 민영방송기관의 경우 재무제표를 공인 회계사가 검토하여야 한다.
 - 9. 특히 민영방송기관은 법과 규정의 조항에 따라 방송 구현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성명서에 서명한다.
 - b. 방송 프로그램은 다음이 포함된다.
 - 1. 방송 시간 설명, 방송 프로그램 자료의 출처 및 대상 시청자
 - 2. 전체 방송 프로그램의 비율, 음악 방송의 세부 사항, 일간 및 주간 방송 프로그램의 패턴
 - c. 방송 기술 데이터는 다음이 포함된다.
 - 1. 스튜디오 및 송신기 장비, 스튜디오 수 및 유형을 포함하여 사용된 시설 및 인프라 목록
 - 2. 스튜디오 설계도 및 방송국 위치 지도, 송신소 설계도 및 위치 지도, 방송 커버리지

- 및취득한 허가에 따라 승인된 윤곽선도를 포함한 방송서비스 지역의 지도
- (4) 공영방송기관 및 지역 공영방송기관을 제외하고 방송사업허가 갱신 과정에서 제24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이 준용된다.
 - (5) 공영방송기관 및/또는 지역 공영방송기관의 방송사업허가 갱신은 공영방송기관 및/또는 지역 공영방송기관의 보고서를 받은 후 장관이 직접 수행한다.
 - (6) 방송사업허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5항에 명시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58 조

- (1) 제57조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허가 만료 전 12개월 이내에 방송사업허가 갱신을 신청하지 않는 방송기관은 달력일 기준 각각 7일의 경고 유예 기간과 함께 연속적으로 최대 2회 까지서면 경고가 주어진다.
- (2) 방송기관이 방송사업허가 갱신을 신청하지 않고 제1항에 따른 두 번째 서면 경고 기간이 종료된 경우 해당 방송기관은 방송사업허가 갱신이 승인되지 않는 형태로 행정제재를 받는다.

제 59 조

- (1) 국장은 합동회의포럼 결정 후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합동회의포럼에서 신청이 승인된 신청자에게 방송사업허가 갱신 수수료 납부명령서를 발급한다.
- (2) 신청자는 방송사업허가 갱신 수수료 전액을 납부하고 납부명령서 발급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5일까지 국장에게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제2항의 방송사업허가 갱신 수수료는 지정된 정부 은행에 있는 총국의 수취인 재무 계좌를통하여 국고에 납부된다.
- (4) 제2항의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에 신청자가 방송사업허가 갱신 수수료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장은 신청자에게 서면 경고를 보낸다.
- (5) 제4항의 서면 경고는 달력일 기준 각각 30일의 경고 유예 기간과 함께 최대 3회 연속적으로 주어진다.
- (6) 신청자가 제5항의 세 번째 서면 경고 발행일로부터 달력일 기준 30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되고 신청자에 대한 합동회의포럼의 승인은 무효화 된다.

제 60 조

- (1) 장관은 방송사업허가 갱신 수수료 납부 의무 이행 및 제59조제2항의 납부 증명이 제출된 이후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방송사업허가 갱신을 발급한다.
- (2) 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발급된 방송사업허가 갱신을 근무일 기준 2일 이내에 중앙방송위원회에전달하여야 한다.
- (3) 방송사업허가 갱신은 제2항의 중앙방송위원회가 장관으로부터 수령 후 근무일 기준 2일 이내에 지역방송위원회에 전달하여야 한다.
- (4) 방송사업허가 갱신은 제3항의 지역방송위원회가 중앙방송위원회로부터 수령 후 근무일 기준 2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 10 장 방송사업허가 수수료 납부

제 61 조

- (1) 방송사업허가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a. 기본허가 수수료
 - b. 방송사업허가 수수료
 - c. 방송사업허가 갱신 수수료
- (2) 제1항a의 기본허가 수수료는 1회 납부된다.
- (3) 제1항b,c의 방송사업허가 수수료 및 방송사업허가 갱신 수수료는 방송사업허가 유효기간 동안 매년 납부되어야 한다.
- (4) 2년째부터 방송사업허가 수수료 및 방송사업허가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방송기관은 각각 30일의 경고 유예 기간과 함께 최대 3회 연속으로 서면 경고를 받는다.
- (5) 제1항의 방송사업허가 수수료 납부 의무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거 별금형의행정 제재를 받는다.
- (6) 제4항의 방송기관이 세 번째 서면 경고 발령일로부터 달력일 기준 30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방송기관은 방송사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는다.
- (7) 제1항의 방송사업허가 수수료 액수는 정보통신부 내 비과세 국가 수입에 관한 정부 규정(PNBP)의 조항에 따른다.

제 11 장 방송사업 보고

제 62 조

- (1) 방송기관은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방송 운영 실적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보고서는 최소한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a. 자본(최신 변경 상태)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 1) 자본
 - 2) 주주 구성
 - 3) 소유권 및 교차 소유권
 - b. 재무제표
 - c. 유료방송기관 고객 수
 - d. 방송 프로그램의 개발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 1) 방송 시간 설명, 방송 프로그램 자료의 출처, 타겟 시청자, 경쟁력
 - 2) 전체 방송 프로그램의 비율과 일간 및 주간 방송 프로그램의 형태
 - e. 시설 및 인프라 개발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 1) 스튜디오 및 송신기 장비, 스튜디오 수 및 유형을 포함하여 사용된 시설 및 인프라 목록

- 2) 방송국 위치 지도, 송신소 설계도 및 위치 지도, 방송 커버리지 지역 및 방송서비스 지역 지도
 - f. 방송사업허가 및 방송사업허가 갱신 신청 시 제출한 사업 계획 / 제안에 따른 방송사업 약속 이행
 - g. 법령의 규정에 의거 지적 재산 관련 법규 준수 및 저작권료 의무 및 관련 권리 이행
- (3) 제2항a2번 및 3번의 보고서는 공공방송기관 및 지역방송기관에 적용되지 않는다.
- (4) 제1항의 보고서는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 12 장 감독, 통제, 감시 및 평가

제 63 조

이 장관 규정의 이행에 대한 감독 및 통제는 사무 총장이 수행한다.

제 64 조

사무 총장은 방송 운영을 감시하고 평가하기 위해 평가 팀을 구성할 수 있다.

제 13 장 기타 규정

제 1 부 통신 수단

제 65 조

- (1) 서신, 방송 허가 문서 및/또는 방송사업 보고서 제출은 전자 메일 (이메일), 팩스 및/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통하여 전자 방식으로 수행된다.
- (2) 제1항의 서신 및/또는 문서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a. 신청자에게 신청 요건의 불구비요건 통지
 - b. 신청자의 불완전한 신청 요건 제출
 - c. 방송시범평가 시행 및 결과 제출
 - d. 기본허가 비용에 대한 납부명령서 제출
 - e. 방송사업허가 수수료에 대한 납부명령서 제출
 - f. 방송사업허가 갱신 수수료의 납부명령서 제출
 - g. 기본허가 수수료 납부 증명 제출
 - h. 방송사업허가 수수료 납부 증명 제출
 - i. 방송사업허가 갱신 수수료 납부 증명 제출
 - j. 방송 운영 실적에 관한 연례 보고서
- (3) 신청자가 장관에게 보내는 서신 및/또는 문서는 국장이 결정하고 대중에게 공개하는 공

식적인 전자 메일 주소(이메일), 팩스번호 및/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통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 (4) 방송위원회 및 지역방송위원회 신청자의 서신 및/또는 서류는 방송위원회 및 지역방송위원회가 대중에게 공개하는 공식적인 전자 우편 주소(이메일), 팩스 번호 및/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통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 (5) 신청자에 대한 서신 및/또는 문서는 신청자가 장관 및/또는 방송위원회/지역방송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유효한 전자 메일 주소(이메일), 팩스 번호 및/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통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 (6) 제2항의 서신 및/또는 문서가 인지세에 서명된 진술서 형태인 경우 원본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66 조

제65조제2항의 서신 및/또는 방송 라이선스 문서의 전달이 전자적으로 수행될 수 없는 경우, 제출은 물리적 및/또는 우편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제 67 조

신청자의 사무소 주소, 담당자, 전자 우편 주소(이메일), 팩스, 휴대전화 번호 및 기타 신원에 대한 변경은 반드시 장관과 방송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부 허가 프로세스 및 허가 신청 형식의 권한

제 68 조

장관은 방송사업허가 프로세스에서 공무원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 69 조

지역 공공방송기관 방송사업허가, 민영방송기관 방송사업허가, 유료방송기관 방송사업허가, 유료방송기관 방송사업허가 및 방송사업허가 갱신 신청 양식은 사무총장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14 장 부칙

제 70조

이 장관령이 시행될 때 다음 법령은 폐지되고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 a. 우편 및 통신사업총국으로부터 라디오 방송국 허가를 보유한 민영방송기관에 대한 방송사업허가 조정 절차 및/또는 우편 및 통신사업총국으로부터 유료TV 서비스 운영사업을 보유한 유료방송기관 및 정보부로부터 전국방송허가 및 또는 케이블TV방송에 관한 정보통신부 장관령 제17/P/M.KOMINFO/6/2006호
- b. 민영방송기관 허가 절차 및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통신부 장관령 제08/P/M.KOMINFO

/3/2007호

- c. 방송사업허가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정보통신부 장관령 제28/P/M,KOMINFO/09/2008호
- d. 지방 정부 및 군/시 지방 자치 단체의 방송사업허가 절차 및 과정에 관한 정보통신부 장관령 제18/P/M,KOMINFO/03/2009호

제 71 조

이 장관령은 제정되는 날부터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이 법률의 제정을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에 게재할 것을 명한다.**

2016년 10월 31일
자카르타에서 승인됨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보통신부 장관

서명
((루디안따라))
RUDIANTARA

2016년 11월 5일
자카르타에서 제정됨
인도네시아공화국 법무인권부 사무총장

서명
(위도도 에카따하나)
WIDODO EKATJAHJANA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2016년 제1661호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에 관한 규정 2014년
제01/P/KPI/07/호
PERATURAN KOMISI PENYIARAN INDONESIA
NOMOR 01/P/KPI/07/2014
TENTANG KELEMBAGAAN
KOMISI PENYIARAN INDONESIA**

전능하신 신의 은총으로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 위원장은

고려함:

- a.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는 기능, 임무, 권한 및 의무를 최적, 효과적, 효율적 및 신뢰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최신 기관 규정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 b.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 기관에 관한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 규정 제01/P/KPI/2009호는 법률의 발전과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의 요구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 규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 c. a와 b의 고려 사항에 근거하여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 기관에 관한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검토함:

1. 방송에 관한 법률 2002년 제32호(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2002년 제139호, 추가 관보 제4252호)
2. 지방정부에 관한 법률 2004년 제32호(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2004년 제125호, 추가 관보 제4437호), 지방정부에 관한 2008년 법률 제12호(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2008년 제59호, 추가 관보 제4844호)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정 균형에 관한 법률 2004년 제33호(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2004년 제126호)
4. 입법에 관한 법률 2011년 제12호(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2011년 제82호, 추가 관보 제5234호)
5.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 사무국의 조직 및 업무에 관한 정보통신부 장관령 2013년 제9호 (2013년 관보 제 510호)
6. 지역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 사무국의 조직에 관한 내무부 장관령 2008년 제19호

결정함:

확정: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 기관에 관한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이 규정에서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1.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KDI, Komisi Penyiaran Indonesia, 이하 방송위원회)는 중앙 차원에서 설립되어 국가 수도에 소재한 중앙방송위원회와 지방 차원에서 설립되어 지방 수도에 소재한 지역 방송위원회로 구성된 독립적인 국가 기관으로 임무와 권한은 방송에 관한 2002년 법률 제32호에 규정되어 있다.
2. 중앙방송위원회 위원(Anggota KPI)은 인도네시아공화국국회(Dewan Perwakilan Rakyat Republik Indonesia)에서 선발되어 대통령이 전형으로 임명한 사람이고, 지방방송위원회 위원은 주 지방의회(Dewan Perwakilan Rakyat Daerah Provinsi)에서 선발되어주지사 전형으로 임명한 사람이다.
3. 임시위원(Anggota Pengganti Antarwaktu)은 적합성 및 적절성 심사를 거쳐 국회 또는 주 지방의회에서 적합성 및 적절성 심사의 결과 순위에 따라 임시위원으로 지명된 방송위원회 위원 후보로 법률 규정에 따라 임기 만료 전에 방송위원회 위원으로 남아 있거나 사임을 해야할 문제를 가진 전 방송위원회 위원을 대체한다.
4. 보좌관(Asisten)은 방송위원회 위원에 의해 지명된 특정 역량 및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각 방송위원회 위원에게 조력 및/또는 지원을 제공하는 임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5. 방송위원회 사무국(Sekretariat KPI)은 방송위원회의 기술 및 행정 서비스의 조력 및/또는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과 지역에서 정부 부처로서의 비서 임무 및 기능을 수행하는기관이다.
6. 방송위원회 사무국장 또는 방송위원회 사무총장(Sekretaris KPI atau Kepala Sekretariat KPI)은 중앙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정부가 임명한 공무원이고, 지역 방송위원회 사무국장 또는 지역 방송위원회 사무총장은 지역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방정부가 임명한 공무원이다.
7. 방송위원회 명예이사회(Dewan Kehormatan KPI)는 중앙방송위원회 또는 지역 방송위원회가 설립한 특별 기관으로 방송위원회 위원 징계 위반 문제와 관련하여 권장 사항을 제공하는 임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8. 본회의(Rapat Pleno)는 중앙방송위원회 및 지역 방송위원회가 제도적 문제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회의이며 의사 결정을 위한 최고위급 포럼이다.
9. 전문인력(Tenaga Ahli)은업무와 기능을 갖춘 전문인력으로서의 방송위원회가 정한 특정 역량과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자신의 전문성에 따라 방송위원회에 조언 및 의견을 제공한다.
10. 방송위원회 인장(Cap Dinas KPI)는 서명란에 기재된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 내에서 유효한 인장이다.
11. 방송위원회 로고(Logo KPI)는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상징하는 형태의 식별 또는 신원이며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 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12. 방송행동강령(이하 P3라 약칭하는 Pedoman Perlaku Penyiaran)은 방송 콘텐츠 표준으로, 법령에 따라 방송위원회가 확정한 방송기관에 대한 규정이다.

13. 방송프로그램표준 (이하 SPS라 약칭하는 Standar Program Siaran)은 법령에 따라 방송위원회가确定的한 방송행동강령에 따라 제한, 금지, 의무, 방송 준비 및 제재를 포함하는 방송 콘텐츠의 표준 또는 기준이다.

제 2 장 방송위원회의 지위 및 구성

제 1 부 방송위원회의 위치 및 지위

제 2 조

- (1) 방송위원회는 중앙 차원에서 설립된 중앙방송위원회와 지방 차원에서 설립된 지역 방송 위원회로 구성된다.
- (2) 기능, 임무, 권한 및 의무를 이행할 때 중앙방송위원회는 인도네시아 국회가 감독하고 지역 방송위원회는 주 지방의회가 감독한다.

제 2 부 방송위원회의 기능, 권한, 임무 및 의무

제3 조

- (1) 방송위원회는 방송에 대한 열망을 수용하고 공익을 대표하는 공공 참여 기능의 한 형태이다.
- (2) 이 조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할 때 방송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 a. 방송프로그램 표준을 수립한다.
 - b. 규정 및 방송행동 강령을 수립한다.
 - c. 규정, 방송행동강령 및 방송프로그램 표준의 이행을 감독한다.
 - d. 규정, 방송행동강령 및 방송프로그램 표준 위반에 대한 제재를 마련한다.
 - e. 정부, 방송 기관 및 대중과의 조정 및/또는 협력
- (3) 방송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의무가 있다.
 - a. 대중이 인권에 따른 적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 b. 방송 인프라 구축에 도움을 준다.
 - c. 방송 기관과 관련 산업 간의 건전한 경쟁 구축에 참여한다.
 - d. 공정하고 공평하며 균형 잡힌 국가 정보 질서를 유지한다.
 - e. 방송 운영에 관한 대중의 불만, 이의제기, 비판 및 평가 수용, 연구 및 후속조치를 한다.
 - f. 방송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인재 육성 계획을 작성한다.

제3 부 방송위원회 분과

제 4 조

- (1) 방송위원회의 기능, 권한, 임무 및 의무의 분야 구분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 a. 경영 조직 및 방송 시스템 분야
 - b. 방송 콘텐츠 모니터링 분야
 - c. 기관 분야
- (2) 제1항의 기능, 권한, 임무 및 의무를 이행할 때, 경영 조직 및 방송 시스템 분야는 프로그램 및 활동을 조정, 감독 및 평가한다.
 - a. 법령에 따른 방송 기관 허가
 - b. 대중이 인권에 따라 적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 보장
 - c. 방송 인프라 구축
 - d. 유통 대행사와 관련 산업 간의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
- (3) 제1항b의 기능, 권한, 임무 및 의무를 이행할 때, 방송 콘텐츠 모니터링 분야는 프로그램 및 활동을 조정, 감독 및 평가한다.
 - a. 방송 콘텐츠 관련 방송위원회 규정 및 결정 수립
 - b. 방송 콘텐츠에 관한 방송위원회 규정의 시행 및 집행 감독
 - c. 공정하고 공평하며 균형 잡힌 국가 정보 질서 유지
 - d. 방송 운영에 관한 대중의 불만, 이의제기, 비판 및 평가를 수용, 연구 및 후속 조치
- (4) 제1항 c의 기능, 권한, 임무 및 의무를 이행할 때, 기관 분야는 프로그램 및 활동을 조정, 감독 및 평가한다.
 - a. 방송위원회 기관의 수립, 관리 및 개발
 - b. 방송위원회 규정 및 기관과 관련된 결정 수립
 - c. 정부, 방송 기관, 대중 및 국제 당사자와의 협력
 - d. 방송 분야 전문인력 육성 기획

제 4 부

전략적 계획 및 방송위원회 프로그램

제 5 조

- (1) 방송위원회 전략 계획은 5년마다 수립된다.
- (2) 방송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관련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개발한다.
 - a. 방송행동강령 및 방송프로그램표준 인식 확대 활동
 - b. 방송 콘텐츠 모니터링
 - c. 분쟁해결
 - d. 제재부과 또는 제재집행
 - e. 방송 콘텐츠에 대한 대중의 평가에 대한 설문, 연구 또는 조사
 - f. 방송 매체 감시 인력 확충
 - g. 방송위원회 상훈
 - h. 방송 사업 경쟁에 관한 조사 또는 연구
 - i. 방송 기관 데이터 수집 (방송 기관 데이터베이스 및 프로필)
 - j. 허가 서비스

- k. 허가 워크숍
- l. 미디어 리터러시
- m. 건강한 방송 커뮤니티 그룹 또는 포럼의 지원
- n. 기관 차원에서의 방송위원회 홍보
- o. 방송 인력 전문성 향상 워크숍
- p. 국경 지역, 저개발 지역 및 군도 지역 강화
- q. 방송위원회 위원 및 사무국의 역량 조정 및 강화

제 5 부 방송위원회 조직

제 6 조

- (1) 방송위원회의 조직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제1항의 방송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방송위원회 본회의에서 결정하고, 모든 방송위원회 위원이 서명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발 의사록에 명시한다.
- (3) 방송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방송위원회 직책 임기 동안 유효하다.
- (4) 방송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결정 결과는 대통령 및 국회에 전달되고 지역 방송위원회 의위원장 및 부위원장 결정 결과는 주지사 및 주 지방의회에 전달된다.

제 6 부 방송위원회 위원의 임무

제 7 조

- (1) 방송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a. 책임에 따라 프로그램과 활동을 수행한다.
 - b. 책임에 따라 내부적으로 프로그램과 활동을 조정한다.
 - c. 책임에 따라 프로그램과 활동을 감독하고 평가한다.
 - d. 위임 된 임무와 권한의 위임을 수행한다.
- (2) 현장 조정자로 임명 된 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a. 분야에 따라 프로그램과 활동을 계획하고 개발한다.
 - b. 각 분야에 따라 정책의 조정, 감독 및 평가와 프로그램 및 활동의 실행을 주도한다.

제 7 부 방송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제 8 조

- (1) 방송위원회 위원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a. 방송위원회의 비전, 사명 및 전략 계획에 맞게 프로그램 및 활동의 정책 방향 및 실행에 힘쓴다.
 - b. 모든 방송위원회 프로그램 및 활동을 조정, 감독 및 평가할 때 방송위원회를 주도한다.

- c. 임무 수행에 장애가 발생 시, 임무나 권한을 지도부나 다른 방송위원회 위원에게 위임한다.
 - d. 방송위원회의 외부 관계를 조정한다.
 - e. 방송위원회 사무국의 임무 및 기능 수행을 감독한다.
- (2)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a. 방송위원회의 비전, 사명 및 전략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 및 활동의 정책 방향 및 실행에 힘쓰는 방송위원회 위원장을 지원한다.
 - b. 모든 방송위원회 프로그램 및 활동을 조정, 감독 및 평가할 때 방송위원회를 주도하는 방송위원회 위원장을 지원한다.
 - c. 방송위원회의 내부 활동을 주도한다.
 - d.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부재한 경우 방송위원회의 명의를 대신하여 규정, 결정 및/또는 서신에 서명한다.
 - e.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임무 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시 대리한다.

제 3 장 중앙방송위원회 위원의 자격

제 1 부 통칙

제 9 조

- (1) 중앙방송위원회 위원은 적합하고 적절한 공개적인 심사를 통해 시민사회의 추천을 받아 국회가 선발한다.
- (2) 중앙방송위원회 위원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전형으로 지명한다.
- (3) 국회는 국회를 직접 담당하는 중앙방송위원회의원 선발 자문기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 2 부 중앙방송위원회 위원 선발 절차

제 1 절

중앙방송위원회 위원선발팀 구성

제 10 조

- (1) 중앙방송위원회 위원 선발팀 선정은 국회에서 수행한다.
- (2) 중앙방송위원회는국회에중앙방송위원회위원선발을위한후보군의명단을제청할수있다.
- (3) 중앙방송위원회 위원 선발팀은 지역사회, 학계/캠퍼스, 정부 및 중앙방송위원회의 공인 대표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확정되어 선발된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4) 중앙방송위원회 위원 선발팀에 관한 결정서는 국회가 작성하고 서명한다.
- (5) 중앙방송위원회 위원 선발팀은 중앙방송위원회 사무국의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 2 절

중앙방송위원회 위원선발 등록 공고

제 11 조

- (1) 중앙방송위원회 위원 선발 등록은 선발팀에서 인쇄 및 전자 매체를 통해 일반에게 공고한다.
- (2) 등록 기간은 1개월이며, 신청자 수가 중앙방송위원회 위원 수의 3배 미만일 경우 기간은 15일 연장된다.
- (3) 등록 공고는 방송에 관한 법률 2002년 제32호 제10조에 따른 서류전형의 형태로 구비요건과 필수 준비사항을 포함한다.
- (4) 필수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다.
 - a. 이력서 (Curriculum Vitae)
 - b. Times New Roman 글꼴, 12 글자 크기, 1.5 간격, A4 크기 용지, 총 7-10 페이지로 작성된 비전 및 사명 제안서
 - c. 정당과 관련이 없고, 방송 기관의 소유권과 관련이 없어야 하며 공무원이 아니고 입법부 및 사법부의 의원이 아니라는 확인서
 - d. 지역 사회의 지지 서한
 - e. 정부 병원의 신체 및 정신 건강 증명서
 - f. 경찰청의 경찰 기록 증명서 (SKCK)
- (5) 재직 중인 중앙방송위원회 의원은 제3조 및 제4조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 3 절

중앙방송위원회 선발 서류전형

제 12 조

- (1) 서류전형은 선발팀에서 수행한다.
- (2) 제1항의 서류전형은 중앙방송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구비 요건 및 필수 준비사항의 충족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 (3) 서류전형 서류심사는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에 실시한다.
- (4) 서류전형 심사 결과 요건이 불완전한 후보자는 제외된다.
- (5) 서류전형 심사를 통과한 후보자는 공개적으로 발표된다.

제 4 절

중앙방송위원회 위원선발을 위한 역량심사

제 13 조

- (1) 역량심사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 선발팀에서 수행한다.
- (2) 제1항에 따른 역량심사는 필기시험과 심리검사의 형태로 한다.
- (3) 필기시험은 방송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 (4) 심리검사는 인도네시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선발팀이 지정한 독립 기관에서 실시한다.

- (5) 선발팀은 순위 시스템을 사용하여 모든 후보자의 역량심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한다.
- (6) 제5항의 역량심사 결과는 국회가 다음 단계에 적합한 후보자를 결정하는 기초가 된다.
- (7) 역량심사 발표는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에 실시한다.
- (8) 서류전형 선발을 통과한 현직 후보자는 역량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회에서 직접적 절하고 적합한 심사를 거친다.

제 5 절

중앙방송위원회 위원 선발을 위한 적합성심사

제 14 조

- (1) 국회는 역량심사를 통과하여 적합성 심사를 받을 후보자를 발표한다.
- (2) 적합성 및 적절성 심사를 받을 후보자의 숫자는 확정될 중앙방송위원회 위원 수의 3배 또는 최소 2배 이상이어야 한다.

제 15 조

- (1) 국회는 적합성 및 적절성 심사를 수행한다.
- (2) 적합성 및 적절성 심사를 수행하기 전에 국회는 인쇄 및 전자 매체의 발표를 통해 중앙 방송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공개검증을 실시한다.
- (3) 공개검증은 중앙방송위원회 위원 후보에 대한 의견과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기 회를 일반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4) 국회가 접수한 공개 의견은 중앙방송위원회 위원 후보에 대한 공개검증일 이후 근무일 기준 10일간 인쇄 및 전자 매체에 발표한다.
- (5) 국회는 공개적으로 적합성 및 적절성 심사를 실시한다.

제 3 부

선발된 중앙방송위원회의 후보자 위원에 대한 결정

제 16 조

- (1) 국회는 순위 시스템에 따라 선발되는 중앙방송위원회 위원 9인을 결정한다.
- (2) 선정된 후보자 중 1~9위는 중앙방송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며, 다음 순위는 예비위원 이다.

제 17 조

- (1) 국회는 대통령 결정에 따라 전형으로 결정되는 적합성 및 적절성 심사 결과를 제출한다.
- (2) 적합성 및 적절성 심사 결과는 심사 완료 후 근무일 기준 30일 이내에 국회가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 (3) 대통령 결정은 국회가 적합성 및 적절성 심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제출한 후 발효된다.
- (4) 선발된 중앙방송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중앙방송위원회 위원에 대한 대통령 결정은 시행 일일기준으로 시작된다.
- (5) 선발된 중앙방송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 4 장 지역 방송위원회 위원 자격

제 1 부 통칙

제18조

- (1) 지역 방송위원회의 위원은 공개적으로 적합성 및 적절성 심사를 통해 지역 사회의 추천에 따라 주 지방의회에 의해 선발된다.
- (2) 지역 방송위원회의 위원은 주 지방의회에 의해 주지사가 전형으로 지명한다.
- (3) 주 지방의회는 주 지방의회에 직접 책임이 있는 지역 방송위원회 위원 선발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 2 부 지역 방송위원회 위원 선발 절차

제 1 절

지역 방송위원회 위원 선발팀 구성

제 19 조

- (1) 지역 방송위원회 위원 선발팀 선정은 주 지방의회에서 수행한다.
- (2) 지역 방송위원회는 주 지방의회에 지역 방송위원회 위원 선발을 위한 후보군의 명단을 제청할 수 있다.
- (3) 지역 방송위원회 위원 선발팀은 지역 사회, 학계/캠퍼스, 지방정부 및 지역 방송 위원회의 공인 대표성을 고려하여 주 지방의회에서 확정되어 선발된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4) 지역 방송위원회 위원 선발팀에 관한 결정서는 주 지방의회가 작성하고 서명한다.
- (5) 지역 방송위원회 위원 선발을 위한 선발팀 결정에 관한 결정서는 주 지방의회에 위임을 받은 주지사가 내릴 수 있다.
- (6) 지역 방송위원회 위원 선발팀은 지역 방송위원회 사무국의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 2 절

지역 방송위원회 위원선발 등록 공고

제 20 조

- (1) 지역 방송위원회 위원 선발 등록은 선발팀에서 인쇄 및 전자 매체를 통해 일반에게 공고한다.
- (2) 등록 기간은 1개월이며, 신청자 수가 지역 방송위원회 위원 수의 3배 미만일 경우 15일 연장된다.
- (3) 등록 공고는 방송에 관한 법률 2002년 제32호 제10조에 따른 서류전형의 형태로 구비 요건과 필수 준비사항을 포함한다.

- (4) 필수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다.
- a. 이력서 (Curriculum Vitae)
 - b. Times New Roman 글꼴, 12 글꼴 크기, 1.5 간격, A4 크기 용지, 총 7-10 페이지로 작성된 비전 및 사명 제안서 (직무수행계획서)
 - c. 정당과 관련이 없고, 방송 기관의 소유권과 관련이 없어야 하며 공무원이 아니고 입법부 및 사법부의 의원이 아니라는 확인서
 - d. 지역 사회의 지지 서한
 - e. 정부 병원의 신체 및 정신 건강 증명서
 - f. 경찰청의 경찰 기록 증명서 (SKCK)
- (5) 재직 중인 지역 방송위원회 의원은 제3조 및 제4조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 3 절

지역 방송위원회 선발 서류전형

제 21 조

- (1) 서류전형은 선발팀에서 수행한다.
- (2) 제1항의 서류전형은 지역 방송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구비 요건 및 필수 준비사항의 충족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 (3) 서류전형 서류심사는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에 실시한다.
- (4) 서류전형 심사 결과 요건이 불완전한 후보자는 제외된다.
- (5) 서류전형 심사를 통과한 후보자는 공개적으로 발표된다.

제 4 절

지역 방송위원회 위원 선발을 위한 역량심사

제 22 조

- (1) 역량심사는 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선발팀에서 수행한다.
- (2) 제1항에 따른 역량심사는 필기시험과 심리검사의 형태로 한다.
- (3) 필기시험은 방송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 (4) 심리검사는 인도네시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선발팀이 지정한 독립 기관에서 실시한다.
- (5) 선발팀은 순위 시스템을 사용하여 모든 후보자의 역량심사 결과를 주 지방의회에 제출한다.
- (6) 제5항의 역량심사 결과는 주 지방의회가 다음 단계에 적합한 후보자를 결정하는 기초가 된다.
- (7) 역량심사 발표는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에 실시한다.
- (8) 행정직 선발을 통과한 현직 후보자는 역량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주 지방의회에서 직접 적절하고 적합한 심사를 거친다.

제 5 절

지역 방송위원회 위원 선발을 위한 적합성 및 적절성 심사

제 23 조

- (1) 주 지방의회는 적합성 및 적절성 심사를 통과를 확정된 후보자를 발표한다.
- (2) 적합성 및 적절성 심사를 받은 후보자의 숫자는 확정될 지역 방송위원회 위원 수의 3배 또는 최소 2배 이상이어야 한다.

제 24 조

- (1) 주 지방의회는 적합성 및 적절성 심사를 수행한다.
- (2) 적합성 및 적절성 심사를 수행하기 전에 주 지방의회는 인쇄 및 전자 매체의 발표를 통해 지역 방송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공개검증을 실시한다.
- (3) 공개검증은 지역 방송위원회 위원 후보에 대한 의견과 조언을 주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있는 기회를 일반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4) 주 지방의회가 접수한 공개 의견은 지역 방송위원회 위원 후보에 대한 공개검증일 이후 근무일 기준 10일간 인쇄 및 전자 매체에 발표한다.
- (5) 주 지방의회는 공개적으로 적합성 및 적절성 심사를 실시한다.

제 3 부 선발된 지역 방송위원회의 후보자 위원에 대한 결정

제 25 조

- (1) 주 지방의회는 선발 순위에 따라 선정된 지역 방송위원회 위원 7인을 결정한다.
- (2) 선정된 후보자 중 1~7위는 지역 방송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며, 다음 순위는 예비위원이다.

제 26 조

- (1) 주 지방의회는 주지사의 결정에 따라 전형으로 결정되는 적합성 및 적절성 심사 결과를 제출한다.
- (2) 적합성 및 적절성 심사 결과는 심사 완료 후 근무일 기준 30일 이내에 주 지방의회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한다.
- (3) 주지사령은 주 지방의회가 적합성 및 적절성 심사 결과를 주지사에게 제출한 후 발효된다.
- (4) 선발된 지역방송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지역 방송위원회 위원에 대한 주지사령 시행일을기준으로 시작된다.
- (5) 선발된 지역 방송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5 장

방송위원회 위원 임기

제 27 조

- (1) 방송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차기 임기 1회에 한하여 재선될 수 있다.
- (2) 방송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중앙방송위원회 위원에 대한 대통령 결정 및 지역 방송위원회 위원에 대한 주지사 결정에 의해 차기 임기의 방송위원회 위원의 임명으로 종료된다.
- (3) 임기가 만료된 방송위원회 위원은 중앙방송위원회 위원에 대한 대통령령 및 지역 방송위원회 위원에 대한 주지사령에 따라 새로운 중앙방송위원회 위원이 선발 및 임명 될 때까지 모든 권한에 따라 근무한다.
- (4) 국회의 중앙방송위원회 위원 또는 주 지방의회의 지역 방송위원회 위원 선발 및 결정차가제 시간에 완료되지 않은 경우, 차기 임기의 방송위원회 위원의 공석을 피하기 위해중앙방송위원회는 국회를 참조수신인으로 하여 대통령에게, 지역 방송위원회는 주 지방의회를 참조 수신인으로 하여 주지사에게 임기 연장을 위한 사본을 요청한다.
- (5) (4)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앙방송위원회 또는 지역 방송위원회) 위원의 임기 연장은 차기 임기의 중앙방송위원회 위원 또 지역 방송위원회의 의원이 선출될 때 까지이다.
- (6) 차기 임기의 방송위원회 위원 결정서가 없는 경우, 직전 임기의 방송위원회 위원은 신입 방송위원회 위원이 정해질 때까지 모든 권한을 부여 받아 임무를 수행한다.
- (7) 중앙방송위원회는 중앙방송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끝나기 6개월 전에 중앙방송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에 대해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
- (8) 지역 방송위원회는 지역 방송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끝나기 6개월 전에 지역 방송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에 대해 주 지방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 6 장

방송위원회 위원의 면직 및 중도 교체

제 1 부

방송위원회 위원의 면직

제 28 조

-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방송위원회 위원은 면직된다.
 - a. 임기 종료
 - b. 사망
 - c. 사임
 - d. 확정된 판결에 따른 징역 선고
 - e. 방송에 관한 법률 제32호 2002년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요건 불충족
- (2) 방송위원회 위원이 제1항b,c,d,e 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기에서 사임하는 경우해당 위원은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임시위원으로 교체된다.
- (3) 국회는 대통령에게 중앙방송위원회의 임시위원을 제청하고, 주 지방의회는 주지사에게 지역 방송위원회의 임시위원을 제청한다.

- (4) 대통령은 중앙방송위원회의 임시위원 결정서를 발표하고 주지사는 주 지방의회의 제청에 따라 지역 방송위원회의 임시위원 결정서를 발표한다.

제 2 부 방송위원회 위원의 중도 교체

제 1 절

사망으로 인한 방송위원회 위원 교체

제 29 조

방송위원회 위원이 사망한 경우, 중앙방송위원회는 통지서와 임시위원 교체 요청을 국회에 대통령 사본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고, 지역 방송위원회는 주지사 사본과 함께 주 지방의회에 제출한다.

제 2 절

사임으로 인한 방송위원회 위원 교체

제 30 조

- (1) 사임하고자 하는 방송위원회 위원은 방송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 (2) 사임에 관한 결정은 본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 (3) 중앙방송위원회 위원인 경우에는 통지서 및 임시위원 요청을 대통령의 사본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고, 지역 방송위원회 위원인 경우에는 주지사의 사본과 함께 주 지방의회에 제출한다.

제 3 절

법원 판결로 인한 방송위원회 위원 교체

제 31 조

- (1) 방송위원회 위원이 최소 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소송 중에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본회의를 거쳐 일시적으로 방송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정지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 위원으로서 일시적으로 자격정지가 된 경우에도 그 권한은 계속 부여된다.
- (3) 방송위원회 위원이 확정된 판결에 따라 제1항의 형사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방송위원회 위원은 사퇴한 것으로 선언된다.
-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중앙방송위원회 위원인 경우에는 통지서 및 임시위원 요청을 대통령의 사본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고, 지역 방송위원회 위원인 경우에는 주지사의 사본과 함께 주 지방의회에 제출한다.

제 4 절

방송법 제10조제1항의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한 방송위원회 위원 교체

제 32 조

- (1) 방송위원회는 방송에 관한 법률 제32호 2002년제10조제1항에 규정 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방송위원회 위원에게 해명을 요청할 의무가 있다.
- (2) 제1항의 방송위원회 위원이 더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본회의를통해 방송위원회가 교체 제청을 결정한다.
- (3) 방송위원회는 중앙방송위원회의 통지서를 대통령에서 제출하고 사본을 국회에 제출한다. 방송위원회 위원의 사임에 관한 주 지방의회의 사본을 통해 주지사는 현행 법률 및 규정 에따라 임시위원을 요청한다.

제 7 장 방송위원회 위원 규칙

제33조

- (1) 방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은 도덕적 의무가 있다.
 - a. 부패, 공모, 연고주의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 b. 방송위원회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당사자와 공모하지 않는다.
 - c.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방송 분쟁 해결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금전 및/또는 선물의 형태로 어떠한 것도 받지 않는다.
- (2) 방송위원회 위원은 다음을 수행하기 위해 청렴을 유지해야 한다.
 - a. 방송위원회의 명예를 지킨다.
 - b. 자신의 자산에 대한 정보를 관할 당국에 기꺼이 제공한다.
- (3) 방송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독립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 a. 의사 결정에 다른 당사자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 b. 방송 허가 관련 설립 과정, 연장 및/또는 분쟁과 관련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컨설턴트 및/또는 검토자로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c. 다음과 같은 경우 위반 및/또는 분쟁 해결에 대한 참여가 금지된다.
 - i. 관련된 사건에 대해 사적인 이익이 있다.
 - ii. 소송 당사자와 3촌까지 친인척 관계이다.
 - iii.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관계는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 (4) 방송위원회 위원은 독립성, 투명성, 책임성 및 전문성의 원칙에 따라 방송위원회의 기능, 권한, 임무 및 의무의 밀접성을 우선시하여 방송위원회와 다른 당사자 간의 협력을 구축해야 한다.
- (5) 방송위원회 위원은 자신의 기능, 권한, 임무 및 의무에 따라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존경할의무가 있다.
- (6) 방송위원회 위원은 자신의 기능, 권한, 임무 및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일반에게 성명서를 제공할 때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 a. 방송에 관한 법률 2002년 제32호 준수 원칙을 우선시한다.
 - b. 객관적이고 정직하며 책임감 있는 사실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 (7) 방송위원회 위원은 법률 또는 요청에 따른 기타 이해당사자에게
- a. 방송위원회 위원은 법령 규정에 따라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정보의 기밀성을 유지 할 의무가 있다.
 - b. 방송위원회 위원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기밀로 유지 될 의무가 없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8) 방송위원회 위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의무와 관련된 국가 문서를 고의로 가져가거나 숨기거나 분실하면 안 된다.

제 8 장 방송위원회 위원을 위한 전문인력, 보좌관 및 지원인력

제 1 부 방송위원회 전문인력

제 34 조

- (1) 임무 수행시 방송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2) 전문인력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방송위원회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3) 전문인력의 요건 및 규정은 방송위원회 규정을 통해 추가로 정한다.
- (4) 전문인력은 본회의의 행정적인 결정에 따라 방송위원회 사무국장 /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제 2 부 방송위원회 위원의 보좌관

제 35 조

- (1) 각 방송위원회 위원은 보좌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2) 보좌관으로 임명하려면 방송위원회에서 정한 요건 및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 (3) 보좌관의 요건 및 규정은 방송위원회 결정을 통해 추가로 규정된다

제 3 부 지원인력

제 36 조

- (1) 임무 수행시 지원인력이 방송위원회를 지원한다.
- (2) 제1항의 지원인력에는 필요에 따라 모니터링, 언어, 법률, 기술, 재무 및 기타 지원인력이 포함될 수 있다.
- (3) 지원인력의 요건 및 규정은 방송위원회 결정을 통해 추가로 정한다.
- (4) 지원인력은 본회의의 행정적인 결정에 따라 방송위원회 사무국장/사무총장이 임명한다.

제 9 장 방송위원회 명예이사회

제 1 부 방송위원회 명예이사회의 구성, 권한 및 임기

제 37 조

본회의에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명예이사회는 방송위원회 위원들의 방송위원회 규정 위반 혐의가 있다고 결정한 지 14일 이내에 본회의에서 구성된다.

제 38 조

명예이사회는 명예이사회에 제출된 방송위원회 규칙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방송위원회에 권고할 권한이 있다.

제 39 조

방송위원회 명예이사회는 본회의가 방송위원회 명예이사회의 권고를 받은 후 임기가 종료된다.

제 2 부 방송위원회 명예이사회 위원의 자격

제 40 조

- (1) 중앙방송위원회 명예이사회 위원은 5인이며, 중앙방송위원회 위원 1인, 국회의원 2인, 정부인사 1인 및 본회의에서 선정된 시민단체 공인 1인으로 구성된다.
- (2) 지역 방송위원회 명예이사회에는 1인이며, 지역 방송위원회 위원 2인, 주 지방의회 의원 2인, 정부 인사 1인 및 본회의에서 선정된 시민단체 공인 1인으로 구성된다.
- (3) 방송위원회 명예이사회 위원 가입은 중앙방송위원회 또는 지역 방송위원회가 방송위원회 명예이사회 예비 위원의 방송위원회 규정 위반 혐의를 조사하도록 요청서를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 수행된다.
- (4) 방송위원회 명예이사회 위원은 본회의에 의거 방송위원회 법령으로 지정된다.
- (5) 명예이사회 위원 사례금은 중앙방송위원회가 명예이사회를 위해 마련한 국가예산(APBN)과 지역 방송위원회가 명예이사회를 위해 마련한 지역예산(APBD)에서 부담한다.

제 3 부 방송위원회 명예이사회 회의와 회의 결정

제 41 조

- (1) 방송위원회 명예이사회는 방송위원회 명예이사회 위원이 정해진 이후 회의를 갖는다.
- (2) 방송위원회 명예이사회 위원 4인이 참석하면 방송위원회 행동 규범 위반 혐의를 논의하는 명예이사회 회의가 정족수로 선포된다.

- (3) 방송위원회 명예이사회 의사 결정은 합의를 위한 협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
- (4) 협이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수결 투표로 결정을 할 수 있다.
- (5) 과반수 투표 결과는 방송위원회 명예이사회 회의에 참석한 방송위원회 명예이사회위원 중최소 절반 이상이 승인하면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 (6) 방송위원회 명예이사회 결정은 명예이사회 추천으로 추후에 방송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되어 본회의에서 논의된다.
- (7) 방송위원회 절차 규칙 위반에 대한 방송위원회 명예이사회 권고는 서면 경고, 정직 또는 영구 면직 형태의 제재가 될 수 있다.

제 10 장 방송위원회 사무국

제 1 부 중앙방송위원회 사무국

제 1 절

중앙방송위원회 사무국의 직위, 임무 및 기능

제 42 조

- (1) 중앙방송위원회 사무국은 중앙방송위원회 환경 내에서 중앙방송위원회가 사무국 구성하는것을 돕는 지원 요소이다.
- (2) 제1항의 중앙방송위원회 사무국은 중앙방송위원회에 기능적으로 종속되고 책임이 있으며 통신 및 정보 기술부 사무총장에 대한 행정적 책임이 있다.
- (3) 중앙방송위원회 사무국은 사무총장 (이하 비서)이 관장한다.

제 43 조

- (1) 중앙방송위원회 사무국은 중앙방송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수행함에 있어 기술 및 행정 서비스를 수행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 (2)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앙방송위원회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a. 계획, 프로그램, 예산 및 보고 작성
 - b.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의 법령 규정 및 법문서
 - c. 홍보 및 협력 이행
 - d. 방송사업의 허가 및 문서화 실시
 - e. 데이터 및 정보 관리
 - f. 법령에 규정된 모니터링 및 불만처리 업무 지원
 - g. 법령에 규정된 제재 부과에 대한 지원
 - h. 재정 문제, 장비, 총무, 관리 및 인력 배치

제 2 부 중앙방송위원회 사무국 조직

제 44 조

- (1) 중앙방송위원회 사무국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 a. 기획, 법률 및 홍보 부서
 - b. 허가 및 데이터 검증부서
 - c. 불만처리 및 제재 업무 지원 부서
 - d. 총괄부서
- (2) 제1항a의 기획, 법률 및 홍보 부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여 방송위원회의 기획, 프로그램, 예산, 보고, 법령 규정, 법문서, 홍보 및 협력 이행 임무를 수행한다.
 - a. 계획, 프로그램, 예산, 평가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 준비
 - b. 방송위원회 법령 규정 및 법문서 작성을 위한 자료 준비
 - c. 홍보 및 협력 이행을 위한 자료 준비
- (3) 제1항b의 허가 및 데이터 검증 부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여 방송 운영에 대한 허가 검증 및 문서화 업무, 방송 운영을 위한 정책 개발과 관련된 데이터 및 정보를 관리하는업무를 수행한다.
 - a. 방송 운영에 대한 허가 검증 및 문서화
 - b. 방송 운영을 위한 정책 개발과 관련하여 데이터 및 정보 관리
- (4) 제1항c의 불만처리 및 제재 업무 지원 부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여 법령에 규정된모니터링 활동, 고소 및 제재 업무를 지원한다.
 - a. 법령에 규정된 모니터링 및 불만처리 업무 지원
 - b. 법령에 규정된 제재 부과에 대한 업무 지원
- (5) 제1항d의 총괄부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여 재정, 장비, 가사, 행정 및 직원과 관련된업무를 수행한다.
 - a. 출납, 기금, 부기 및 확인을 포함한 재정 업무
 - b. 물품 및 서비스 자산의 조달, 유지 관리와 폐기를 포함하는 장비 및 가사 업무
 - c. 행정 임무, 직원 배치, 서신, 보관, 도서관, 문서분류 및 발송

제 2 부 지역 방송위원회 사무국

제 1 절

지역 방송위원회 사무국의 직위, 임무 및 기능

제 45 조

- (1) 지역 방송위원회 사무국은 지역 방송위원회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소로서 지방기구의 일부이다.
- (2) 지역 방송위원회 사무국의 설립은 지방 규정에 의해 정해지고 인도네시아 지역 방송위원회 사무국의 조직 및 실무 절차 지침은 내무부 장관령 2008년제19호에 규정되어 있다.

- (3) 지역 방송위원회 사무국은 Eselon III.a(인도네시아 공무원 조직의 직급)을 가진 사무총장이 주도한다.
- (4) 지역 방송위원회사무총장은 지역 방송위원회에 대한 기능적 책임이 있으며 지방장관을 통해 지역 책임자에 대한 행정적 책임이 있다.

제 46 조

- (1) 지역 방송위원회 사무국은 지역 방송위원회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 (2)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 방송위원회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a. 지역 방송위원회 사무국 프로그램 수립
 - b. 지역 방송위원회 프로그램 준비 지원
 - c. 지역 방송위원회 기술 서비스 지원
 - d. 지역 방송위원회 재무, 인력, 장비, 물류 및 행정 관리

제 2 절

지역 방송위원회 조직

제 47 조

- (1) 지역 방송위원회 사무국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 a. 사무총장
 - b. 최대 4개의 분과
- (2) 이 조 제1항의 각 분과의 명칭 및 임무는 주지사령에 규정되어 있다.

**제 11 장
관계**

제 1 부

방송위원회 사무국 관계 및 평가 시스템

제 1 절

방송위원회 사무국과 방송위원회 위원 간의 관계

제 48 조

업무 관계를 수행할 때 중앙 및 지역 방송위원회 사무국은 방송위원회 위원과의 지원, 통합 및 동기화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제 49 조

방송위원회 사무국은 그 임무와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방송위원회 위원들과 임무 관계 체제를 수행 할 의무가 있다.

- a. 방송위원회 본회의에서 모든 사무국 활동을 보고한다.

- b. 임무, 기능, 권한 및 의무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방송위원회 결정을 수행한다.
- c. 방송위원회의 비전, 사명, 전략 계획 및 정책에 따라 사무국의 임무 및 기능에 관련된 협의 및 조정을 수행한다.
- d. 예산 계획, 할당 및 사용과 관련한 협의 및 조정을 수행한다.
- e. 예산 집행 및 활동 의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f. 방송위원회 조직의 필요에 따라 방송위원회 사무국의 직원 또는 공무원의 충원 또는 전근에 관련된 협의 및 조정을 수행한다.
- g. 관련 임무 분야에서 방송위원회 위원들과 방송위원회 사무국의 직무와 관련한 조정을 수행한다.

제 2 절

사무국/사무총장에 대한 평가

제 50 조

- (1) 중앙방송위원회 사무국에 관한 규정 제42조 제2항과 지역 방송위원회 사무국에 관한 규정 제45조제4항과 같이, 방송위원회 사무국의 기능 및 임무 이행에 대한 책임에 관한 사항은 본회의를 통해 방송위원회 위원에게 제출한다.
- (2) 방송위원회 위원장을 통해 방송위원회 위원은 사무국/사무총장을 통해 사무국에 정기적 인평가를 제공하여 방송위원회 위원과의 조정, 통합 및 동기화를 수행하는 임무 및 기능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 (3) 본회의의 결정에 따라 방송위원회는 사무국 직속 상관에게 방송위원회의 임무 및 기능의 이행에 대한 평가 권고안을 제출한다.

제 2 부

중앙방송위원회와 지역 방송위원회의 관계

제 51 조

- (1) 중앙방송위원회는 국가 및/또는 지역간의 중앙방송위원회 및 지역 방송위원회와 관련된 기능, 권한, 임무 및 의무의 이행을 위한 조정자 역할을 한다.
- (2) 중앙방송위원회는 중앙방송위원회 및/또는 지역 방송위원회의 기능, 권한, 임무 및 의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함께 중앙방송위원회 및/또는 지역 방송위원회와 관련된 조정자 역할을 한다.
- (3) 중앙방송위원회는 방송 위반을 처리하는 과정의 조정자 역할을 하고 방송 중계 시스템에 대한 방송행동강령 및 방송프로그램표준 위반에 대한 제재를 적용하며, 지역 콘텐츠 방송 기관의 방송 중계 시스템에 대한 위반 및 제재 적용은 지역 방송위원회에 의해 수행된다.
- (4) 지역 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 지역 방송위원회는 중앙방송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위반 사항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 (5) 중앙방송위원회는 지역 방송위원회와 지방정부 간의 커뮤니케이션 및 조정 중재자 역할을 한다.
- (6) 중앙방송위원회는 예산과 프로그램 및 활동을 지역 방송위원회로 분산시킬 수 있다.

- (7) 중앙방송위원회는 해당 지방에서 지역 방송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경우 지방의 모든 업무를 인수할 권한이 있다.
- (8) 중앙방송위원회는 지방정부 및 주 지방의회와의 의사 소통 및 조정을 통해 지역 방송위원회 사무국의 설립을 조력한다.

제 12 장 방송위원회 회의

제 1 부 회의 형식, 정족수 및 의사 결정

제 52 조

- (1) 방송위원회 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a. 본회의
 - b. 조정회의
 - c. 실무회의
 - d. 지도자회의
 - e. 국가조정회의
- (2) 제1항의 방송위원회 회의 정족수는 참석해야 하는 참가자의 2/3 이다.
- (3) 제1항의 방송위원회 회의에서의 의사결정은 합의를 위한 협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
- (4) 협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수결 투표로 결정을 한다.

제 2 부 본회의

제 53 조

- (1) 제52조제1항a에 명시된 본회의는 기관과 관련된 문제 논의위해 방송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회의로서 최고 의사 결정의 회의이다.
- (2) 본회의는 방송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주재한다.
- (3) 본회의는 월2회 이상 개최한다.
- (4) 본회의에서 내린 결정은 구속력이 있다.

제 3 부 조정회의

제 54 조

- (1) 이 규정의 제52조제1항b의 조정회의는 방송위원회 위원조직의 임무 및 권한에 따라 각 방송위원회 위원이 조정하는 부서에서 개최하는 회의이다.
- (2) 조정회의는 현장 조정자 또는 임명된 방송위원회 위원이 주재할 수 있다.

- (3) 방송위원회 위원의 임무와 관련하여 다른 기관과 함께 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4) 조정회의는 사무국, 전문인력 및 방송위원회의 보좌관이 참여하여 수행할 수 있다.
- (5) 제1항의 조정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된다.

제 4 부 실무회의

제 55 조

- (1) 제52조제1항c의 실무회의는 방송위원회 프로그램의 수립, 실시 및 평가를 위하여 중앙 차원에서는 국가실무회의의 형식으로, 지방 차원에서는 지역실무회의의 형식으로 개최하는 회의이다.
- (2) 제1항의 국가실무회의는 중앙방송위원회가 개최하고 지역 방송위원회가 참석하며,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 (3) 제1항의 지역실무회의는 국가실무회의의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및 이행으로 지역방송 위원회에 의해 개최되며, 지역 방송위원회의 활동 의제를 수립하고 평가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 (4) 국가실무회의운영 예산은 국가예산 (APBN)에서 부담한다.
- (5) 지역실무회의 운영 예산은 지역예산 (APBD)에서 부담한다.

제 5 부 지도자회의

제 56 조

- (1) 제52조제1항d의 지도자회의는 모든 중앙방송위원회 위원, 지역 방송위원회위원장 및/또는부위원장, 지역방송위원회 비서 및/또는 사무총장이 참석하는 회의이다.
- (2) 지도자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 (3) 지도자회의는 중앙방송위원회가 주최하고 국가예산 (APBN)에서 부담한다.

제 6 부 국가조정회의

제 57 조

- (1) 이 규정의 제 52조제1항e호의 국가조정회의(Rakornas)는 방송위원회의 기능, 권한, 임무 및 의무에 관한 규칙과 결정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는 국가차원의 포럼이다.
- (2) 국가조정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 (3) 국가조정회의는 중앙 및 지역 방송위원회의 모든 리더와 위원이 참석하는 회의이다.
- (4) 지도자회의는 중앙방송위원회가 주최하고 국가예산 (APBN)에서 부담한다.

제 13 장 방송위원회의 규정, 결의 및 결정

제 58 조

- (1) 방송위원회의 규정, 결의 및 법령은 방송위원회 회의 결정 후 발효되며 구속력이 있다.
- (2) 경우에 따라 중앙방송위원회 및 지역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필요와 역학관계에 따라 규정을 발표할 수 있다.

제 14 장 협력

제 59 조

방송위원회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방송위원회의 기능, 권한, 임무 및 의무를 지원해야 하는 필요성에 따라 다른 당사자와 합의 및/또는 협력할 수 있다.

제 15 장 방송위원회의 상징

제 1 부

방송위원회 로고 및 방송위원회 인기 로고

제 60 조

- (1) 방송위원회 로고는 별표I에 명시된 바와 같다.
- (2) 이 조 제1항의 방송위원회 로고는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작성된다.
 - a. 방송위원회 로고로 사용되는 인도네시아공화국 상징은 국기, 언어, 국장 및 국가(國歌)에 관한 법률 2009년 제24호 추가 규정에 기재된 인도네시아공화국 상징의 모양, 색상 및 크기 비율을 따른다.
 - b.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 문자는 일반 문자 사이의 공백과 함께 굵은 글꼴 Arial 크기 14로 사용한다.
- (3) 제1항의 방송위원회 로고는 방송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된다.
 - a. 사무실 간판, 깃발, 현수막 또는 배너와 같은 건물/사무실 외부의 식별 표시
 - b. 건물/사무실의 식별 표시
 - c. 직원 식별 표시 및 엠블럼
 - d. 인장 또는 레터 헤드 또는 사무실 인장
- (4) 제1항의 방송위원회 로고를 지역방송위원회가 지역의 상징과 함께 기입하는 경우, 방송위원회 로고는 해당 지역 상징과 함께 상단에 배치되고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 로고는 해당 지역 상징의 왼쪽에 배치된다.

제 61 조

- (1) 제60조에 명시된 인도네시아공화국 상징이 있는 방송위원회 로고와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 라는 문구 외에 별표II에 게재된 인기 로고도 있다.
- (2) 제1항에 명시된 방송위원회 로고는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작성된다.
 - a. 1개의 외부 원과 그 안의 1개의 원
 - b. 위쪽 및 아래쪽 글씨의 내용은 화살표 방향에 따라 작성되며 2개의 흰색 오각형 별표로 경계를 정한다.
 - i.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 의 글씨는 흰색과 빨간색이며 글꼴은 Arial이다.
 - ii. 하단 글씨: ‘독립 국가 기관’ , 검은 바탕에 흰색 글씨이다.
 - c. 하얀 바탕에 가루다(Burung Garuda) 이미지와 반원 형태의 주파수 아이콘이 오른쪽 3개, 왼쪽에 3개 그려져 있다.
 - d. 방송위원회(KPI) 명칭 표기에서 K와 I는 검정색으로, P는 빨간색이다.
- (3) 제1항의 방송위원회 로고는 스티커, 포스터, 엠블럼, 현수막, 배너 및 기타 방송위원회 상품에 사용된다.

제 2 부
중앙방송위원회 및 중앙방송위원회 사무국의 인장

제 62 조

- (1) 중앙방송위원회 인장은 별표 III에 명시된 바와 같다.
- (2) 중앙방송위원회와 중앙방송위원회 사무국의 인장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작성된다.
 - a. 크기
 - i. 지름 38 mm 의 외부 원
 - ii. 지름26mm의 내부 원
 - b. 2개의 두꺼운 원과 얇은 원의 바깥쪽 경계
 - c. 얇은 원의 안쪽 경계
 - d. 상단 및 하단 글씨는 화살표 방향으로 작성되며 2개의 별로 둘러싸여 있다.
 - i. 상단 글씨: KOMISI PENYIARAN INDONESIA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
 - ii. 하단 글씨: PUSAT (중앙방송위원회 위원용) SEKRETARIAT PUSAT (중앙방송위원회 사무총장용)
- (3) 방송위원회 위원을 위한 중앙방송위원회 인장은 다음 서명과 함께 방송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된다.
 - a. 방송위원회 본회의 결과를 대신하는 위원장의 명의
 - b. 방송위원회 위원은 해당 조항에 따라 ‘방송위원회 본회의 결과를 대신하는 위원장의 명의’ 를 대신하여 공문서에 서명할 권한을 위임받는다.
- (4) 사무총장을 위한 중앙 사무국의 인장은 다음 서명과 함께 방송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된다.
 - a. 사무총장
 - b. 해당 조항에 따라 사무총장을 대신하여 공문서에 서명할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
 - c. 조직의 내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무총장에 종속되는 조직의 공무원

제 3 부 지역 방송위원회 사무국 및 지역 방송위원회 사무국 인장

제 63 조

- (1) 지역 방송위원회 인장은 별표IV에 명시된 바와 같다.
- (2) 지역 방송위원회와 지역 방송위원회 사무국의 인장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작성된다.
 - a. 크기
 - i. 지름 38 mm 의 외부 원
 - ii. 지름26mm의 내부 원
 - b. 2개의 두꺼운 원과 얇은 원의 바깥쪽 경계
 - c. 얇은 원의 안쪽 경계
 - d. 지역 방송위원회의 인장은 상단 및 하단 글씨는 화살표 방향으로 작성되며 2개의 별로 둘러싸여 있다.
 - i. 상단 글씨: KOMISI PENYIARAN INDONESIA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
 - ii. 하단 글씨: DAERAH(관련된 지역의 이름)
 - e. 지역 방송위원회의 인장은 상단 및 하단 글씨는 화살표 방향으로 작성되며 2개의 별로 둘러싸여 있다.
 - i. 상단 글씨: SEKRETARIAT KPID(지역 방송위원회 사무국)
 - ii. 하단 글씨: 해당 지역의 이름과 원 안의 지역 상징
- (3) 지역 방송위원회 위원을 위한 지역 방송위원회인장은 다음 서명과 함께 방송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된다.
 - a. 방송위원회 본회의 결과를 대신하는 위원장의 명의
 - b. 지역 방송위원회 위원은 해당 조항에 따라 ‘방송위원회 본회의 결과를 대신하는 위원장의 명의’ 를 대신하여 공문서에 서명할 권한을 위임받는다.
- (4) 지역 사무총장을 위한 지역 방송위원회 사무국의 인장은 다음 서명과 함께 지역 방송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된다.
 - a. 지역 사무총장
 - b. 해당 조항에 따라 지역 사무총장을 대신하여 공문서에 서명할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
 - c. 조직의 내부 임무를 수행하는 맥락에서 지역 사무총장에 종속되는 조직의 공무원

제 4 부 방송위원회 로고송

제 64 조

- (1) 방송위원회 로고송은 별표V에 수록된 H Suryanto Aka, SH, MH가 쓴 ‘방송위원회 (Komisi Penyiaran Indonesia)’ 노래이다.
- (2) 제1항의 방송위원회 로고송은 방송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된다.
- (3) 제1항의 방송위원회 로고송은 모든 공식 방송위원회 이벤트 및 필요에 따라 정해진때에 부른다.

제 16 장 재정

제1부 통칙

제 65 조

- (1) 중앙방송위원회 및 중앙방송위원회 사무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비용은 인도네시아공화국 통신 및 정보기술부의 국가예산에서 부담한다.
- (2) 지역 방송위원회 및 지역 방송위원회 사무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비용은 지역예산에서 부담한다.

제 2 부 프로그램 자금조달

제 66 조

- (1) 중앙방송위원회는 중앙방송위원회 사무국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그램 및 활동을 준비한다.
- (2) 지역 방송위원회는 지역 방송위원회 사무국에서 자금 조달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및 활동을 준비한다.
- (3) 중앙방송위원회 사무국은 한 달에 한 번 주기적으로 국가예산(APBN)에서 발생하는 중앙 방송위원회에 대한 프로그램 자금 조달 및 활동에 대해 중앙방송위원회 본회의에 보고한다.
- (4) 지역 방송위원회 사무국은 한 달에 한 번 주기적으로 지역예산(APBD)에서 발생하는 지역 방송위원회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자금조달에 대해 지역 방송위원회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 3 부 방송위원회 위원에 대한 지원

제 67 조

- (1) 중앙방송위원회 위원에 대한 서비스 지원은 교육부 / 국가기관의 Eselon I.a(인도네시아 공무원 조직의 직급)와 동일하다.
- (2) 지역 방송위원회 위원에 대한 서비스 지원은 지방자치단체(SKPD)의 Eselon II.a(인도네시아 공무원 조직의 직급)와 동일하다.
- (3) 연금 또는 명예 수당을 받는 것 외에도 중앙방송위원회 및 지역 방송위원회 위원에게는 현행 법령에 따라 주택, 건강, 교통 및 통신 수당이 제공된다.

제 17 장 경과규정

제 68 조

이 규정이 발효될 때, 방송위원회 기관과 관련된 방송위원회의 법령, 결정 및 규정이 이 규정의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한 여전히 유효하다.

제 69 조

이 규정이 발효될 때,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의 기관에 관한 방송위원회 규정 제01/P/KPI05/2009호 및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의 채용 가이드라인에 관한 규정 제02/P/KPI/04/2011호는 폐지되며 효력을 상실한다.

제 18 장 부칙

제 70 조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의 규정은 확립일에 발효된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본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 규정을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에 게재할 것을 명한다.

2014 년 7 월 7 일

자카르타에서 확립됨

인도네시아 중앙방송위원회 위원장

DR. Judhariksawan, S.H., M.H.

별표 I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 기관에 관한 규정

제 01/P/KPI/07/2014호

방송위원회 로고

별표 II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 기관에 관한 규정

제 01/P/KPI/07/2014호

방송위원회인기 로고

별표 III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 기관에 관한 규정

제 01/P/KPI/07/2014호

중앙방송위원회 및 중앙 사무국 인장

별표 IV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 기관에 관한 규정
제 01/P/KPI/07/2014호
지역 방송위원회 및 지역 사무국 인장

별표 V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 기관에 관한 규정
제 01/P/KPI/07/2014호
방송위원회 로고송

KOMISI PENYIARAN INDONESIA
MENGEMBAN TUGAS AMANAT BANGSA
MENGAMALKAN NILAI PANCASILA
MEMBENTUK WATAK KARAKTER BANGSA

KEBEBASAN UNTUK BERPENDAPAT
HAK ASASI MILIK MASYARAKAT
MENCERAHKAN SERTA AKURAT
SEIMBANG BERTANGGUNG JAWAB

K-P-I... K-P-I... KOMISI PENYIARAN INDONESIA
K-P-I... K-P-I... MENYEHATKAN PENDENGAR PEMIRSA
TAATI... PATUHI... REGULASI PENYIARAN KITA
MAJUKAN... CERDASKAN... DEMI KEJAYAAN BANGSA

**지상파 시스템을 통한 디지털 TV 방송서비스사업
절차 및 허가 요건에 관한
정보통신부 장관령 2013년 제28호
PERATURAN MENTERI KOMUNIKASI DAN
INFORMATIKA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13
TENTANG TATA CARA DAN PERSYARATAN
PERIZINAN PENYELENGGARAAN PENYIARAN JASA
PENYIARAN TELEVISI SECARA DIGITAL MELALUI
SISTEM TERESTRIAL**

**전능하신 신의 은총으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보통신부 장관은**

고려함:

자카르타 특별시(DKI Jakarta) 및 반덴(Banten)주, 서부자바주(Jawa Barat), 중부자바주(JawaTengah) 및 족자카르타 특별구(D.I Yogyakarta), 동부자바주(Jawa Timur), 리아우 군도(Kepulauan Riau), 아체(Aceh) 및 북부수마트라주(Sumatera Utara), 동부칼리만탄주(Kalimantan Timur) 및 남부칼리만탄주(Kalimantan Selatan)의 다중방송 규정과 관련 하여지상파 시스템을 통한 디지털 TV방송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공영방송기관 사업에 관한 정부령2005년 제11호제13조제1항a의4, 제13조제2항c 및 제13조제3항, 민영방송 기관 사업에 관한 정부령 2005년 제50호제2조제1항a의3, 제2조제3항, 커뮤니티방송기관 사업에 관한 정부령 2005년제51호제2조제1항c, 제2조제3항에 따라 지상파를 통한 디지털 TV 방송서비스사업을 위한 절차 및 허가요건에 관하여 정보통신부장관령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검토함:

1. 통신에 관한 법률 1999년 제36호(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1999년 제154호, 인도네시아 공화국추가 관보 제3881호)
2. 방송에 관한 법률 2002 년 제32호(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2002 년 제139호, 인도네시아공화국추가 관보 제4252호)
3. 통신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00년 제52호(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2000 년 제107호, 인도네시아공화국 추가 관보 제3980호)
4. 무선주파수대역 및 위성궤도 사용에 관한 정부령 2000년 제 53호(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2000년 제108호, 인도네시아공화국 추가 관보 제3981호)
5. 지역방송기관 방송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05년 제11호(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2005년

- 제28호, 인도네시아공화국 추가 관보 제4485호)
6. 민영방송기관 방송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05년 제50호(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2005년 제127호, 인도네시아공화국 추가 관보 제4566호)
 7. 커뮤니티방송기관 방송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05년 제51호(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2005년 제128호, 인도네시아공화국 추가 관보 제4567호)
 8. 정보통신부에 적용되는 비과세 국가세입의 유형 및 수수료에 관한 정부령 2009년 제7호(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2009년 제20호, 인도네시아공화국 추가 관보 제4974호), 수정된 정보통신부에 적용되는 비과세 국가세입의 유형 및 수수료에 관한 정부령 2010년(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2010년 제135호, 인도네시아공화국 추가 관보 제5171호)
 9. 국가 부처의 구성 및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 2009년 제47호, 여러 차례 개정된 국가 부처의 구성 및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 4차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3년 제55호
 10. 국가 부처의 직위, 직무 및 기능, 국무부 1급(Eselon I)의 조직 구조, 직무 및 기능에 관한 대통령령 2010년 제24호, 몇 차례 개정된 국가 부처의 직위, 직무 및 기능, 국무부 1급(Eselon I)의 조직 구조, 직무 및 기능에 관한 대통령령 제4차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3년 제56호
 11. 방송사업허가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정보통신부 장관령 제28/P/M.KOMINFO/09/2008호
 12. 방송사업에서 발생하는 비과세 국가세입에 대한 시행 지침에 관한 정보통신부 장관령 제24/PER/M.KOMINFO/5/2009호
 13. 정보통신부 조직 및 근무 체계에 관한 정보통신부 장관령 제17/PER/M.KOMINFO/10/2010호

결정함:

확정: 지상파 시스템을 통한 디지털 TV 방송서비스사업 절차 및 허가 요건에 관한 정보통신부 장관령

제 1 장

총칙

제 1 조

이 장관령에서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프로그램 사업자 (Penyelenggara Program Siaran)는 지상파 시스템을 통한 디지털 TV 방송서비스 제공자이다.
2. 방송채널(Saluran Siaran)은 1주파수 채널의 일부인 1방송프로그램 용 슬롯이다.
3. 방송프로그램(Program Siaran)은 지속적으로 정렬되고 예정된 일정에 따라 편성된 방송이다.
4. 방송서비스지역(Wilayah Layanan Siaran)은 주어진 방송사업허가에 따른 수신 서비스 지역이다.
5. 신청자(Pemohon)는 인도네시아 국민 및/또는 방송사업허가를 신청하는 법인이다.
6. 장관(Menteri)은 정보 통신 분야의 직무 및 책임 범위를 가진 장관이다.

제 2 장 디지털 방송프로그램 사업자

제 2 조

- (1) 방송프로그램 사업자는 다중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채널을 통해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한다.
- (2) 제1항에 따른 방송채널의 수는 지상파를 통한 디지털 TV 방송서비스 방송 기관의 방송 편성기회에서 장관이 정한다.
- (3) 제1항의 방송프로그램 사업자는 다음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 a. TVRI 공영방송기관
 - b. 지역 공영방송기관
 - c. 민영방송기관
 - d. 지역방송기관

제 3 조

- (1) 제2조제3항의 방송프로그램 사업자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협력계약을 통해 다중방송사업자와 협력해야 한다.
- (2) 제1항의 협력계약에는 방송채널 대역료, 서비스 수준 보장 (SLA) 및 협력 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제1항의 협력은 다음 조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 a. 지역 공영방송기관 및 지역방송기관은 서비스 지역에서 TVRI 공영방송 기관이 운영하는 다중방송사업자와 협력한다.
 - b. 민영방송기관은 서비스 지역에서 민영방송기관이 운영하는 다중방송 사업자와 협력한다.
- (4) 장관은 제3항의 규정 외의 협력 형태를 결정할 수 있다.

제 3 장 방송서비스지역

제 4 조

- (1) TVRI공영방송기관 방송프로그램 사업자는 전국 방송서비스지역에서 수행된다.
- (2) 민영방송기관 방송프로그램 사업자는 자카르타(Jakarta) - 보고르(Bogor) - 데폭(Depok)
- 탕그랑(Tangerang) - 베카시(Bekasi) 방송서비스지역 및 욕야카르타 (Yogyakarta)
- 솔로(Solo) 방송서비스지역을 제외한 1개 지방의 1개 또는 여러 방송서비스지역에서 수행된다.
- (3) 지역 공영방송기관 및 지역방송기관 방송프로그램 사업자는 1개 방송서비스지역에서 수행된다.
- (4) 제1항제2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사업자의 방송채널 이용에 대한 결정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지정한다.

제 5 조

- (1) 방송사업이자 허가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제2조제3항의 방송 기관은 방송사업자가 될 수 있다.
- (2) 제1항의 방송 기관은 다중방송사업자와 협력계약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다.

제 4 장 방송프로그램 사업자의 설립 및 허가

제 1 부 설립

제 6 조

제2조제3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사업자의 설립은 법령에서 정하는 방송사업자의 설립을 말한다.

제 2 부 허가

제 7 조

- (1) 방송프로그램 사업자 허가는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 a. 이 장관령에 포함된 별도 첨부 I, 첨부 II 또는 첨부 III의 양식을 작성하여 방송사업 허가절차 및 요구 사항을 규제하는 방송 기관의 허가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 b. 다중방송사업자의 4번째 계열사가 아니라는 문구를 첨부한다.
- (2) 제1항b의 내용을 위반한 방송프로그램 사업자는 법령 규정에 따라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된다.

제 8 조

신청자 수가 다중방송사업자에서 이용 가능한 방송채널 수를 초과할 경우 법령에 따라 정한다.

제 3 부 허가 절차

제 9 조

방송프로그램 사업자의 허가 절차는 방송 운영에 대한 허가 절차 및 요구 사항을 관장하는 법령 규정에 따른다.

제 5 장 방송사업허가 평가

제 10 조

장관은 방송사업허가를 모니터링, 평가 및/또는 검증하기 위해 평가 팀을 구성할 수 있다.

제 6 장 방송사업허가 수수료

제 11 조

방송프로그램 사업자는 법령의 규정에 의거 방송사업허가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 12 조

방송프로그램 사업자가 다중방송사업자에게 지불하는 방송채널 임대료에는 다중방송 운영을 위한 방송채널 임대료 산정 절차를 관장하는 장관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파수 사용권 임대료가포함된다.

제 7 장 부칙

제 13 조

이 법은 제정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13년 11월 28일
자카르타에서 승인됨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보통신부 장관

서명

(띠파툴 쉴비링)
TIFATUL SEMBIRING

2013년 12월 4일
자카르타에서 제정됨

인도네시아공화국 법무인권부 장관

서명

(아미르 샴수딘)
AMIR SYAMSUDIN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2013년 제1416호

**전기통신서비스의 유료기능사용에 관한 정보통신부 장관령
제10/PER/M. KOMINFO3호
PERATURAN MENTERI KOMUNIKASI DAN
INFORMATIKA REPUBLIK INDONESIA
NOMOR: 10/PER/M. KOMINFO3/2007
TENTANG PENGGUNAAN FITUR BERBAYAR
JASA TELEKOMUNIKASI**

**전능하신 신의 은총으로
인도네시아공화국의 정보통신부 장관은**

고려함:

- a. 소비자 보호의 한 형태로서, 고객의 승인 및 통지없이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유료 기능사용에 대한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 b. 제공된 조건의 가치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옵션을 획득하고 명확하고 정확하며 정직하며 차별 없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 하는 틀에서 지속 가능한 건강한 전기통신 산업을 구축해야 한다.
- c. 상기 a.b. 관련하여 정보통신부장관령으로 전기통신서비스의 유료기능사용에 관한규정을 추가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검토함:

1. 소비자 보호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법률 1999년 제8호(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1999년 제42호, 인도네시아공화국 추가 관보 제3821호)
2. 전기통신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법률 1999년 제38호(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1999년 제154호, 인도네시아공화국 추가 관보 제3881호)
3. 전기통신 운영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령 2000년 제52호(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2000년 제107호, 인도네시아공화국 추가 관보 제3980호)
4.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부처의 지위, 임무, 기능, 조직 구조 및 작업 절차에 관한 대통령령 2005년 제9호
5. 대통령령 2005년 제15호로 개정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부처의 조직 단위 및 편제임 무에 관한 대통령령 2005년 제10호
6. 교통부 장관령 2004년 KM.29호로 개정된 전기통신망 운영에 관한 교통부 장관령 2001년 제20호
7. 교통부 장관령 2004년 KM.30호로 개정된 전기통신서비스 운영에 관한 2001년 교통부 장관령 2001년 제21호

8. 정보통신부 조직 및 업무 절차에 관한 정보통신부 장관령 제01/P/M.Kominfo/2005호
9. 우편 전기통신부문의 특수 콘텐츠를 규제하는 교통부 장관의 관련 법령/규정에서 명칭조정에 관한 정보통신부 장관령 제03/P/M.Kominfo/5/2005호

결정함:

확정: 전기통신서비스의 유료기능사용에 관한 정보통신부 장관령

제 1 장 총칙

제 1 조

이 장관령에서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Telekomunikasi)은 유선, 광학, 라디오 또는 기타 전자기기를 통해 기호, 신호, 텍스트, 그림, 소리 및 시청각 형태로 정보를 전송, 발신 및 또는 수신하는 것이다.
2. 전기통신사업자(Penyelenggara Telekomunikasi)는 전기통신 네트워크 사업자 및/또는 전기통신사업자다.
3. 가입자(Pelanggan)는 계약에 따라 전기통신 네트워크 및/또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사용하는개인, 법인, 정부 기관이다.
4. 기능(Fitur)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추가 서비스 설비이다.
5. 유료기능(Fitur Berbayar)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고객의 승인을 받아 유료로 제공하는 추가 서비스 설비이다.

제 2 장 기본전화서비스의 기능

제 2 조

- (1) 기본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유형의기능을 제공 할 수 있다.
 - a. 음성 사서함 (voice Mail box)
 - b. 착신 전환 (call forwarding)
 - c. 통화 대기(call waiting)
 - d. 3자 통화 (Conference Call)
 - e. 개인 발신음 (RingBack Tone)
 - f. 전기통신서비스 청구서 상세 정보
- (2) 기본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기능을 유료기능으로 제공하는 경우 고객에게 유형, 혜택 및 요금에 대한 완전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3) 전기통신사업자는 유료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입자로부터 사전 서면 승인 및/또는 단문메시지서비스(SMS)를 받아야 한다.

제 3 장 제재

제 3 조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면 현행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는다.

제 4 장 경과규정

제 4 조

- (1) 기본전화서비스를 운영하고 유료기능서비스를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을 수행해야한다.
 - a.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고객의 승인을 받지 못한 유료기능서비스는 이 장관령의 제정 후 3개월 이내에 중지한다.
 - b. 고객에게 제공되는 유료기능, 혜택 및 요금의 유형을 인도네시아 전기통신 규제 기관(BRTI)에 전달한다.
- (2) 기본 전화를 수행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1항a의 유료기능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정보 제공 및 고객의 승인을 받은 후 유료기능서비스를 재 개설할 수 있다.

제 5 조

이 장관령의 제정으로 전기통신서비스의 유료기능 사용에 관한 장관령 제24/MKOMINFO/10/20호는취소되고 무효가 된다.

2007년 3월 27일
자카르타에서 제정됨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보통신부 장관

서명

(소피안 A.자릴)
SOFYAN A. DJALIL

도서출판 제도에 관한 법률 2017년 제3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 TAHUN 2017
TENTANG SISTEM PERBUKUAN

전능하신 신의 은총으로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은

고려함:

- a. 인도네시아 국가의 가치와 정체성을 담은 도서를 통해 과학, 정보, 오락적 여흥거리를 개발하고 활용하여 국가 문명을 구축하는 것은 1945년 인도네시아공화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대로 국가의 일반 복지와 지적 생활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 b. 인도네시아 국민의 문해력을 증진하고 향상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도서는 지역사회가글로벌 수준에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 c. 저렴하고 균등한 양질의 도서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포괄적이며 통합된 도서출판 시스템을 통해 책임질 수 있는 도서출판 관리가 필요하다.
- d. 도서출판 관리가 여전히 다양한 법률과 규정으로 분산되고 포괄적으로 규제되지 않으므로 도서출판 관리가 필요하다.
- e. a.b.c.d.의 고려 사항을 기반으로 도서출판 시스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검토함:

1945년 인도네시아공화국 헌법 제20조, 제21조, 제28C조제1항, 제31조제1항 및 제5항인도네시아공화국 국회(DPR)의 동의하에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은

결정함:

확정: 도서출판 시스템에 관한 법률

제 1 장
총칙

제 1 조

이 법률에서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1. 도서출판 시스템(Sistem Perbukuan)은 도서의 원고 취득, 출판, 인쇄, 전자도서 개발, 배포, 사용, 제공 및 감독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통합된 도서출판 시스템이다.
2. 도서(Buku)는 제본 형태로 출판되거나 비주기적으로 출판되는 전자 출판물 형태인 서면 작업 및 이미지 작업이다.

3. 도서원고(Naskah Buku)는 시작, 내용, 끝을 포함하는 서면 작업 및 이미지 작업의 초안이다.
4. 문해력(Literasi)은 모든 사람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과학과 기술에 접근할수 있도록 정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다.
5. 저자(Penulis)는 도서 형태로 출판될 도서원고를 작성하는 사람이다.
6. 쓰기(Penulisan)는 서면언어 및 그림언어를 통해 도서원고를 쓰는 것이다.
7. 번역자(Penerjemah)는 번역을 하는 모든 사람이다.
8. 번역(Penulisan)은 원본언어의 도서를 스타일, 의미 및 문맥 모두에서 특정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다.
9. 번역본(Terjemahan)은 원본언어의 도서를 스타일, 의미 및 문맥 모두에서 특정 언어로 번역한 결과이다.
10. 각색자(Penyadu)는 각색을 하는 모든 사람이다.
11. 각색(Penyaduran)은 스토리에서 인물의 이름, 장소, 시간 및 분위기를 변경하거나 프레젠테이션 형식을 변경하는 등 개작자의 의도에 맞게 조정된 구성이다.
12. 개작(Saduran)은 스토리에서 인물의 이름, 장소, 시간 및 분위기를 변경하거나 프레젠테이션 형식을 변경하는 등 개작자의 의도에 맞게 조정된 구성의 결과이다.
13. 편집자(Editor)는 인쇄할 준비가 될 때까지 도서원고를 편집하는 사람이다.
14. 디자이너(Desainer)는 도서와 도서표지의 내용에 대한 레이아웃 디자인을 만드는 사람이다.
15. 삽화가(Illustrator)는 도서와 도서표지의 내용에 대한 삽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16. 삽화(Illustrasi)는 그림, 스케치 및 지도의 형태로 된 작품으로 도서의 설명을 풍부하게, 단순화 또는 명확하게 한다.
17. 인쇄업자(Pencetak)는 도서인쇄활동을 수행하는 정부 기관 또는 민간 기관이다.
18. 인쇄(Pencetakan)는 시험인쇄에서 도서가 되기까지 도서원고를 인쇄하는 과정이다.
19. 전자도서 개발자(Pengembang Buku Elektronik)는 인쇄된 도서를 전자도서로 변환하거나 전자도서를 만드는 사람이다.
20. 발행인(Penerbit)은 도서출판 활동을 조직하는 정부 기관 또는 민간 기관이다.
21. 출판(Penerbitan)은 도서의 편집, 삽화, 디자인에서 시작되는 활동의 전체 과정이다.
22. 서점(Toko Buku)은 도서를 팔고 사는 곳이다.
23. 양질의 도서(Buku Bermutu)은 내용, 프리젠테이션, 디자인 및 그래픽을 포함하는 품질 표준을 충족하는 도서다.
24. 배포(Pendistribusi)는 발행인으로부터 사용자에게 거래되거나 거래되지 않을 도서를 보급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25. 사용(Penggunaan)은 도서활용과 관련된 활동이다.
26. 제공(Penyediaan)은 도서제공과 관련된 활동이다.
27. 모든 사람(Setiap Orang)은 법인에 관계없이 개인, 단체, 지역사회 조직 또는 사업체이다.
28. 중앙정부(Pemerintah Pusat)는 1945년 인도네시아공화국 헌법의 부통령과 장관들의 도움을 받아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의 권한을 보유한 인도네시아공화국의 대통령이다.
29. 지방정부(Pemerintah Daerah)는 자치권의 권위가 되는 정부를 수행하는 지역 행정의

한요소로서 지역의 수장이다.

30. 장관(Pemerintah Daerah)은 교육 분야에서 정부 업무를 담당하는 장관이다.

제 2 조

- (1) 도서출판 시스템은 1945년 인도네시아공화국 헌법인 Pancasila와 비네카 텡갈 이카(Bhinneka Tunggal Ika)를 기반으로 구성되었다.
- (2) 도서출판 시스템의 운영은 도서출판 생태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 3 조

도서출판 시스템의 운영은 다음을 기반으로 한다.

- a. 다양성
- b. 민족성
- c. 공생
- d. 전문성
- e. 통합
- f. 인도네시아 국가적 특성
- g. 정의
- h. 사회 참여
- i. 상호 협력
- j. 자유

제 4 조

도서출판 시스템의 운영 목표는 다음과 같다.

- a. 도서출판 시스템 육성을 통하여 국가의 정체성 및 민족성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애국심을 육성하고 강화한다.
- b. 도서출판 시스템을 규제 및 구현하고 저렴하며 균등한 양질의 도서를 출판하기 위해 도서
- c.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의 문해력을 증진하고 향상시킨다.
- d. 세계 문명의 한가운데서 도서를 통해 인도네시아 국가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도서출판 주체의 역할을 증가시킨다.

제 2 장
도서의 형태, 유형 및 내용

제 5 조

- (1) 도서의 형태는 인쇄된 도서와 전자도서로 구성된다.
- (2) 제1항의 인쇄된 도서는 텍스트, 그림 또는 이 둘을 조합하여 인쇄된 형태로 출판된 저작물이다.
- (3) (1)항의 전자도서는 텍스트, 그림, 오디오, 비디오 또는 그 조합의 형태로 출판된 저작물로서 전자적 형태로 출판된다.

제 6 조

- (1) 도서의 종류는 교육용 도서와 일반용 도서로 구성된다.
- (2) 제1항의 교육용 도서는 일반 교육, 직업 교육, 학술 교육, 전문 교육, 직무 교육, 종교교육 및 특수 교육에 사용되는 도서다.
- (3) 제2항의 교육용 도서의 종교적 내용은 종교 부문의 공무를 관장하는 장관이 책임을 진다.
- (4) 제2항의 교육용 도서는 교과서와 비 교과서로 구성된다.
- (5) 제4항의 교과서는 주 교과서와 부속 교재로 구성된다.
- (6) 제5항의 주 교과서는 해당 교육 과정에 따라 학습에 사용되어야 하는 교과서로서 중앙 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한다.
- (7) 제5항의 부속 교재는 해당 교육 과정에 따라 지역사회가 편찬한 교과서로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는다.
- (8) 제1항의 일반용 도서는 교육용 도서 이외의 도서 종류이다.
- (9) 제1항부터 제7항의 교육용 도서에 관한 추가규정은 정부령으로 정한다.

제 7 조

도서는 과학, 정보 및 오락이 포함된다.

제 3 장 지역사회 및 도서출판 주체의 권리와 의무

제 1 부 지역사회

제 8 조

지역사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 a. 도서출판 시스템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
- b. 양질의 도서와 도서출판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제 9 조

장애인은 필요에 따라 편리하게 도서를 읽을 권리가 있다.

제 10 조

전방, 외곽, 낙후, 고립된 지역의 공동체 및 재난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는 도서 접근 서비스를 얻을 권리가 있다.

제 11 조

지역사회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 a.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시설 및 도서를 관리하고 활용한다.
- b. 학습 공동체, 독서 애호 공동체 및 글쓰기 애호 공동체의 조성을 지원한다.

제 2 부 도서출판 주체

제 1 절 통칙

제 12 조

도서출판 주체는 저자, 번역자, 각색자, 편집자, 디자이너, 삽화가, 인쇄업자, 전자도서 개발자, 발행인 및 서점으로 구성된다.

제 2 절 저자

제 13 조

저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 a. 서면 원고에 대한 저작권이 있다.

제 14 조

저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 a. 도서원고에 실명 또는 가명을 수록한다.
- b. 서면 작업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 3 절 번역자

제 15 조

번역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 a. 번역 원고에 대한 저작권이 있다.
- b. 번역의 저작권을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한다.
- c. 발행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도서 부수 및 도서 판매에 대한 데이터 및 정보를 얻는다.
- d. 전문기관을 설립한다.
- e. 번역 원고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제 16 조

번역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 a. 저작권 보유자 또는 원문 저작권 보유자의 상속인으로부터 허가를 받는다.
- b. 도서에 실명을 명시한다.
- c. 번역 원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 4 절 각색자

제 17 조

각색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 a. 각색 결과 원고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한다.
- b. 각색의 저작권을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한다.
- c. 발행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도서 부수 및 도서 판매에 대한 데이터 및 정보를 얻는다.
- d. 전문기관을 설립한다.
- e. 각색 결과의 원고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제 18 조

각색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 a. 저작권 보유자 또는 원문 저작권 보유자의 상속인으로부터 허가를 받는다.
- b. 도서에 실명을 명시한다.
- c. 각색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 5 절 편집자

제 19 조

편집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 a. 전문관을 설립한다.
- b. 편집된 원고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제 20 조

편집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 a. 도서에 실명을 명시한다.
- b. 편집된 원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 6 절 디자이너

제 21 조

디자이너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 a. 전문 기관을 설립한다.
- b. 도서의 디자인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제 22 조

디자이너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 a. 도서에 실명을 명시한다.
- b. 도서의 디자인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 7 절
삽화가

제 23 조

- 삽화가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 a. 전문 기관을 설립한다.
 - b. 삽화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제 24 조

- 삽화가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 a. 도서에 실명을 명시한다.
 - b. 삽화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 8 절
인쇄업자

제 25 조

- (1) 인쇄업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 a. 사업 수행에 대한 접근 및 육성을 받는다.
 - b. 비즈니스 기관 연합을 설립한다.
 - c. 인쇄 작업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 (2) 제1항제a호의 접근 및 육성에 관한 규정은 정부령으로 정한다.

제 26 조

- 인쇄업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 a. 인쇄 사업 허가증이 있어야 한다.
 - b. 기밀을 유지하고 인쇄된 도서원고를 보호한다.
 - c. 발행인과의 계약에 따라 도서를 출판 인쇄한다.

제 9 절
전자도서 개발자

제 27 조

- (1) 전자도서 개발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 a. 사업 수행에 대한 접근 및 안내를 받는다.
 - b. 비즈니스 기관 연합 및 전문 기관을 설립한다.
 - c. 전자도서 개발 작업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2) 제1항 a의 접근 및 안내에 관한 조항은 정부령으로 정한다.

제 28 조

전자도서 개발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 a. 사업 허가증이 있어야 한다.
- b. 기밀을 유지하고 디지털화된 도서원고를 보호한다.
- c. 디지털 권한 관리를 적용한다.

제 10 절

발행인

제 29 조

(1) 발행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 a. 사업 수행에 대한 접근 및 안내를 받는다.
- b. 비즈니스 기관 연합을 설립한다.

(2) 제1항제a호의 접근 및 안내에 관한 조항은 정부령으로 정한다.

제 30 조

발행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 a. 출판 사업 허가증이 있어야 한다.
- b. 출판된 도서원고에 대한 보상을 저작권 보유자에게 제공한다.
- c. 저작권 보유자에게 도서 판매에 대한 정확하고 최신의 정기적인 데이터와 정보를 제공한다.
- d. 도서표지 뒷면에 가격을 명시한다.
- e. 독자 연령 수준에 따른 도서 지정을 명시한다.
- f. 국제도서 표준번호를 명시한다.

제 31 조

(1) 제30조c에서 e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행인은 행정 제재를 받는다.

(2) 제1항의 행정 제재는 다음과 같은 형태이다.

- a. 서면 경고
- b. 유통에서 제품 철수
- c. 사업 허가 정지
- d. 사업 허가 취소

(3) 제2항에 따른 행정 제재 부과 절차에 관한 추가규정은 장관령으로 정한다.

제 11 절

서점

제 32 조

서점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 a. 사업 수행에 대한 접근 및 안내를 받는다.
- b. 비즈니스 기관 연합을 설립한다.

제 33 조

서점 소유자는 발행인에게 도서 판매에 대한 정확하고 최신의 정기적인 데이터와 정보를 제공한다.

제 34 조

도서출판 주체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추가규정은 정부령으로 정한다.

**제 4 장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

제 35 조

- (1) 중앙정부는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다.
 - a. 도서출판 시스템 개발을 위한 정책 수립
 - b. 문해력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 c. 건강한 도서출판 시스템 개발
 - d. 도서 개발을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 e. 도서출판 시스템의 운영을 육성, 촉진 및 감독
- (2) 제1항d의 재정적 인센티브에 관한 규정은 정부령으로 정한다.

제 36 조

- 중앙정부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 a. 차별없이 저렴하고 균등한 양질의 도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전한 도서출판 생태계를 통해 도서출판 시스템의 구현을 보장한다.
 - b. 모든 학생의 학습을 위한 주요 교과서를 편찬하고 제공한다.
 - c. 양질의 도서읽고 조달을 통해 읽기 및 쓰기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
 - d. 도서출판 정보 시스템의 개발을 촉진한다.
 - e. 도서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국가 문화를 세계 문화재로 홍보한다.
 - f.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양질의 외국어 도서의 번역을 촉진한다.
 - g. 역사적 가치가 있고 국가와 국가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 희귀 도서 및 고대 사본의 출판을 촉진한다.

제 37 조

제35조 및 제36조의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은 법령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 수행하며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

제 38 조

지방정부는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다.

- a. 각 기관에 따라 회계 시스템 개발 정책을 수립한다.
- b. 자신의 영역에서 도서출판 시스템의 운영을 육성, 촉진, 감독 및 평가한다.
- c. 건강한 도서출판 시스템 개발한다.
- d. 문해력을 증진시킨다.

제 39 조

지방정부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 a. 지역에서 차별없이 저렴하고 균등한 양질의 도서의 제공을 보장한다.
- b. 양질의 지역 콘텐츠가 포함된 부속 교재를 고안하고 보장한다.
- c. 권한에 따라 서점의 성장을 촉진하고 감독한다.
- d. 지역에서 읽기 및 쓰기의 흥미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의 실행을 보장한다.
- e. 지역에서 권한에 따라 교육 단위 및 프로그램의 모든 학생이 학습할 수 있는 양질의 교과서를 제공한다.
- f. 출판에 위한 교과서 자료의 입력을 용이하게 한다.
- g. 권한에 따라 역사적 가치가 있고 국민과 국가에 중요한 가치가 있는 희귀 도서 및 고대 사본의 출판을 촉진한다.

제 40 조

시/군 지방정부는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다.

- a. 지역에서 도서출판 시스템의 구현을 보장한다.
- b. 주 교과서의 공정하고 균등한 배포를 보장한다.
- c. 문해력 증진을 촉진한다.

제 41 조

시/군 지방정부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 a. 지역에서 차별없이 저렴하고 균등한 양질의 도서 제공을 보장한다.
- b. 지역의 서점 성장을 촉진한다.
- c. 읽기 및 쓰기의 흥미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 d. 권한에 따라 교육 단위 및 프로그램의 모든 학생이 학습할 수 있는 양질의 교과서를 제공한다.

제 5 장 도서관고 취득

제 1 부 일반

제 42 조

- (1) 도서원고의 취득은 능동적 및 수동적 원고 취득을 통해 수행된다.
- (2) 도서원고의 취득은 쓰기, 번역 또는 각색을 통해 수행된다.
- (3) 제2항의 번역을 통한 도서원고의 취득은 지역 언어 및 외국어로 된 도서의 양질의 원고를 우선시한다.
- (4) 제1항과 제2항의 도서원고의 취득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5) 제4항의 요건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a. 뻘짜실라(Pancasila)의 가치와 맞서지 않는다.
 - b. 민족, 종교, 인종 및 계층 간에 차별이 없다.
 - c. 포르노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다.
 - d. 폭력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다.
 - e. 증오심 표현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 2 부
도서 원문 작성**

제 43 조

- (1) 도서 원문의 작성은 도서 원문의 작성 표준, 규범 및 윤리강령에 따라 수행된다.
- (2) 제1항에 따른 도서 원문의 작성 표준, 규범 및 윤리강령에 관한 규정은 정부령으로 정한다.

**제 3 부
도서 번역**

제 44 조

- (1) 도서 번역은 도서 번역의 표준, 규범 및 윤리강령에 따라 수행된다.
- (2) 제1항의 도서 번역의 표준, 규범 및 윤리강령에 관한 규정은 정부령으로 정한다.

제 45 조

도서 번역은 교육 목적을 우선으로 한다.

**제 4 부
도서 각색**

제 46 조

- (1) 도서 각색은 도서 각색의 표준, 규범 및 윤리강령에 따라 수행된다.
- (2) 제1항의 도서 각색의 표준, 규범 및 윤리강령에 관한 규정은 정부령으로 정한다.

제 47 조

도서 각색은 교육 목적을 우선으로 한다.

제 6 장 전자도서의 출판, 인쇄 및 개발

제 1 부 도서출판

제 1 절 통칙

제 48 조

도서는 다음의 요구 사항을 충족한 후 출판된다.

- a. 제42조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다.
- b. 제30 조제 f호의 국제도서 표준번호를 명시한다.

제 49 조

인도네시아에서 외국 당사자의 도서출판은 법령에 따라 인도네시아 국민이 설립하고 소유한 발행인과 협력하여 수행해야 한다.

제 50 조

중앙정부 및 또는 지방정부에 속한 법인 사업체는 도서를 출판할 수 있다.

제 51 조

- (1) 고등 교육용 도서의 출판은 저렴하고 균등한 양질의 도서를 제작하기 위하여 고등 교육 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도서출판은 고등 교육을 담당하는 부처가 촉진하고 법령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 52 조

- (1) 고등 교육 기관에서 출판한 교육용 도서는 제42조제5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2) 제1항의 교육용 도서는 과학 기술의 발전을 장려하는 도서이다.

제 2 절 도서원고 편집

제 53 조

- (1) 도서원고 편집은 도서원고 편집에 대한 표준, 규범 및 윤리강령에 따라 수행된다.
- (2) 제1항에 따른 도서원고 편집의 표준, 규범 및 윤리강령에 관한 규정은 정부령으로 정한다.

제 3 절 도서 삽화

제 54 조

- (1) 도서 삽화는 도서 삽화의 표준, 규범 및 윤리강령에 따라 수행된다.
- (2) 제1항에 따른 도서 설명의 표준, 규범 및 윤리강령에 관한 규정은 정부령으로 정한다.

제 4 절
도서 디자인

제 55 조

- (1) 도서 디자인은 도서 디자인의 표준, 규범 및 윤리강령에 따라 수행된다.
- (2) 제1항에 따른 도서 디자인의 표준, 규범 및 윤리강령에 관한 규정은 정부령으로 정한다.

제 2 부
도서인쇄

제 56 조

- 모든 인쇄된 도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 a. 도서표지 뒷면에 가격 명시
 - b. 독자의 연령 수준에 따른 도서 지정

제 3 부
전자도서 개발

제 57 조

- 전자도서 개발은 다음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 a. 전자도서 형태의 도서원고 출판
 - b. 인쇄된 도서를 전자도서 형태로 변환

제 58 조

제57조a의 도서원고 출판을 통해 수행되는 전자도서의 개발에는 전자 국제도서 표준번호가 있어야 한다.

제 59 조

- (1) 주 교과서를 전자도서로 변환하여 일반인이 쉽게 주 교과서를 획득하고 접속할 수 있도록 한다.
- (2) 제1항의 전자도서는 무료 다운로드 및 복제할 수 있다.
- (3) 제1항에 따른 전자도서 형태로의 전환에 관한 규정은 장관령으로 정한다.

제 7 장 도서 배포

제 60 조

- (1) 도서를 균등하고 및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서를 배포한다.
- (2) 제1항의 도서의 배포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에 의해 수행할 수 있다.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서의 배포에 관한 규정은 정부령으로 정한다.

제 61 조

-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유아 교육, 기초 교육 및 중등 교육의 단위 및 프로그램에 주 교과서를 배포한다.
- (2) 제1항에 따른 주 교과서의 배포는 국가 예산 또는 지방 예산을 사용한다.

제 62 조

주 교과서 이외의 전자도서 판매는 법령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제 63 조

- (1) 발행인은 부속 교재를 유아 교육, 기초 교육 및 중등 교육의 단위 및 프로그램에 직접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 (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발행인은 행정 제재를 받는다.
- (3) 제2항의 행정 제재는 다음과 같은 형태이다.
 - a. 서면 경고
 - b. 유통에서 제품 철수
 - c. 사업 허가 정지
 - d. 사업 허가 취소
- (4) 제3항에 따른 행정 제재의 부과 절차에 관한 추가규정은 장관령으로 정한다.

제 64 조

- (1) 부속 교재 및 비 텍스트 교과서의 판매는 서점 및 기타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 (2) 제1항에 따른 기타 방법을 통한 부속 교재 및 비 텍스트 교과서 판매에 관한 규정은 장관령으로 정한다.

제 8 장 도서의 사용

제 65 조

- (1) 주 교과서는 학습에 적용되는 커리큘럼에 따라 유아 교육, 기초 교육 및 중등 교육의 단위 및 프로그램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 (2) 유아 교육, 기초 교육 및 중등 교육 단위 및 프로그램은 다음을 사용할 수 있다.

- a. 부속 교재
 - b. 중앙정부가 승인한 비 텍스트 교과서
 - c. 일반 도서
- (3) 제1항의 주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는 유아 교육, 기초 교육 및 중등 교육을 위한 단위 및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행정 제재를 받는다.
- a. 서면 경고
 - b. 교육 지원 중단
 - c. 교육 지원 종료
 - d. 다운 그레이드 및 인증 취소에 대한 권장 사항
 - e. 교육 단위 조직 활동의 일시적 중단
 - f. 교육 단위 조직 활동의 정지
- (4) 제3항에 따른 행정 제재의 부과 절차에 관한 추가규정은 장관령으로 정한다.
- (5) 제1항 및 제2항의 주 교과서, 부속 교재 및 비 텍스트 교과서에 관한 추가규정은 장관령으로 정한다.

제 9 장 도서 제공

제 66 조

- (1) 도서 제공은 다음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 a. 출판
 - b. 재판
 - c. 기증
 - d. 수입
- (2) 제1항c,d의 기증 및 수입을 통한 도서 제공에 관한 규정은 정부령으로 정한다.

제 67 조

-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유아 교육, 기초 교육, 중등 교육의 단위 및 프로그램의 학습 목적을 위해 주 교과서를 제공해야 한다.
- (2) 지역사회는 부속 교재를 제공할 수 있다.

제 10 장 지역사회 참여

제 68 조

- (1) 지역사회는 도서출판 시스템을 통해 문해력을 증진하고 향상시키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 (2) 지역사회는 건강한 도서출판 생태계를 만들고 발전시키는데 참여한다.

(3) 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규정은 정부령으로 정한다.

제 11 장 감독

제 69 조

- (1) 중앙정부, 지방정부, 도서출판 주체 및 지역사회는 도서출판 시스템을 감독한다.
- (2) 제1항의 감독은 도서출판 시스템이 잘 유지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3) 인도네시아공화국 검찰은 공공 질서와 안녕을 실현하기 위해 도서의 내용을 감독한다.
- (4) 제1항에 따른 감독은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유지하면서 투명성과 공적 책임을 원칙으로 수행된다.
-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감독에 관한 추가규정은 정부령으로 정한다.

제 12 장 부칙

제 70 조

이 법의 시행 규정은 이 법의 제정 후 2년 이내에 확정되어야 한다.

제 71 조

이 법이 시행될 때, 도서출판에 관한 모든 법과 규정은 이 법의 조항과 위배되지 않는 한 여전히 유효하다.

제 72 조

이 법은 제정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이 법률의 제정을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에 게재할 것을 명한다.

2017년 5 월 24 일
자카르타에서 승인됨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

서명

(조코 위도도)
JOKO WIDODO

2017 년 5 월 29일
자카르타에서 제정됨
인도네시아공화국 법무인권부 장관

서명

(야소나 H. 라올리)
YASONNA H. LAOLY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2017년 제102호
도서출판 시스템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법률 2017년 제3호에 대한 해설

1. 해설

인도네시아는 다양한 민족과 문화뿐만 아니라 매우 넓은 면적과 인구가 많은 나라이다. 1945년 인도네시아공화국 헌법 전문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 국가의 목표 중 하나는 국민의 삶을 교육하는 것이다. 아울러 헌법 제31 조에서도 국민의 삶을 교육하는 것을 국가 목표로 재확인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과학 기술의 발전과 활용을 통해 국민의 삶을 교육하고 민족 문명을 건설하기 위해 국가 교육 시스템을 추진하고 시행해야 한다. 적절한 국민 교육 시스템의 구현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도서출판 시스템을 구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도서는 1945년 인도네시아공화국 헌법 전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궁극적으로 공공 복지를 향상시키는 국민을 교육하기 위한 노력의 주요 수단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판짜실라(Pancasila)와 인도네시아공화국의 1945년 헌법 전문에 포함된 가치를 지지하지 않는 도서가 여전히 사회에 유통되고 있다. 도서출판 주체를 위한 최적의 보호 및 법적 확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서 전체를 규제하는 법적 장치의 부재로 인해 지역사회를 위한 저렴하고 균등한 양질의 도서가 결여되었다. 따라서 국민 계몽 달성의 가교 역할을 하는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도서출판 시스템을 통한 도서출판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도서출판 시스템은 여전히 다양한 법률과 규정으로 분산되어 있고 체계적 및 포괄적으로 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서출판 관리가 필요하다. 이 규정은 모든 도서출판 주체자, 즉 저자, 번역자, 각색자, 편집자, 디자이너, 삽화가, 인쇄업자, 전자도서 개발자, 발행인 및 서점에 적용된다.

도서출판 주체자를 규제하는 것 외에도 이 법은 도서의 형식, 유형 및 내용, 지역사회 및 도서출판 주체자의 권리와 의무, 중앙 및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 도서원고 취득, 출판, 인쇄, 전자도서의 개발, 배포, 사용, 제공 및 감독을 규제한다. 법 집행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이 법의 여러 조항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 행정 제재로 규제한다.

2. 각 조별 해설

제 1 조

충분히 설명됨

제 2 조

(1) 충분히 설명됨

- (2) “도서출판 생태계” 는 도서출판 이해 관계자 사이의 긍정적인 상호 작용으로 나타나는 저렴하고 균등한 양질의 도서를 출판하기 위한 건전한 도서출판 시스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공간이다.

제 3 조

- a. 다양성의 원칙” 은 도서출판 시스템의 운영이 지역사회, 국민 및 국가의 삶에서 인구, 종교, 민족 및 계층, 지역 특수 조건 및 문화의 다양성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 b. 민족성의 원칙” 은 도서출판 시스템의 운영이 인도네시아 단일 국가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인도네시아 국민의 성격과 기질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 c. “공생의 원칙” 은 도서출판 시스템의 운영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도서 출판 주체자의 공동 책임임을 의미한다.
- d. 전문성의 원칙” 은 도서출판 분야의 전문 인력이 지원하는 도서출판 시스템의 운영이다.
- e. 통합의 원칙” 은 도서출판 시스템의 운영이 모든 도서출판 관리자 사이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다.
- f. “인도네시아 국가의 원칙” 은 도서출판 시스템의 운영이 국가 정체성강화에 있어 문화적 다양성의 강화를 장려하는 작품을 생산한다는 것이다.
- g. “정의의 원칙” 은 도서출판 시스템의 운영이 양질의 저렴한 도서에 접근할 때 사회의 모든 계층에 동등한 기회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 h. “사회 참여의 원칙” 은 도서출판 시스템의 운영이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라는 것이다.
- i. “상호 협력의 원칙” 은 도서출판 시스템의 운영이 함께하는 정신으로 수행된다는 것이다.
- j. “자유 의 원칙” 은 도서출판 시스템의 운영이 여러 해석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 4 조 ~ 제 5 조

충분히 설명됨

제 6 조

- (1) ~ (3) 충분히 설명됨
- (4) 교과서에는 신앙, 경건, 고귀한 인격 및 개성을 향상시키는 학습 자료, 예로는 과학과 기술의 숙달, 감수성, 미적 능력, 운동 감각 능력 및 건강 뿐만 아니라 국가 교육 표준 기반으로 정해진 국가의 기초로서 Pancasila의 가치 이해가 포함되어 있다.
- (5) 주 교과서는 종교 교육, 수학, 자연 과학, 사회 과학, 인도네시아어, 영어, 기술, 문화 예술, Pancasila 및 국민 교육에 대한 과목이다.
- (6) ~ (9) 충분히 설명됨

제 7 조 ~ 제 8 조

충분히 설명됨

제 9 조

“장애인” 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 중 시각 장애 및 /또는 읽기 장애가 있는

사람 및 점자 사용자이다,

제 10 조

재난은 자연 재해, 비자연 재해 및 공공 도서 시설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재난이 포함된다.

제 11 조 ~ 제 12 조

충분히 설명됨

제 13 조

- a. ~ b. 충분히 설명됨
- c. “부수” 는 인쇄된 도서의 수 또는 유통량이다.
- d. 충분히 설명됨
- e. 보상, 예로는 로열티, 사례금 및 임금

제 14 조

- a. 충분히 설명됨
- b. 책임의 형태, 예로는 윤리와 법률이 포함된다.

제 15 조

- a. 충분히 설명됨
- b. 권리 양도의 형태, 예로는 라이선스 또는 서면 계약에 의한 양도 방식이다.
- c. ~ e. 충분히 설명됨

제 16 조

충분히 설명됨

제 17 조 ~ 제 24 조

충분히 설명됨

제 25 조

- (1) a. “접근” 이란 정보와 사업 기회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 b. ~ c. 충분히 설명됨
- (2) 충분히 설명됨

제 26 조

충분히 설명됨

제 27 조

- (1) a. ~ b. 충분히 설명됨

- c. 전자도서 개발자는 서비스 사업과 독립 제작 사업으로 구성된다.
- (2) 충분히 설명됨

제 28 조

- a. ~ b. 충분히 설명됨
- c. “디지털 권한 관리” 는 디지털 미디어 또는 장치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발행인 또는 저작권 보유자가 사용하는 액세스 제어 기술을 나타내는 하위어이다.

제 29 조

충분히 설명됨

제 30 조

- a. ~ d. 충분히 설명됨
- e. 도서 지정에 대한 설명에는 어린이, 청소년 또는 성인용 도서가 포함된다.
- f. “국제도서 표준번호” 는 출판된 도서에 대한 고유한 국제 표시이다.

제 31 조 ~ 제 34 조

충분히 설명됨

제 35 조

- (1) a. ~ c. 충분히 설명됨
- d. “재정적 인센티브” 는 국가 도서출판 산업의 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금융 부문의 정부 정책이다.
- e. 충분히 설명됨
- (2) 충분히 설명됨

제 36 조

- a. 충분히 설명됨
- b. “편찬” 은 중앙정부가 주 교과서 내용의 품질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 c. ~ d. 충분히 설명됨
- e. 홍보의 형태, 예로는 국내 저작물을 외국어로 번역하고 외국 저작물을 인도네시아어 번역하며 또한 국내 및 국제도서 박람회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 f. 도서 번역을 촉진하는 형태, 예로는 협력 및 번역자의 역량 강화이다.
- g. “희귀 도서” 는 구하기 어렵고 역사적, 문화적 및 과학적 가치를 지닌 도서이다.

제 37 조 ~ 제 38 조

충분히 설명됨

제 39 조

- a. 충분히 설명됨

b “편찬” 이 의미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부속 교재의 내용의 품질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지역 콘텐츠” 는 거주 지역의 우월성과 지혜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형성하기 위해 지역 잠재력 및 고유성에 대한 콘텐츠 및 학습을 포함하는 교육 단위의 학습 자료이다.

지역 콘텐츠의 예로는 지역 언어, 지역 문화, 지역 예술 등이 있다.

c ~ g 충분히 설명됨

제 40 조 ~ 제 41 조

충분히 설명됨

제 42 조

(1) “능동적” 의 의미는 출판될 저자와 원고를 찾는 것이다.

(2) ~ (4) 충분히 설명됨

(5) a. ~ d. 충분히 설명됨

e. 중요성 표현에는 모욕과 선동이 포함된다.

제 43 조

(1) “표준” 은 특정 규격을 규정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규범” 은 “정확한 방식 또는 규칙이다.

“윤리강령” 은 특정 그룹이 행동의 기초로 받아들이는 규범과 원칙이다.

(2) 충분히 설명됨

제 44조 ~ 제 48 조

충분히 설명됨

제 49 조

“외국인” 이란 인도네시아에서 도서출판 활동을 수행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을 의미한다.

제 50 조 ~ 제 64 조

충분히 설명됨

제 65 조

(1) 충분히 설명됨

(2) 보조 교재, 비 텍스트 교과서 및 일반 도서는 강화 도서 역할을 하는 도서이다.

(3) ~ (5) 충분히 설명됨

제 66 조 ~ 제 68 조

충분히 설명됨

제 69 조

(1) ~ (2) 충분히 설명됨

(3) 인도네시아공화국 검찰이 수행하는 감독은 이데올로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 예방 및 교육 모두에서 법 집행을 지원하는 틀에서 범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 질서와 평화를 창출한다.

(4) ~ (5) 충분히 설명됨

제 70 조 ~ 제 72 조 충분히 설명됨

인도네시아공화국 추가 관보 제6053 호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의 납본에 관한 법률 2018년 제13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3 TAHUN 2018
TENTANG SERAH SIMPAN KARYA CETAK
DAN KARYA REKAM

전능하신 신의 은총으로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은

고려함:

- a. 1945년 인도네시아공화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체 인도네시아 국민을 보호 하려는 국가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는 인도네시아 국민의 작품으로서 지적 및/또는 예술적 가치가 있는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로 분류 정리된 모든 국가 문화 자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 b. 국가 문화의 결과물인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은 국민의 지적 진보, 교육 분야의 참고 자료, 과학 및 기술의 발전, 연구 및 정보 보급 및 국가 문화의 보존의 척도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가 발전과 이익을 위한 역사적 기록, 변화의 흔적, 국가 발전을 추적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 c.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을 인도네시아 문화 산물의 국가 소장물로 수집하려는 노력은 발행인, 녹화녹음물 제작자 및 대중이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을 납본하는 것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의 보존 중요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오늘날까지 여전히 최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 d.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의 납본에 관한 법률1990년 제4호는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을 수집하기에 여전히 효과적이지 못하며 사회 변화와 정보 기술의 발전을 수용하지 못하기에 대체되어야 한다.
- e. 제a호, 제b호, 제c호 및 제d호의 고려 사항에 따라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의 납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검토함:

1945년 인도네시아공화국 헌법 제20조, 제21조, 제28조제1항, 제28조 및 제32조제1항인 인도네시아공화국 국회(DPR)와 동의하에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은

결정함:

확정: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의 납본에 관한 법률

제 1 장 총칙

제 1 조

이 법률에서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1. 인쇄물(Karya Cetak)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인쇄된 형태로 출판된 모든 지적 및/또는 예술적 작품이다.
2. 녹화녹음물(Karya Rekam)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아날로그, 디지털, 전자기, 광학 등의 형태로 청각적 또는 시각적으로 기록된 모든 지적 및/또는 예술적 작품이다.
3. 납본된 수집물(Koleksi Serah Simpan)은 기탁도서관의 업무와 기능을 가진 국립도서관과 지방도서관의 관리하고 있는 모든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을 말한다.
4. 발행인(Penerbit)은 인도네시아공화국 영토에 있는 인쇄물을 출판하는 개인, 사업체 또는 법인이다.
5. 녹화녹음물 제작자(Produsen Karya Rekam)는 인도네시아공화국 영토에 있는 녹화녹음물을 제작하는 개인, 사업체 또는 법인이다
6. 국립 도서관(Perpustakaan Nasional)은 자문 도서관, 참고 도서관, 기탁 도서관, 연구 도서관, 보존 도서관 및 도서관 네트워크 센터로 기능하는 도서관 분야에서 정부의 직무를 수행하는 비 부처 정부기관이며 국가의 수도에 소재한다.
7. 지방 도서관(Perpustakaan Provinsi)은 자문 도서관, 참고 도서관, 기탁 도서관, 연구 도서관 및 보존 도서관의 기능을 하는 도서관 분야에서 지방정부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 기구 조직이며 지방 수도에 소재한다.
8. 중앙정부(Pemerintah Pusat)는 1945년 인도네시아공화국 헌법의 부통령과 장관들의 도움을 받아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의 권한을 보유한 인도네시아공화국의 대통령이다.
9. 지방정부(Pemerintah Daerah)는 자치구의 권한에 속하는 정부를 수행하는 지역 행정의 요소로서 지역의 수장이다.

제 2 조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의 납본 이행은 다음을 기반으로 한다.

- a. 효용성
- b. 투명성
- c. 접근성
- d. 보안성
- e. 안전성
- f. 전문성
- g. 예측성
- h. 대응성
- i. 책임성

제 3 조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의 납본 이행 목적은 다음과 같다.

- a. 교육, 연구, 과학 및 기술의 발전을 통한 개발 지원의 맥락에서 국가 문화의 결과물로서 국가적 수집과 보존을 실현한다.
- b. 자연 및/또는 인간 행동으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을 보호한다.

제 2 장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의 제출

제 4 조

- (1) 모든 발행인은 인쇄물의 제목 2부를 국립 도서관에 제출하고 1부를 발행인이 거주하는 지방 도서관에 제출해야 한다.
- (2) 국립 도서관이 장애인을 위해 인쇄물의 디지털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인은 디지털 사본을 국립 도서관에 제출해야 한다.
- (3) 제1항의 인쇄물은 수정증보판을 포함하여 국립 도서관 및 지방 도서관에 보관하기 위해 제출된다.
- (4) 제1항에 따른 인쇄물의 제출은 출판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제 5 조

- (1) 녹화녹음물을 출판하는 모든 녹화녹음물 제작자는 각 녹화녹음물의 제목 1부를 국립 도서관에 제출하고, 1부를 녹화녹음물 제작자가 거주하는 지방 도서관에 제출해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녹화녹음물의 제출은 출판 후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 (3) 제1항의 제출해야 하는 녹화녹음물은 역사, 문화, 교육, 과학 및 기술적 가치를 포함한다.

제 6 조

- (1) 해외에서 발행된 인도네시아 국민의 연구를 통해 제작된 인도네시아에 관한 인쇄 및/또는 녹화녹음물은 국립 도서관에 제출해야 한다.
- (2) 해외에서 간행 및/또는 출판된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제작한 인도네시아에 관한 인쇄 및/또는 녹화·녹음물은 국립 도서관에 제출해야 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제출 절차에 관한 규정은 정부령으로 정한다.

제 7 조

- (1) 제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발행인은 국립 도서관 또는 지방 도서관의 지도를 받는다.
- (2) 제1항의 지도는 국립 도서관 또는 지방 도서관의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 (3) 제1항의 발행인은 제 4조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도 이행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의 기한을 부여 받는다.
- (4) 제3항의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발행인은 다음과 같은 행정제재를 받는다.
 - a. 서면 경고
 - b. 영업 정지
 - c. 허가 취소
- (5) 제4항a의 행정제재는 국립 도서관 또는 지방 도서관이 부과한다.

- (6) 제4항b.c.의 행정제재는 국립 도서관 또는 지방 도서관의 추천에 따라 권한이있는 공무원/기관에 의해 부과된다.
- (7)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행정제재 부과 절차에 관한 세부규정은 정부령으로 정한다.

제 8 조

제7조의 행정제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녹화녹음물 제작자에게도 적용된다.

제 9 조

- (1) 인쇄물을 간행하는 국가 기관, 부처, 비 부처 정부기관 및 고등교육기관은 인쇄물의 제목 2부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해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인쇄물의 제출은 출간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제 10 조

- (1) 녹화녹음물을 출판하는 국가 기관, 부처, 비 부처 정부기관 및 고등교육기관은 녹화·녹음물의제목 1부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해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녹화녹음물의 제출은 출판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 (3)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 기관 및 지역 기관에서 이루어진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의 소장물을 통합 조정한다.

제 11 조

- (1) 인쇄물을 발간하는 지방정부 및 지방 의회는 인쇄물의 제목 2부를 거주지에 따라 국립 중앙도서관 및 지방도서관에 제출해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인쇄물의 제출은 출간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제 12 조

- (1) 녹화녹음물을 발행하는 지방정부 및 지방 의회는 녹화녹음물의 제목 1부를 거주지에 따라 국립 도서관 및 지방 도서관에 제출해야 한다.
- (2) 제1항에 규정된 녹화녹음물의 제출은 출판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제 13 조

- (1)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을 국립중앙도서관 및 지방 도서관에 하는 제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a. 직접 제출
 - b. 배송
- (2)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의 제출이 제1항제b호의 배송 방식으로 전달되는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및 지방 도서관은 다른 당사자와 협력할 수 있다.

제 14 조

제4조에서 제13조의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의 제출에 관한 세부규정은 정부령으로 정한다.

제 3 장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의 납본 관리

제 1 부 통칙

제 15 조

- (1) 국립중앙도서관과 지방 도서관은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의 납본을 관리한다.
- (2) 제1항에 따른 관리에는 수령, 조달, 등록, 가공, 보관, 이용, 보존 및 감독이 포함된다.
- (3) 제2항에 따른 관리는 각 저작물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고려하여 수행한다.
- (4) 제2항에 따른 관리는 국립 도서관이 정한 납본 소장물 관리 표준에 따라 수행한다.

제 16 조

국립중앙도서관장과 지방 도서관장은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의 납본 결과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제 17 조

보존 도서관으로서의 국립중앙도서관은 인도네시아에서 출간된 모든 인쇄물과 출판된 모든 녹화·녹음물을 보존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제 18 조

- (1) 국립중앙도서관 및 지방 도서관은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의 납본 결과 관리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킨다.
- (2) 제1항의 관리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 국립 도서관과 지방 도서관은 국내외 다른 당사자와 협력할 수 있다.

제 2 부 수령

제 19 조

- (1) 국립중앙도서관 및 지방 도서관은 직접 제출 또는 배송을 통해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을 수령한다.
- (2) 제1항의 수령은 필요와 기술 개발에 따른 것이다.

제 3 부 조달

제 20 조

- (1)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에 대한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을 수집하기 위해 조달을 수행할 수 있다.

- a. 제6조제1항의 해외에서 간행 및 발행된 인도네시아 국민의 연구를 통해 제작된 인도네시아에 관한 인쇄 및/또는 녹화녹음물
 - b. 제6조제2항의 해외에서 간행 및/또는 출판된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제작한 인도네시아에 관한 인쇄 및/또는 녹화녹음물
- (2) 제1항a.b.의 저작물은 역사, 문화, 교육, 과학 및 기술적 가치를 포함한다.

제 4 부 기록

제 21 조

- (1) 국립 도서관 및 지방 도서관은 수령된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의 납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 (2) 제1항에 따른 기록은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의 납본 결과를 목록화하기 위해 수행된다.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은 기술 발전에 따라 수행된다.

제 22 조

제21조 납본 결과의 기록은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의 데이터 수집 시스템으로 구체화된다.

제 5 부 가공

제 23 조

- (1) 국립중앙도서관과 지방 도서관은 납본 소장물을 가공한다.
- (2) 제1항에 따른 가공의 결과는 인도네시아 국가 서지 및 지역 서지 작성을 위한 근거 중 하나로 사용된다.

제 6 부 보관

제 24 조

- (1) 국립중앙도서관과 지방 도서관은 납본 소장물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과 인프라를 제공한다.
- (2) 제1항에 따른 보관은 납본 소장물의 물리적 및 내용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수행된다.

제 7 부 이용

제 25 조

- (1) 국립중앙도서관과 지방 도서관은 납본 소장물을 이용한다.
- (2) 제1항에 따른 이용은 교육, 연구, 과학 및 기술 개발의 목적으로 제한된다.

제 8 부 보존

제 26 조

- (1) 국립중앙도서관과 지방 도서관은 납본 소장물의 물리적 및 내용의 보존을 수행한다.
- (2) 제1항에 따른 보존은 기술 발전에 따라 예방 및 치료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제 9 부 감독

제 27 조

- (1) 국립중앙도서관 및 지방 도서관은 납본 의무 이행을 감독한다.
- (2) 제1항에 따른 감독은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 28 조

제15조에서 제27조까지의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의 납본 결과 관리에 관한 세부규정은 정부령으로 정한다.

제 4 장 자금 조달

제 29 조

-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가 재정 능력에 따라 납본 소장물 및 관리를 위한 자금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 (2) 제1항의 자금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 a. 국가예산
 - b. 지방예산
 - c.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합법적이고 구속력이 없는 기타 기금

제 5 장 지역사회 참여

제 30 조

- (1) 대중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의 납본에 참여할 수 있다.
 - a. 인쇄 및 기록 결과물 제출
 - b. 납본된 소장물로 사용될 개인 소장품을 국립 도서관 및/또는 지방 도서관에 제출
 - c. 납본된 소장물의 이용을 통한 문해력 증진
- (2) 제1항의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규정은 정부령으로 정한다.

제 6 장 시상

제 31 조

- (1) 국립중앙도서관 및 지방 도서관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의무를 수행하는 음반 작품의 발행자 및 제작자에게 상을 수여한다.
- (2) 제1항의 시상 이외에도 국립 도서관과 지방 도서관은 납본 의무 지원 참여자들에게 시상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시상은 제6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이행한 외국인에게도 수여된다.
- (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상 수여 절차에 관한 규정은 정부령으로 정한다.

제 7 장 경과규정

제 32 조

- (1) 이 법의 제정 이전에 해외에서 발행된 인도네시아 국민의 연구를 통해 제작된 인도네시아에 관한 인쇄 및/또는 녹화녹음물은 이 법의 시행 후 4년 이내에 국립 도서관에서 조달해야 한다.
- (2) 이 법의 제정 이전에 해외에서 간행 및/또는 출판된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제작한 인도네시아에 관한 인쇄 및/또는 녹화녹음물은 이 법의 시행 후 4년 이내에 국립 도서관에서 조달해야 한다.

제 8 장 부칙

제 33 조

이 법이 시행될 때,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의 납본에 관한 1990년 법률 제4호의 시행령에 해당하는 모든 법령은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1990년 제48호, 인도네시아공화국 추가 관보 제3418호) 이 법령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유효하다.

제 34 조

이 법이 시행될 때,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의 납본에 관한 법률 1990년 제4호(인도네시아공화국관보 1990년 제48호, 인도네시아공화국 추가 관보 제3418호)는 폐지되고 더 이상 유효하지 아니하다.

제 35 조

- (1) 이 법의 시행 규정은 이 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확정되어야 한다.

(2) 중앙정부는 이 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교육문화 부문의 정부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를 통해 이 법의 시행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36 조

이 법은 제정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이 법률의 제정을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에 게재할 것을 명한다.

2018년 12 월 28 일
자카르타에서 승인됨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

서명.

(조코 위도도)
JOKO WIDODO

2018 년 12월 28일
자카르타에서 공포함
인도네시아공화국 법무인권부 장관

서명.

(야소나 H. 라올리)
YASONNA H. LAOLY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의 납본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법률 2018년 제13호에 대한 해설

1. 해설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은 국가 발전을 지원하는데 매우 중요한 국가의 문화 결과물 중 하나이며, 특히, 국민의 지적 진보, 교육 분야의 참고 자료, 과학 및 기술의 발전, 연구 및 정보 보급 및 국가 문화 보전의 척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가 발전과 이익을 위한 역사적 기록, 변화의 흔적, 국가 발전을 추적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이러한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의 중요한 역할을 고려할 때 모든 발행인, 음반 제작자 및 인도네시아 국민이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해외에서 간행 및/또는 출판된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제작한 인도네시아에 관한 인쇄 및/또는 녹화·녹음물은 국립 도서관에 제출하여 대중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의 인도는 효용성, 투명성, 접근성, 보안성, 안전성, 전문성, 예측성, 대응성 및 책임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오늘날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과 변형은 사회가 역동적인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의 납본에 관한 법률 1990년 제4호는 더 이상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규정은 조정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 연구, 과학 기술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적 소장품을 만들고 국가 문화의 결과물로 보존하기 위한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 납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는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을 제출하여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을 자연 및/또는 인간 행동으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발행인 및 녹화 녹음물 제작자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국가 문화 정보의 원천으로서 지역 사회에 보다 가까워지기 위해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의 관리는 국립중앙도서관 및 지방 도서관과 지역 사회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법은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의 제출부터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의 납본 결과 관리, 자금 조달, 지역사회 참여 및 시상을 규제한다.

2. 각 조별 해설

제 1 조 충분히 설명됨

제 2 조

- a. “효용성”의 원칙은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의 인도 이행이 지역 사회, 국민 및 국가의 삶에 효용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b. “투명성”의 원칙은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의 인도 이행이 공개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녹화·녹음물 제작자와 발행자 모두에게 법적 확실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 c. “접근성”의 원칙은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의 인도 이행이 대중이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 가용성 및 경제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d. “보안성”의 원칙은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의 인도 이행이 오용 가능성으로부터 출판 및 녹화·녹음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 e. “안전성”의 원칙은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의 인도 이행이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이 자연 또는 인간의 행동으로 인한 위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f. “전문성”의 원칙은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의 인도 이행이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의 관리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g. “예측성”의 원칙은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의 인도 이행이 기술, 정보, 문화, 국가 행정의 다양한 변화 및 발전과 국민의 삶 및 국가를 위한 인쇄 및 녹화·녹음물의 중요성에 대한 예측 또는 인식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 h. “대응성”의 원칙은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의 인도 이행이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타 관련 문제, 특히 파괴, 손상 또는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의 분실 원인이 있는 경우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 I. “책임성”의 원칙은 인쇄물 및 녹화·녹음물의 인도 이행이 전적인 책임을 다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 3 조

충분히 설명됨

제 4 조

(1) 각 인쇄물을 국립 도서관 및 지방 도서관에 제출하는 것은 저작권 제출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인쇄물의 제출은 이 법의 목적에만 따라 저장, 보존 및 이용되어야 한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저작권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적용된다.

(2) 충분히 설명됨

(3) “수정정보판”이 의미하는 것은 인쇄된 작품의 물리적 형태 및 내용의 변경이다.

(4) 3개월의 기간은 출간된 시점, 즉 어떤 방식과 형태로든 대중에게 처음 공개된 때로부터 또는 공개되지 않은 경우 최초 출시부터 계산된다.

제 5 조

(1) 충분히 설명됨

(2) 1년의 기간은 출판된 시점, 즉 어떤 방식과 형태로든 대중에게 처음 공개된 때로부터 또는 공개되지 않은 경우 최초 출시부터 계산된다.

제 6 조 ~ 제 8 조

충분히 설명됨

제 9 조

- (1) 충분히 설명됨
- (2) 3개월의 기간은 출간된 시점, 즉 어떤 방식과 형태로든 대중에게 처음 공개된 때로부터 또는 공개되지 않은 경우 최초 출시부터 계산된다.

제 10 조

- (1) 충분히 설명됨
- (2) 3개월의 기간은 출판된 시점, 즉 어떤 방식과 형태로든 대중에게 처음 공개된 때로부터 또는 공개되지 않은 경우 최초 출시부터 계산된다.
- (3) “지역 기관” 은 지역 개발 계획 기관 및 지역 공무원 기관이다.

제 11 조

- (1) 충분히 설명됨
- (2) 3개월의 기간은 출간된 시점, 즉 어떤 방식과 형태로든 대중에게 처음 공개된 때로부터 또는 공개되지 않은 경우 최초 출시부터 계산된다.

제 12 조

- (1) 충분히 설명됨
- (2) 3개월의 기간은 출판된 시점, 즉 어떤 방식과 형태로든 대중에게 처음 공개된 때로부터 또는 공개되지 않은 경우 최초 출시부터 계산된다.

제 13 조 ~ 제 17 조

충분히 설명됨

제 18 조

- (1) 충분히 설명됨
- (2) 협력의 형태로는 외교/관련 분야의 공무를 수행하는 부처 또는 해외 인도네시아 대표자와의 양해 각서 작성이 포함된다.

제 19 조 ~ 제 23 조

충분히 설명됨

제 24 조

- (1) 충분히 설명됨
- (2) “유지 및 보호” 는 손상, 파괴 또는 멸실을 방지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이다.

제 25 조

- (1) 이용은 그 자리에서 읽고 공부할 수 있도록 빌려서 이루어진다.
- (2) 충분히 설명됨

제 26 조

충분히 설명됨

제 27 조

- (1) 충분히 설명됨
- (2) 관련 기관에는 다음 분야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부처가 포함된다.
 - a. 교육
 - b. 문화
 - c. 연구 및 기술
 - d. 국내 정부
 - e. 법과 인권
 - f.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 g. 무역

제 28 조

충분히 설명됨

제 29 조

- (1) 충분히 설명됨
- (2) a. ~ b. 충분히 설명됨
 - c. 합법적이고 구속력이 없는 기타 기금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금, 기부 및 기증이 포함된다.

제 30 조

- (1) “지역사회”란 개인, 집단, 사회 조직, 사업체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 (2) 충분히 설명됨

제 31 조 ~ 제 36 조

충분히 설명됨

인도네시아공화국 추가 관보 제 6291 호

영화에 관한 법률 2009년 제33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3 TAHUN 2009
TENTANG PERFILMAN

전능하신 신의 은총으로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은

고려함:

- a. 문화 예술 작품으로서의 영화는 국가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문화의 회복력과 국민의육체적, 정신적 복지를 강화하는 전략적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영화의 발전을 책임진다.
- b. 대중 매체로서의 영화는 국가의 삶을 교육하고, 자기 잠재력을 개발하고, 고귀한 도덕을 육성하고, 공공복지를 증진하고, 국제 세계에서 인도네시아를 홍보하는 수단이므로 인도네시아 영화와 영화는 개발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 c. 세계화 시대의 영화는 문화적 침투의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Pancasila 이념 및 인도네시아 국가의 정체성과 양립 할 수 없는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 d. 인도네시아 영화의 발전을 위한 노력은 사회의 역동성, 과학 및 기술의 발전과 일치해야 한다.
- e. 영화에 관한 법률 1992년 제8호는 더 이상 영화의 발전과 시대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 f. a, b, c, d, e.의 고려사항에 따라 영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검토함:

1945년 인도네시아공화국 법률 제20조, 제21조, 제28조, 제28조F, 제28조J, 제31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32조제1항

인도네시아공화국 국회(DPR)의 동의하에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은

결정함:

확정: 영화에 관한 법률

제 1 장 총칙

제 1 조

이 법률에서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1. 영화(Film)는 소리의 유무에 관계없이 영화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지는 사회적 제도이자 중전달매체인 문화예술작품으로 상영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영화(Perfilman)는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것이다.
3. 국가문화(Budaya bangsa)는 사회, 국가 및 국가의 삶에서 군도 전역의 인도네시아 국민의 가치, 사상, 규범, 행동 및 작업의 전체 체계이다.
4. 영화활동(Kegiatan perfilman)은 영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화작업이며 비상업적 성격을 갖는다.
5. 영화사업(Usaha perfilman)은 영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화사업이며 상업적 성격을 갖는다.
6. 시민사회(Masyarakat)는 영화 분야에서 관심과 역할을 가진 비정부 인도네시아 시민이다.
7. 영화광고(Iklan film)는 영화의 발표 및 홍보의 한 형태이다.
8. 영화인력(Insan perfilman)은 영화에서 잠재력과 능력을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9. 영화심의(Sensor film)은 일반 대중에게 공개할 영화 및 영화광고의 적격성에 대한 조사, 평가 및 결정이다.
10. 중앙정부(Pemerintah Pusat, 이하 정부)는 1945 년 인도네시아공화국 헌법의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의 권한을 보유한 인도네시아공화국의 대통령이다.
11. 지방정부(Pemerintah daerah)는 지방정부 행정의 요소인 주지사, 군수 또는 시장 및 지역 기관이다.
12. 장관(Menteri)은 문화 업무를 담당하는 장관이다.

제 2 장 원칙, 목적 및 기능

제 1 부 원칙

제 2 조

영화는 다음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 a. 유일신
- b. 인도주의
- c. 다양성
- d. 정의
- e. 혜택

- f. 법적 확실성
- g. 공생
- h. 파트너십
- i. 복지

제 2 부 목적

제 3 조

영화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a. 고귀한 도덕의 발전
- b. 국민 삶의 계몽 실현
- c. 국가적 통합과 단결의 유지
- d. 국가의 존엄성 제고
- e. 국가문화적 가치의 개발 및 보존
- f. 국제 사회에 의한 국가문화의 인정
- g. 공공 복지 증가
- h. 활기차고 지속 가능한 국가문화기반 영화의 개발

제 3 부 기능

제 4 조

영화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다.

- a. 문화
- b. 교육
- c. 오락
- d. 정보
- e. 독창적인 작품 장르
- f. 경제

제 3 장 영화활동 및 영화사업

제 1 부 통칙

제 5 조

영화활동 및 영화사업은 국가의 종교, 윤리, 도덕, 예절 및 문화적 가치를 준수하면서 창조,

혁신 및 창작의 자유를 바탕으로 수행된다.

제 6 조

영화활동 및 영화사업의 주요 요소인 영화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 a. 대중에게 폭력 및 도박, 마약, 향정신성 물질 및 기타 중독성 물질의 남용을 조장하도록 장려
- b. 포르노 등 선정적 내용 강조
- c. 집단, 민족, 인종 간 및/또는 계층 간 갈등을 유발
- d. 모욕, 경멸 및/또는 종교적 가치를 더럽히는 행위
- e. 일반 대중이 법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
- f. 인간의 존엄성을 떨어뜨림

제 7 조

영화 활동 및 영화사업의 주요 요소인 영화에는 영화 시청자 연령 그룹이 포함된다.

- a. 모든 연령대의 시청자
- b. 13세 이상의 시청자
- c. 17세 이상의 시청자
- d. 21세 이상의 시청자

제 8 조

(1) 영화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a. 영화제작
- b. 영화기술서비스
- c. 영화배급
- d. 영화상영
- e. 영화감상
- f. 영화기록물

(2) 영화사업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a. 영화제작
- b. 영화기술서비스
- c. 영화배급
- d. 영화상영
- e. 영화판매 및/또는 영화대여
- f. 영화기록물
- g. 영화수출
- h. 영화수입

(3)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이외의 영화활동 및 영화사업은 장관령으로 정한다.

제 9 조

(1) 영화활동주체는 다음과 같다.

- a. 영화제작 영화 활동주체
 - b. 영화기술서비스 영화 활동주체
 - c. 영화배급 영화 활동주체
 - d. 영화상영 영화 활동주체
 - e. 영화감상 영화 활동주체
 - f. 영화기록물 영화 활동주체
- (2) 영화 사업주체는 다음과 같다.
- a. 영화제작 영화 사업주체
 - b. 영화기술서비스 영화 사업주체
 - c. 영화배급 영화 사업주체
 - d. 영화상영 영화 사업주체
 - e. 영화판매 및/또는 영화대여 영화 사업주체
 - f. 영화기록물 영화 사업주체
 - g. 영화수출 영화 사업주체
 - h. 영화수입영화 사업주체

제 10 조

- (1) 제9조의 영화 활동주체 및 영화 사업주체는 영화수입 사업주체를 제외하고 인도네시아 영화를 우선해야 한다.
- (2) 제9조의 영화 활동주체와 영화 사업주체는 국내자원의 최적 활용을 우선해야 한다.
- (3) 제1항의 인도네시아 영화의 우선 순위 및 제2항에서 언급된 국내 자원의 최적 사용을 우선해야 하는 의무에 관한 추가 규정은 장관령으로 정한다.

제 11 조

- (1) 제9조제2항의 영화 사업주체는 직간접적으로 수직 통합을 초래할 수 있는 다른 영화사업을 소유할 수 없다.
- (2) 제1항의 금지는 자체 제작 영화의 영화배급 및 영화수출을 하는 영화 사업주체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12 조

제9조제2항d 영화상영 영화 사업주체는 1인의 영화제작 사업주체 또는 1인의 영화상영 사업주체 또는 1인의 영화수입 사업주체의 영화를 6개월 연속 50% 이상 상영하여 독점 및/또는 불공정 사업 경쟁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3 조

제9조제2항a,b,c,d,e,g,h.의 영화상영 영화 사업주체는 영화 사업주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영화 사업주체와 독점 관행 및/또는 불공정한 사업 경쟁을 초래하는 영화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조항을 만드는 것이 금지된다.

제 14 조

- (1) 제8조제2항a,b,f.의 영화 사업주체의 유형은 수수료 없이 장관에게 등록되어야 하고 근무일 기준 최대 5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한다.
- (2) 제8조제2항c,d,e,g,h.의 영화 사업주체의 유형은 개인 영화 사업주체에 의한 영화판매 및/또는 영화 대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 (3) 제2항의 사업허가는 각 사업 유형에 대해 장관이 발급한다.
 - a. 영화 상영사업
 - b. 영화 수출사업
 - c. 영화 수입사업
- (4) 각 사업 유형에 대해 근무 또는 시장이 사업 면허를 부여한다.
 - a. 영화판매 및/또는 대여업
 - b. 영화상영업
- (5) 제4항b.의 사업허가에는 TV 방송 또는 정보 기술 네트워크를 통해 수행되는 영화상영업 허가가 포함되지 않는다.
- (6) 제3항 및 제4항의 사업허가는 근무일 기준 최대 7일 이내에 무료로 발급된다.
- (7) TV 방송 또는 정보 기술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영화 상영업에 대한 제5항의 사업 허가는 법령 규정에 의거하여 부여된다.
- (8) 제11조제1항의 직·간접적으로 수직적 통합을 초래할 수 있는 영화 사업주체에게는 사업 허가를 부여할 수 없다.
- (9)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의 사업주체 등록 및 사업허가 신청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추가규정은 장관령으로 정한다.

제 15 조

영화 사업주체 간의 협력은 서면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제 2 부 영화제작

제 16 조

- (1) 영화제작은 영화제작 활동주체 또는 영화제작 사업주체가 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영화제작 활동주체는 개인, 단체, 정부 및 지방정부가 포함된다.
- (3) 제1항의 영화제작 사업주체는 인도네시아 법인이 있는 사업체이다.

제 17 조

- (1) 제16조제3항의 영화제작 사업주체의 영화제작은 영화 제목, 이야기 내용 및 영화제작 계획을 첨부하여 장관에게 영화제작 통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통지는 무료로 실시되며 근무일 기준 최대 3일 이내에 기록된다.
- (3) 장관의 임무:
 - a. 이야기의 제목과 내용에 유사성이 없도록 제2항의 기록된 영화 제작을 보호한다.
 - b. 기록된 영화의 제목에 대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대중에게 발표한다.

- (4) 제1항의 영화제작 사업주체는 영화제작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영화제작을 기록할 의무가 있다.
- (5) 제1항에서 정한 영화제작 계획이 제4항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통보가 취소된다.

제 18 조

- (1) 영화제작은 아날로그, 디지털 또는 특정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다음에 기록할 수 있다.
 - a. 셀룰로이드 테이프
 - b. 비디오 테이프
 - c. 광 디스크
 - d. 다른 재료들
- (2) 제1항의 영화는 화학, 전자 또는 기타 공정을 통해 만들 수 있다.

제 19 조

- (1) 영화제작은 스토리 영화 또는 비 스토리 영화의 형태로 제작될 수 있다.
- (2) 제1항의 영화 형태에는 TV 방송기관에서 방송하는 뉴스 및 생방송 자료가 포함되지 않는다.

제 20 조

- (1) 영화제작은 인도네시아 영화인력을 최적으로 우선 할 의무가 있다.
- (2) 제1항의 영화인력은 다음을 포함한다.
 - a. 영화 시나리오 작가
 - b. 영화 감독
 - c. 영화 배우
 - d. 영화 카메라 전문가
 - e. 영화 조명 전문가
 - f. 영화 사운드 전문가
 - g. 영화 음향 편집 전문가
 - h. 영화 매니저
 - i. 영화 음악 전문가
 - j. 영화 예술 전문가
 - k. 영화 그래픽 전문가
 - l. 영화제작이자
 - m. 애니메이션 디자이너
- (3) 제2항 이외의 영화인력은 장관령으로 정한다.
- (4) 제2항 및 제3항의 영화제작자는 다음을 받는다.
 - a. 법적 보호
 - b. 위험한 영화사업에 대한 보험 보호
 - c. 직업 안전 및 건강 보장

d. 사회 보장

- (5) 미성년 영화인력에 대한 법적 보호는 아동의 권리를 충족하고 법령 규정에 따라야 한다.
- (6) 제4항 및 제5항의 법적 보호는 법령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서면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제 21 조

- (1) 영화제작 시 영화광고 제작을 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영화광고는 영화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제 22 조

- (1) 인도네시아 내 장소를 이용한 외국 측 촬영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행된다.
- (2) 외국 영화인력을 이용한 영화제작은 법령에 의거 진행된다.
- (3) 제1항 장관의 허가는 근무일 기준 최대 7일 이내에 무료로 발급된다.

제 3 부
영화기술서비스

제 23 조

- (1) 영화기술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a. 영화 촬영 스튜디오
 - b. 영화 촬영 시설
 - c. 영화 가공 실험실
 - d. 영화 편집 시설
 - e. 영화 사운드를 채우는 수단
 - f. 영화 자막 제공 수단
 - g. 인쇄 및/또는 영화 복제 수단
- (2) 제1항 이외의 영화제작 서비스는 장관이 정한다.

제 24 조

- (1) 영화기술서비스는 영화기술용역 활동주체 또는 영화기술서비스 사업주체가 수행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영화기술서비스 활동주체는 개인, 단체, 정부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 (3) 제1항의 영화기술서비스 사업주체는 인도네시아 법인이 있는 사업체이다.

제 4 부
영화배급

제 25 조

- (1) 영화배급은 영화배급 활동주체나 영화상영 사업주체에 의해 수행된다
- (2) 제1항의 영화배급 활동주체는 개인, 단체, 정부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3) 제1항의 영화배급 사업주체는 인도네시아 법인이 있는 사업체이다.

제 26 조

- (1) 제25조제3항의 영화상영 사업주체는 영화배급 사업주체에게 영화를 공급받기위해 공정한 권리와 대우를 제공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영화배급 사업주체에 대한 공정한 권리 및 대우에는 영화상영 사업주체가 영화에 동등하게 적용하는 명확한 우선 순위 기준에 따라 사본 영화를 얻을 수 있는 권리와 대우가포함된다.

제 27 조

- (1) 영화상영 사업주체는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 영화배급업자에게 공정한 권리와 대우를 제공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영화상영 사업주체에 대한 공정한 권리 및 대우에는 영화상영 사업주체에 대한 영화상영 사업주체가 영화에 동등하게 적용하는 명확한 우선 순위 기준에 따라 상영 시간을획득할 수 있는 권리 및 대우가 포함된다.

제 28 조

- (1) 장관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영화배급 체제를 결정한다.
- (2) 제1항의 배급 시스템은 다음을 포함한다.
 - a. 당사자 간의 협력계약에서 규제되어야 하는 당사자의 주요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조항
 - b. 협력계약 준수 감독
 - c. 협력위반에 대한 제재
- (3) 제1항 및 제2항의 영화배급 시스템에 관한 추가 규정은 장관령으로 정한다.

**제 5 부
영화상영**

제 29 조

- (1) 영화상영은 영화상영 활동주체나 영화상영 사업주체가 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영화상영 활동주체는 개인, 단체, 정부 및 지방정부가 포함된다.
- (3) 제1항의 영화상영 사업주체는 인도네시아 법인이 있는 사업체이다.

제 30 조

- (1) 영화상영은 다음을 통해 수행될 수 있다.
 - a. 대형 스크린
 - b. TV 방송
 - c. 정보 기술 네트워크
- (2) 제1항a의 대형 스크린을 통한 영화상영에는 다음 장소에서의 영화상영이 포함된다.
 - a. 영화관

- b. 영화관 외 건물
- c. 개방된 야외
- (3) 제1항의 영화상영은 제18조의 모든 영화제작 결과에 대해 프로젝션 또는 비 프로젝션 시스템으로 진행 할 수 있다.
- (4)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영화상영은 장관이 정한다.

제 31 조

- (1) TV 방송을 통한 제7조d의 21세 이상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영화상영은 현지 시간 23 :00 ~ 03:00에만 방영될 수 있다.
- (2) 21세 이상의 시청자를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영화상영은 영화감상 활동이나 교육 및/또는 연구 목적의 영화상영을 제외하고는 개방된 야외나 영화관 외 건물에서 상영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 32 조

제29조제3호의 영화상영 사업주체는 6개월 연속 영화상영 시간의 최소 60% 이상을 인도네시아 영화로 상영할 의무가 있다.

제 33 조

- (1) 제30조제2항a의 영화관에서 영화상영을 하는 영화상영 사업주체는 상영되는 각 영화 제목별 관객 수를 장관에게 주기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2) 장관은 영화에 상영되는 각 영화 제목에 대한 관객 수를 정기적으로 일반인에게 공표할 의무가 있다.

제 34 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및 제33조의 영화상영에 관한 추가 규정은 장관령으로 정한다.

제 6 부
영화판매 및 영화대여

제 35 조

- (1) 영화판매 및/또는 영화대여는 인도네시아 사업체 또는 인도네시아 국민 개인의 형태로 영화판매 사업주체 및/또는 영화대여사업주체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 (2) 제1항의 영화판매 및/또는 영화대여는 법령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제 7 부
영화감상

제 36 조

- (1) 영화감상은 영화감상 활동주체가 수행한다.
- (2) 제1항의 영화감상 활동주체의 주체로는 개인, 단체, 정부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제 37 조

- (1) 제36조의 영화감상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a. 영화제
 - b. 세미나, 토론 및 워크숍
 - c. 영화 평론 및 리뷰
- (2) 제1항의 영화감상은 정부 및/또는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 8 부
영화기록물**

제 38 조

- (1) 영화기록물은 영화기록물 활동주체 또는 영화기록물 사업주체가 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영화기록물 활동의 활동주체는 개인, 단체, 정부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 (3) 제2항의 정부는 인도네시아 영화기록물 센터를 설립한다.
- (4) 제1항의 영화기록물의 사업주체는 인도네시아 사업체 또는 인도네시아 국민 개인이어야 한다.
- (5) 제1항의 영화기록물은 정부 및/또는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6)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의 영화기록물에 관한 추가 조항은 장관령으로 정한다.

제 39 조

- (1) 영화제작 사업주체는 자신이 소유한 각 영화의 사본 중 하나를 영화가 마지막으로 상영된 날로부터 최대 1년 내에 인도네시아 영화기록물 센터에 기록물로 보관되도록 제출한다.
- (2) 영화제작 활동주체는 자신이 소유한 각 영화의 사본 중 하나를 인도네시아 영화기록물 센터에 자발적으로 제출하여 기록물로 보관한다.
- (3) 인도네시아 영화기록물 센터는 국가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다큐멘터리 영화의 사본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 (4) 제1항 및 제2항의 영화기록물 보관은 법령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제 9 부
영화수출과 영화수입**

제 40 조

- (1) 영화수출은 영화수출사업주체가 수행한다.
- (2) 영화수입은 영화수입사업주체가 수행한다.
- (3)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영화수출사업주체와 영화수입사업주체는 각각 인도네시아 법인인 사업체이다.

제 41 조

- (1) 정부는 국가의 종교, 윤리, 도덕, 예절 및 문화적 가치에 반하는 수입영화의 반입을 막을

의무가 있다.

- (2) 정부는 외국문화의 지배를 막기 위해 수입영화와 인도네시아 영화의 비율을 유지하여 수입영화를 제한할 의무가 있다.

제 42 조

- (1) 영화의 수입은 정부가 자기 이익을 위해 인정하는 외교 대표 또는 국제 기구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 (2) 제1항의 수입영화는 장관에게 고지 한 경우에만 일반 대중에게 상영될 수 있다.

제 43 조

영화 사업주체는 교육 및/또는 연구 목적으로 수입된 영화를 제외하고 수입영화를 인도네시아어로더빙할 수 없다.

제 44 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및 제43조의 영화수출 및 영화수입에 관한 추가 규정은 장관령으로 정한다.

제 4 장 권리와 의무

제 1 부 시민사회의 권리와 의무

제 45 조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 a. 영화활동 및 영화사업에서 서비스를 얻는다.
- b. 고품질 영화를 선택하고 즐긴다.
- c. 영화활동주체 및 영화 사업주체가 된다.
- d. 영화상영 시설 및 인프라를 확보한다.
- e. 영화를 발전시킨다.

제 46 조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 a. 안전, 평화, 질서, 청결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영화제작과 영화상영 시 예의 바르게 행동하도록 돕는다.
- b. 영화 시설 및 인프라 유지 관리를 지원한다..
- c. 영화 관람객의 연령 분류에 관한 조항을 준수한다.

제 2 부 영화인력의 권리와 의무

제 47 조

모든 영화인력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a. 영화 분야에서 창작, 혁신 작업
- b. 직업 안전 및 건강 보장
- c. 사회 보장
- d. 법적 보호
- e. 영화사업주체와 동등한 업무 파트너
- f. 윤리 강령을 가진 전문 조직 구성
- g. 위험한 영화활동에 대한 보험 가입
- h. 역량 기준에 따른 수입 보장
- i. 계약에 따른 사례금 및/또는 로열티

제 48 조

모든 영화인력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 a. 영화 분야의 역량 표준 충족
- b. 전문적인 방식으로 작업 수행
- c. 서면으로 작성된 고용 계약 수행
- d. 국가의 종교, 윤리, 도덕, 예절 및 문화적 가치 준수

제 3 부 영화활동주체 및 영화사업주체의 권리와 의무

제 49 조

모든 영화 활동주체 및 영화 사업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 a. 영화 분야에서 창작, 혁신 작업
- b. 영화활동과 영화사업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동일한 기회 보장
- c. 법적 보호
- d. 윤리 강령이 있는 조직 및/또는 활동 또는 사업 협회 설립
- e. 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과 시설 제공

제 50 조

(1) 모든 영화 활동주체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 a. 영화 분야에서 역량 발휘
- b. 영화활동에서 국가의 종교, 윤리, 도덕, 예절 및 문화적 가치 준수

(2) 모든 영화 사업주체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a. 영화 분야의 역량과 사업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다.
- b. 영화사업에서 국가의 종교, 윤리, 도덕, 예절 및 문화적 가치를 유지한다.

- c. 업무 파트너와 서면으로 작성된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한다.

제 5 장 정부 및 지역 정부의 의무, 임무 및 권한

제 51 조

정부는 다음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 a. 영화의 발전과 번영 촉진
- b. 영화의 과학 및 기술 발전 촉진
- c. 영화감상 및 기록물을 위한 재정 지원
- d. 제32조 인도네시아 영화의 가용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영화제작 촉진

제 52 조

정부는 인도네시아 영화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국가 영화에 대한 정책 및 마스터 플랜의 실행을 편집, 규정 및 조정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제 53 조

정부는 영화에 대한 특정 세금 및 수입 관세 감면을 제공할 권한이 있다.

제 54 조

지방정부는 다음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 a. 영화의 발전과 번영 촉진
- b. 영화감상 및 기록물을 위한 재정 지원
- c. 제32조 인도네시아 영화의 가용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영화제작 촉진
- d. 지역 내 국가의 문화유산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제작 촉진

제 55 조

(1) 지방정부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가진다.

- a. 국가 영화 정책 및 마스터 플랜 수립
- b. 지역 영화 정책 및 계획 수립하고 실행
- c. 영화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시설과 인프라 제공

(2) 제1항b의 지역 영화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정부는 국가 영화 정책 및 기본계획 (마스터플랜)을 참고하여야 한다.

제 56 조

지방정부는 영화에 대한 특정 지방세 및 부과금 감면을 제공할 권한이 있다.

제 6 장 영화심의

제 57 조

- (1) 배급 및/또는 상영되는 모든 영화 및 영화광고는 심의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 (2) 제1항의 심의인증서는 다음을 포함하는 심의 후에 발급된다.
 - a. 일반 대중에게 배급 및/또는 상영 될 영화의 주제, 이미지, 장면, 사운드 및 자막에 대한 조사 및 평가
 - b. 일반 대중에게 배급 및/또는 상영 될 영화 및 영화광고의 적격성 결정
 - c. 영화 시청자의 연령 분류 결정
- (3) 제2항의 심의는 영화 및 영화광고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원칙으로 실시한다.

제 58 조

- (1) 제57조제2항 및 제3항의 심의를 수행하기 위해 영구적이고 독립적인 영화심의기관을 설립한다.
- (2) 제1항의 영화심의기관은 인도네시아공화국의 수도에 소재한다.
- (3) 영화심의기관은 장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책임을 진다.
- (4) 영화심의기관은 지방 주도에서 대표를 구성할 수 있다.

제 59 조

제57조제1항의 심의인증서는 영화심의기관에서 발급한다.

제 60 조

- (1) 제58조제1항의 영화심의기관은 제6조 및 제7조 규정의 영화심의 기준에 따라 심의를 실시한다.
- (2) 영화심의기관은 심의된 영화 소유자와의 대화 원칙에 따라 심의를 수행한다.
- (3) 영화심의기관은 제1항의 심의 기준 및 기준에 맞지 않는 주제, 영상, 장면, 소리, 자막이 포함된 영화는 수정을 위해 영화의 소유자에게 반환한다.
- (4) 영화심의기관은 제21조제2항의 조항에 의한 영화의 내용에 맞지 않는 영화광고는 수정을 위해 영화광고 소유자에게 반환한다.
- (5) 영화심의기관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무시한 영화 활동주체 또는 영화 사업주체에 대하여 정부에 행정제재를 청구할 수 있다.

제 61 조

- (1) 영화심의기관은 영화 시청자의 연령 분류 및 영화심의 기준을 대중화 한다.
- (2) 영화심의기관은 대중이 양질의 영화를 선택하고 즐길 수 있으며 영화 및 영화광고의 효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 (3) 영화심의기관은 양질의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영화 소유자에게 심의 지침과 및 기준을 집중적으로 지침 안내를 한다.

제 62 조

영화심의기관은 다음의 지원을 받는다.

- a. 사무국
- b. 심의 분야에서 유능한 심의 전문 인력

제 63 조

- (1) 장관은 선발을 통과 한 영화심의기관 예비위원을 대통령에게 제안한다.
- (2) 제1항의 선발은 장관이 구성하고 지명한 선정 위원회에서 한다.
- (3) 제2항의 선정 위원회는 영화이해관계자로 구성된다.
- (4) 영화심의기관 예비위원 선정 위원회는 정직하고 공개적이며 객관적으로 일한다.
- (5) 제4항의 예비위원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a. 35세 이상 70세 이하의 인도네시아공화국 국민이다.
 - b. 팡짜실라(Pancasila) 및 1945년 인도네시아공화국 헌법을 성실히 따른다.
 - c. 영화의 원리, 목적 및 기능을 이해한다.
 - d. 심의 업무 범위에 대한 능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e. 자신의 임무를 풀 타임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 64 조

- (1) 영화심의기관은 시민위원 12인과 정부위원 5인으로 구성된 1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2) 영화심의기관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1번에 한하여 재임명 될 수 있다.
- (3) 영화심의위원은 국회와 협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 (4) 제2항의 위원의 임명 및 해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65 조

- (1) 영화심의기관은 국가 세입 및 지출 예산과 지역 세입 및 지출 예산에서 지원 될 수 있다.
- (2) 영화심의기관은 심의 된 영화에 부과된 세율에서 자금을 받을 수 있다.
- (3) 제2항의 자금 운용은 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국민에게 고시되어야 한다.
- (4) 제2항의 자금에는 비과세 수입이 포함되지 않는다.

제 66 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및 제65조의 영화심의기관의 전문인력 및 사무국 뿐만 아니라 구성, 지위, 회원, 지침 및 기준에 관한 추가 규정은 정부령으로 정한다.

제 7 장 시민사회 참여

제 67 조

- (1) 시민사회는 영화 편성에 참여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시민사회 참여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수행될 수 있다.

- a. 영화감상 및 홍보
 - b. 영화 교육 및/또는 훈련 제공
 - c. 영화 과학 및 기술 개발
 - d. 영화기록물
 - e. 키네 클럽
 - f. 영화 박물관
 - g. 시상
 - h. 연구 및 개발
 - i. 영화 도움말 제공
 - j. 인도네시아를 외국 영화제작의 장소로 홍보
- (3) 제1항의 시민사회 참여는 개별적으로 또는 그룹으로 수행될 수 있다.

제 68 조

- (1) 제67조제2항a.g.h.i.j.에 따라 영화 산업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인도네시아영화기관을 설립한다.
- (2) 제1항의 인도네시아 영화기관의 설립은 시민사회가 수행하고 정부가 촉진할 수 있다.
- (3) 인도네시아 영화기관은 민간 및 독립 기관이다.
- (4) 인도네시아 영화기관은 인도네시아공화국의 수도에 소재한다.
- (5) 인도네시아 영화기관은 대통령이 설립한다.

제 69 조

제68조의 인도네시아 영화기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가진다.

- a. 국내에서 영화제 개최
- b. 해외 영화제 참여
- c. 해외에서 영화 주간 개최
- d. 인도네시아를 외국 영화제작 장소로 홍보
- e. 영화 진행에 대한 정보 제공
- f. 영화 연구 및 개발을 수행
- g. 시상
- h. 양질의 특정 영화제작 자금 조달을 촉진

제 70 조

- (1) 제68조의 기관의 자금 출처는 다음과 같다.
 - a. 이해관계자
 - b. 법령 규정에 따라 합법적이며 구속력이 없는 기타 출처
- (2) 국가 세입 및 지출 예산 및/또는 지역 세입 및 세출 예산에서 발생하는 자금 지원은 법령 규정에 따른 보조금이다.
- (3) 비 국가 세입 및 지출 예산과 비 지역 세입 및 지출 예산에서 발생하는 자금 관리는 반드시 공인 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대중에게 발표되어야 한다.

제 8 장 시상

제 71 조

- (1) 국내 및/또는 국제적 수준에서 성과를 거둔 영화는 시상한다.
- (2) 제1항의 시상은 법령 규정에 따라 정부 및/또는 지방정부가 수여한다.

제 72 조

- (1) 영화의 발전에 탁월하거나 기여한 영화인력, 영화활동주체, 영화사업주체는 시상한다.
- (2) 제1항의 시상은 정부, 지방정부 및/또는 시민사회가 수여한다.
- (3) 제1항과 제2항의 시상은 명예, 장학금, 보험, 고용 또는 수혜자에게 유익한 기타 형태의 보상의 형태일 수 있다.
- (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수여는 법령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제 9 장 교육, 역량 및 인증

제 73 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영화인력의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을 조직 및/또는 촉진한다.

제 74 조

- (1) 영화인력은 역량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2) 제1항의 역량 기준은 역량 인증을 통해 수행한다.
- (3) 역량 인증은 전문 기관, 전문 인증기관 및/또는 대학에서 수행한다.
- (4) 제2항 및 제3항의 역량 인증은 법령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 10 장 재정

제 75 조

영화 재정은 정부, 지방정부, 영화 활동주체, 영화 사업주체 및 시민사회의 공동 책임이다.

제 76 조

영화 재정 관리는 공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공공 책임의 원칙에 따라 수행된다.

제 77 조

영화 자금 출처는 다음에서 얻을 수 있다.

- a. 국가 세입 및 지출 예산을 통해 정부 및 지역 세입 및 지출 예산을 통해 지방정부
- b.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민사회

- c. 상호 협력
- d. 구속력이 없는 외국 원조
- e. 법령 규정에 근거한 기타 합법적인 출처

제 11 장 행정제재

제 78 조

제6조, 제7조,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1조, 제33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3조 및 제57조제1항의 조항에 대한 위반은 행정 제재를 받는다.

제 79 조

- (1) 제78조의 행정제재는 다음과 같은 형태일 수 있다.
 - a. 서면 경고
 - b. 행정 벌금
 - c. 임시 폐쇄
 - d. 면허의 박탈 또는 취소
- (2) 행정제재 부과 절차 및 행정 벌금액에 관한 추가 조항은 정부령으로 정한다.

제 12 장 형사규정

제 80 조

심의를 통과하지 않고 대중에게 고의로 영화를 배포, 판매, 대여 또는 상영한 자는 그 내용이 제6조의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알려 지거나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Rp10,000,000,000.00(백억 루피아)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81 조

- (1) 제12조의 독점 관행 및 불공정한 사업 경쟁을 초래하는 상영 시간의 50%를 초과하는 특정 영화의 배급 또는 수입을 한 영화제작 사업주체의 영화만 상영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Rp100,000,000,000.00(천억 루피아)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영화 사업주체와 계약하거나 다른 영화 사업주체가 영화물을 제공 또는 수취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제13조의 독점 관행 및/또는 불공정한 사업 경쟁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Rp100,000,000,000.00(천억 루피아)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조항에 위반되는 사안의 처리는 법령에 따라 수행된다.

제 82 조

- (1) 제80조 및 제81조의 범죄 행위가 법인에 의해 또는 법인을 대신하여 범한 경우 벌금의 1/3이 가산된다.
- (2) 제80조 및 제81조의 범죄 행위가 법인에 의해 또는 법인을 대신하여 저질러지는 경우 다음에 처벌이 부과된다.
 - a. 법인(기업)
 - b. 법인(기업) 경영진
- (3) 제2항의 처벌과는 별도로, 기업은 다음과 같은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a.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 박탈
 - b. 영업 허가 취소

제 83 조

- 다음의 자가 저지른 범죄 행위는 기업 범죄로 간주된다.
- a. 기업을 대신하여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경영진
 - b.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기업을 대표하는 사람
 - c. 기업을 통제할 권한이 있는 사람

제 13 장 유보규정

제 84 조

이 법이 시행될 때 기존 영화심의위원회는 영화에 관한 법률 1992년 제8호(1992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제32호, 인도네시아공화국 추가 관보 제3473호)에 따라 영화심의기관 위원이 임명될 때까지 임무와 기능을 유지한다.

제 85 조

- 이 법이 발효되면:
- a. 영화상영 사업주체는 이 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32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b. 영화제작 사업주체는 이 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39조제1항의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 c. 영화인력은 이 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74조제1항의 역량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 14 장 부칙

제 86 조

제58조제1항의 영화심의기관은 이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설립되어야 한다.

제 87 조

이 법이 공포되면:

- a. 영화에 관한 법률 1992년 제8호(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제32호, 인도네시아공화국 추가 관보 제3473호)의 시행 규정 및 모든 법령 규정은 이 법의 규정과 위배되거나 새로운 규정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유효하다.
- b. 영화에 관한 법률 1992년 제8호(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제32호, 인도네시아공화국 추가 관보 제3473호)에 따라 설립된 기관과 그 시행 규정은 정부가 그 기관을 설립하거나 변경할 때까지 임무와 기능을 계속 수행한다.

제 88 조

이 법에 대한 시행 규정은 이 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확정되어야 한다.

제 89 조

이 법이 시행될 때 영화에 관한 법률 1992년 제8호(1992년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제32호, 인도네시아공화국 추가 관보 제3473호)는 취소되고 무효가 된다.

제 90 조

이 법은 제정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이 법률의 제정을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에 게재할 것을 명한다.**

2009 년 10 월 8 일
자카르타에서 승인됨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

서명.
(수실로 밤방 유도유노)
DR. H. SUSILO BAMBANG YUDHOYONO

2009 년 10 월 8일
자카르타에서 제정됨
인도네시아공화국 법무인권부 장관

서명.
(안디 마탈라따)
ANDI MATTALATTA

영화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법률 2009년 제33 호에 대한 해설

1. 해설

1998년 개혁 운동의 요구 사항 중 하나는 영화 분야를 포함한 정치 및 문화 분야에서 개혁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영화의 지위가 정치에서 문화로 바뀌고 과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사상이 생겨났다.

영화의 원칙에 따라 표현되는 문화 예술 작품으로서의 영화는 문화적 현상이다. 이것은 영화가 사회, 국가, 국가의 가치, 아이디어, 규범, 인간 행동의 체계뿐만 아니라 아름다움, 기술적 정교함을 결합하여 수행되는 시민의 창조적 과정의 결과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화는 많은 조직된 사람들의 공동 작업으로 개발되는 일련의 중요한 아이디어와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치를 매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는 그 품질과 타당성을 결정하는 성격, 비전 및 사명을 가진 사회 기관이다. 이것은 공동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능력과 헌신, 기술 발전 및 기타 자원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소리의 유무에 관계없이 상영할 수 있는 문화 예술 작품으로서의 영화는 중요한 아이디어를 담은 메시지를 대중(관객)에게 큰 영향력으로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매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는 교육, 오락, 정보 및 창의적 작업 장려 기능을 가지고 있다. 영화는 공정한 사업 경쟁의 원칙을 고려하여 시민사회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경제적 기능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영화는 사회, 민족 및 국가에서 인간 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다룬다.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것을 영화라고 하며 비상업적 활동과 상업 사업을 포함한다. 비상업적 활동은 활동주체가 수행하고, 상업적인 활동은 사업주체가 수행한다. 이 모든 것은 법정 규정에서 규제되는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가진 영화인력, 정부, 지방정부 및 시민사회의 사람들을 포함한다.

영화는 국내에서 만들어지며 모든 효과를 가지고 해외에서 수입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와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고 상영되는 해외에서 수입된 영화는 고귀한 도덕을 구축하고, 국민 생활의 지성을 실현하고, 국가 단결과 청렴을 유지하고, 국민의 존엄성을 높이고, 국가 문화 가치를 개발하고 보존하며, 대중의 복지를 높이고, 생동감 있고 지속 가능한 국가 문화를 기반으로 한 영화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수출되는 인도네시아 영화는 주로 인도네시아 문화를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고 상영되기 전 영화를 심의하고 영화심의기관에서 발급한 심의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심의는 기본적으로 폭력, 도박, 마약 남용, 향정신성 물질 및 기타 중독성 물질의 장려, 음란물, 신성 모독, 괴롭힘 및/또는 종교적 가치에 대한 명예 훼손 또는 외국문화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심의는 심의 된 영화의 소유자, 즉 영화활동주체, 영화사업주체, 정부가 인정하는 외교 대표

또는 국제기구와의 대화 원칙에 따라 수행된다. 심의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테마, 이미지, 장면, 사운드 및 자막이 포함된 영화는 심의 지침 및 기준에 따라 수정을 위해 영화 소유자에게 반환된다.

영화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할 의무 외에도 사람들은 개별적으로나 그룹으로 영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시민사회 참여는 시민사회에 의해 구성되고 정부에 의해 촉진 될 수 있는 인도네시아 영화기관에서 제도화 된다. 해당 기관은 주로 영화의 감상과 홍보를 높이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영화의 전략적 역할을 감안할 때 영화 개발, 영화심의기관 및 인도네시아 영화기관을 위한 자금은 국가 수입 및 지출 예산과 지역 수입 및 지출 예산에 할당된다. 정부와 지방정부는 인도네시아 영화를 홍보하고 보호 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 대통령은 자신의 직무와 권한을 문화담당 장관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영화에 관한 법률 1992년 제8 (1992년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제32호, 인도네시아공화국 추가 관보 제3473호 보충)는 더 이상 영화의 발전과 그 시대의 정신에 맞지 않음으로 폐지하고 교체되어야 한다.

2. 각 조별 해설

제 1 조

충분히 설명됨

제 2 조

- a. “유일신의 원칙” 이 의미하는 것은 영화는 하나님을 가장 거룩하고 위대하며 가장 큰 창조자로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 b. “인도주의 원칙” 이 의미하는 것은 영화는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과 거주자의 존엄성과 지위뿐만 아니라 인권에 대한 보호와 존중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 c. “다양성의 원칙” 이 의미하는 것은 영화가 인도네시아 영토 전역에 걸쳐 살고 있는 사회 문화적 다양성을 적절히 고려하고 존중한다는 것이다.
- d. “정의의 원칙” 이 의미하는 것은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을 위해 영화를 준비할 때 동등한 기회와 대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 e. “혜택의 원칙” 이 의미하는 것은 영화가 인도네시아 사회, 국민 및 국가에 혜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 f. “법적 확실성의 원칙” 이 의미하는 것은 영화는 법과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g. “공생의 원칙” 이란 영화는 함께 발전하는 정신으로 수행된다는 것이다.
- h. “파트너십의 원칙” 이 의미하는 것은 영화가 상호 이익, 강화 및 지원협력을 기반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 I. “복지의 원칙” 이 의미하는 것은 영화는 선, 안전 및 이익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제 3 조 ~ 제 4 조

충분히 설명됨

제 5 조

“국가의 종교, 윤리, 도덕, 예절 및 문화적 가치를 준수한다” 는 의미는 영화활동에서 창조, 혁신 및 일할 수 있는 자유가 일치해야 하며 국가의 종교, 윤리, 도덕, 예절 및 문화적 가치와 반하지않는다는 것이다.

제 6 조

- a. “대중에게 폭력과 도박, 마약, 향정신성 물질 및 기타 중독성 물질의 남용을 조장하는 내용을포함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의 의미는 영화의 내용이 일반 대중이 마약, 향정신성 물질 및 기타 중독성 물질의 남용뿐만 아니라 폭력 및 도박 행위를 모방하도록 움직일 수 있게 하는것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 b. “포르노를 부각” 의 의미는 영화의 내용이 외설적이거나 사회에서 품위의 규범을 위반하는성적 착취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 c. “유발” 의 의미는 영화에 집단 간, 민족 간, 인종 간 및/또는 계층간 수평 갈등과 대립을 유발하는 선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 d. “모욕, 경멸 및/또는 종교적 가치를 더럽히는 행위” 의 의미는 영화의 내용에 종교적 가르침에 대한 모독, 모욕, 경멸 및 명예 훼손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다.
- e ~ f 충분히 설명됨

제 7 조 ~ 제 9 조

충분히 설명됨

제 10 조

- (1) 충분히 설명됨
- (2) “국내 자원” 이란 인도네시아의 영화인력, 자연, 재료 및/또는 제품, 서비스, 장비, 시설 및 국가문화재를 포함한다.
- (3) 충분히 설명됨

제 11 조

- (1) “수직 통합” 이란 두 가지 이상 유형의 사업으로 구성된 상위에서 하위로 영화 공급을 받는 소스 및/또는 다른 당사자에게 영화 공급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통제를 의미한다.
- (2) 충분히 설명됨

제 12 조 ~ 제 18 조

충분히 설명됨

제 19 조

- (1) “스토리 영화” 는 실험 영화와 애니메이션 영화를 포함하여 스토리가 포함된 모든 영

화이다.

“비 스토리 영화” 는 애니메이션 영화, 광고 영화(광고 자료가 포함된 영화), 실험 영화, 예술 영화, 교육 영화 및 다큐멘터리 영화 등 정보를 전달하는 모든 영화이다.

(2) 충분히 설명됨

제 20 조

(1) ~ (4) 충분히 설명됨

(5) “미성년 영화인력에 대한 법적 보호” 가 의미하는 것은 주로 학습권과 놀 권리의 이행에 관한 보호이다.

(6) 충분히 설명됨

제 21 조

(1) “영화광고” 란 포스터, 스틸 사진, 슬라이드, 클리셰, 예고편, 배너, 팸플릿, 브로슈어, 광고판, 현수막, 폴더, 플래카드, 출판물 및 기타홍보 수단이다. (2) 충분히 설명됨

제 22 조 ~ 제 31 조 충분히 설명됨

제 32 조

“6개월 연속 영화상영 시간의 최소 60% 이상을 인도네시아 영화로 상영 할 의무” 는 품질이 없는 영화상영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6개월 연속 영화상영 시간의 최소 60% 이상을 인도네시아 영화로 상영 할 의무”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a. 1개의 스크린을 가진 1개의 영화관을 소유한 영화상영 사업주체의 경우, 영화관에서 스크린 사용의 총 상영 시간에 대해 비율이 계산된다.
- b. 1개 이상의 스크린을 가진 영화관 1개를 소유한 영화상영사업주체의 경우, 모든 스크린의 총 상영 시간에 대해 비율이 계산된다. 그리고
- c. 1개 이상의 영화관을 소유한 영화상영 사업주체의 경우, 모든 영화관에 있는 모든 스크린의 총 상영 시간에 대해 비율이 계산된다.

TV 방송을 통한 “6개월 연속 영화상영 시간의 최소 60% 이상을 인도네시아 영화로 상영 할 의무” 라는 용어는 1개의 TV 방송 기관을 의미한다.

제 33 조 ~ 제 34 조

충분히 설명됨

제 35 조

(1) “영화판매 및/또는 영화대여” 란 상점, 키오스크 또는 기타 판매 및/또는 대여 장소에서 일반인이 구매 및/또는 대여 할 영화를 제공하는 것이며 영화상영 활동주체 및/또는 영화상영 사업주체에게 영화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2) 충분히 설명됨

제 36 조 ~ 제 50 조

충분히 설명됨

제 51 조

“촉진”이란 정부가 영화 센터를 포함한 시설과 인프라의 가용성을 통해 영화제작에 지원과 편의를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제 52 조 ~ 제 55 조

충분히 설명됨

제 56 조

“특정 지방세 및 부과금”은 영화수출, 영화 자재 및 장비 수입, 영화 상영에 대한 지방세 및 부과금에 대한 세금 및 수입 관세 감면이다.

제 57 조 ~ 제 59 조

충분히 설명됨

제 60 조

(1) 충분히 설명됨

(2) “대화 원칙”이란 영화의 소유자에게 심의 중인 영화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주고받도록 초대하는 것이다.

“심의 된 영화의 소유자”는 영화활동주체, 영화사업주체, 정부에서 인정하는 외교 대표 또는 국제 기구를 의미한다.

(3) ~ (5) 충분히 설명됨

제 61 조

(1) 충분히 설명됨

(2) “대중을 돕는다”라는 의미는 다음이 포함된다.

a. 양질의 영화를 선택하고 즐길 수 있도록 영화 소유자가 대중에게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원한다.

b. 사회가 영화상영과 영화광고의 효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미디어를 위한 교육 자료를 게시한다.

(3) 충분히 설명됨

제 62 조

충분히 설명됨

제 63 조

(1) ~ (2) 충분히 설명됨

(3) “영화이해관계자”는 정부와 지방정부, 영화활동주체, 영화사업주체 및 대중을 말한다.

(4) ~ (5) 충분히 설명됨

제 64 조

(1) ~ (2) 충분히 설명됨

(3) 이 조항에서 “국회와의 협의” 가 의미하는 것은 적합하고 적절한 테스트는 아니다.

(4) 충분히 설명됨

제 65 조

(1) 국가 세입 및 지출 예산 및 지역 세입 및 지출 예산에서 발생하는 자금 지원은 운영비로만 사용된다.

(2) ~ (4) 충분히 설명됨

제 66 조 ~ 제 68 조

충분히 설명됨

제 69 조

a. 인도네시아 영화기관은 인도네시아에서 영화제를 개최하는 유일한 조직이 아니다.

b. 인도네시아 영화기관은 외국 영화제에 참여하는 유일한 기관이 아니다.

c. 인도네시아 영화기관은 영화 주간을 주최하는 유일한 기관이 아니다.

d. ~ g. 충분히 설명됨

h. 이 조항에서 “특정 영화제작 자금 조달을 촉진” 은 교육, 문화, 애국심, 국가투쟁의 역사를포함하는 영화와 국제적 성과를 달성할 잠재력이 있는 영화에만 제공된다.

제 70 조 ~ 제 90 조

충분히 설명됨

인도네시아공화국 추가 관보 제5060호

**영화배급, 상영, 수출 및 수입에 관한
문화교육부 장관령 2019년 제34호
PERATURAN MENTERI PENDIDIKAN DAN
KEBUDAYAAN REPUBLIK INDONESIA
NOMOR 34 TAHUN 2019
TENTANG TATA EDAR, PERTUNJUKAN,
EKSPOR, DAN IMPOR FILM**

**전능하신 신의 은총으로
인도네시아공화국 문화교육부 장관은**

고려함:

영화에 관한 법률 2009년 제33호의 제28조제3항, 제34조, 제44조의 규정을 이행하기위해서 영화의 배급, 상영, 수출 및 수입에 관한 문화교육부장관령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검토함:

1. 국가 부처에 관한 법률 2008년 제39호(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2008년 제166호, 인도네시아공화국 추가 관보 제4916호)
2. 영화에 관한 법률 2009년 제33호(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2009년 제141호, 인도네시아공화국 추가 관보 제5060호)
3. 문화교육부에 관한 대통령령 2015년 제14호(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2015년 제15호), 문화교육부에 관한 대통령령 2015년 제14호로 개정된 2018년 대통령령 제101호(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2018년 제192호)
4. 문화교육부 조직 및 업무 절차에 관한 문화교육부 장관령 2018년 제11호(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2018년 제575호), 문화교육부 조직 및 업무 절차에 관한 문화교육부 장관령 2019년 제9호(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2019년 제236호)

결정함:

확정: 영화의 배급, 상영, 수출 및 수입에 관한 문화교육부 장관령

제 1 장 총칙

제 1 조

이 장관령에서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1. 영화(Film)는 소리의 유무에 관계없이 영화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지는 대중 소통의 사회적 제도이자 매체인 문화 예술 작품으로 상영될 수 있다.
2. 영화배급(Pengedaran Film)은 영화관, 비 영화관 건물, 개방된 야외, TV 방송, 정보 기술 네트워크를 통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인도네시아 영화 및 수입영화를 배급하는 것이다.
3. 영화제작 신고증명 (Tanda Pemberitahuan Pembuatan Film, 약칭TPPPF)은 영화제작을 신고한 영화제작 사업주체에게 장관이 발급하는 인증이다.
4. 영화상영(Pertunjukan Film)은 프로젝션 또는 비 프로젝션 시스템이 있는 영화를 대형 스크린, TV 및 정보 기술 네트워크를 통해 상영하는 것이다.
5. 영화수출(Ekspor Film)은 판매, 대여 또는 기타 거래를 통해 공식적으로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기 위해 인도네시아공화국 영토 외부에 물리적 또는 비 물리적 형태로 영화를 보내는 과정이다.
6. 영화수입(Import Film)은 영화를 구매, 대여 또는 기타 거래를 통해 사용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인도네시아공화국 영토에 물리적 또는 비 물리적 형태로 영화를 반입하는 과정이다.
7. 영화배급 사업주체(Pelaku Usaha Pengedaran Film)는 인도네시아 법인이 있는 사업 주체로 영화상영 사업주체에게 영화를 배급하는 자이다.
8. 영화상영 사업주체(Pelaku Usaha Pertunjukan Film)는 인도네시아 법인이 있는 사업 주체로 영화관에서 영화상영을 하기 위한 사업허가를 취득한 자이다.
9. 관객 수(Jumlah Penonton)는 상영되는 영화 제목에 대한 판매 및/또는 기타 거래를 통해 판매된 티켓 수로 표시되는 관객 수다.
10. 영화 사본(Kopi-jadi Film)은 심의인증서와 함께 대형 화면에서의 영화 기술 표준에 따라 영화의 최종 버전을 녹음한 사본이다.
11. 심의인증서 (Surat Tanda Lulus Sensor, 이하 STLS)는 각 영화 및 영화광고가 배급 및/또는 상영 될 수 있도록 영화심의원에서 발급하는 증서이다.
12. 중앙정부 (Pemerintah Pusat, 이하 정부)는 1945 년 인도네시아공화국 헌법에 따른 부통령과 장관들의 도움을 받아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의 권한을 보유한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대통령이다.
13. 장관(Menteri)은 문화 분야에서 정부 업무를 담당하는 장관이다.

제 2 장 영화배급

제 1 부 통칙

제 2 조

영화배급 범위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a. 영화배급 사업주체의 의무 및 권리
- b. 영화상영 사업주체의 의무 및 권리
- c. 협력계약 준수 감독

제 3 조

(1) 영화배급은 영화배급 사업주체가 영화상영 사업주체에게 한다.

(2) 제1항의 영화배급은 협력계약으로 정해야 한다.

(3) 제2항의 협력계약은 인도네시아어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적어도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a. 협력 당사자
- b. 협력 형태
- c. 영화 홍보 의무를 포함한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 d.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설명
- e. 영화 사본의 수
- f. 상영 스크린 수 및 상영 시간
- g. 상영 날짜와 시작일
- h. 관객 수 보고 시기 및 방법
- i. 스크린 수 또는 상영 시간을 줄이거나 늘리기 위한 조건으로 최소 관객 수에 관한 규정
- j. 영화 사본 및 심의인증서 제출 마감일

제 4 조

(1) 제3조제2항에 따라 체결된 협력계약은 영화개발분야의 기능을 수행하는 온라인미디어 부서를 통해 영화배급 사업주체가 보내거나 다운로드한다.

(2) 영화배급 사업주체는 영화개발분야에서 기능을 수행하는 온라인미디어부서를 통해 협력 계약 기간 중 제1항의 협력계약 이행결과를 최소 1회 이상 보고한다.

제 2 부 영화배급 사업주체의 권리 및 의무

제 5 조

영화배급 사업주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영화상영 사업주체에 의해 상영되는 영화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 a. 영화배급 사업주체의 내부 심사 결과, 영화를 상영하기 위한 시설 및 인프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b. 이전 협업에 대해 계약 위반을 한 적이 있는 경우

제 6 조

- (1) 영화상영 사업주체는 영화를 받기 위해 영화배급 사업주체에게 공정한 권리와 대우를 제공해야 한다.
- (2) 제1항의 영화상영 사업주체의 공정한 권리와 대우에는 영화배급 사업주체가 영화상영 사업주체에게 동등하게 적용하는 명확한 우선 순위 기준에 따라 영화 복제를 받을 권리와 대우가 포함된다.
- (3) 제2항의 명확한 우선 순위의 기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영화배급 사업주체가 수행한다.
 - a. 영화개발분야의 기능을 수행하는 온라인미디어부서의 영화배급 순서 목록을 통해 예정된 개봉일 3개월 전에 개봉할 영화의 제목을 발표한다.
 - b. 예정된 영화상영 사업주체에게 공식 협력 제안서를 보낸다.

제 3 부

영화상영 사업주체의 권리와 의무

제 7 조

영화상영 사업주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 영화상영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 a. 배급 예정인 영화가 영화상영 사업주체의 내부 평가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b. 영화배급 사업주체가 이전 협업에 대해 계약 위반을 한 적이 있는 경우

제 8 조

- (1) 영화상영 사업주체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 영화배급 사업주체에게 공정한 권리와 대우를 제공해야 한다..
 - a. 영화개발 분야에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에서 발급한 영화제작 신고 증명이 있다.
 - b. 상영될 영화가 영화상영 사업주체가 정한 기술 표준을 충족한다.
 - c. 상영될 영화에 대한 영화광고가 있다.
 - d. 영화심의회에서 발급한 심의인증서가 있다.
- (2) 영화배급 사업주체의 공정한 권리 및 대우에는 영화배급 사업주체가 영화상영 사업주체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명확한 우선 순위 기준에 따라 상영 시간 및 상영 스크린의 수를 획득할 수 있는 권리와 대우가 포함된다.
- (3) 제2항의 명확한 우선 순위 기준은 다음과 같다.
 - a. 심의인증서의 발급 번호 순서
 - b. 영화개발 분야에서 기능을 수행하는 온라인미디어부서의 영화배급 순서 목록의 순서
 - c. 영화상영 사업주체가 받은 영화상영 협력 제안 문서 순서
 - d. 영화제작 신고증명의 발급 번호 순서

제 9 조

- (1) 영화상영 사업주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 상영 시간을 취소하고 다른 영화 배급 사업주체에게 상영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 a. 영화배급 사업주체가 협력계약에 따라 영화상영 사업주체에게 영화 사본을 양도하지 않을 때
 - b. 영화배급 사업주체가 양도한 영화제작 사본에 심의인증서가 없을 때
- (2) 영화상영 사업주체는 영화상영의 기술 표준 및 심의인증서에 포함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영화배급 사업주체의 영화 사본을 거부할 의무가 있다.
- (3) 제2항의 거부가 있는 경우, 영화배급 사업주체는 기술 표준 및 심의 인증서에 포함된 규정에 따라 영화제작 사본으로 교체할 의무가 있다.
- (4) 영화상영 사업주체는 다른 당사자가 민사 분쟁 및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영화상영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 10 조

영화상영 사업주체는 영화심의원의 심의에 따라 장관이 영화를 배급에서 철회한다고 선언한 경우 영화상영을 취소해야 한다.

제 4 부 감독

제 11 조

- (1) 영화개발분야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는 제4 의 협력계약의 준수를 감독해야 한다.
- (2) 제1항의 협력계약의 준수에 대한 감독은 영화개발분야의 기능을 수행하는 온라인미디어 부서를 통해 수행된다.
- (3) 협력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영화개발분야의 기능을 수행하는 온라인 미디어부서를 통해 보고할 수 있다.
 - a. 당사자 일방이 제3조제3항에 규정된 내용에 대해 협력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는 경우
 - b. 당사자 일방이 협력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 (4) 영화개발분야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3항의 분쟁 해결을 지원한다.

제 3 장 영화상영

제 12 조

- (1) 영화상영은 다음을 통해 수행될 수 있다.
 - a. 대형 스크린
 - b. TV 방송
 - c. 정보 기술 네트워크

- (2) 제1항a의 대형 스크린을 통한 영화상영에는 다음의 영화상영이 포함된다.
 - a. 영화관
 - b. 비 영화관 건물
 - c. 개방된 야외

제 13 조

- (1) 21세 이상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TV 방송을 통한 영화상영은 현지 시간으로 23:00 ~03:00까지만 가능하다.
- (2) 21세 이상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영화상영은 영화 감상 활동이나 교육 및/또는 연구 목적을 위한 영화상영을 제외하고는 개방된 야외나 비 영화관 건물에서 개최할 수 없다.
- (3) 상영 시간에 상영되는 영화광고는 상영되는 영화와 연령 기준이 같아야 한다.

제 14 조

- (1) 영화상영 사업주체는 6개월 연속 영화상영 시간의 최소 60% 이상을 인도네시아 영화로 상영할 의무가 있다.
- (2) TV 방송을 통해 6개월 연속 영화상영 시간의 최소 60% 이상을 인도네시아 영화로 즉, 1개의 TV 방송기관에서 상영 시간 사용에 대한 비율로 계산하여 상영할 의무가 있다.
- (3) 영화관에서 6개월 연속 영화상영 시간의 최소 60% 이상을 인도네시아 영화로 상영할 의무 조항은 다음과 같다.
 - a. 1개의 스크린을 가진 1개의 영화관을 소유한 영화상영 비즈니스 주체의 경우, 영화관에서 스크린 사용의 총 상영 시간에 대해 비율이 계산된다.
 - b. 1개 이상의 스크린을 가진 영화관 1개를 소유한 영화상영 사업주체의 경우, 모든 스크린의 총 상영 시간에 대해 비율이 계산된다.
 - c. 1개 이상의 영화관을 소유한 영화상영 사업주체의 경우, 모든 영화관에 있는 모든 스크린의 총 상영 시간에 대해 비율이 계산된다.

제 15 조

영화상영 사업주체는 자신이 소유한 모든 영화관에 있는 모든 스크린의 총 상영 시간의 50% 이상을 1인의 영화제작 사업주체 또는 1인의 영화배급 사업주체 또는 1인의 영화수입 사업주체의 영화를 6개월 연속 상영할 수 없다.

제 16 조

- (1) 장관은 제14조의 영화상영 사업주체의 영화상영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영화제작을 촉진한다.
- (2) 장관이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영화상영 사업주체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

제 17 조

- (1) 영화관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상영 사업주체는 상영되는 각 상영 영화 제목의 관객 수를 장관에게 정기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 (2) 제1항의 정기적인 관객 수 통보는 영화개발분야에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가 관객 수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통해 매월 말 실시한다.

- (3) 제2항의 관객 수 데이터 수집 시스템은 인도네시아 영화 및 수입영화를 포함하여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각 영화에 대해 얻은 관객 수를 포함하는 정보 기술 및 영화 데이터 통신 수단이다.
- (4) 제1항의 관객 수 통보에는 각 영화관 또는 장소에서 상영 시간 마다 상영되는 각 영화 제목의 관객 수가 포함된다.

제 18 조

- (1) 장관은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각 영화 제목에 대한 누적 관객 수를 대중에게 공지할 의무가 있다.
- (2) 제1항의 누적 관객 수는 각 시/군의 영화 관객 수를 누적이한 것이다.
- (3) 제1항의 공지는 매월 초 정기적으로 영화 개발분야의 기능을 수행하는 온라인미디어 부서를 통하여야 한다.

제 19 조

장관은 법령의 규정에 의거 관객 수 데이터 수집 시스템에 포함된 정보 및 데이터의 보안을 보장한다.

제 4 장 영화수출 및 수입

제 1 부 영화수출

제 20 조

영화수출은 인도네시아 문화와 인도네시아공화국의 외교적 이익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인도네시아 영화의 해외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행된다.

제 21 조

- (1) 장관은 인도네시아 영화수출의 증가를 장려한다.
- (2) 장관은 법령 규정에 따라 국제적인 상을 받은 인도네시아 영화에 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 2 부 영화수입

제 22 조

- (1) 영화수입은 다음을 위하여 수행된다.
 - a.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영화의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충족
 - b. 인도네시아 영화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식 교류 수단

- (2) 제1항의 수입영화는 국가의 종교, 윤리, 도덕, 예절 및 문화적 가치에 반하지 않는 영화이다.
- (3) 상영될 수입영화는 영화심의원에서 심의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제 23 조

- (1) 장관은 외국 문화의 지배를 막기 위해 수입영화와 인도네시아 영화의 비율을 유지하여 수입영화를 제한할 의무가 있다.
- (2) 제1항의 수입영화와 인도네시아 영화의 비율을 유지하여 수입영화에 대한 제한은 제1조의 관객 수 자료수집에 대한 모니터링 데이터의 평가를 기반으로 한다.

제 24 조

- (1) 영화수입 사업주체는 영화 사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 (2) 제1항의 영화 사업허가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제 25 조

- (1) 영화의 수입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인정하는 외교대표 또는 국제기구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자국의 이익은 해당 외교 지역 또는 국제기구 내에서 영화를 상영함으로써 이행된다.
- (3) 제1항의 수입영화는 장관에게 고지 한 경우에만 일반 대중에게 상영될 수 있다.
- (4) 제1항의 영화가 일반 대중에게 상영되는 경우, 외교대표 또는 국제기구는 외교대표 또는 국제기구에 의한 영화상영신고 증명을 받기 위해 장관에게 영화 상영 신고를 제출한다.
- (5) 제4항의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영화상영은 외교 구역 또는 국제기구의 외부에서 이루어지고 대중에게 공개된다.
- (6) 장관은 제4항의 외교대표 또는 국제기구에 의한 영화상영신고 증명을 발급함에 있어 영화개발 분야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 장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제 26 조

제25조제4항의 외교대표 또는 국제기구의 영화상영신고 제출은 다음을 포함하는 필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 a. 영화 제목, 제작 국가, 제작 연도, 사용 언어, 번역 자막(subtitle) 및 시놉시스를 포함한 영화 정보
- b. 영화심의원에서 발급한 심의인증서
- c. 영화상영 장소 및 시간
- d. 행사 책임자의 이름

제 27 조

- (1) 제26조의 외교대표 또는 국제기구는 영화개발분야에서 기능을 수행하는 온라인미디어 부서에 전자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영화상영신고를 제출한다.
- (2) 영화개발분야에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는 필요 서류 접수 후 근무일 기준 2일 이내에 필요 서류의 구비와 진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 (3) 영화개발 분야에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 장은 필요한 서류가 완전하고 정확하다고 확인되면 근무일 기준 1일 이내에 외교대표 또는 국제기구에 의한 영화상영신고 증명을 발급한다.
- (4) 정부가 인정한 외교대표 또는 국제기구의 영화상영신고는 다음 사유에 근거하여 필요한 서류를 수령 한 후 근무일 기준 1일 이내에 외교대표 또는 국제기구에 반환된다.
 - a. 제출된 데이터가 불완전 할 때
 - b. 제출된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을 때
- (5) 영화개발 분야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는 외교대표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영화상영 신고 증명을 취득한 외교대표 또는 국제기구를 영화 데이터에 기록해야 한다.
- (6) 제3항의 외교대표 또는 국제기구의 영화상영신고는 영화상영신고 증명에 명시된 날짜에 따라 적용된다.

제 28 조

- (1) 영화수입 사업주체는 교육 및/또는 연구 목적으로 수입된 영화를 제외하고 수입영화를 인도네시아어로 더빙 할 수 없다.
- (2) 제1항의 교육 및/또는 연구 목적으로 수입된 영화의 더빙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후 할 수 있다.
- (3) 교육 및/또는 연구 목적으로 더빙이 필요한 수입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상영 사업주체는 영화개발 분야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를 통해 장관에게 서면으로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 (4) 장관은 타당성 평가를 실시한 후 제2항의 신청서 제출을 허가한다.
- (5) 장관의 교육 및/또는 연구 목적으로 수입된 영화에 대한 인도네시아어 더빙 허가는 다음 조항을 고려해야 한다.
 - a. 영화상영은 관련 영화상영의 대상인 시청자에게 교육 또는 연구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b. 영화상영은 다음 기준에 따라 교육 및/또는 연구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1. 모든 연령 범주의 심의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 2. 법령 규정에 따라 교육 목적으로 특별한 고려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모든 연령이 아닌 범주의 심의인증서를 보유해야 한다.
 - 3. 상업화를 강조하지 않는다.
 - 4. 교육 분야의 법령 규정과 반하지 않는다.

제 5 장 유보규정

제 29 조

이 장관령 제정 이전에 시행 된 영화배급에 관한 협력계약은 협력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당사자들에게 여전히 유효하다.

제 30 조

이 장관령이 제정되기 전에 제작되었지만 영화제작 신고증명이 없는 영화는 이 장관령이 시행된 후 3개월 이내에 영화제작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 6 장
부칙**

제 31 조

이 장관령은 제정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이 법률의 제정을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에 게재할 것을 명한다.

2019 년 9 월 24 일
자카르타에서 승인됨
인도네시아공화국 문화교육부 장관

서명

(무하지르 에펜디)
MUHADJIR EFFENDY

2019 년 9 월 27일
자카르타에서 제정됨
인도네시아공화국 법무인권부 사무총장

서명

(위도도 에카따하나)
WIDODO EKATJAHJANA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2019년 제1101호

**영화기록물에 관한
문화교육부장관령 2019년 제41호
PERATURAN MENTERI PENDIDIKAN DAN
KEBUDAYAAN REPUBLIK INDONESIA
NOMOR 41 TAHUN 2019
TENTANG PENGARSIPAN FILM**

**전능하신 신의 은총으로
인도네시아공화국 문화교육부 장관은**

고려함:

영화에 관한 2009년 법률 제33조, 제38조제6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영화기록물에 관한 문화교육부장관령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검토함:

1. 국가 부처에 관한 법률 제39호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2008 년 제166호, 인도네시아 공화국 추가 관보 제4916호)
2. 영화에 관한 2009년 법률 제33호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2009년 제141호, 인도네시아공화국 추가 관보 제5060호)
3. 문화교육부에 관한 대통령령 2018년 제101 호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2018 년 제192 호)로 개정된 문화교육부에 관한 대통령령2015년 제14호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2015 년 제15 호)
4. 문화교육부 조직 및 업무 절차에 관한 2019년 문화교육부장관령 제9호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2019년 제236호)로 개정된 문화교육부 조직 및 업무 절차에 관한 문화교육부장관령 2018년 제11호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2018년 제575호)

결정함:

확정: 영화기록물에 관한 문화교육부장관령

**제 1 장
총칙**

제 1 조

이 장관령에서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1. 영화(Film)는 소리의 유무에 관계없이 영화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지는 사회적 제도이자 대중전달매체인 문화예술작품으로 상영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인도네시아 영화(Film Indonesia)는 인도네시아 법인 영화제작자 또는 영화사업주체에 의해 만들어진 영화로, 대부분 인도네시아 자원을 사용하며 지적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는 인도네시아 국민 또는 인도네시아 법인이 소유한다.
3. 영화기록물(Arsip Film)은 영화출판자료로 완성된 복사영화 형태의 기록물이다.
4. 영화기록물관리(Pengarsipan Film)는 영화기록물의 획득,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일련의 활동이다.
5. 영화기록물관리 활동주체(Pelaku Kegiatan Pengarsipan Film)는 비상업적으로 영화 기록 정리 활동을 하는 자이다.
6. 영화기록물관리 사업주체(Pelaku Usaha Pengarsipan Film)는 상업적으로 영화기록물 사업 운영을 하는 자이다.
7. 중앙정부 (Pemerintah Pusat, 이하 정부)는 1945 년 인도네시아공화국 헌법의 부통령 및 장관들의 도움을 받아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의 권한을 보유한 인도네시아공화국의 대통령이다.
8. 지방정부(Pemerintah Daerah)는 자치구의 권한에 속하는 공무를 수행하는 지방 자치 단체의 운영자로서 지역의 수장이다.
9. 장관(Menteri)은 문화 업무를 담당하는 장관이다.

제 2 장 영화기록물관리 인력

제 2 조

- (1) 영화기록물관리 인력은 다음을 포함한다.
 - a. 영화기록물관리 활동주체
 - b. 영화기록물관리 사업주체
- (2) 제1항a의 영화기록물관리 활동주체는 다음을 포함한다.
 - a. 개인
 - b. 단체
 - c. 정부
 - d. 지방정부
- (3) 제1항b의 영화기록물관리 사업주체는 다음을 포함한다.
 - a. 인도네시아 사업체
 - b. 인도네시아국민 개인
- (4) 정부는 영화기록물 활동을 수행하는 인도네시아 영상자료원을 설립한다.
- (5) 제4항의 인도네시아 영상자료원은 영화개발분야에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에 부속되고 장관에게 책임을 진다.

제 3 조

인도네시아 영상자료원은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두고 가상 영화, 다큐멘터리 및 다큐멘터리 영화에 대한 보관 활동을 수행한다.

- a. 인도네시아 영화활동주체와 영화사업주체가 제작한 영화
- b. 인도네시아 이야기의 전체 또는 일부를 담은 영화
- c.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독립 이전 인도네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영화
- d. 인도네시아 영토에서 제작된 영화
- e. 독립 이전 인도네시아 영토에서 제작된 영화

제 3 장 영화기록물 자료

제 4 조

- (1) 영화제작 사업주체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각 영화의 영화사본을 다음 규정에 따라 영화기록물로 보관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영상자료원에 제출한다.
 - a. 영화가 극장에 상영된 마지막 날짜로부터 1년 이내
 - b. 영화가 영화관에 상영되지 않은 경우 대중에게 처음 상영 된 지 1년 이내
- (2) 영화제작 활동주체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각 영화의 영화사본을 영화기록물로 보관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영상자료원에 자발적으로 제출한다.
- (3) 인도네시아 영상자료원은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접수된 역사적, 문화적, 교육적, 과학적, 기술적 가치를 담은 영화의 사본을 국립도서관에 제출한다.

제 5 조

- (1) 영화기록물관리 활동주체 및 영화기록물관리 사업주체는 최소한 예고편, 포스터, 브로슈어, 인쇄 광고, 디지털 광고 및 사운드 트랙의 형태로 영화출판자료를 갖춘 영화기록물로 영화사본 형태의 영화를 기록물 한다.
- (2) 제1항의 영화사본은 영화활동주체 또는 영화사업주체가 소유한 상영 형식의 필요에 따라 가능한 최상의 품질과 기술적인 형식으로 영화의 사본 형태로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된 영화를 의미한다.
- (3) 제1항의 영화사본은 영화활동주체 또는 영화사업주체가 소유한 상영 형식의 필요에 따라 가능한 최상의 품질과 기술적인 형식으로 셀룰로이드 포지티브 복제의 아날로그 방식 형태로 유사하게 제작된 영화를 의미한다.
- (4) 영화기록물관리 활동주체 및 영화기록물관리 사업주체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각 영화기록물에 내재된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제 4 장 인도네시아 영상자료원의 영화기록물 메커니즘

제 1 부 일반

제 6 조

인도네시아 영상자료원의 영화기록물 활동은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 a. 수집
- b. 운영
- c. 원본 인증
- d. 보존

제 2 부 수집

제 7 조

(1) 인도네시아 영상자료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영화기록물을 수집한다.

- a. 영화활동주체 및 영화제작자가 제작한 영화기록물 요청
- b. 인도네시아에 관한 영화 및/또는 독립 이전 인도네시아에 관한 영화를 제작한 외국 당사자와 협력
- c. 인도네시아에 관한 영화 및/또는 독립 이전 인도네시아에 관한 영화를 저장하고 보관하는 외국 당사자와 협력
- d. 인도네시아 영토 및/또는 인도네시아의 독립 이전 영토에서 영화를 제작한 외국 당사자와 협력
- e. 제5조제1항의 사항들을 찾은 당사자들과 협력
- f. 선물
- g.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수단

(2) 영화기록물 인수를 위한 수집은 인도네시아 영상자료원이 설립한 큐레이터 메커니즘을 통해 수행된다.

제 3 부 운영

제 8 조

인도네시아 영상자료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영화기록물을 운영한다.

- a. 영화기록물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및 관리 구축
- b. 영화기록물 인력 육성
- c. 영화기록물 보호 서비스 제공
- d. 인도네시아 영화기록물의 원본 인증을 결정하는 허가

제 9 조

- (1) 제8조a의 영화기록물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및 관리는 영화 데이터에 등록된 영화기록물관리 활동주체, 영화기록물관리 사업주체로부터 영화기록물 데이터를 인도네시아 영상자료원에 수집하고 연결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
- (2) 공공 접근을 위해 인도네시아 영상자료원은 제1항의 영화기록물 데이터베이스의 온라인 카탈로그를 제공한다.
- (3) 영화기록물 데이터베이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a. 제목, 영화제작자, 제작 연도에 따른 영화기록물 컬렉션
 - b. 기록물된 모든 영화 제목과 관련된 지원 데이터
 - c. 수집된 각 영화의 지적 재산권 및 지적 재산권 이용 현황
 - d. 수집된 영화의 메타 데이터
 - e. 수집된 영화의 형식
 - f. 수집된 각 영화의 현재 상태
 - g. 이용을 위한 영화의 가용성
- (4) 인도네시아 영상자료원은 정기적으로 영화기록물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한다.

제 10 조

- (1) 제8조b의 영화기록물 인력 육성은 영화기록물 분야에서 유능한 전문가 자원을 배출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영상자료원에서 수행한다.
- (2) 제1항의 육성은 교육, 훈련 및/또는 인증을 통해 수행되어야 한다.

제 4 부 원본 인증

제 11 조

원본 인증은 인도네시아 영상자료원에서 영화기록물의 공인과 신뢰성을 보장하여 책임에 대한 증거와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 12 조

- (1) 인도네시아 영상자료원은 실증을 받아 기록물 된 모든 영화 자료를 원본 인증한다.
- (2) 실증은 연구와 확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 (3) 제2항에서 실증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영화 분야의 전문가와 기타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
- (4) 인도네시아 영상자료원은 영화기록물의 진위 여부를 결정하는 기능과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능력, 역량, 독립성 및 무결성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과 인프라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 (5) 인도네시아 영상자료원은 인증을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영화 및 기타 분야에서 능력과 역량을 갖춘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 (6) 인도네시아 영상자료원은 제안 메커니즘을 통해 영화제작 활동주체, 영화기록물관리 활동주체, 영화제작 사업주체 및/또는 영화기록물관리 사업주체에 속한 인도네시아 영화

기록물을 원본 인증 할 수 있다.

제 5 부 보존

제 1 절 통칙

제 13 조

- (1) 인도네시아 영상자료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영화기록물을 보존한다.
 - a. 보호
 - b. 개발
 - c. 이용
- (2) 영화기록물 보존을 위해 인도네시아 영상자료원은 국립도서관과 협력한다.

제 2 절 보호

제 14 조

- (1) 제13조 제1항 a의 보호는 다음에 의해 수행된다.
 - a. 보안
 - b. 유지 보수
 - c. 구조
 - d. 복원
- (2) 제1항a의 보안은 영화기록물이 분실, 훼손, 파괴 또는 멸실되지 않도록 수행된다.
- (3) 제1항b의 유지 보수는 영화기록물의 상태가 지속가능하도록 영화기록물을 유지 및 정비하기 위해 수행된다.
- (4) 제1항c의 구조는 자연 재해 또는 기타 재난으로 인한 영화기록물의 손상 또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수행된다.
- (5) 제1항d의 복원은 재료, 모양 및/또는 제작 기술의 독창성에 따라 손상된 영화기록물의 물리적 상태를 복원하여 영화기록물의 수명과 유용성을 연장하기 위해 수행된다.

제 15 조

- (1) 인도네시아 영상자료원은 단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영화기록물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시행한다.
- (2) 인도네시아 영상자료원은 영화기록물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록물 시설과 인프라를 제공한다.

제 16 조

- (1) 인도네시아 영상자료원은 단기, 중기 및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영화기록물

- 유지 프로그램의 계획 및 실행을 준비한다.
- (2) 인도네시아 영상자료원은 다음으로 구성된 유지 보수 시설 및 인프라를 제공한다.
- a. 기록물이 된 재료 기술에 대한 스크리닝 도구
 - b. 아날로그 필름 재료 및 디지털 필름 재료 처리를 위한 실험실 시설
 - c. 기록물 폐기물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수단
- (3) 유지 보수는 영화기록물이 손상 및/또는 파괴되지 않도록 일정한 방식으로 수행된다.

제 17 조

구조는 특히 중요하다고 간주되고 심각한 피해를 입어 활용이 불가능하게 된 영화기록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수행된다.

제 3 절

개발

제 18 조

- (1) 제13조 제1항 b의 개발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수행되며 보존 목적과 상충하지 않는다.
- (2) 제1항의 개발은 다음 방법에 의해 수행된다.
- a. 연구
 - b. 활성화

제 19 조

- (1) 제18조제2항a의 연구는 영화기록물, 과학 및 문화 발전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 데이터 및 해설을 획득하기 위해 체계적인 원칙과 방법에 따라 수행되는 학술 활동의 형태이다.
- (2) 제1항의 영화기록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인도네시아 영상자료원은 기관 및 개인과 같은 다른 당사자와 협력할 수 있다.

제 20 조

- (1) 제18조제2항b의 활성화는 영화기록물의 중요한 가치를 재생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영화 기록물의 유용성을 확대하기 위한 개발 활동이다.
- (2) 제1항의 활성화는 지역사회의 보존 원칙과 문화적 가치에 어긋나지 않는 새로운 매체와 기술을 조정하여 수행한다.
- (3) 인도네시아 영상자료원은 단기, 중기 및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영화기록물 활성화 프로그램의 계획 및 실행을 준비한다.
- (4) 인도네시아 영상자료원은 영화기록물 장치의 이전을 위한 시설 및 인프라 형태로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인프라를 제공한다.

**제 4 절
이용**

제 21 조

- (1) 제13조제1항c의 이용은 본질적으로 상업적이 아닌 과학 및 기술의 교육, 연구 및 개발을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 (2) 제1항의 사용 목적은 다음을 포함한다.
 - a. 상영 이후 50년 동안 존재해 온 영화기록물
 - b. 제19조제1항의 연구 결과
 - c. 제20조제1항의 활성화 결과

제 22 조

- (1) 인도네시아 영상자료원은 일반인을 위해 영화기록물 이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기획 및 시행을 준비한다.
- (2) 영화기록물의 이용은 다음에 의해 수행된다.
 - a. 영화기록물에 대한 공개적 접근
 - b.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용 대상
 - c. 온라인 카탈로그

제 23 조

- (1) 인도네시아 영상자료원은 공공 접근을 위한 영화개발분야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 및 인프라를 제공하며, 다음으로 구성된다.
 - a. 도서관
 - b. 상영 시설
- (2) 제1항a의 도서관은 대중이 활용할 수 있는 인쇄된 기록물 및 연구 결과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개방하기 위한 것이다.
- (3) 제1항b의 상영 시설은 영화 자료와 활성화 결과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개방하기 위한 것이다.

제 24 조

- (1) 영화기록물의 사용은 교육, 연구 및 비 교육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영화개발분야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 외부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 (2)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영화기록물을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a. 영화개발분야에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에서 규정한 조항에 따른 특별 허가
 - b. 법령의 제한 범위 내
- (3) 비 교육적 목적으로 영화기록물을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a. 지적 재산권 소유자의 허가
 - b. 영화개발분야에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장이 결정한 기록물 사용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
 - c. 법률 조항 규정의 제한 범위 내

제 25 조

- (1) 인도네시아 영상자료원은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어와 영어로 된 온라인 카탈로그를 작성한다.
- (2) 제1항의 온라인 카탈로그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a. 영화기록물 수집 데이터
 - b. 영화기록물 상태 데이터
 - c. 보호 및 개발 결과에 대한 데이터
 - d. 영화기록물의 활용에 대한 접근

제 4 장 기록물 지원

제 26 조

- (1) 영화개발분야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는 영화 데이터에 등록 된 영화기록물관리 사업주체를 지원한다.
- (2) 영화개발분야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는 검증 메커니즘을 통해 영화기록물관리 활동주체를 지원한다.
- (3) 영화개발분야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는 제5조제1항의 사항을 기록하는 영화기록물관리 활동주체 및 영화기록물관리 사업주체를 지원한다.
- (4) 영화개발분야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영화기록물관리 활동주체 및 영화기록물관리 사업주체를 지원한다.
 - a. 큐레이터, 보존 및 복원 전문가의 능력 향상
 - b. 지속가능성 프로그램 개발 지원

제 5 장 부칙

제 27조

이 장관령은 제정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이 법률의 제정을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에 게재할 것을 명한다.

2019년 10월 18일

자카르타에서 승인됨

인도네시아공화국 문화교육부 장관

서명

(무하지르 에펜디)
MUHADJIR EFFENDY

2019년 10월 22일
자카르타에서 제정됨

인도네시아공화국 법무인권부 사무총장

서명

(위도도 에카따하나)
WIDODO EKATJAHJANA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2019년 제1259호

**외국제작자의 국내 영화제작 장소사용 허가에 관한
문화교육부 장관령 2018년 제48호
PERATURAN MENTERI PENDIDIKAN DAN
KEBUDAYAAN
REPUBLIK INDONESIA
NOMOR 48 TAHUN 2018
TENTANG IZIN PENGGUNAAN LOKASI
PEMBUATAN FILM
DI INDONESIA OLEH PIHAK ASING**

전능하신 신의 은총으로 인도네시아공화국 문화교육부 장관은

고려함:

- a. 세계화 시대에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제작자가 영화를 제작할 수 있다.
- b. Pancasila (뽀짜실라, 인도네시아 국가 5대 원칙) 및 인도네시아 국가 정체성과 일치하지 않는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제작자의 영화 제작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 c. 인도네시아 영역 내 장소를 사용하여 영화를 제작할 외국제작자에게 허가를 부여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령규정이 없으므로 제정이 필요하다.
- d. a, b, c. 에 따른 고려사항에 따라 외국제작자의 인도네시아 영화제작 장소 사용허가에 관한 문화교육부 장관령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검토함:

1. 영화에 관한 법률 2009년 제33호(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2009년 제141호, 인도네시아 공화국 추가 관보 제5060호)
2. 문화교육부에 관한 대통령령 2015년 제1호의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8년 제101호(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2019년 제192호)로 개정된 문화교육부에 관한 대통령령 2015년 제14호(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2015년 제15호)
3. 문화교육부 조직 및 업무 절차에 관한 문화교육부 장관령 2018년 제11호(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2018년 제575호)

결정함:

확정: 외국제작자의 인도네시아 내 영화제작 장소사용허가에 관한 문화교육부 장관령

제 1 장 총칙

제 1 조

이 장관령에서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1. 영화(film)는 소리의 유무에 관계없이 영화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지는 사회적 제도이자 대중전달매체인 문화예술작품으로 상영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영화 사업(Usaha Perfilman)은 영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상업적이다.
3. 영화 사업 등록증 (Tanda Daftar Usaha Perfilman, 약칭 TDUP)은 영화 사업을 등록한 영화 제작 사업자, 영화 제작 서비스업 또는 영화 보관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장관이 발급하는 확인서이다.
4. 외국제작자(Pihak Asing)는 외국 법인, 외국 뉴스 대행사 또는 외국 방송 기관의 형태로 영화를 만드는 영화 제작자이다.
5. 외국제작자의 인도네시아 내 영화제작 장소사용허가 (Izin Penggunaan Lokasi Pembuatan Film di Indonesia oleh Pihak Asing, 이하 장소사용허가)는 장관이 발행한 외국제작자가인도네시아 내 장소를 사용하여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허가이다.
6. 장관(Menteri)은 문화 부문에서 정부 업무를 담당하는 장관이다.

제 2 장

장소 사용허가신청을 위한 요건 및 절차

제 2 조

- (1)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장소를 사용하여 영화를 제작하는 외국제작자에게 장소 사용허가를 부여한다.
- (2) 제1항의 장소 사용허가를 부여하는 장관은 영화진흥분야에서 직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의해 수행된다.

제 3 조

- (1) 제2조제1항의 외국제작자는 인도네시아의 영화 제작 사업자와 현지 상대방으로 협력해야 한다.
- (2) 제1항의 영화 제작 사업자는 영화 제작 사업을 운영하고 영화 자료에 등록되어 있으며 영화 사업 등록증이 있는 인도네시아 법인이어야 한다.
- (3) 제2조제1항의 외국제작자의 장소 사용허가는 다음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 a. 사업체 형태의 외국제작자의 회사 프로필
 - b. 영화 제작에 관련된 모든 외국 영화 제작자의 이름과 영화 제작에서의 직책
 - c. 영화 제작에 관련된 모든 외국 영화 제작자의 이력서
 - d. 관련된 모든 외국 영화 제작자의 여권 사본
 - e. 현지 상대방의 영화 사업 등록증

- f. 촬영 일정
- g. 영화 촬영 장소 및 영상 기록물
- h. 사용 된 장비 목록
- i. 작업 계약과 관련된 협력 진술서
- j. 규범, 관습, 법령규정을 존중하고 준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진술

제 4 조

- (1) 외국제작자는 재외공관 대사관,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장관에게 장소 사용허가를 신청한다.
- (2) 제1항의 해외 인도네시아 대표는 필요한 서류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인해야 한다.
- (3) 제2항의 해외 인도네시아 대표의 장은 필요한 서류가 완전하고 정확하다고 확인된 후 영화진흥분야에서 직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장소 사용허가 신청서를 전달해야 한다.
- (4) 제3항의 해외 인도네시아 대표의 장소 사용허가 신청은 해외 업무를 관장하는 부처를 경유해야 한다.

제 5 조

- (1) 외교부로부터 장소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후 영화진흥분야의 직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제3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검증해야 한다.
- (2) 제1항의 확인 및 검증을 수행할 때 영화진흥분야에서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는 관련 부처 및/또는 정부 기관과 협력한다.

제 6 조

- (1) 영화 진흥분야에서 직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은 필요한 문서가 완전하고 정확하다고 확인된 후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장소 사용허가를 발급한다.
- (2) 제1항의 장소 사용허가의 양식은 이 장관령의 필수 부분인 별표에 첨부되어 있다.

제 7 조

영화진흥분야에서 직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장소 사용허가 신청을 거부한다.

- a. 제공된 자료가 올바르지 않음
- b. 영화 제작에 관여 된 제한 또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외국 영화 제작자, 및/또는
- c. 인도네시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화 제목과 스토리 콘텐츠 및/또는 인도네시아의 문화 및 법적 가치와 충돌

제 8 조

- (1) 제6조제1항의 장소 사용허가는 장소 사용허가에 명시된 위치 및 일정에만 적용된다.
- (2) 영화 촬영 장소 및 일정이 변경될 경우 외국제작자는 영화진흥분야의 직무를 담당하는 부서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해외 인도네시아 대표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 (3) 제2항의 장소 및 촬영 일정 변경에 대한 통지는 새로운 장소에서 촬영하기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 9 조

제6조제1항의 장소 사용허가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해외 인도네시아 대표를 통해 외국 제작자에게 부여된다.

- a. 인도네시아 장소를 이용한 영화 제작
- b. 영화 제작 장비에 대한 임시 수입 허가 계약

(2) 소 사용허가를 받은 외국 측은 영화 현장 분야의 직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등록된다.

제 10 조

영화진흥 분야에서 직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촬영에 사용 된 장소에 대해 권한이 있는 관할 당국 및/또는 지방 정부에 통지로 장소 사용허가서 사본을 보낸다.

제 11 조

제4조의 장소 사용허가 신청은 무료이다.

**제 3 장
부칙**

제 12 조

이 장관령은 제정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이 법의 제정을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에 게재할 것을 명한다.**

2018년 12월 31일
자카르타에서 승인됨

인도네시아공화국 문화교육부장관

서명
MUHADJIR EFFENDY

2018년 12월 31일
자카르타에서 제정됨

인도네시아공화국 법무인권부 입법부 사무총장

서명
WIDODO EKATJAHJANA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2014년 제1890호

“외국제작자의 인도네시아 내 영화제작 장소사용허가” 에 관한 인도네시아 문화교육부 장관령 2018년 제48호

서류양식: 외국제작자의 장소 사용허가

문화교육부 KEMENTERIAN PENDIDIKAN DAN KEBUDAYAAN
영화진흥위원회 PUSAT PENGEMBANGAN PERFILMAN
Jalan Jenderal Sudirman, Senayan, 자카르타 10270
전화 5711144, 내선 3617-0215746121
웹사이트: www.kemdikbud.go.id

외국제작자의 영화제작 장소사용허가

번호 : 인도네시아공화국 문화교육부장관

별첨 : a. 외국제작자의 장소 사용허가 신청서
b. 추천 (영사관 / 총영사관 / 인도네시아공화국 대사관)

장소 : 번호 :

날짜 :

허가 신청

당사자: 1. 외국 제작자 이름 :
2. 출신 국가 :
3. 제작사 이름 :
4. 제작사 주소 :

목적 : 인도네시아에서 영화(스토리/다큐멘터리) 제작

제목 :

관련 :

참여자 :

1. 외국 영화 제작진 이름 :
1.
2.

- 3.
- 4.
- 5.

2. 현지 상대방 이름 :

실행 :

1. 촬영 대상 :
2. 영화 촬영 장소 :
3. 영화 촬영 일정

- 조건 :
1. 영화 제작은 법령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위에서 언급한 것 이외의 녹화 촬영은 금지된다.
 3. 위에서 언급한 영화 촬영 장소를 벗어나는 것은 금지된다.
 4. 제작자는 개봉일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에 제작한 영화의 사본 1부를 인도네시아 문화교육부 영화진흥분야의 직무를 맡고 있는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5. 이 허가는 위의 1번, 2번 및 3번의 규정을 위반할 시 무효가 된다.

이 허가는 발급한 날부터 유효하다.

자카르타에서 승인됨
일/ 월 / 년

인도네시아공화국 문화교육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인도네시아공화국 문화교육부장관

서명

MUHADJIR EFFENDY

**인도네시아 영화 및 국내자원사용 우선에 관한
문화교육부장관령 2019년 제30호
PERATURAN MENTERI PENDIDIKAN DAN
KEBUDAYAAN REPUBLIK INDONESIA
NOMOR 30 TAHUN 2019
TENTANG PENGUTAMAAN FILM INDONESIA DAN
PENGUTAMAAN PENGGUNAAN SUMBER DAYA
DALAM NEGERI**

**전능하신 신의 은총으로
인도네시아공화국의 문화교육부 장관은**

고려함:

영화에 관한 법률 2009년 제33호 제10조 3항의 규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영화 및 국내자원사용 우선에 관한 문화교육부장관령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검토함:

1. 국가 부처에 관한 법률 2008년 제39호(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2008년 제166호, 인도네시아공화국 추가 관보 제4916호)
2. 영화에 관한 법률 2009년 제33호(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2009년 제141호, 인도네시아공화국 추가 관보 제5060호)
3. 문화교육부에 관한 대통령령 2015년 제1호의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8년 제101호(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2019년 제192호)로 개정된 문화교육부에 관한 대통령령 2015년 제14호(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2015년 제15호)
4. 문화교육부 조직 및 업무 절차에 관한 문화교육부 장관령 2019년 제9호(인도네시아공화국관보 2019년 제236호)로 개정된 문화교육부 조직 및 업무 절차에 관한 문화교육부 장관령 2018년 제11호(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제575호)

결정함:

확정: 인도네시아 영화 및 국내자원사용 우선에 관한 문화교육부 장관령

제 1 장 총칙

제 1 조

이 장관령에서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1. 영화(Film)는 소리의 유무에 관계없이 영화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지는 사회적 제도이자 대중전달매체인 문화예술작품으로 상영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인도네시아 영화(Film Indonesia)는 인도네시아 법적 지위를 가진 영화제작 활동주체 또는 영화제작 사업주체에 의해 만들어진 영화로, 대부분 인도네시아 자원을 사용하며 지적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는 인도네시아 국민 또는 인도네시아 법인이 소유한다.
3. 국내자원(Sumber Daya Dalam Negeri)은 영화인력, 자연, 재료 및/또는 제품, 서비스, 장비, 시설 및 인도네시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국가의 문화적 부를 포함하는 인도네시아 영화제작에 사용되는 자원이다.
4. 영화활동(Kegiatan Perfilman)은 영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화작업이며 비상업적 성격을 갖는다.
5. 영화사업(Usaha Perfilman)은 영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화사업이며 상업적 성격을 갖는다.
6. 영화인력(Insan Perfilman)은 영화 분야에서 잠재력과 능력을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7. 장관(Menteri)은 문화 부문에서 정부 업무를 수행하는 장관이다.

제 2 조

- (1) 영화 활동주체 및 영화사업주체는 다음을 우선하여야 한다.
 - a. 인도네시아 영화
 - b. 국내자원의 사용
- (2) 제1항a의 인도네시아 영화 우선을 정할 의무는 인도네시아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영화의 상영 및 배급 기회를 우선하여 수행된다.
- (3) 제1항b의 국내자원사용 우선 의무는 국내자원의 최적사용을 우선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제 3 조

인도네시아 영화 및 국내자원사용은 다음을 우선한다.

- a. 인도네시아 영화의 이익을 위한 옹호 노력 및 혜택 제공
- b. 법령 규정에 따른 시상
- c. 법령 규정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 d. 법령 규정에 따른 행정 제재

제 2 장 인도네시아 영화 우선

제 4 조

- (1) 수입영화 사업주체를 제외한 영화 활동주체 및 영화 사업주체는 인도네시아 영화를 우선해야 한다.
- (2) 인도네시아 영화는 다음을 우선한다.
 - a. 현존하고 지속가능 국가문화에 기반한 영화의 발전 및 강화
 - b. 국가의 문화발전 및 보존
 - c. 지역사회 복지 향상

제 5 조

- (1) 영화 활동주체는 영화제작활동, 영화기술서비스, 영화배급활동, 영화상영활동, 영화감상활동, 영화기록물관리를 통해 인도네시아 영화를 우선해야 한다.
- (2) 영화 사업주체는 영화제작사업, 영화기록서비스사업, 영화배급사업, 영화상영사업, 영화판매 및/또는 영화대여사업, 영화기록물사업 및 영화수입업을 제외한 영화수출업을 통해 인도네시아 영화를 우선해야 한다.

제 3 장 국내자원 우선

제 6 조

- (1) 영화 활동주체 및 영화 사업주체는 국내자원을 우선해야 한다.
- (2) 국내자원은 다음을 우선한다.
 - a. 인도네시아 문화 강화 및 발전
 - b. 인도네시아 인적 자원의 질 향상
 - c. 고용 기회 확대
 - d. 인도네시아 경제 발전
- (3) 제1항의 국내자원사용 우선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a. 인도네시아 영화인력
 - b. 촬영지로서의 인도네시아 자연
 - c. 인도네시아에서 제조 된 재료 및/또는 제품
 - d. 인도네시아에서 제공되는 제작 관련 서비스
 - e. 인도네시아에서 제조 및/또는 사용 가능한 장비
 - f. 인도네시아의 영화제작 과정을 지원하는 시설
 - g. 인도네시아 전역 지역 문화재

제 7 조

- (1) 영화제작, 영화 배급, 영화 상영, 영화 아카이브에서 제6조제3항a의 인도네시아 영화

인력 형태의 국내자원 우선은 인도네시아 영화인력을 고용하여 이루어진다.

- (2) 제1항의 인도네시아 영화인력은 영화 분야의 역량인증서를 보유하여야 한다.
- (3) 제2항의 역량인증서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기능하는 산업 협회, 전문 협회 및/또는 대학의 인증기관에서 발급한다.

제 8 조

- (1) 영화 사업주체는 인증서를 보유한 영화인력을 고용해야 한다.
- (2) 영화 활동주체는 인증서를 보유한 영화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제 9 조

- (1) 제7조의 인도네시아 영화인력이 없는 경우, 외국에서 발급된 영화 분야 인증서를 보유한 외국인 인력을 이용하여 영화제작을 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외국인 인력은 인도네시아 영화인력과 함께 하여야 한다.
- (3)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인력의 이용은 법령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 10 조

영화기술서비스, 영화 아카이브, 영화 감상, 영화판매 및/또는 대여, 영화 수출 및 영화 수입 분야에서 인도네시아 영화인력을 사용하는 형태의 국내자원 우선은 법령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 11 조

- (1) 장관은 영화 목표 달성의 필요성에 따라 인도네시아 영화 부문의 자원 수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국내자원 우선을 지원한다.
- (2) 제1항의 지원은 다음 시설을 통해 수행된다.
 - a. 영화인력 역량 향상
 - b. 산업 협회, 전문 협회 및/또는 대학에 인증 기관 설립

제 12 조

- (1) 영화 사업주체는 영화제작에 고용된 인도네시아 영화인력과 협력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2) 제1항의 협력계약은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되며 최소한 다음을 포함한다.
 - a. 근로 당사자
 - b. 근로 형태
 - c.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 d. 법령 규정에 따라 건강 및 근로 안전 보험 보장
- (3) 영화제작자와 인도네시아 영화인력 간의 협력계약은 인력 분야의 법령 규정에 따라 노동 시간, 초과 근로 시간, 총 임금 및 지급 방식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제 13 조

- (1) 협력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영화 개발 분야의 기능을 수행하는 온라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a. 당사자가 제12조제2항의 내용으로 협력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는 경우
 - b. 협력계약 위반으로 당사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 (2) 영화 개발 분야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의 분쟁 해결을지원한다.

제 14 조

제6조제3항d,e,f의 서비스, 장비 및 시설 사용을 최대한 이용하는 형태로 국내 자원사용을 우선하는 것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영화제작 서비스, 제작 장비 및 기술 서비스 시설을 이용 하여만들어져야 한다..

제 15 조

제14조의 서비스, 장비 및 시설의 우선은 서비스, 장비 및 시설이 필요할 때 인도네시아에서 준비되지 않은 경우 면제된다.

제 16 조

제6조제3항g의 지역 문화재 활용의 국내자원 우선은 다음에 의해 수행된다.

- a. 인도네시아의 문화 환경을 보여준다.
- b. 인도네시아어 또는 지역 언어 사용을 우선한다.

제 17 조

제16조의 지역 문화재 활용은 인도네시아 영토 밖의 사건, 사고 또는 출처를 묘사한 영화 에서는 면제된다.

제 18 조

제9조, 제15조 및 제17조의 국내자원사용 우선의 예외는 영화 개발 분야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의 평가 및 추천 결과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제 4 장
부칙**

제 19 조

영화인력은 이 장관령의 공포일로부터 늦어도 2년 이내에 영화분야의 역량인증서를 보유해야 한다.

제 20 조

이 장관령은 제정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이 법률의 제정을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에 게재할 것을 명한다.

2019년 8월 29일
자카르타에서 승인됨

인도네시아공화국 문화교육부 장관

서명

(무하지르에펜디)
MUHADJIR EFFENDY

2019년 9월 11일
자카르타에서 제정됨

인도네시아공화국 법무인권부 사무총장

서명

(위도도 에카따하나)
WIDODO EKATJAHJANA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2019년 제1037호

영화심의원에 관한 정부령 2014년 제18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18 TAHUN 2014
TENTANG LEMBAGA SENSOR FILM

전능하신 신의 은총으로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은

고려함:

영화에 관한 법률 2009년 제33호 제66조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영화심의원에 관한 정부령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검토함:

1. 1945년 인도네시아공화국 헌법 제5조 제2항
2. 영화에 관한 법률 2009년 제33호(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2009년 제141호, 추가 관보 제5060호)

결정함:

확정: 영화심의원에 관한 정부령

제 1 장
총칙

제 1 조

이 정부령에서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1. 영화(film)는 소리의 유무에 관계없이 영화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지는 사회적 제도이자 대중전달매체인 문화예술작품으로 상영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영화심의(Sensor Film)은 일반대중에게 공개할 영화 및 영화광고의 적격성에 대한 조사, 평가 및 결정이다.
3. 영화광고(Iklan Film)는 영화의 발표 및 홍보의 한 형태이다.
4. 영화심의원(Lembaga Sensor Film, 약칭 LSF)은 모든 영화 및 영화광고를 심의하는 기관이다.
5. 영화상영(Pertunjukan Film)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를 상영 및/또는 방영하는 것이다.

6. 윤리강령(Kode Etik)은 영화검열기관위원 및 검열 전문인력의 도덕적 기준과 행동을 포함하는 규범이다.
7. 심의전문인력(Tenaga Sensor)은 검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다.
8. 장관(Menteri)은 문화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장관이다..

제 2 조

- (1) 배급 및/또는 상영 될 영화 및 영화광고는 검열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 (2) 제1항의 영화는 스토리 영화 또는 비 스토리 영화의 형태이다.
- (3) 제1항의 영화광고는 포스터, 스틸 사진, 슬라이드, 클리셰, 예고편, 배너, 팸플릿, 브로슈어, 광고판, 현수막, 폴더, 플래카드, 출판물 및 기타 홍보 수단이다.
- (4) 제1항의 영화에는 광고영화가 포함된다.

제 2 장 설립, 위치 및 위원

제 1 부 설립, 지위 및 소재지

제 3 조

- (1) 정부는 영화와 영화광고 검열을 수행하기 위해 영화심의회를 설립한다.
- (2) 제1항의 영화심의회는 인도네시아공화국의 수도에 소재한 영구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이다.
- (3) 영화심의회는 장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책임을 진다.

제 4 조

- (1) 영화심의회는 각 주의 주도에 대표사무소를 둘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대표자의 구성은 영화심의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 2 부 조직구조

제 5 조

- (1) 영화심의회원의 조직구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a. 원장 겸 위원
 - b. 부원장 겸 위원
 - c. 위원
 - d. 위원이 아닌 사무국장
- (2) 제1항d의 사무국장은 영화심의회원 사무국장이다.
- (3) 원장 및 부원장은 영화심의회원 위원 중에서 선출된다.

제 3 부 업무, 기능 및 권한

제 6 조

영화심위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a. 일반대중에게 배급 및/또는 상영되기 전에 영화 및 영화광고를 심의한다.
- b. 일반대중에게 배급 및/또는 공개 될 영화 및 영화광고의 제목, 주제, 이미지, 장면, 사운드 및 번역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수행한다.

제 7 조

제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영화심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 a. 인도네시아 영화의 기본, 방향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영화 및 영화광고의 배급 및 상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대중을 보호
- b. 심의인증서 발급 및 지침 작성
- c. 양질의 영화와 영화광고를 제작하기 위해 영화 및 영화광고 소유자에게 심의기준 및 기준을 집중적으로 홍보
- d. 양질의 영화와 영화광고를 선택하고 즐기며 영화와 영화광고의 영향을 이해하도록 대중에게 편이 제공
- e. 양질의 영화를 선택하고 즐길 수 있도록 영화 및 영화광고 소유자가 올바르고 온전한 정보를대중에게 제공하도록 지원한다.
- f. 배급, 상영 및 분석되는 영화 및 영화광고에 대한 감상 모니터링은 후속 심의 업무 수행 시 고려할 자료 및/또는 인도네시아 영화 개발에 대한 정책 결정을 할 때 장관에게 제출되는 모니터링의 결과로 사용된다.

제 8 조

영화심위원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 a. 시청 연령 분류 결정
- b. 심의기준 및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영화 및 영화광고의 반환은 영화 및 영화광고 소유자에 의해 수정
- c. 심의기준 및 기준에 따라 영화 및 영화광고 소유자가 수정한 영화 및 영화광고를 재심의
- d. 완성된 영화 및 영화광고의 각 사본에 첨부된 심의인증서의 부여가 검열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
- e. 심의인증서 취소
- f. 영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영화활동주체 또는 영화 사업주체에 대해 정부에 행정 제재를 제안하는 행위
- g. 장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영화심의 및 영화광고에 대한 정기보고

제 9 조

영화심위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화심위원 사무국과 심의전문인력의 지원을 받는다.

제 10 조

- (1) 제6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화심의회원은 업무규정 및 관리절차를 따라야 한다.
- (2) 제1항의 업무규정 및 관리절차에 관한 규정은 영화심의회원 규정으로 정한다.

**제 4 부
위원**

제 11 조

- (1) 영화심의회원의 위원은 총 17인이며 시민 위원 12인과 정부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
- (2) 제1항의 시민 위원은 다음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 a. 교육
 - b. 영화
 - c. 문화
 - d. 법
 - e. 정보 기술
 - f. 국방 및 보안
 - g. 언어
 - h. 종교
 - i. 기타 관련 전문 지식
- (3) 제1항의 정부 위원은 다음 분야에서 정부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기관으로 구성된다.
 - a. 교육1 인
 - b. 문화1인
 - c. 정보 기술1인
 - d. 종교1인
 - e. 창조 경제1인
- (4) 영화심의회원 위원으로 임명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a. 35세 이상 70세 이하의 인도네시아공화국 국민이다.
 - b. Pancasila 및 1945년 인도네시아공화국 헌법을 성실히 따른다.
 - c. 영화의 원리, 목적 및 기능을 이해한다.
 - d. 검열 업무 범위에 대한 능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e. 자신의 임무를 상근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 12 조

- (1) 영화심의회원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1회에 한하여 재임할 수 있다.
- (2) 영화심의회원 위원 임명 및 해임은 대통령 결정으로 정한다.

제 13 조

영화심의회원의 예비위원은 영화심의회원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발된다.

제 14 조

- (1) 제13조의 선정위원회는 장관이 구성하고 지명한 영화이해관계자로 구성된다.
- (2) 제1항의 영화이해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a. 정부 및 지방정부
 - b. 영화활동주체
 - c. 영화사업주체
 - d. 시민인사
- (3) 선정위원회는 최소 5명의 홀수로 구성된다.
- (4) 영화심위원의 예비위원을 선발하는 선정위원회는 정직하고 공개적이며 객관적으로 임한다.
- (5) 제13조의 선정위원회는 장관에게 책임을 진다.

제 15 조

- (1) 장관은 영화심위원 예비위원의 2배수를 대통령에게 제안한다.
- (2) 대통령은 국회와 협의하여 영화심위원 위원 17인을 임명한다.

제 16 조

- (1) 영화심위원 위원은 취임하기 전에 선서 또는 서약을 한다.
- (2) 영화심위원 위원에 대한 선서 또는 서약의 선언은 장관 앞에서 수행된다.

제 17 조

- (1) 영화심위원 위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직무가 종료된다.
 - a. 임기 종료
 - b. 사임 및/또는 이를 제안하는 부처/기관에 의해 해임
 - c. 사망
- (2) 제1항 외에 영화심위원 위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임된다.
 - a. 영화심위원 위원으로서 더 이상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 b. 선서/서약 또는 윤리강령을 위반 한 것으로 확인 됨
 - c. 영구적인 법적 효력이 있는 법원 판결에 근거하여 영화심위원 위원으로서 권한을 남용
 - d. 영구적인 법적 효력이 있는 법원 판결에 따라 형 선고
 - e. 영구적으로 또는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
 - f. 제6조 및 제7조의 의무와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음

제 18 조

장관은 제15조의 영화심위원 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제안한다.

제 19 조

- (1) 영화심위원 위원이 제17조제1항b,c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임 및 해임된 경우임시 교체를 할 수 있다.
- (2) 임시 위원의 임기는 교체된 영화심위원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이다.
- (3) 제2항의 2년 미만의 임시 교체는 임기로 계상되지 않는다.

제 20 조

- (1) 영화심의원의 임시 위원 후보는 다음을 갖추어야 한다.
 - a. 영화심의원 위원 후보선정 때 영화심의원 후보 위원 목록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b. 동일한 조직의 출신이다.
 - c. 영화심의원의 후보 위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d. 지명 될 의향이 있어야 한다.
- (2) 제1항b와 동일한 요소의 임시 후보 위원 충족되지 않는 경우, 장관은 제14조 및 제15조에 규정된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시 후보 위원을 대통령에게 제안해야 한다.

**제 5 부
윤리강령 및 윤리위원회**

제 21 조

- (1) 영화심의원은 영화심의원의 존엄성, 명예, 이미지 및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를수행하면서 영화심의원 및 검열 인력 모두가 준수해야 하는 규범을 포함한 윤리강령을작성한다.
- (2) 제1항의 윤리강령에 관한 조항은 영화심의원 규정으로 정한다.

제 22 조

- (1)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경우 장관은 특별 윤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2) 윤리 위원회 위원은 최소 9명이며 심의 윤리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지역 사회 지도자들이다.

**제 3 장
심의기준 및 기준**

**제 1 부
일반**

제 23 조

- (1) 영화심의원은 영화심의기준 및 기준에 따라 심의를 시행한다.
- (2) 영화심의원은 심의된 영화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 및 시민 단체의 대표를 참여시킬 수 있다.
- (3) 제1항의 영화심의를 시행할 때 영화심의원은 심의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제 24 조

- (1) 배급 및/또는 대중에게 공개 될 모든 영화 및 영화광고는 영화심의원이 사전에 심의해야 한다.
- (2) 검열 절차는 다음과 같이 수행된다.

- a. 영화 및 영화광고 소유자가 영화심의원에 영화 및 영화광고 신청
 - b. 영화 및 영화광고는 검토 및 평가되어 영화심의원에 의해 적격성이 결정되며 심의통과 또는 심의 미통과의 증명서로 표시된다.
 - c.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영화 및 영화광고는 수정을 위해 영화 및 영화광고 소유자에게 반환된다.
 - d. 영화 및 영화광고 소유자에 의해 수정된 영화 및 영화광고는 영화심의원의 검토 및 재평가를 위해 다시 제출될 수 있다.
- (3) 영화 및 영화광고에 대한 검열 절차는 다음으로 구성된 심의팀에 의해 수행된다.
- a. 영화심의원 위원
 - b. 심의전문인력
- (4) 영화와 영화광고에 대한 심의팀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결정을 얻기 위해 본 회의에 전달된다.
- (5) 심의를 통과한 모든 영화 및 영화광고에는 심의인증서가 발급된다.

제 25 조

- (1) 영화 및 영화광고에 대한 심의는 심의된 영화 및 영화광고의 소유자와 대화의 원칙에 따라 수행된다.
- (2) 제1항의 사항 외에도 심의는 인도네시아 국가의 특성에 따라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의 가치와 문화를 보존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된다.
- (3) 지침의 일한인 심의는 국가의 책임, 품위 및 존엄성의 구체화로서 영화 산업의 작품과 창작에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6 조

영화심의원에 의한 심의의 시행은 책임감 있게 수행되며 영화의 맥락적 성격, 기술 발전 및 사회 가치 개발을 고려한다.

제 27 조

- (1) 제24조제5항의 심의인증서는 영화심의원이 발급하고 영화심의원 원장이 서명한다.
- (2) 제1항의 영화심의원 원장이 영구적으로 출석할 수 없거나 일시적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화심의원 부원장이 심의인증서에 서명해야 한다.

제 28 조

- (1) 심의 후 심의된 영화 및 영화광고는 다음과 같이 영화 시청 연령을 분류한다.
 - a. 모든 연령대의 시청자
 - b. 13세 이상의 시청자
 - c. 17세 이상의 시청자
 - d. 21세 이상의 시청자
- (2) 영화심의원은 제1항의 시청 연령 분류에 따라 영화 및 영화광고의 적격성을 결정한다.

제 2 부 심의기준

제 29 조

- (1) 심의은 영화에 관한 법률에서 언급된 영화의 원리, 목적, 기능에 따라 영화 및 영화광고를 심사하고 평가함으로써 수행된다.
- (2) 제1항의 심의에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영화 콘텐츠 및 영화광고가 포함된다.
 - a. 폭력, 도박 및 마약
 - b. 음란물
 - c. 민족, 인종, 집단 및/또는 계층
 - d. 종교
 - e. 법
 - f. 인간존엄성
 - g. 영화 시청자의 연령

제 3 부 심의기준

제 30 조

- (1) 제29조제2항a의 폭력과 관련한 영화 콘텐츠 및 영화광고에 대한 심의기준에는 시청자가 인간과 동물에 대해 가학적인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와 공감할 수 있는 시각적 장면, 대화 및/또는 독백이 포함된다.
- (2) 제29조제2항a의 도박 관련한 영화 콘텐츠 및 영화광고에 대한 심의기준에는 반복적인 도박 장면과 과도한 도박 기술이 포함된다.
- (3) 제29조제2항a의 마약류에 관련한 영화 콘텐츠 및 영화광고에 대한 심의기준에는 마약류, 향정신성 물질 및 기타 중독성 물질을 저속하고 쉽게 모방하는 기술 장면이 포함된다.
- (4) 제29조제2항b의 음란물에 관련한 영화 콘텐츠 및 영화광고의 심의기준에는 저속하고 과도한 성적 욕망을 나타내는 시각적 장면, 대화 및/또는 독백이 포함된다.
- (5) 제29조제2항c의 민족, 인종, 집단 및/또는 계층에 관련한 영화 콘텐츠 및 영화광고의 심의기준에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커뮤니티를 서로 대립시킬 수 있는 시각적 장면, 대화 및/또는 독백과 민족, 인종, 집단 및/또는 계층을 불신하거나 비하하는 인상을 나타낼 수 있는 장면이 포함된다.
- (6) 제29조제2항d의 종교적 관점에 관련한 영화 콘텐츠 및 영화광고의 심의기준에는 종교적 조화를 손상시키고, 종교의 신성함과 종교적 상징을 과소 평가할 수 있는 조롱 및/또는 시각적 장면, 대화 및/또는 독백이 포함된다.
- (7) 제29조제2항e의 법적 관점에 관련한 영화 콘텐츠 및 영화광고의 심의기준에는 시청자가 1945년 인도네시아공화국 헌법에 규정된 팡짜실라 (Pancasila, 인도네시아 국가 5대 원칙)와 인도네시아공화국의 단일 국가 및/또는 국가의 상징인 비네카 퉁갈 이카(Bhineka Tunggal Ika, 다양성 속의 통일)에 관한 법률에 반대하는, 및/또는 무정부주의 행동을 취하도록 장려할 수 있는 시각적 장면, 대화 및/또는 독백이 포함된다.

- (8) 제29조제2항f의 인간의 품위와 존엄성에 관련한 영화 콘텐츠 및 영화광고의 심의기준에는 인권을 침해하는 시각적 장면, 대화 및/또는 독백이 포함된다.
- (9) 제28조의 시청 연령과 관련한 영화 콘텐츠 및 영화광고의 심의기준에는 시청하기에 적합하거나 부적합한 시각적 장면 및 대화 및/또는 독백이 포함된다.

제 31 조

제29조 및 제30조의 심의기준 및 기준에 관한 세부규정은 장관령으로 정한다.

제 4 부 연령 분류

제 32 조

심의된 영화 및 영화광고에는 다음을 포함하는 시청 연령 등급 분류가 포함된다.

- a. 모든 연령대의 시청자
- b. 13세 이상의 시청자
- c. 17세 이상의 시청자
- d. 21세 이상의 시청자

제 33 조

영화 및 영화광고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모든 연령대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분류된다.

- a. 어린이에 중점을 둔 모든 연령대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의도되어 제작되었다.
- b. 연령에 맞는 주제, 제목, 시각적 장면, 대화 및/또는 독백을 포함하며 어린이의 발달과 신체 및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c. 교육, 문화, 윤리, 건전한 오락, 미학 및/또는 환경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를 포함한다.
- d. 어린이가 쉽게 모방/추종 할 수 있는 신체적, 대화 및/또는 독백을 포함한 폭력 장면을 보여주지 않는다.
- e. 어린이가 쉽게 모방/추종 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나 상황의 장면을 보여주지 않는다.
- f. 어린이가 성적 행동을 모방하고, 부모 및/또는 교사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타인에게 욕설 또는 거친 말을 하며 욕심, 교활함 및/또는 거짓말과 같은 반사회적 장면을 모방할 수 있는 시각적 장면 및/또는 대화 및/또는 독백을 포함하지 않는다.
- g. 어린이가 종교적 규범에 반하는 신비주의 또는 마술/샤머니즘, 영적 마술, 신비, 미신을 믿게 만드는 콘텐츠를 포함하지 않는다.
- h. 공포와 가학적인 영상을 포함하지 않는다.
- i. 간통, 자살, 도박, 마약 및 기타 중독성 물질 사용과 같이 아동의 정신 발달을 방해 할 수 있는 시각적 장면, 대화 및/또는 독백을 표시하지 않는다.

제 34 조

영화 및 영화광고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3세 이상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분류된다.

- a. 교육, 윤리, 감상, 미학 및 창의성의 가치와 긍정적인 호기심 발달을 포함한다.

- b. 어린이에서 청소년으로의 전환 연령대에 적합한 주제, 제목, 시각적 장면, 대화 및/또는 독백을 포함한다.
- c. 위험한 장면과 이성과 동성 사이의 난잡한 장면과 같이 어린이에서 청소년으로의 과도기에 따라 모방되는 민감한 장면을 보여주지 않는다.

제 35 조

영화 및 영화광고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7세 이상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분류된다.

- a. 교육, 문화, 윤리, 감상, 미적 가치 및/또는 긍정적인 호기심 발달을 포함한다.
- b. 17세 이상의 시청자에게 적합한 주제, 제목, 시각적 장면은 물론 대화 및/또는 독백을 포함한다.
- c. 부분적으로 그리고 교육적으로 제시되는 섹슈얼리티 관련이다.
- d. 부분적으로 제시되는 폭력 관련이다.
- e. 가학적인 장면을 보여주지 않는다.

제 36 조

영화 및 영화광고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1세 이상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분류된다.

- a. 성인을 위한 제목, 주제, 시각적 장면 및/또는 대화 및/또는 독백을 포함한다.
- b. 가족 주제 및 문제이다.
- c. 성, 폭력, 가학성에 대한 과장되지 않은 시각적 장면과 대화이다.
- d. 현지 시간으로 23:00 에서 03:00까지의 텔레비전 방송이다.
- e. 영화 감상 또는 교육 및/또는 연구 목적의 영화상영을 제외하고는 극장에서만 상영한다.

제 37 조

제32조 및 제36조의 연령 분류 기준에 관한 세부규정은 장관령으로 정한다.

제 5 부
영화 및 영화광고의 배급철회

제 38 조

- (1) 심의를 통과한 영화 및 영화광고는 국민 생활의 안전, 질서, 평화 또는 조화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영화심위원의 고려에 따라 장관이 배급을 철회할 수 있다.
- (2) 영화 및 영화광고의 배급철회에 관한 규정은 장관령으로 정한다.

제 4 장
영화심의원 사무국

제 39 조

- (1) 영화심의원 사무국은 영화심의원 사무국장이 지휘한다.
- (2) 제1항의 영화심의원 사무국장은 공무원이다.

- (3) 영화심의원 사무국은 영화심의원에 행정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다.
- (4) 영화심의원 사무국장은 장관에게 행정적 책임을 진다.
- (5) 제2항의 영화심의원 사무국장은 장관이 임명하고 해임한다.
- (6) 영화심의원 사무국의 조직 및 업무 절차에 관한 세부규정은 국가기구에 권한을 부여하고 관료 개혁 분야에서 공무를 담당하는 장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 장관이 지정한다.

제 40 조

영화심의원 사무국은 제39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 a. 검열 정책 수립 및 실행
- b. 계획 및 프로그램 준비
- c. 자원 업무 관리
- d. 총무 관리

**제 5 장
심의전문인력**

제 41 조

- (1) 영화심의원은 그 업무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심의업무를 가진 심의전문 인력의 지원을 받는다.
 - a. 일반대중에게 상영, 방영 및/또는 배급될 영화 및 영화광고에 대한 조사, 평가 및 분석을 수행한다.
 - b. 대형 스크린, 텔레비전 및 정보 기술 네트워크를 통해 일반대중에게 표시, 방송 및/또는 유포되는 심의 결과를 모니터링한다.
 - c. 연구,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를 영화심의원에 보고한다.
- (2) 제1항의 심의전문인력은 공무원 및/또는 비 공무원이다.
- (3) 제1항의 심의전문인력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 a. 중앙에 소재하는 심의전문인력
 - b. 지방 주도에 소재하는 심의전문인력
- (4) 제2항a의 중앙에 소재하는 심의위원은 최대 45인이다.
- (5) 제2항b의 지방 주도에 소재하는 심의위원은 최대 15인이다.

제 42 조

- (1) 제41조의 심의 인력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a. 인도네시아공화국 국민이다
 - b. 팡짜실라(Pancasila) 및 1945년 인도네시아공화국 헌법을 성실히 따른다.
 - c. 영화의 원리, 목적 및 기능을 이해한다.
 - d. 법령 규정에 따라 검열 분야에서 역량이 있다.
 - e. 자신의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할 수 있다.
 - f. 지역 문화와 현지 지식에 대한 이해를 가진다.

- g. 영화의 내용을 평가할 수 있다.
- (2) 심의 전문위원은 선정위원회의 선발을 통해 선출된다.
- (3) 제2항의 선정위원회는 장관이 지정한다.
- (4) 선출된 심의 전문위원은 장관이 임명한다.

제 43 조

- (1) 심의전문위원은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선서 또는 서약을 할 의무가 있다.
- (2) 영화심의 전문위원은 영화심의기관 원장에 의해 선서 또는 서약을 수행한다.

**제 6 장
자금 조달**

제 44 조

- (1) 영화심의회원은 국가예산으로 자금을 지원 받는다.
- (2) 영화심의회원은 국가예산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것 외에도 지역예산으로 지원될 수 있다.

**제 7 장
경과규정**

제 45 조

이 정부령이 시행될 때, 영화심의회원에 관한 정부령 1994년 제7호에 의거 임명된 영화심의 기관 위원은 이 정부령에 따라 영화심의회원 위원이 선서 또는 서약을 할 때까지 자신의 업무와 기능을 계속 수행한다.

**제 8 장
부칙**

제 46 조

영화심의회원에 관한 정부령 1994년 제7호(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1994년 제12호)의 모든 시행 규정은 다음에 근거한 정부의 새로운 규정과 모순되지 않거나 대체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제 47 조

본 정부령에 대한 모든 시행 규정은 본 정부령의 공포 후 1년 이내에 확정되어야 한다.

제 48 조

이 정부령이 시행될 때, 영화심의회원에 관한 정부령 1994년 제7호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1994년 제12호)는 폐지되고 더 이상 유효하지 아니하다.

제 49 조

이 정부령은 제정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이 정부령의 제정을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에 게재할 것을 명한다.**

2014년 3월 11일
자카르타에서 승인됨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

서명

(수실로 밤방유도유노)
DR. H. SUSILO BAMBANG YUDHOYONO

2014년 3월 11일
자카르타에서 제정됨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장관

서명

(아미르삼수딘)
AMIR SYAMSUDIN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2014년 제48호

영화심의에 관한 정부령 2014년 제18호에 대한 해설

1. 해설

엔터테인먼트의 필요성에 대한 인간의 인식은 영화 산업이 대중을 위해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영화 산업의 발전은 국가 경제 운동의 중요한 측면이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국가 경제의 선두 주자가 되었다.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영화 산업의 주역인 다른 국가와는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다. 국가 영화 제작 측면이 제한적인 인도네시아의 상황으로 인해 이 나라는 영화를 외부 / 수입하는 영화 상품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물론 국가 영화 산업의 발전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영화가 외부로부터 가져오는 영향은 체계적, 기술적 의미뿐만 아니라 이념적 의미에서도 영향을 미친다. 이데올로기적 형태는 인도네시아의 법령 규정과 다른 가치와 규범의 형태 일 수 있다.

이 차이는 직간접적으로 사회, 민족 및 국가에 반드시 긍정적이지 않은 가치와 규범의 해체와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엔터테인먼트 정보 상품으로서의 영화는 그것이 전달하는 가치, 규범 및 문화와 분리될 수 없다. 물론 영화의 발전은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패턴과 라이프 스타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가치와 규범의 존재는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거나 기존 문화를 변화시킬 잠재력이 있는 측면이다. 이러한 측면 중 일부는 인도네시아에 이미 존재하고 세대를 거쳐 전승되어 온 고귀한 가치와 규범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영화에서 전달되는 가치는 항상 서구 이데올로기에서 오는 것은 아니며 수입 영화에서 오는 것도 아니다. 인도네시아 문화와 양립할 수 없는 가치와 규범은 국내 제작 영화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정부와 사회로부터 심각한 관심을 받아야 한다. 파괴적이고 국가 영화 개발의 맥락에서 우선되어야 하는 외부 및 내부 문화를 훼손하는 국가 화문적 여과를 만들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심의는 심의된 영화의 소유자, 즉 영화활동주체, 영화사업주체, 외교대표 또는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 기관과의 대화 원칙에 따라 수행한다. 심의기준 및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테마, 이미지, 장면, 사운드 및 자막이 포함된 영화는 심의기준 및 기준에 따라 수정을 위해 영화 소유자에게 반환된다. 영화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 외에도 대중은 개별적으로나 그룹으로 영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영화심의원(Lembaga Sensor Film, 약칭LSF)은 기본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일부 문제로 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영화심의원은 전문적인 검열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시청각 이야기 단위로서의 영화는 별개의 작은 부분으로 나눌 수 없다.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 시퀀스에서만 식별 할 수 있는 의미의 통일성을 가지고있다. 이것이 영화심의원의 임무를 보다 명확하고 명확하게 하는 이유이다. 실질적인 장면을 제거하면 영화 자체의 의미가 훼손된다. 이러한 모호성 문제는 인도네시아의 영화 콘텐츠 및 영화광고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해석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를 위해 법적 근거와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는 정부령이 수립된다.

영화심의원은 일반대중에게 공개 할 영화 및 영화광고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평가 및 결정에 대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에 의해 수행된다.

이 정부령은 영화심의원의 설립, 위치, 위원 자격, 영화 및 영화광고 심의에 대한 지침 및 기준, 영화심의원 사무국 및 자금 지원을 규제한다.

2. 각 조별 해설

제 1조

충분히 설명됨

제 2 조

- (1) 충분히 설명됨
- (2) “스토리 영화” 는 실험 영화와 애니메이션 영화를 포함하여 스토리가 포함된 모든 영화이다.
비 스토리 영화” 는 애니메이션 영화, 광고영화 (광고 자료가 포함된 영화), 실험 영화, 예술 영화, 교육 영화 및 다큐멘터리 영화 등 정보를 전달하는 모든 영화이다.
- (3) 충분히 설명됨
- (4) “광고영화” 는 일반대중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상품 및 아이디어의 가용성과 관련하여 상업 자료 또는 정보 용 영화 및/또는 공공 서비스를 포함하는 영화이다.

제 3 조

- (1) 충분히 설명됨
- (2) “독립” 이란 어떤 영향에서도 자유롭게 영화 및 영화광고의 조사, 적격성 및 연령 분류 결정 심의를 하는 영화심의원이다.
- (3) 충분히 설명됨

제 4 조 ~ 제 6 조

충분히 설명됨

제 7 조

- a ~ d 충분히 설명됨
- e. “양질의 영화” 는 바르고 훌륭하고 볼 가치가 있는 영화를 의미이다.

f. 충분히 설명됨

제 8 조 ~ 제 14 조

충분히 설명됨

제 15 조

(1) 충분히 설명됨

(2) 이 조항에서 국회와 협의가 의미하는 것은 적합하고 적절한 테스트는 아니다.

제 16 조 ~ 제 24조

충분히 설명됨

제 25 조

(1) 대화의 원칙은 사회의 자기 검열을 촉진하고 사회의 역동성에 따라 창작의 자유를 기반으로 일할 수 있는 영화 및 영화광고의 자기능력을 배양하는 동시에 종교, 윤리, 도덕, 예절 및 국가의 문화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2) ~ (3) 충분히 설명됨

제 26 조 ~ 제 49 조

충분히 설명됨

인도네시아공화국 추가 관보 제5515호

**영화 및 영화광고의 심의지침 및 기준, 시청연령 분류 및
배급 철회에 관한
문화교육부장관령 2019년 제14호
PERATURAN MENTERI PENDIDIKAN DAN
KEBUDAYAAN REPUBLIK INDONESIA
NOMOR 14 TAHUN 2019
TENTANG PEDOMAN DAN KRITERIA PENYENSORAN,
PENGGOLOONGAN USIA PENONTON,
DAN PENARIKAN FILM DAN
IKLAN FILM DARI PEREDARAN**

**전능하신 신의 은총으로
인도네시아공화국 문화교육부 장관은**

고려함:

영화심의회에 관한 정부령 2014년 제18호 제 31 조, 제 37 조, 제 38 조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영화 및 영화광고의 심의지침 및 기준, 시청연령 분류 및 배급철회에 관한 문화교육부장관령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검토함:

1. 국가 부처에 관한 법률 2008년 제39호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제 166 호, 인도네시아 공화국 추가 관보 제4916호)
2. 영화에 관한 법률 2009년 제33호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2009년 제141호, 인도네시아 공화국 추가 관보 제 5060 호)
3. 영화심의회에 관한 정부령 2014년 제18호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2015년 제48호, 인도네시아공화국 추가 관보 제5515호)
4. 문화교육부에 관한 대통령령 2015 년 제14 호의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8 년 제101 호에 의해 개정된 문화교육부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2015년 제15 호)에 관한 대통령령 제14 호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2018 년 제192호)
5. 문화교육부 조직 및 업무 절차에 관한 문화교육부장관령 2018년 제11호 (2018년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제575호)에 의해 개정된 문화교육부 조직 및 업무 절차에 문화교육부장관령 2019 년 제9 호 (2019 년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제236호)

결정함:

확정: 영화 및 영화광고의 심의지침 및 기준, 시청연령 분류 및 배급철회에 관한 문화교육부장관령

제 1 장 총칙

제 1 조

이 장관령에서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1. 영화심의(Sensor Film)은 일반 대중에게 공개 할 영화 및 영화광고의 적격성에 대한 조사, 평가 및 결정이다.
2. 영화(Film)는 소리의 유무에 관계없이 영화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지는 사회적 제도이자 대중전달매체인 문화예술작품으로 상영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영화광고(Iklan Film)는 영화의 발표 및 홍보의 한 형태이다.
4. 심의인증서(Surat Tanda Lulus Sensor, 약칭 STLS)는 모든 영화 및 영화광고가 배급 및 상영 될 수 있도록 영화심의회에서 발급하는 서신이다.
5. 심의기준(Kriteria Penyensoran)은 영화 및 영화광고와 관련된 제한, 금지, 의무 및 조정을 포함하는 측도 및/또는 표준이다.
6. 영화상영(Pertunjukan Film)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중을 대상으로 한 영화를 상영 및/또는 방영하는 것이다
7. 영화심의회 (Lembaga Sensor Film, 약칭 LSF)은 모든 영화 및 영화광고를 심의하는 기관이다.
8. 장관(Menteri)은 문화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장관이다.

제 2 조

- (1) 배급 및/또는 상영 될 영화 및 영화광고는 심의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 (2) 제1항의 심의인증서는 다음을 포함하는 심의 후에 발급된다.
 - a. 대중에게 배급 및/또는 상영 될 영화 번역의 주제, 이미지, 장면, 사운드 및 자막에 대한 조사 및 평가
 - b. 대중에게 배급 및/또는 상영 될 영화 및 영화광고의 적격성 결정
 - c. 시청연령 분류 결정
- (3) 제2항에 따른 심의는 영화 및 영화광고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한다는 원칙으로 수행된다.

제 3 조

- (1) 심의된 영화 및 영화광고는 일반 대중에게 배급 및/또는 상영될 영화 및 영화광고의 최종결과물이다.
- (2) 제1항의 영화는 다음으로 구성된다.
 - a. 스토리 영화

- b. 비 스토리 영화
- (3) 제2항a의 이야기영화는 이야기가 담긴 영화이다.
- (4) 제2항b의 비 스토리 영화는 정보 전달을 포함하는 영화이다.
- (5) 제1항의 영화광고는 다음으로 구성된다.
 - a. 포스터
 - b. 스틸사진
 - c. 슬라이드
 - d. 클리셰
 - e. 예고편
 - f. 배너
 - g. 팸플릿
 - h. 브로슈어
 - i. 광고판
 - j. 현수막
 - k. 폴더
 - l. 플래카드
 - m. 출판물 및 기타 홍보수단

제 2 장 심의지침 및 기준

제 1 부 심의지침

제 4 조

심의는 영화에 관한 법률에서 언급된 영화의 원리, 목적, 기능에 따라 영화 및 영화광고를 심사하고 평가함으로써 수행된다.

제 5 조

영화 및 영화광고에 대한 조사 및 평가, 적격성 및 연령 분류 결정을 수행할 때 심의팀은 다음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a. 길라잡이
- b. 참조

제 6 조

제5조a의 길라잡이는 다음으로 구성된다.

- a. 이야기, 설정, 장면 및 대화 표현, 목적의 명확성, 관련성 및 복잡성이 통합된 영화와 영화광고 간의 관계인 맥락
- b. 영화 및 영화광고에 포함된 주요 아이디어 및 생각인 주제

- c. 시청자의 생각, 감정 및 행동에 대한 인식과 영향을 유발할 수 있는 시청각 조합의 변형인 뉘앙스 및 영향

제 7 조

제5조b의 참조는 다음으로 구성된다.

- a. 간결하고, 집약적이고, 흥미롭고, 관련성이 높고, 매력적인 토론의 내용을 축소한 제목
- b. 스토리가 재생되는 설정과 관련된 행동의 시각화인 시각적 장면
- c. 구두 및/또는 비언어적 의사 소통 기호를 사용하여 배우 간의 대화 및/또는 솔로 대화인 대화 또는 독백
- d. 대화의 서면 번역(자막)과 의미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비언어적 의사 소통 기호로 구성된 인도네시아어가 아닌 영화의 번역문

제 2 부 심의기준

제 8 조

심의에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영화 콘텐츠 및 영화광고가 포함된다.

- a. 폭력, 도박, 마약, 향정신성 물질 및 기타 중독성 물질
- b. 포르노
- c. 민족, 인종, 집단 및/또는 계층
- d. 종교
- e. 법
- f. 인간 존엄성
- g. 영화 시청자의 연령

제 9 조

영화 또는 영화광고는 다음을 표시하는 경우 제8 조 a의 폭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 a. 싸움, 구타, 고문, 찌르기, 학살, 절단, 거칠고 잔인한 찌르기 및/또는 기타 유사한 장면
- b. 폭력 장면 및/또는 기타 유사한 장면의 결과로 끔찍한 상태에 있는 인간 또는 동물의 신체 부위가 피를 흘리고 절단된 장면
- c. 앵글 샷에서 저속한 자살 장면, 근접 촬영 장면
- d. 인간과 동종의 동물 모두 근거리에서 촬영하는 각도에서 동물에 대한 과도한 폭력

제 10 조

영화 또는 영화광고가 반복적인 도박 장면과 과도한 도박 기술을 보여주는 경우 제8조제 a호의 도박을 포함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제 11 조

영화 또는 영화광고가 마약, 향정신성 물질 및 기타 중독성 물질의 사용 장면을 근접 촬영 각도에서 표현하고 저속하고 쉽게 모방할 수 있을 경우 제 8조 a의 마약, 향정신성 물질 및 기타

물질의 남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제 12 조

영화 또는 영화광고는 영화의 전체 내용이 의도적으로 성적 착취 장면을 표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 8 조 b의 음란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 a. 시각적으로 알몸, 여성용 반신 또는 정면, 측면 및/또는 뒤에서 보이는 여성과 남성 모두의 전신
- b. 지속적인 성행위와 비정상적이거나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묘사하는 영상, 대화 및/또는 독백
- c. 음란물로 이어지는 입술 키스
- d. 정욕을 불러 일으키는 특정 신체 부위를 근접 촬영
- e. 에로틱한 신체 움직임 및/또는 춤
- f. 낙태 영상
- g. 강간 영상
- h. 음란한 대화 또는 독백
- i. 성적으로 노골적이고 외설적인 노래 가사
- j. 실제 기능에 맞지 않는 피임약 사용

제 13 조

영화 또는 영화광고는 영화의 전체 내용이 의도적으로 민족, 인종, 집단 또는 특정 계층을 차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 8 조 c의 민족, 인종, 집단 또는 계층과 관련된 차별 문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 a. 남성, 여성, 아동 및 장애인을 비하하는 것을 포함하여 민족, 인종, 집단 또는 계층을 괴롭히거나 비하하는 자료
- b. 민족, 인종, 계층 또는 특정 집단이 채택한 품위 및 품위의 규범의 다양성과 상충될 수 있는 자료
- c. 민족 간, 인종 간, 계층 간 및 집단 간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자료

제 14 조

영화 또는 영화광고는 영화의 전체 내용이 고의적으로 종교적 조화를 파괴하고 종교 또는 종교적 상징의 신성함을 조롱하고 및/또는 신성을 경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 8 조 d의 종교적 문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제 15 조

영화 또는 영화광고는 영화의 전체 내용이 1945 년 인도네시아공화국 헌법인 Pancasila (Pancasila), 비네카 퉁갈 이카 (Bhineka Tunggal Ika), 통일국가, 국가상징 및/또는 법령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 8 조 e의 법적 문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제 16 조

영화 또는 영화광고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권을 침해하는 시각적 장면, 대화 및/또는 독백을 제시하는 경우 제8조f의 인간 존엄성 문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제 3 장 시청연령의 분류

제 17 조

심의된 영화 및 영화광고에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시청자 연령 분류 코드가 포함되어 있다.

- a. 모든 연령대의 시청자용인 경우 SU
- b. 13세 이상의 시청자용인 경우 R13
- c. 17세 이상의 시청자용인 경우 D17
- d. 21세 이상의 시청자용인 경우 D21

제 18 조

- (1) 제17조a의 SU 코드가 있는 영화 및 영화광고는 도덕적 가치, 건전한 오락, 감상, 미학, 및/또는 환경에 대한 호기심을 장려하는 어린이를 강조하여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특별히 제작되고 의도된 영화 및 영화광고이다.
- (2) SU 코드가 있는 영화 및 영화광고에는 어린이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발달에 문제가 되지 않는 제목, 주제, 그림, 장면, 사운드 및 번역된 텍스트가 포함된다.
- (3) SU 코드가 표시된 영화 및 영화광고는 다음과 같다.
 - a. 대형 스크린
 - b. 텔레비전 방송
 - c. 정보 기술 네트워크
 - d. 기타 상영 매체

제 19 조

- (1) 제17조b의 R13코드가 있는 영화 및 영화광고는 교육 및 과학적 가치, 사회 문화적 가치, 윤리, 오락, 감상, 미학 및 창의성을 포함하고 주변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호기심을 발달을 장려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별히 제작되고 의도된 영화 및 영화광고이다.
- (2) R13 코드가 있는 영화 및 영화광고에는 어린이에서 청소년으로의 전환기에 적합한 제목, 테마, 이미지, 장면, 사운드 및 자막이 포함된다.
- (3) R13 코드가 표시된 영화 및 영화광고는 다음과 같다.
 - a. 대형 스크린
 - b. 텔레비전 방송
 - c. 정보 기술 네트워크
 - d. 기타 상영 매체

제 20 조

- (1) 제17조c의 D17코드가 있는 영화 및 영화광고는 교육 및 과학적 가치, 사회 문화적 가치, 윤리, 오락 및 심미적 감상 및 미적 감상을 포함하고 주변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하는 17세 이상의 성인을 위해 특별히 제작되고 의도된 영화 및 영화광고이다.
- (2) D17 코드가 있는 영화 및 영화광고에는 청소년에서 성인으로의 전환기에 적합한 제목, 테마, 이미지, 장면, 사운드 및 자막이 포함된다.

- (3) D17코드가 표시된 영화 및 영화광고는 다음과 같다.
 - a. 대형 스크린
 - b. 텔레비전 방송
 - c. 정보 기술 네트워크

제 21 조

- (1) 제17조d의 D21코드가 있는 영화 및 영화광고는 사회 문화적 가치, 윤리, 오락 및 심미적 감상을 포함하고 세상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하는 21세 이상의 성인을 위해 특별히 제작되고 의도된 영화 및 영화광고이다.
- (2) D21코드가 있는 영화 및 영화광고에는 성인에게 적합한 제목, 테마, 이미지, 장면, 사운드 및 자막이 포함된다.
- (3) D21코드가 있는 영화 및 영화광고는 다음과 같다.
 - a. 대형 스크린
 - b. 현지 시간으로 23:00에서 03:00까지의 텔레비전 방송
- (4) 21세 이상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영화상영은 영화 감상 또는 교육 및/또는 연구 목적의 영화상영을 제외하고는 개방된 공간 또는 비 영화상영 건물에서 개최할 수 없다.

제 22 조

상영 매체에 관한 제 17 조의 시청자 연령 분류 코드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a. 대형 스크린에 시청자 연령 분류 코드 포함은 영화 텔롭(telop)과 모든 유형의 영화광고에 게재된다.
- b. TV 방송에 시청자 연령 분류 코드 포함은 영화상영 및 영화광고 동안 화면 상단에 게재된다.
- c. 정보 기술 네트워크 또는 기타 공공 상영 매체에 시청자 연령 분류 코드 포함은 영화 텔롭(telop) 및 모든 유형의 영화광고에 게재된다.

제 4 장 심의 절차

제 23 조

- (1) 심의 대상 영화 및 영화광고는 온라인 및/또는 오프라인으로 영화심의원 사무국에 신청해야 한다.
- (2) 제1항에 신청된 접수는 영화 또는 영화광고의 저작권 소유자 또는 소유자가 하여야 한다.
- (3) 심사를 신청할 제2항의 영화 또는 영화광고의 저작권 소유자 또는 소유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a. 등록 양식을 작성
 - b. 촬영 통지서에 명시된 이야기의 제목과 내용에 따라 영화 및 영화광고에 대한 자료 및 영화 시놉시스를 제출
 - c. 규정에 따라 심의 비용 지불
 - d. 영화 비즈니스 주체를 위한 영화 제작 신고서 또는 수입 영화 비즈니스 주체를 위한

제 24 조

- (1) 배급 및/또는 상영될 광고 영화는 심의되어야 한다.
- (2) 제1항의 광고 영화는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홍보 및 판매 수단으로 사용되는 영화이다.
- (3) 제1항의 배급 및/또는 상영되는 광고 영화는 다음과 같은 형식이어야 한다.
 - a. 보건 부문의 정부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의 유통 허가를 포함하는 의료 기기 및 가정용 건강 용품
 - b. 전통 의학 관행은 보건 부문의 정부 업무를 담당하는 부에서 광고 할 수 있는 면허 첨부
 - c. 가공 식품 및 화장품은 의약품 및 식품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유통 허가 첨부
 - d. 질병 위험을 줄인다는 주장 및/또는 특정 추가 성분이 포함 된 가공 식품에는 약물 및 식품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광고 승인 서신 첨부
 - e. 약물 및 식품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광고 승인서와 함께 전통 의약품 및 건강 보조 식품 첨부
 - f. 광고 할 의약품은 의약품 및 식품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유통 허가 번호와 광고 승인 첨부. 단, 의약품명과 제약 산업명만 포함된 것은 광고는 제외하고 배포 허가 번호만 기재

제 25 조

- (1) 영화 및 영화광고의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a. 심의통과
 - b. 심의 미통과
- (2) 제1항a의 심의통과, 즉 제 8 조에 따른 심의기준에 적합한 영화 및 영화광고
- (3) 제1항b의 심의 미통과, 즉 제 8 조에 따른 심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영화 및 영화광고
- (4) 제3항의 심의 미통과로 선언된 영화 및 영화광고는 영화 및 영화광고 소유자에게 수정을 위해 반환되어야 함
- (5) 제4항의 영화 및 영화광고의 수정은 최대 3 회까지 제출 가능
- (6) 영화심의회원은 제4항에 따라 수정된 영화 및 영화광고와 관련된 영화 및 영화광고 소유자와 소통 창구를 개설함

제 26 조

- (1) 영화 및 영화광고가 제25조제1항a의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선언된 경우 영화심의회원은 심의인증서를 발급한다.
- (2) 영화 및 영화광고가 제25조제1항b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선언된 경우 영화심의회원은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 (3) 심의를 통과한 간판, 현수막, 플래카드, 배너, 팸플릿, 폴더 등의 영상 광고는 심의 합격 스탬프를 제공한다.

제 27 조

- (1) 영화 제작자는 상영 시 심의를 통과한 각 영화에 대해 텔롭(telop)을 표시해야 한다.
- (2) 영화 판매자 및 대여 비즈니스 주체는 텔롭(telop)을 제작하고 출판물과 포장 표지에 시청자의 연령 분류를 포함해야 한다.

제 5 장
영화 및 영화광고의 배급철회

제 28 조

- (1) 대중은 지역 사회 생활의 안전, 질서, 평화 또는 조화를 저해하는 심의를 통과한 영화 및 영화광고를 신고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신고서는 온라인 및/또는 오프라인으로 영화심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 29 조

- (1) 심의를 통과한 영화 및 영화광고가 국민 생활의 안전, 질서, 평온 및 조화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영화심위원의 고려에 따라 장관이 배급을 철회할 수 있다.
- (2) 국민 생활의 안전, 질서, 평화 또는 조화에 대한 모든 지장에 대한 고려는 영화심의원 회원들의 총회에서 결정된다.
- (3) 제2항의 고려 사항은 이해 관계자, 권한 있는 당사자 및/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제 6 장
부칙

제 30 조

이 장관령은 제정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이 법률의 제정을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에 게재할 것을 명한다.

2019년 4월 22일
자카르타에서 승인됨

인도네시아공화국 문화교육부 장관

서명

(무하지르 에펜디)
MUHADJIR EFFENDY

2019년 5월 8일
자카르타에서 제정됨

인도네시아공화국 법무인권부 사무총장

서명

(위도도 에카따하나)
WIDODO EKATJAHJANA

인도네시아공화국 관보 2019년 제492호

**정치활동 신고 및 기타 사회활동, 대중군집활동의
허가 및 감독 절차에 관한 정부령 2017년 제60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60 TAHUN 2017
TENTANG TATA CARA PERIZINAN DAN
PENGAWASAN KEGIATAN KERAMAIAAN UMUM,
KEGIATAN MASYARAKAT LAINNYA,
DAN PEMBERITAHUAN KEGIATAN POLITIK**

**전능하신 신의 은총으로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은**

고려함:

인도네시아공화국 경찰에 관한 법률 2002년 제2호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서는 정치활동 신고 및 기타 사회활동, 대중군집활동의 허가 및 감독 절차에 관한 정부령을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검토함:

1. 1945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헌법 제5조 제2항
2. 경찰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2년(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2002년 제2호, 인도
네시아 공화국 추가 관보 제4168호)

결정함:

확정: 정치활동 신고 및 기타 사회활동, 대중군집활동의 허가 및 감독 절차에 관한 정부령

**제 1 장
총칙**

제 1 조

이 정부 규정에서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1. 허가증(Surat Izin)은 대중군집활동 및/또는 기타 사회활동을 시행할 수 있는 허가가 포
함된 허가를 부여할 권한이 있는 인도네시아 공화국 경찰서장의 서면 증명서이다.
2. 신고 접수증 (Surat Tanda Terima Pemberitahuan, 약칭STTP)은 정치활동 주최자로부터

- 구비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서장의 서면 진술이다.
3. 인도네시아 공화국 경찰의 관할 지역(Daerah Hukum Kepolisian Negara Republik Indonesia, 이하 경찰 관할 지역)은 법령 규정에 따라 경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특정 경계를 가진 육지, 수역 및 영공을 포함하는 인도네시아 공화국 단일 국가의 관할 구역이다.
 4. 인도네시아 공화국 경찰(Kepolisian Negara Republik Indonesia, 이하 경찰)은 대중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법을 집행하며 국내 안보를 유지하는 틀에서 지역 사회에서 돌봄, 보호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국가 기구이다.
 5. 인도네시아 공화국 경찰청 (Kepala Kepolisian Negara Republik Indonesia, 이하 경찰청장)은 인도네시아 공화국 경찰청의 수장이며 경찰 기능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6. 관할 경찰서장(Pejabat Polri Yang Berwenang)은 대중군집활동 및 기타 사회활동에 대한 허가를 발급하고 정치활동에 신고 접수증(STTP)을 발급하도록 임명된 경찰서장이다.

제 2 조

- 이 정부령의 규정 범위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a. 대중군집활동 및 기타 사회활동에 대한 허가 절차 및 감독
 - b. 정치활동 신고

제 2 장
대중군집활동 및 기타 사회활동

제 1 부
활동의 형태

제 3 조

- 제2조의 대중군집활동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 a. 대중군집
 - b. 공개 관람
 - c. 일반 도로에서의 행렬

제 4 조

제2조의 기타 사회활동의 형태에는 법령의 규정에 명시된 대로 대중군집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활동이 포함된다.

제 2 부
허가 절차

제 5 조

대중군집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대중군집활동 및 기타 사회활동의 모든 주최자는 허가가 필요하다.

제 6 조

- (1) 제5조에 따른 허가증을 취득하기 위해 각 주최자는 대중군집활동 및 기타 사회활동 시행 전 근무일 기준 14일 이전에 경찰 관할 지역의 경찰서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2) 제1항의 활동이 전국적인 규모인 경우, 각 주최자는 활동 시행 전 근무일 기준 21일 이전에 경찰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3) 제1항의 활동이 국제적인 규모인 경우, 각 주최자는 활동 시행 전 근무일 기준 30일 이전에 경찰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4) 허가신청이 제1항, 제2항 및/또는 제3항의 기한에 관한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제출된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제 7 조

- (1) 제6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a. 활동의 목적과 성격
 - b. 시행 장소 및 시간
 - c. 참가자 또는 초청자의 수
 - d. 활동 책임자
- (2) 제1항의 허가신청은 최소한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a. 조직위원회 구성 목록
 - b. 활동 장소 책임자의 승인
 - c. 관련기관 또는 조직의 추천
 - d. 개최 예정 활동이 종교적 규범, 도덕 또는 예절의 규범 및 법령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최자의 서면 진술
- (3) 관할 경찰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대해 행정심사를 수행한다.
- (4) 제1항 및 제2항의 협력을 충족한 허가신청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은 허가증을 주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5) 허가신청이 제1항과 제2항의 조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은 허가신청서를 주최자가 갖추도록 반환한다.

제 8 조

관할 경찰서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허가증을 제공한 후 관계 기관 및 다른 당사자와 조정해야 한다.

제 9 조

- (1) 제8조의 협력 결과에 따라 문제가 없으면 관할 경찰서장은 구비 신청서 접수 후 근무일 기준 4일 이내에 허가증을 발급한다.
- (2) 제6조제2항의 국가적인 규모의 대중군집활동 및 기타 사회활동의 경우, 관할 경찰서장은 구비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허가증을 발급한다.
- (3) 제6조제3항의 대중군집활동 및 국제적인 규모의 기타 사회활동의 경우, 관할 경찰서장은 구비 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허가증을 발급한다.
- (4) 제8조의 협력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은 그 사유와 함께 허가신

청에 대한 거부를 전달한다.

제 10 조

신청된 활동 계획이 변경된 경우, 주최자는 활동이 시행되기 전 3일 이내에 해당 변경 사항을 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 11 조

대중군집활동 및 기타 사회활동 허가에 대한 기술지침에 관한 세부규정은 경찰청장령으로 정한다.

제 3 부
경찰의 감독 및 조치

제 12 조

- (1) 관할 경찰서장은 대중군집활동 및 기타 사회활동의 실행을 감독한다.
- (2) 제1항의 감독을 수행함에 있어 관할 경찰서장은 관련기관 및 기타 당사자와 협력한다.

제 13 조

제12조에서 언급된 감독을 수행에서 관할 경찰서장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의 위반 및/또는 안전과 대중군집 질서의 교란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경찰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4 조

- (1) 관할 경찰서장은 허가 없이 시행되는 대중군집활동 및 기타 사회활동을 해산하는 형태로 경찰 조치를 취해야 한다.
- (2) 관할 경찰서장은 허가가 있지만 법령의 규정에 따르지 않는 대중군집활동 및 기타 사회활동을 해산하는 형태로 경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찰 조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제 15 조

대중군집활동 및 기타 사회활동에서 감독 및 조치에 대한 기술지침에 관한 세부규정은 경찰청장령으로 정한다.

제 3 장 정치활동

제 1 부 정치활동의 형태

제 16 조

정치활동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 a. 총선 캠페인
- b. 정치 퍼레이드
- c. 정치 팸플릿 배포
- d. 대중에게 배포되는 정치적 내용이 포함된 영상 또는 그림 게시
- e. 법령의 규정에 따른 기타 형태

제 17 조

- (1) 제16조의 정치활동이 공개적으로 이행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 (2) 자신의 환경 내에서 이행하는 정치활동은 안전과 질서를 위협할 가능성이 없는 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할 필요가 없다.

제 2 부 신고 절차

제 18 조

제17조의 신고는 주최자가 정치활동이 이행하기 전 근무일 기준 7일 이전에 활동이 실행되는 경찰 관할 지역의 관할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 19 조

- (1) 제18조의 신고는 최소한 다음을 포함한다.
 - a. 활동의 형태
 - b. 활동의 의도와 목적
 - c. 활동 장소 및 시간
 - d. 참가자 수 및 차량 수
 - e. 연설자
 - f. 활동 책임자
- (2) 제1항에 명시된 신고는 다음을 첨부해야 한다.
 - a. 제안서
 - b. 조직/법인의 정관/규정
 - c. 활동 책임자의 신원
 - d. 조직 / 법인의 관리자 구성 목록
 - e. 활동 장소 책임자의 승인

- f.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의 추천
- g. 외국인 연설자의 여권 및 비자
- h. 활동이 퍼레이드인 경우 따라야 할 경로 계획
- i. 활동이 공무원을 초청하는 경우 초대장

제 20 조

- (1) 관할 경찰서장은 정치활동 주최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후 제19조에 따른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한다.
- (2) 관할 경찰서장은 활동이 이행되기 전 근무일 기준 3(삼) 일 이내에 제1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고에 대해 신고접수증(STTP)을 발급한다.
- (3) 신고가 제19조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은 활동이 이행되기 전 근무일 기준 3(삼)일 이내에 요구 사항을 보완하도록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
- (4) 주최자가 제3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요구 사항을 완료하지 않으면 관할 경찰서장은 신고접수증(STTP)을 발급하지 않는다.

제 21 조

- (1) 검사 결과에 따라 보안 및 대중군집 질서 취약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은 주최자에게 다음을 권고한다.
 - a. 활동 연기
 - b. 활동 장소 이동
 - c. 활동 또는 행사의 형태 변경
 - d. 활동 일부 감소
- (2) 제1항의 권고는 신고접수증(STTP)에 포함되어야 한다.
- (3) 주최자가 제1항의 권고를 무시하고 활동을 계속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은 경고를 할 수 있다.
- (4) 주최자가 제3항의 경고를 무시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은 정치활동의 금지 및/또는 해산할 수 있다.

제 22 조

신고접수증(STTP)이 발급된 정치활동을 시행할 때 대중의 안전 및 질서를 위협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은 주최자에게 정치활동의 중지, 연기 및/또는 장소 이동을 지시한다.

제 23 조

주최자가 자발적으로 활동 취소, 활동 중단, 활동 위치 이동, 활동 또는 행사의 형태 변경 및/또는 정치활동의 일부를 감소하는 경우, 활동이 이행되기 전 2일 이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 24 조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언급된 정치활동 신고에 대한 기술지침에 관한 세부규정은 경찰청장령으로 정한다.

제 4 장 자금 조달

제 25 조

대중군집활동 및 기타 사회활동의 허가, 감독 및 안전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자금과 정치 활동에 대한 신고는 국가 세입 및 지출 예산에서 부담한다.

제 5 장 경과 규정

제 26 조

관할 경찰서장이 접수하고 아직 허가증 또는 신고접수증(STTP)을 발급하지 않은 모든 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는 이 정부령이 시행되기 전 법령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제 6 장 부칙

제 27 조

이 정부령이 시행되면:

- a. 이미 발급되었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은 허가증 및 신고 접수증(STTP)은 여전히 유효하다.
- b. 대중군집활동 및 기타 사회활동에 대한 허가를 관장하는 모든 법률과 규정 및 정치활동 신고는 이 정부령과 반하지 않는 한 여전히 유효하다.

제 28 조

이 정부령이 제정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이 법률의 제정을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에 게재할 것을 명한다.

2017년 12 월 28 일
자카르타에서 승인됨
인도네시아 공화국 대통령

서명.

(조코 위도도)
JOKO WIDODO

2017 년 12 월 29일
자카르타에서 제정됨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무인권부 장관

서명.

(야소나 H. 라올리)
YASONNA H. LAOLY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2017년 제311호

대중군집활동, 기타 커뮤니티 및 정치활동의 신고허가 및 감독절차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정부령 2017년 제 60호에 대한 해설

1. 해설

인도네시아 공화국 경찰에 관한 법률 2002년 제2호(인도네시아 공화국 관보 2002년 제2호, 인도네시아 공화국 추가 관보 제4168호) 제15조제2항a,d는 경찰은 대중군집활동 및 기타 사회활동을 허가하고 감독할 권한이 있으며 정치활동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 이 권한의 존재는 평화, 안전, 공공질서 및 법률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경찰의 공공서비스 형태이다.

관할 경찰서장에게 하는 대중군집활동과 기타 사회활동에 대한 허가신청 및 정치활동의 신고는 특히 활동 지역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위협을 줄이기 위한 공공서비스 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이다. 따라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되는 대중군집활동 및 기타 사회활동에 대한 허가신청에는 최소한 활동의 목적과 성격, 시행 장소 및 시간, 참가자 또는 초청자의 수 및 활동 책임자가 포함되어야 하고 조직 위원회 구성 목록, 활동 장소 책임자의 승인, 관련기관 또는 조직의 추천 및 시행될 활동이 종교적 규범, 도덕 또는 예절의 규범 및 법령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최자의 서면 진술이 첨부되어야 한다. 반면에 각 정치활동 신고에 최소한 활동의 형태, 활동의 의도와 목적, 활동 장소와 시간, 참가자 수 및 차량 수, 연설자 및 활동 책임자가 포함되어야 하고 제안서, 조직/법인의 정관/규정, 활동 책임자의 신원, 조직/법인의 관리자 구성 목록, 활동 장소 책임자의 승인,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의 추천, 외국인 연설자의 여권 및 비자, 활동이 퍼레이드인 경우 따라야 할 경로 계획, 및 활동이 공무원을 초청하는 경우 초대장이 첨부되어야 한다.

허가증 발급에 있어서 관할 경찰서장은 관련 부처/기관 및 기타 당사자와 협력한다. 한편, 신고 접수증(STTP)을 발급할 때 관할 경찰서장은 필요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확인한다. 이는 이러한 활동이 질서 있고 원활하며 안전한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중에게 경찰 서비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대중군집활동, 기타 사회활동에 대한 허가 또는 정치활동의 신고에 대한 신청서는 해당 활동이 이행되는 경찰 관할 지역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된다.

허가 과정에서 모든 당사자의 인식과 책임, 활동의 신고 및 이행은 법과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타인의 이익과 권리를 고려하며 안전하고 질서 있고 원활한 상황과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2. 각 조별 해설

제 1 조 ~ 제 2 조

충분히 설명됨

제 3 조

“대중군집활동”은 형법에 따른 대중 활동이다.

제 4 조

“기타 사회활동”은 형법에 따른 대중군집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활동이다.

제 5 조

충분히 설명됨

제 6 조

(1) Kecamatan(끄짜마판, 인도네시아 면/읍 행정구역) 내에서 이행되는 활동의 허가는 Polsek(쁠섹, 소(小)행정구역 경찰)에게 제출해야 하고, 1개 이상의 Kecamatan을 포함하는 활동의 경우 허가는 Poles(쁠레스/ 중(中)행정구역 경찰)로 제출해야 한다.

kabupaten(Kabupaten, 인도네시아 군 행정구역) / Kota(코따, 인도네시아 도시 행정구역) 내에서 이행되는 활동의 허가는 Poles(쁠레스/ 중(中)행정구역 경찰)로 제출해야 하고, 1 개 Provinsi(프로빈씨, 인도네시아 주 행정구역) 의 1개 이상의 Kabupaten/Kota를 포함하는 활동의 경우 허가는 Polda(쁠다, 지방경찰)로 제출해야 한다.

서로 다른 Provinsi(프로빈씨)의 1개 이상의 Kabupaten/Kota에서 이행되는 활동의 허가는 인도네시아 경찰청(Mabes Polri)으로 제출해야 한다.

Provinsi(프로빈씨) 내에서 이행되는 활동의 허가는 Polda(쁠다, 지방경찰)로 제출해야 하며, 1개 이상의 Provinsi(프로빈씨)를 포함하는 활동의 허가는 인도네시아 경찰청(Mabes Polri)으로 제출해야 한다.

(2) “전국적인 규모의 활동”은 참가자가 여러 주에서 온 개인, 조직 및/또는 법인이 수행하는 활동이다.

(3) “국제적인 규모의 활동”은 외국인이 참여하는 개인, 조직 및/또는 법인이 수행하는 활동이다.

(4) 충분히 설명됨

제 7 조

(1) 충분히 설명됨

(2) a. ~ b. 충분히 설명됨

c. “관련기관 또는 조직의 추천”이란 활동의 실질에 대한 권한을 가진 기관 또는 조직의 서면 고려 사항이다.

d. 충분히 설명됨

(3) ~ (5) 충분히 설명됨

제 8 조

“관련기관과의 협력”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출된 관계 부처/기관의 의견이나 조언을 고려하는 것이다.

“다른 당사자”는 대중군집활동 및 기타 사회활동에 이해 관계가 있는 당사자, 예를 들어 활동 장소 또는 사회적 인물이 될 대상을 책임질 자이다.

제 9 조

- (1) ~ (3) 충분히 설명됨
- (4) 거부 사유는 행정 위반, 공익 위반 및/또는 법령의 규정에 반하는 형태 일 수 있다.

제 10 조

“신청된 활동에 대한 변경” 은 예컨대 장소, 시간 및/또는 초청자 수의 변경이다.

제 11 조 ~ 제 12 조

충분히 설명됨

제 13 조

“경찰의 조치” 는 질서를 실현하고 법을 수호하며 대중군집 시 평화를 유지하는 책임이 있는 법에 따른 강제적인 노력 및/또는 기타 조치이다.

제 14 조 ~ 제 16 조

충분히 설명됨

제 17 조

- (1) 충분히 설명됨
- (2) “자신의 환경 내에서” 란 정당이나 사회 단체의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정치활동을 의미한다.

제 18 조

- (1) Kecamatan(끄짜마판, 인도네시아 면/읍 행정구역) 내에서 이행되는 활동의 신고는 Polsek(쁠섹, 소(小) 행정구역 경찰)으로 제출해야 하고, 1개 이상의 끄짜마판을 포함하는 활동의 경우 신고는 Poles(쁠레스/중(中)행정구역 경찰)로 제출해야 한다.
까부빠뎨(Kabupaten, 인도네시아 군 행정구역)/Kota(꼬따, 인도네시아 도시 행정구역) 내에서 이행되는 신고는 Poles(쁠레스/ 중(中)행정구역 경찰)로 제출해야 하고, 1개 프로핀씨(Provinsi, 인도네시아 주 행정구역)의 1개 이상의 까부빠뎨/도시를 포함하는 활동의 경우 신고는 Polda(쁠다, 지방경찰)로 제출해야 한다.
서로 다른 Provinsi(프로핀씨)의 1개 이상의 까부빠뎨/도시에서 이행되는 활동의 신고는 인도네시아 경찰청(Mabes Polri)으로 제출해야 한다.
Provinsi(프로핀씨) 내에서 이행되는 활동의 신고는 Polda(쁠다, 지방경찰)로 제출해야 하고, 1개 이상의 프로핀씨 (Provinsi)를 포함하는 활동의 신고는 인도네시아 경찰청 (Mabes Polri)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 19 조 ~ 제 28 조

충분히 설명됨

인도네시아 공화국 추가 관보 제6174호

저작권에 관한 법률 2014년 제28호에 대한 해설

1. 통칙

저작권은 학술, 예술 및 문학(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예술 및 문학)을 포함하기 때문에 보호 대상물의 범위가 가장 넓은 지적 재산의 한 부분이다. 인도네시아와 여러 나라의 근간이 되는 것 중 하나인 창의경제의 발전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저작권을 국가창의경제의 가장 중요한 기지로 간주하여 저작권법의 개정을 요구한다. 창의경제의 보호와 발전의 요소를 충족하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부문이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적화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정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한편으로는 정보통신기술이 저작권 발전에 전략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저작권법의 변수 중 하나가 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분야의 법률 위반의 도구이기도 하다. 긍정적 기능을 최적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인도네시아 국민대표의회와 정부가 저작권에 관한 2002년 법률 제19호를 이 법으로 대체한 것은 국가 창의성의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서 저작인접권의 저작자와 소유자의 재산권과 인격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진지한 노력이다. 재산권과 인격적 권리의 거부는 저작자와 저작인접권 소유자의 동기를 침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동기 부여의 손실은 인도네시아 국가의 창의성 붕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진국을 돌아보면 저작권의 적절한 보호가 상당한 창의적 경제성장을 가져오고 경제와 사람들의 복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염두에 두고 저작권법을 새로운 법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 a. 저작권 보호는 다양한 국가의 규칙 적용에 따라 더 긴 기간 동안 수행되어 특정 분야의 저작권 보호 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 동안 적용된다.
- b. 저작인접권 매절계약(sold flat)의 형태로 재산권의 이전을 제한하는 것을 포함하여 저작자 및/또는 저작인접권 소유자의 재산권을 더 잘 보호한다.
- c. 중재, 조정 또는 법원 절차를 통한 효과적인 분쟁 해결 및 형사 소송에 대한 불만 제기에 적용된다.
- d. 거래 장소의 관리자는 관리하는 거래 장소에서 저작권 및/또는 저작인접권 위반에 관한 책임이 있다.
- e. 무형이동객체로서의 저작권은 신탁보증의 대상으로 사용될 수 있다.
- f. 장관은 저작이 종교적 규범, 도덕적 규범, 공공질서, 국가의 국방 및 안보뿐만 아니라 법률 규정의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기록 된 저작을 삭제할 권한이 있다.
- g.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의 소유자는 손해배상 또는 사용료를 철회하기 위해 집중관리단체의 구성원이 된다.

- h. 저작자 및/또는 저작권접권 소유자는 공적인 관계에서 만들어지고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저작물 또는 저작권접권 대상물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다.
- i. 저작자 및 저작권접권 소유자의 재산을 모으고 관리하는 단체인 집중관리단체는 장관에게 운영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다.
- j. 정보통신기술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멀티미디어 시설에서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을 이용한다.

국제 차원에서 인도네시아는 1994년 법률 제7호를 통해 지적 재산권의 무역관련 측면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을 포함하는 세계무역기구 설립협정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1997년 대통령령 제 18호를 통해 1997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예술 및 문학작품 보호를 위한 저작권 조약(WCT)인 베른(Bern)협약, 1997년 대통령령 제19호를 통해 세계지적재산권기구공연 및 음반조약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Copyright Treaty)을 비준하였고 이는 후에 2004년 대통령령 제74호를 통해 WPPT라 불린다.

저작권에 관한 2002년 법률 제19조의 개정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접권 소유자의 이익 균형을 고려하고, 국민과 함께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 분야의 국제협약 조항에 주의를 기울인다.

2. 각 조별 해설

제 1 조 ~ 제 3 조

충분히 설명됨

제 4 조

“배타적 권리” 의 의미는 저작자 만을 위해 마련된 권리이므로 다른 당사자는 저작자의 허락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비 저작 저작권자는 배타적 재산권의 일부만 소유한다.

제 5 조

제1항 a. ~ d. 충분히 설명됨

e. “저작물의 왜곡” 의 의미는 저작의 사실이나 정체성을 왜곡하는 행위이다.

“저작물의 훼손” 의 의미는 저작물의 일부를 제거하는 과정이나 행동이다.

“저작물의 수정” 의 의미는 저작물에 대한 변경이다.

제2항 ~ 제3항 충분히 설명됨

제 6 조 ~ 제 8 조

충분히 설명됨

제 9 조

- 제1항 a. 충분히 설명됨
- b. 영화관에서 녹음하는 행위 및 (생방송 공연)를 포함한다.
- c. ~ I. 충분히 설명됨
- 제2항 ~ 제3항 충분히 설명됨

제 10 조

충분히 설명됨

제 11 조

- 제1항 충분히 설명됨
- 제2항 “필수 개체”의 의미는 임대 계약의 주요 대상이 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이다.

제 12 조

- 제1항 “선전 또는 광고 목적”의 의미는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선전, 배너, 광고판, 캘린더 및 팸플릿에 다른 사람의 초상화를 게재하는 것이다.
- 제2항 충분히 설명됨

제 13 조

예를 들어 “실연자 또는 실연권자가 달리 명시하거나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음악공연의 가수는 상업적 용도로 다른 사람이 공개적으로 발표, 배포 또는 송신할 경우 이의를제기할 수 있다.

제14조

이 조항의 “공인 기관”의 의미는 송신 및 정보 분야에서 공익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 부패 근절위원회 또는 기타 법 집행 공무원을 포함한다.

제 15 조

- 제1항 이 조항의 “소유자”가 의미하는 것은 다른 수집가 또는 저작권자 사이에서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통제하는 사람이다,
- 제2항 충분히 설명됨

제 16 조

- 제1항 충분히 설명됨
- 제2항 “변경 또는 양도 가능”의 의미는 저작권은 무체동산이며, 저작 인격권은 저작자에게 남아있다. 저작권 양도는 공증 증서 유무에 관계없이 명확하게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a. ~ e. 충분히 설명됨
 - f. “법률 규정에 따라 정당화되는 기타 이유”가 의미하는 바는 회사 자산의 합병 또는 분리가 있는 회사 또는 법인의 영구 법적 효력, 합병, 인수 또는 해산을 얻은법원 판결로 인한 변경 등이다.
- 제3항 ~ 제4항 충분히 설명됨

제 17 조

충분히 설명됨

제 18 조 “기타 저술 작품”의 의미는 시 모음집, 일반 사전, 일반 일간신문이다.

“저작인접권 매절계약”의 의미는 구매자가 저작자에게 전액 지불을 통해 저작물을 제출 하도록 요구하는 양도계약으로, 저작에 대한 재산권이 구매자에게 무기한으로 양도된다.

제 19 조 ~ 제 21 조

충분히 설명됨

제 22 조 충분히 설명됨

b. “저작물의 왜곡”의 의미는 실연자 작품의 사실이나 정체성을 왜곡하는 행위이다.
“저작물의 훼손”의 의미는 실연자 작업의 일부를 제거하는 과정이나 행동이다. “저작물의 수정”의 의미는 연기자 작품의 변형이다.

제 23 조

제1항 ~ 제4항 충분히 설명됨

제5항 “저작자에게 보상”이 의미하는 것은 집중관리단체가 표준으로 정한 사용료다.

제 24 조

제1항 충분히 설명됨

제2항 a. 모든 종류의 방법 또는 형태는 다음과 같다: 물리적 형식 (소형 디스크 / 비디오 콤팩트 디스크 /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에서 디지털 형식으로 녹음의 변경 (Mp3, WAV, Mp4), 또는 오디오북으로의 변경

b. ~ d. 충분히 설명됨

제3항 ~ 제4항 충분히 설명됨

제 25 조

제1항 ~ 제2항 충분히 설명됨

제3항 배포”의 의미는 공공, 민간, 구독 방송기관에서 상업적 목적을 위해 수행되는 방송 작품의 활용이다.

제 26 조 충분히 설명됨

제 27 조

제1항 ~ 제2항 충분히 설명됨

제3항 “합리적 보상”이 의미하는 것은 집중관리단체가 정한 일반적인 규범에 따라 결정된 보상이다.

제 28 조 ~ 제 33 조

충분히 설명됨

제 34 조

“지도와 감독 아래에서”의 의미는 저작물을 설계하한 자의 지도, 방향 또는 수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한다.

제 35 조

제1항 “공무 관계”의 의미는 정부 기구와 기관 간의 인력 관계이다.

제2항 ~ 제3항 충분히 설명됨

제 36 조

“업무 관계 또는 주문”의 의미는 민간 기관의 업무 관계를 기반으로 또는 다른 당사자의 주문에 기초하는 저작물이다.

제 37 조

충분히 설명됨

제 38 조

제1항 “전통문화표현물”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표현의 하나 또는 조합을 포함한다.

- a. 구두 텍스트, 구두와 서면, 산문이나 시의 형태로, 다양한 주제와 메시지의 내용, 문학 작품이나 유익한 이야기 중 하나
- b. 보컬, 악기 또는 이들의 조합을 포함하는 음악
- c. 춤을 포함한 움직임
- d. 인형극과 민속 연극을 포함한 연극
- e. 가죽, 목재, 대나무, 금속, 석재, 도자기, 종이, 직물 등과 같은 다양한 재료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2차원 또는 3차원 형태의 미술, 그리고
- f. 전통 의식

제2항 충분히 설명됨

제3항 “관리공동체의 살아있는 가치”의 의미는 관습, 관습적 법적 규범, 관습규범, 사회적 규범 및 전통적인 문화적 표현을 유지, 개발 및 보존하는 기원지의 공동체에 의해 지지되는 고귀한 규범이다.

제4항 충분히 설명됨

제 39 조

제1항 이 조항은 도서나 기록되지 않은 음악 저작물의 형태로 출판되지 않은 논문의 경우 저작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저작권의 지위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다.

제2항 ~ 제5항 충분히 설명됨

제 40 조

- 제1항 a. “출판된 어문저작물”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타이포그래피typographical arrangement”로 알려진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로, 이는 그 구성과 쓰기의 형태로 예술의 측면을 갖는다. 여기에는 형식, 장식, 색상 구성 및 전체적으로 독특한 형태를 표시하는 아름다운 문자의 배열 또는 레이아웃이 포함된다.
- b. 충분히 설명됨
- c. “교구”의 의미는 지리, 지형, 건축, 생물학 또는 기타 과학과 관련된 제2 또는 3차원 형태의 저작물이다.
- d. “가사가 없는 노래”의 의미는 전체로 해석된다.
- e. 충분히 설명됨
- f. “회화”의 의미는 문양, 다이어그램, 스케치, 로고, 색상 요소와 아름다운 문자 모양이다. “콜라주”의 의미는 스케치 또는 미디어 작업의 표면에 부착된 직물, 종이 또는 목재와 같은 다양한 재료로 만든 예술적 구성이다.
- g. “응용미술저작물”의 의미는 대상물에 예술을 적용하여 만든 예술 작품으로, 대상물에 이미지, 문양 또는 장식품의 사용과 같은 실용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미적 인상을 준다.
- h. “건축저작물”의 의미는 건물의 물리적 형태, 건물의 레이아웃, 건물 디자인의 도면, 건물의 기술 도면 및 모델 또는 건물의 모형이다.
- I. “지도”의 의미는 디지털 또는 비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특정 규모의 평평한 평면에 묘사된 지구 표면 위 또는 아래에 있는 자연 및/또는 인공 요소의 이미지이다.
- j. “바틱 예술”의 의미는 전통적인 것이 아니라 혁신적이고 현대적이며 전통적이지 않은 현대적인 바틱 문양이다. 이 작품은 이미지, 패턴 및 색상 구성과 관련하여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호된다.
“기타 모티브 예술저작물”의 의미는 송갯(금, 은, 실로 짠 옷감)아트, 실 직조문양, 타피스(금실로 수놓은 여성의 의식용 술)문양, 울로스(어깨에 두르는 천) 문양 및 현대적이고 혁신적이며 계속 개발되는 기타 문양 예술 등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인도네시아 국가의 부를 소재로 한 문양이다.
- k. ”사진저작물”은 카메라를 사용하여 생산된 모든 사진을 포함한다.
- l. 충분히 설명됨
- m. “영상저작물”의 의미는 다큐멘터리, 상업영화, 보도, 시나리오, 만화 등 이미지를 움직이는 형태로 제작된 작품이다. 영상저작물은 셀룰로이드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비디오 디스크, 광학 디스크 및/또는 영화관, 대형 스크린, 텔레비전 또는 기타 미디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타 미디어에서 만들 수 있다.
영상저작물은 시청각 형태의 한 예이다.
- n. “선집”의 의미는 선택한 논문의 편집을 포함하는 도서의 형태로 작품을 포함, 선택된 노래의 모음, 카세트, 광학 디스크, 또는 다른 미디어에 기록된 다양한 선택된 댄스 작품의 구성이다.
“데이터 베이스”의 의미는 컴퓨터 또는 컴파일이 다른 형태로 읽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콘텐츠를 재구성하는 것이며 이는 해당 콘텐츠를 선택하거나 규제하는 이유로 지적 생성이다. 데이터베이스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저작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제공된다.

“개작”의 의미는 저작을 다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서가 영화로 되는 것.

“기타 변형 저작물”의 의미는 저작 형식을 다른 형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팝 음악이 당dut(dangdut)음악이 되는 것.

o. ~ s. 충분히 설명됨

제2항 ~ 제3항 충분히 설명됨

제 41 조

a. ~ b. 충분히 설명됨

c. “기능적 목적”의 의미는 특정 도구, 개체 또는 형태에 따라 특정 용도와 기능이 있는 대상물에 대한 인간의 목적이다.

제 42 조

충분히 설명됨

제 43 조

a. 충분히 설명됨

b. “정부가 또는 정부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항의 공표, 배포, 송신 및 / 또는 복제”에 의한 의미는 정부의 비용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에 대해 정부가 실시하는 모든 것을 공표, 배포, 송신 및/또는 복제한다는 것이다.

c. “시사 뉴스”의 의미는 대중에게 처음 전달되는 순간부터 3x24시간 이내에 대중에게 알려지거나 전달되는 뉴스이다.

d. ~ e. 충분히 설명됨

제 44 조

제1항 “본질적인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저작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하고 독특한 부분이다.

a.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이 의미하는 것은 저작물의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균형에 기반한 이익이다.

b. ~ d. 충분히 설명됨

제2항 “저작물에 대한 접근 지원”의 의미는 작업의 사용, 검색, 복제, 형식변경, 공표, 배포 및/또는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실질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시설의 제공이다.

제3항 “기술적 구현을 근거하여”의 의미는 예를 들어, 충분하지 않은 토지 면적의 변화, 위치가 대칭적이지 않음, 다른 재료의 구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한 건축 형태의 변화이다.

제4항 충분히 설명됨

제 45 조

제1항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용자(저작권자가 아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을 위해 합법적으로 소유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임시 복제 또는 개작을 만들거나 자체 사용의 백업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백업 복사본을 만드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간주

되지 않는다.

제2항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용이 종료되면 컴퓨터프로그램의 사본 또는 개작은 파기해야 한다.

제 46 조 ~ 제 48 조

충분히 설명됨

제 49 조

제1항 “일시적 복제”의 의미는 디지털 미디어로 만든 저작물의 수가 비영구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컴퓨터 미디어를 사용하여 노래 또는 음악, 도서, 그림 및 기타 저작물을 인터넷 네트워크 또는 디지털 저장 장소에 임시 저장되는 것이다.

제2항 ~ 제3항 충분히 설명됨

제4항 “특정 성질”의 의미는 다큐멘터리, 역사, 국가의 이익을 위해 포함하거나 법적 보호 기간을 통과한 기록이다.

제 50 조 ~ 제 51 조

충분히 설명됨

제 52 조

“기술제어장치”의 의미는 저작자, 저작권자, 관련 권리소유자가 법으로 금지된 행위를 방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설계된 기술, 기기 또는 구성요소이다.

제 53 조

제1항 “정보 기술 및/또는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생산장치 및/또는 저장장치”가 의미하는 것은 광학 디스크, 서버, 클라우드 컴퓨팅(클라우드), 비밀번호 코드, 암호, 바코드, 일련 번호, 암호 해독 기술, 및 저작물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암호이다.

제2항 충분히 설명됨

제 54 조

a. “콘텐츠”의 의미는 모든 매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내용이다.

b. ~ c. 충분히 설명됨

제 55 조

제1항 정보 송신 기술 매체의 “상업적 목적”의 의미는 직접(유료) 상업적 이용뿐만 아니라 저작권 및/또는 저작권접권의 사용으로 혜택을 받는 다른 사람의 경제적 이익을 얻는 무료 콘텐츠 서비스 제공이 포함한다.

제2항 ~ 제4항 충분히 설명됨

제 56 조

제1항 “콘텐츠 및/또는 접근 권한을 차단”의 의미는 콘텐츠의 첫 번째 차단 또는 콘텐츠

서비스 공급자의 사이트를 포함하는 2가지 항목과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등의 차단을 통해 특정 사이트에 대한 사용자 접근을 차단하는 형태로 두 번째를 포함한다.
제2항 충분히 설명됨

제 57 조 ~ 제 62 조 충분히 설명됨

제 63 조

제1항 충분히 설명됨

제2항 “그 다음 해 1월 1일부터 경제권 보호의 유효기간”이 의미하는 것은 TRIPs계약 제 14조제5항의 동의서에 규정된 조항이다.
예를 들어, 2014년 10월 30일에 작품이 제작된 후 즉시 직접 법적 보호를 받게 되며 2015년 1월 1일부터 50년간 기산된다.

제 64 조

제1항 충분히 설명됨

제2항 저작물 및 저작권접권 대상물의 등록은 저작자,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접권 소유자에게 요구사항이 아니다. 저작물의 저작물이 존재하거나 구체화되는 순간부터 보호가 시작되며 기록 때문은 아니다. 즉, 기록된 창작물과 문서화되지 않은 저작물도 보호된다.

제 65 조

충분히 설명됨

제 66 조

제1항 충분히 설명됨

제2항 a. 저작물의 대체물 또는 저작권접권 대상물의 대체물은 업무 또는 저작권접권 대상물이 기술적으로 응용 프로그램에 첨부할 수 없기 때문에 첨부된 업무 또는 저작권접권대상물의 예이다. 예를 들어, 큰 조각상이 미니어처 또는 사진으로 대체 된다.
b. “소유증서”의 의미는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 상품이 저작자,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접권 소유자에게 속한다는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 대상물의 소유권 진술이다.
c. 충분히 설명됨

제 67 조

충분히 설명됨

제 68 조

제1항 충분히 설명됨

제2항 “기타 지식재산권”의 의미는 브랜드의 일반 목록에 포함된 일반 목록, 산업 디자인의 일반 목록 및 특허의 일반 목록이다.

제3항 충분히 설명됨

제4항 이 조항은 신청자에게 법적 결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제 69 조 ~ 제 71 조

충분히 설명됨

제 72 조

장관은 기록된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 대상물의 내용, 의미, 목적 또는 형식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73 조 ~ 제 79 조

충분히 설명됨

제 80 조

제1항 ~ 제4항 충분히 설명됨

제5항 사용료의 계산 및 사용료의 액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요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방 수, 방 면적, 복사된 사본 수, 일반적인 습관/ 관행

제 81 조

충분히 설명됨

제 82 조

제1항 충분히 설명됨

제2항 “법령규정”의 의미는 독점 관행과 불공정한 사업 경쟁의 금지에 적용하는 민법과 법률을 포함한다. 본 약관은 저작자,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제3항 충분히 설명됨

제 83 조 ~ 제 86 조

충분히 설명됨

제 87 조

제1항 ~ 제3항 충분히 설명됨

제4항 “저작물 및/또는 저작인접권 대상물의 상업적 이용”의 의미는 합리적으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 복제 및 공표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가라오케, 노래방의 이익을 위해 디지털 방식으로 노래 및 /또는 음악 복제, 또는 전달 장비로 노래 및 /또는 음악 제공

제 88 조

충분히 설명됨

제 89 조

제1항 a. 충분히 설명됨

b. “음악 분야의 저작인접권자” 는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이다.
제2항 ~ 제4항 충분히 설명됨

제 90 조 ~ 제 94 조

충분히 설명됨

제 95 조

제1항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의 형태는 불법 행위형태의 분쟁, 라이선스 계약, 손해배상 또는 사용료의 철회 관세에 관한 분쟁을 포함한다.

“대안적 분쟁 해결” 이란 중재, 협상 또는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 과정이다.

제2항 ~ 제4항 충분히 설명됨

제 96 조 ~ 제 101 조

충분히 설명됨

제 102 조

제1항 “상고만 제기할 수 있다”가 의미하는 것은 상고에 대한 법적 구제책이 없다는 것이다.

제2항 ~ 제5항 충분히 설명됨

제 103 조 ~ 제 105 조

충분히 설명됨

제 106 조

a. ~ c. 충분히 설명됨

d. 이 조항은 권리가 침해된 당사자에게 더 큰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법 재판소 판사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품의 수출을 포함한 무역 경로에 대한 위반 및 반입에 대한 판결을 내릴 권한을 부여한다.

제 107 조 ~ 제 126 조

충분히 설명됨

인도네시아공화국 추가 관보 제5599호

전기통신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법률

1999년 제36호에대한 해설

1. 해설

전기통신에 관한 법률 1989년 제3호가 제정된 이래 전기통신의 개발 및 운영은 경제 활동 지원 및 장려, 국방 및 안보 강화, 국민 생활 교육, 정부 활동 촉진, 누산따라 (Nusantara:인도네시아 제도)개념의 틀에서 국민 통합과 단결 강화 및 국가 복원력을 굳건히 하고 국가 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중차대한 전략적인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지구 환경의 변화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전기통신 기술의 발전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새로운 전기통신 환경을 탄생시켰으며, 정보 기술 및 방송과의 융합 결과 등 전기통신사업의관점의 변화로 인해 국가 전기통신사업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전기통신사업에 있어 민간 부문의 역량 증가, 전기통신 기술 숙달 및 지역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경쟁 우위를 고려할 때 국가 차원에서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실질적 조정이 필요함이다. 국제적 수준의 전기통신 기술의 발전에 이어 상업적 가치가 높은 무역 상품으로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다자간 협정이 이루어졌다.

국가 이익을 기반으로 한 국가 간 관계 육성에 적극적인 국가로서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다자협정 참여를 직면하기에 이르렀다. 1994년 4월 15일 모로코(Maroko) 마라케시(Marrakesh)에서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GATS)에 서명하고 1994년 법률 제7호로 비준한 이후, 국가 전기통신사업은 세계 무역 시스템에서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 되었다.

자유 무역과 차별 금지 원칙을 강조하는 세계 무역 원칙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전기통신사업을 조정할 준비를 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사항을 고려함으로써 정부의 역할은 지역 사회의 역할을 포함하여 정책 결정, 규제감독 및 통제를 포함하는 지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기통신사업에 있어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화한다고 해서 1945년 헌법 제33조(3)항에 포함된기본 원칙, 즉 그 안에 포함된 토지와 수자원 및 천연 자원이 국민의 번영을 위해 국가에 의해통제되고 사용된다는 기본 원칙이 줄어들지 않는다. 따라서, 한정된 천연 자원인 무선주파수대역및 위성궤도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국가가 관리한다.

국가 발전의 방향과 정책을 계속 고수하고 특히 전기통신 부문에서 국내 및 국제적으로 계속되는발전을 고려할 때 전기통신에 관한 1989년 법률 제3호에 규정된 전기통신 개발 및 사업에 대한법령의 대체가 필요하다.

2. 각 조별 해설

제 1 조

충분히 설명됨

제 2 조

전기통신은 효율의 원칙, 공정성과 형평성의 원칙, 법적 확실성과 신뢰의 원칙, 협력성, 안전성 및 윤리의 원칙을 고려함으로써 국가 발전 원칙에 깊이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효율의 원칙은 전기통신의 개발, 특히 전기통신사업이 개발 기반 시설, 정부 행정, 교육 수단, 전기통신 수단 및 사람들의 육체적 정신적 복지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공정성과 형평성의 원칙은 전기통신사업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모든 당사자에게 동등한 기회와 대우를 제공하고 그 결과는 지역사회에서 공정하고 동등하게 누린다는 것이다.

법적 확실성의 원칙은 전기통신 개발, 특히 전기통신사업이 법적 확실성을 보장하고 투자자, 전기통신사업자 및 전기통신 이용자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법률 및 규정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뢰의 원칙은 국가 자원의 잠재력을 효율적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전기통신 기술의 숙달을 통해 세계 경쟁에 직면한 국가로서의 독립성을 높이고 의존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협력성의 원칙은 전기통신사업이 전기통신 운영에서 조화, 호혜 및 시너지의 분위기를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안전성의 원칙은 전기통신사업이 항상 계획, 건설 및 운영에서 보안 요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윤리의 원칙은 전기통신사업이 항상 전문성, 정직성, 도덕성 및 개방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제 3 조

이 조항에서 전기통신의 목표는 전기통신 혁신을 통해 달성될 수 있으며, 이는 세계화에 직면한 상황에서 전기통신사업의 성과를 개선하고, 전기통신 부문이 투명한 규정으로 건전하고 전문적인 비즈니스 경쟁에 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중소기업가를 위해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열어준다.

제 4 조

- (1) 전기통신은 국민 생활에서 생산의 중요하고 전략적인 부문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통제는 국민의 최대 이익과 번영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가 관할한다.
- (2) 정책 결정 기능은 국가 전기통신의 전략 기본 계획 및 기술 기본 계획수립이 포함된다.

규정 기능은 전기통신사업의 허가 및 요건 사항에 반영되는 일반적인 성격 및/또는 기술 사업 활동을 포함한다. 통제 기능은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지시 및 안내의 형태로 수행된다. 감독 기능은 제어, 운영, 진입, 조립, 주파수 및 위성궤도 사용, 전기통신장비, 시설 및 인프라에 대한 감독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감독이다.

정책 결정, 규정, 감독 및 통제 기능은 장관이 수행한다. 상황의 발전에 따라 전기통신 사업을 규정, 감독 및 통제하는 기능은 규제 기관에 위임될 수 있다.

육성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정부는 전기통신사업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사회단체의 역할을 참여시킨다.

(3) 충분히 설명됨

제 5 조

(1) ~ (5) 충분히 설명됨

제 6 조

국제 전기통신 협약의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 행정은 해당 국가의 정부를 대표한다. 이와 관련하여 전기통신 행정은 국제 전기통신 협약 및 이에 수반되는 규정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한다. 인도네시아 전기통신 행정은 또한 Intelsat (국제 전기통신 위성 기구) 및 Inmarsat (국제 해상위성기구)이 지정한 규정과 인도네시아가 비준한 기타 전기통신 부문의 국제 조약과 같은 기타 국제 규정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한다.

제 7 조

(1) a. ~ b. 충분히 설명됨

c. 특수전기통신사업은 예를 들면 기상 및 지구 물리학, TV 방송, 라디오 방송, 내비게이션, 항공, 사고 수색 및 구조, 아마추어 무선전기통신, 특정 주민 간의 무선 전기통신 및 특정/민간 기관을 위한 특수전기통신사업의 목적을 위한 것이다.

(2) 충분히 설명됨

제 8 조

(1) ~ (3) 충분히 설명됨

제 9 조

(1) 충분히 설명됨

(2) 전기통신망을 필요로 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사업은 자신이 소유한 망을 사용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역무사업자로부터 임대할 수 있다. 임대된 전기통신망은 기본적으로 자체 용도로 사용되지만, 타인에게 재임대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역무망사업자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3) 충분히 설명됨

(4) a. 개인 필요의 목적을 위한 특수전기통신사업은 개인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기통신사업이다. 예, 주민 간 아마추어 무선 전기통신 및 무선 전기통신

b. 정부기관의 목적을 위한 특수전기통신사업은 해당 기관의 일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 위한 전기통신사업이다. 예, 부처 또는 지방 정부전기통신
- c. 특수관청을 위한 특수전기통신사업은 관련 서비스 활동, 예컨대 항해, 항공 또는 기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이다.
- d. 법인을 위한 특수전기통신사업은 국영기업(BUMN), 지역상공위(BUMD), 민간기업 또는협동조합이 수행하는 전기통신사업이다. 예, 광업 또는 철도 전기통신
- (5) 충분히 설명됨

제 10 조

- (1) 이 조항은 전기통신사업자들이 그들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건전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것이다.
현행 법령 규정은 독점행위 및 불공정 사업 경쟁 금지 및 그 시행 규정에 관한 법률 1999년 제5호이다.
- (2) 충분히 설명됨

제 11 조

- (1) 전기통신사업 면허는 정부가 건전한 전기통신사업 성장 촉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정부는 전기통신망 및/또는 전기통신역무사업을 위해 공개적으로 구역/지역을 정기적으로게시할 의무가 있다.
전기통신사업은 허가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실험 목적의 전기통신사업은 특정 기간 동안 특별 허가가 부여된다.
- (2) ~ (3) 충분히 설명됨

제 12 조

- (1) 정부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국유지 및/또는 건물을 이용하거나 통과한다는 것은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시설이다.
- (2) 충분히 설명됨
- (3) 정부 기관은 국유지 및/또는 건물을 직접 관리, 소유 및 이용하는 기관이다.

제 13 조

개인은 사용되거나 통과되는 토지 및/또는 건물을 직접 관리, 소유 및 이용하는 개인 및/또는 법인이다. 개인 자산에 법적 보호를 제공하려면 그 이용은 당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4 조

충분히 설명됨

제 15 조

- (1) 전기통신사업자의 과실 또는 태만으로 손해를 입은 이용자 또는 더 넓은 지역사회에 전기통신사업자의 보상을 지급한다.
- (2) 충분히 설명됨
- (3) 배상 청구는 중재, 조정 또는 화해를 통해 수행된다. 이러한 방법은 당사자가 적절한방

식으로 해결책을 얻기 위한 노력이다. 위의 방법에 의한 배상 해결이 성공하지 못한 경우 법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제 16 조

(1) 보편적 의무(universal service obligation)는 지역 사회, 특히 오지 및/또는 저개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화 접속을 받을 수 있도록 전기통신망사업자가 전기통신망을 제공하는 의무이다.

보편적 의무를 결정할 때 정부는 양질의 합리적인 요금으로 인구 밀집 지역에 도달하는 전기통신역무의 가용성 원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경제적으로 저개발 되고 개척, 오지, 변두리, 격리 및/또는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지역을 포함하여 높은 개발 비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보편적 의무.

보편적 의무를 위한 전기통신 시설을 구축할 의무는 장거리 직통 전화(SLJJ) 서비스 및/또는 지역 회선 서비스의 형태로 정부로부터 허가를 취득한 전기통신망사업자가 부담한다. 위의 두 가지 유형의 의무를 제외한 다른 의무는 전기통신망사업자가 기여해야 한다.

(2) 보편적 의무의 기타 보상은 상호접속 비용을 통해 부과되는 개발 비용 부담이다.

(3) 충분히 설명됨

제 17 조

충분히 설명됨

제 18 조

(1) 전기통신역무 사용 기록은 전기통신역 이용자가 요청하는 한 장거리 직통 전화(SLJJ) 및 국제 직통 전화(SLI)의 전화 서비스에만 적용되는 구현을 단계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자의 의무이다.

전기통신역무 사용 기록은 전기통신역무 사용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는 청구 데이터의 세부 기록이다.

(2) ~ (3) 충분히 설명됨

제 19 조

전기통신망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다른 망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해당 망의 이용자는 지정된 번호를 통해 연결된 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이용자는 전기통신망 및/또는 전기통신역무사업자를 선택하여 전기통신 링크를 채널링 할 권리가 있다. 전기통신망 및/또는 전기통신역무사업자는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운영자 네트워크로의 연결 경로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의 사항은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해로울 수 있는 공정 경쟁 원칙에 위배된다.

제 20 조

정보의 송신은 전기통신 프로세스의 초기 단계로, 중간 프로세스로 배포활동을 계속하고 의뢰된 당사자의 수신을 위한 정보 전달 활동으로 끝난다. 정부가 결정하는 정보의 송신, 배포 및

전달을 위한 우선 순위에는 재난뉴스가 포함된다.

제 21 조

전기통신사업의 종료는 정부가 전기통신사업이 공익, 미풍양속, 안보, 공공질서에 반한다고 판단되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입수한 후 가동된다.

제 22 조

충분히 설명됨

제 23 조

- (1) 이 조항은 전기통신망사업자 및 전기통신역무사업자의 번호부여 요구와 그 사용이 국제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충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번호는 전기통신망 또는 서비스에서 주소를 식별하는데 사용되는 번호체계와 가입자 번호로 구성된 숫자 형태의 일련의 기호이다.
- (2) 번호부여는 제한된 자원이므로 번호체계는 장관에 의해 공정하게 규제된다. 전기통신망의 번호부여는 국제 기술 및 규정과 관련이 있다.

제 24 조

충분히 설명됨

제 25 조

- (1) ~ (4) 충분히 설명됨

제 26 조

- (1) 전기통신사업권 수수료는 전기통신망사업자 및/또는 전기통신역무사업자가 취득한 허가로 인한 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의무이며, 그 금액은 수익 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국고에 예치되는 세외수입(PNBP)이다.
- (2) 충분히 설명됨

제 27 조

전기통신망사업 요금 및/또는 전기통신역무사업 요금의 구조는 정부가 정한 요금의 구조와 유형이 포함된다. 구조 및 유형에 따라 통신망사업 요금 및/또는 전기통신역무사업 요금을 결정할 수 있다.
요금 구조는 신규 설치비(활성화), 월 정액료, 이용료 및 추가 서비스 요금(기능)으로 구성된다.
요금 유형은 지역 회선 요금, 장거리 직통 전화(SLJJ) 요금, 국제 직통 전화(SLI) 요금 및 이동 전화 서비스를 위한 방송 시간으로 구성된다.

제 28 조

이 조항의 공식은 요금의 액수를 결정하기 위한 계산 기준이다.

요금 공식은 초기 비율 공식과 변경 공식으로 구성된다.

초기 요금 공식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비용 요소이며, 변화율, 인플레이션 요인, 지역 사회의 역량 및 전기통신 개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공식을 결정할 때도 고려해야 한다.

제 29 조

- (1) 특수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망에 연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자신의 목적만을 위한 특수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에 대한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2) 충분히 설명됨

제 30 조

- (1) 이 조항은 특정 상황으로 인해 전기통신역무가 도달할 수 없는 지역에서 전기통신 역무의 필요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은 실제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운영되는 특수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한다.
- (2) 전기통신망 및/또는 전기통신역무를 운영하는 특수전기통신사업자는 자신이 투자한 투자자와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전기통신망 및/또는 전기통신역무의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특수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망 및/또는 전기통신역무사업에 적용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3) 충분히 설명됨

제 31 조

- (1) 국가방위 및 안보를 위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소유한 전기통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항의 전기통신망의 사용 또는 활용은 국가방위 및 안보를 위한 전기통신망 (이 경우 인도네시아 국군)이 기능을 수행할 수 없거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수행된다.
국가가 위협에 처한 경우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 (2) 충분히 설명됨

제 32 조

- (1) 전기통신기기/장비에 대한 기술적 요건은 전기통신기기/장비가 작동할 때 서로의 다른 전기통신기기/장비 및/또는 전기통신망 또는 전기통신 장비 이외의 도구/장비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필수 요건이다.
기술 요건은 전기/전자 매개 변수 형태의 전기통신기기/장비의 기능에 더 중점을 두고 적용가능한 규정 및 환경과 같은 기타 측면에 따라 전기/전자 매개 변수 외부의 다른 측면 (예, 환경, 안전 및 건강)을 고려한다.
전기통신기기/장비의 기술 요건 충족을 보장하기 위해 각 전기통신기기 또는 장치는 정부 또는 공인 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센터에서 시험을 거쳐야 한다.
기술 요건의 조항은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기술 표준을 고려하고 커뮤니티의 이익을 고려하며 개방형 기술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 (2) 충분히 설명됨

제 33 조

- (1) 위성궤도와 무선주파수 스펙트럼 사용 허가는 방송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을 목적으로 할당된 무선주파수대역의 이용 가능성에 따라 부여된다.
무선주파수 분배표는 배포되어 대중이 투명하게 알 수 있다.
무선주파수대역 및 위성궤도의 가용성이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수요 또는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경매 방식을 통해 허가를 획득할 수 있다.
- (2) 무선주파수는 1일 주기 동안의 전자기 진동수이며 무선주파수 스펙트럼은 무선 주파수 모음이다.
무선주파수의 사용은 공간, 진동 수 및 대역폭을 기반으로 하며 한 당사자만 사용할 수 있다. 공간의 동시 사용, 동일한 수의 진동 및 폭 또는 일치가 서로 간섭한다.
전기통신 주파수는 정보를 전달하거나 전송하는 데 사용된다. 따라서 정보가 간섭없이 적절하게 전달되거나 전송되기 위해서는 주파수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 주파수 조절은 주파수 대역 할당 및 지정과 관련이 있다.
위성궤도는 위성의 질량 중심을 통과하는 우주의 경로이다. 위성궤도는 정지 위성궤도, 낮은 위성궤도 및 중간 위성궤도로 구성된다.
정지 위성궤도는 지구에 고정된 위치에 있는 지구의 중력에 의해 위성 질량의 중심을 가로 지르는 경로이다. 정지 위성은 36,000km의 고도에서 적도 위를 공전한다.
중저위 위성궤도는 위치가 지구에 고정되지 않은 위성 질량 중심이 통과하는 경로이다. 저위성궤도의 고도는 약 1,500km이고 중위성궤도는 약 11,000km이다.
- (3) ~ (4) 충분히 설명됨

제 34 조

- (1) 무선주파수대역 이용권에 대한 수수료는 수신된 허가에 따라 주파수 이용에 대한 보상이다. 그 외에도 주파수 이용료는 제한된 천연 자원인 무선 주파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제어 수단으로도 사용된다.
주파수 수수료는 주파수 대역의 종류와 폭에 따라 결정된다. 주파수 유형은 작동 품질에 영향을 미치며 주파수 대역 폭은 운반 / 전송할 수 있는 정보의 용량/양에 영향을 미친다.
- (2) ~ (3) 충분히 설명됨

제 35 조

- (1) 인도네시아 영해는 심해를 포함한 영해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정의는 1985년 법률 제 17호에 의해 비준된 유엔 국제 해양법의 전환에서 인정한 군도 국가의 개념이 되었다. 외국 국적 선박에는 전기통신 장비가 장착되어 있으며 그 설치 및 운영은 자국에서 적용되는 원칙과 지정에 따라 여전히 준수해야 한다.
- (2) 인도네시아 영해에서 무선주파수대역 또는 위성궤도 사용 금지는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전기통신사업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해상 이동 서비스는 해안국과 선박국 간, 선박 국 간, 선상 보완 전기통신 국 간, 구조차량 국 또는 비상 위치용 무선 신호국 간의 전기통신이다.
이 조항은 민간 선박에만 적용되며 인도네시아 군대에 속한 선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3) 충분히 설명됨

제 36 조

- (1) 정부가 정한 전기통신 장비에 관한 기술 조항은 외국 민간항공기가 자국에서 적용되는 규정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민간항공기에 적용할 수 없다.
이러한 전기통신 장비의 사용은 해당 국제 규정, 즉 서로 간섭하지 않는 원칙과 기능에 따라 여전히 준수해야 한다.
- (2) 인도네시아 항공 영토에서 무선주파수대역 또는 위성궤도 사용 금지는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전기통신사업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항공 이동 서비스는 항공 국과 항공기 국 간의 전기통신, 구조 차량 국과 비상 위치용 무선정보국이 포함될 수 있는 항공기 국 간의 전기통신이다.
- (3) 충분히 설명됨이 조항에서 의미하는 상호주의 원칙은 해당 국가의 인도네시아 대표에게 주어진 대우와 같이 인도네시아의 외국 대표에게 상호주의의 원칙을 고려하는 국제 관계의 원칙이다.

제 38 조

전기통신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a. 전기통신망을 손상시켜 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물리적 행동
- b. 전기통신 링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하는 물리적 행동
- c. 해당 기술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전기통신 장비 사용
- d. 다른 전기통신 작업에 간섭을 일으키는 전파와 함께 작동하는 전기통신기기의 부적절한 사용
- e. 비 전기통신기기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원격 전기통신 작업에 바람직하지 않은 전자적 장애를 초래

제 39 조

- (1) 전기통신보안 활동은 개발 계획부터 사업 기간 말까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수행한다.
개발 계획의 범위에는 설계 및 엔지니어링이 포함되며, 전자기 장애, 자연 및 환경에 대한 보호 및 보안을 고려해야 한다.
시설의 보안 및 보호 활동에서 사업자는 커뮤니티를 참여시키고 관할 당국과 협력한다.
- (2) 충분히 설명됨

제 40 조

이 조항에서 도청이란 불법적인 수단으로 정보를 획득할 목적으로 전기통신망에 추가 도구나 장비를 설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개인이 소유한 정보는 도청이 금지되도록 보호되어야 하는 개인의 권리이다.

제 41 조

정보 기록에는 전기통신 당사자 간의 대화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제 42 조

- (1) 충분히 설명됨
- (2) 이 조항에서 형사사법절차는 수사, 기소 및 재판을 포함한다.

- a. 특정 범죄 행위에 대한 범죄 행위는 5년 이상의 징역, 중신형 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 행위이다.
- b. 관련 법률에 따른 특정 범죄 행위의 예로는 마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와 향정신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 행위가 있다.

(3) 충분히 설명됨

제 43 조

충분히 설명됨

제 44 조

(1) ~ (3) 충분히 설명됨

제 45 조

행정제재의 부과는 정부가 전기통신사업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노력이다.

제 46 조

(1) ~ (2) 충분히 설명됨

제 47 조 ~ 제 52 조

충분히 설명됨

제 53 조

(1) ~ (2) 충분히 설명됨

제 54 조 ~ 제 60 조

충분히 설명됨

제 61 조

- (1) 행정 기관은 1989년 제3호 법률을 기초로 하는 행정 기관이다.
- (2) 특정 권리는 정부가 행정 기관에 제공하는 지역 회선 전기통신역무, 장거리 직통 전화(SLJJ) 및 국제 직통 전화(IDD)를 제공할 독점적인 권리이다.
전기통신 부문의 독점을 종식시킬 이 법의 정신에 따라 정부는 특정권리에 대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특정 권리의 만료를 앞당기기 위해 보상 제공과 같이 정직과 공정성 및 개방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된 방법과 조건을 통해 수행된다.

제 62 조 ~ 제 64 조

충분히 설명됨

인도네시아공화국 추가 관보 제3881호

관광에 관한 법률 2009년 제10호에 대한 해설

1. 해설

전능하신 신께서 인도네시아에 귀중한 부를 선물하셨다. 전략적 지리적 위치, 언어 및 민족의 다양성, 자연 조건, 동식물, 고대 유물, 역사 예술 및 문화 유산의 형태로 된 부는 1945년 인도네시아공화국 헌법 전문의 염원과 팡짜실라 (Pancasila)에 담긴 것과 같이 인도네시아의 번영과 복지를 증가시키는 자원이자 자산이다.

이러한 자원과 자산은 관광 영위를 통해 국민의 소득 증대, 사업과 일자리 기회의 확대 및 균형, 지역 개발 장려, 인도네시아 관광명소 및 관광지 소개 및 활용, 민족 간의 우정 강화 및 애국심 고취 등이 이루어지도록 최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해마다 세계 관광의 발전 추세는 매우 빠른 발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세계 각국의 사회 경제적 구조의 변화와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증가 때문이다. 또한 관광은 글로벌 현상, 기본 욕구, 존중과 보호가 필요한 인권의 일부로 발전했다. 정부 및 지방정부, 관광업계 및 지역사회는 세계평화 실현을 위한 인류의 존엄성 제고, 복지 증대, 국가 간 우호의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사람의 권리인 관광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세계적 변화와 여행을 통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국민의 개인적 권리 강화에 직면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의 단일 국가 틀 안에서 다양성을 필수로 두고 있는 다양함, 고유함, 독특함을 기반으로 한 관광을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관광개발은 인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총인구는 인적자원과 더불어 국내 관광객의 잠재적인 원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배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의 관광개발의 주요 자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관광개발은 국가 정체성과 다양성의 공생에 대한 인식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관광개발은 지역 발전을 지향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며 인적자원, 마케팅, 목적지, 과학 및 기술, 부문 간 연계, 국가 간 협력, 영세기업의 권한 부여, 자연 및 문화 자원 이용에 대한 책임 등 사람들의 복지 및 개발을 위한 성장 및 경제적 평등 접근 방식으로 개발된다. 그 실행에 있어서, 관광에 관한 1990년 법률 제 9호에 규정된 관광개발은 여전히 관광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대내외 전략 환경의 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관광개발에 도움이 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로 1990년 법률 제 9호를 새로운 법으로 개정해야 한다.

이 법에 규정된 내용에는 지역사회, 관광객, 사업자, 정부 및 지방 정부의 권리와 의무,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 부문 간 조정, 전략적 지역 규제, 관광명소 안팎의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에 관한 부여, 관광진흥위원회, 관광 협회, 업무 표준화, 인적자원 교육을 통한 관광업 종사자의 역량 강화 및 권한 부여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각 조별 해설

제 1 조 ~ 제 4 조

충분히 설명됨

제 5 조

- a. ~ c. 충분히 설명됨
- d. “생활 환경” 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과 그 행동을 포함하여 모든 대상, 힘, 존재 및 생명체를 포함하는 공간 단위로 생명의 연속성과 인간 및 기타 생물의 복지에 영향을 미친다.
- e. “지역 공동체” 가 의미하는 것은 관광지에 거주하고 그 지역에서 관광 활동을 실시하여 혜택을 받는 것을 우선되는 공동체이다.
- f. 충분히 설명됨
- g. “세계 관광 윤리 강령 및 국제 협약” 은 비준된 관광 윤리 강령 및 협약이다.
- h. 충분히 설명됨

제 6 조

충분히 설명됨

제 7 조

- a. 이 조항에서 관광산업의 개발은 관광산업의 구조 (기능, 체계 및 관계) 개발, 관광 상품의 경쟁력, 관광 비즈니스 파트너십, 비즈니스 신뢰성 및 자연과 사회 문화적 환경에 대한 책임이다.
- b. 이 조항에서 관광지 개발은 지역사회 권한 부여, 관광명소 개발, 인프라 개발, 공공 시설 제공 및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광 시설 개발을 포함한다.
- c. 이 조항에서 마케팅 개발의 의미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동의 통합적이며 지속 가능한 관광 마케팅과 경쟁력 있는 관광 목적지로서의 인도네시아 이미지 구축을 담당하는 마케팅이다.
- d. 이 조항에서 관광기관의 개발은 정부, 지방정부, 민간 및 지역 공동체, 인적 자원 및 관광부문의 운영 메커니즘 개발이다.

제 8 조

충분히 설명됨

제 9 조

- (1) ~ (3) 충분히 설명됨
- (4) “이해관계자” 가 의미하는 것은 정부, 지방정부, 업계 및 지역 공동체이다.
- (5) 충분히 설명됨

제 10 조

이 조항은 재정적 및 비 재정적 인센티브, 시설, 투자 촉진, 투자 기회 정보 제공을 통해 국내 투자 및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제 11 조 ~ 제 12 조

충분히 설명됨

제 13 조

- (1) ~ (3) 충분히 설명됨
- (4) 지역 특이성이 있는 전략적 지역은 법으로 특별 관광지역으로 정한다.

제 14 조

- (1) a. “관광명소 사업”은 자연 관광명소, 문화 관광명소, 인공 관광 명소를 운영하는 사업이다.
- b. “관광지역 사업”은 관광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정 규모의 지역을 건설 및/또는 관리하는 활동을 하는 사업이다.
- c. “관광운송 서비스 사업”이란 정기 / 대중 교통이 아닌 관광 수요와 활동을 위한 교통을 제공하는 특수 사업이다.
- d. “관광여행 서비스 사업”은 여행 및 여행사 사업이다.
여행사 사업은 종교 여행 조직을 포함하여 여행 계획 서비스 및/또는 관광 서비스 및 관리 서비스 제공이 포함된다.
여행사 업무에는 티켓 예약, 숙박 예약 및 여행 서류 처리와 같은 시설 예약 서비스가 포함된다.
- e. “식음료 서비스 사업”은 제조 공정용 장비 및 장비를 갖춘 식음료 서비스 사업으로, 레스토랑, 카페, 케이터링 서비스 및 바의 형태가 될 수 있다.
- f. “숙박 사업”은 다른 관광 서비스로 보완할 수 있는 숙박 서비스이다.
숙박 사업은 호텔, 빌라, 관광 오두막, 캠프장, 캐러밴 정류장 및관광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타 숙박 시설의 형태가 될 수 있다.
- g. “오락 및 여가 활동 사업”은 활동 범위가 공연 예술 사업, 게임 경기장, 노래방, 영화 및 기타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오락 및 오락 활동의 형태인 사업을 의미한다.
- h. “회의, 인센티브 여행, 컨퍼런스 및 전시회 사업”은 사람들의 그룹 회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 및 비즈니스 파트너의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여행을 조직하고, 국가, 지역 및 국제 규모의 서비스와 정보 보급 및 상품 홍보의 틀로 전시회를 개최한다.
- i. “관광 정보 서비스 사업”은 관광에 관한 자료, 뉴스, 특집, 사진, 동영상, 연구 결과를 인쇄물 및/또는 전자 자료의 형태로 배포하는 사업이다.
- j. “관광 컨설팅 서비스 사업”은 관광부문의 기획, 경영 관리, 연구, 타당성 조사, 마케팅에 관한 조언과 권고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k. “투어 가이드 서비스 사업”은 관광객의 요구 및/또는 여행사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관광 안내 인력을 제공 및/또는 조정하는 사업이다.
- l. “물 관광사업”은 해수, 해변, 강, 호수 및 저수지에서 상업적으로 관리되는 시설과 인프라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관광 및 수상 스포츠를 조직하는 사업이다.
- m. “온천 사업”은 물 테라피, 아로마 테라피, 마사지, 향신료, 건강식 / 음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리트먼트 사업이며, 인도네시아인의 전통과 문화에 관심을 기울이며 몸과 영혼의 균형을 목표로 하는 신체 활동이다.

- (2) 충분히 설명됨

제 15 조

- (1) 충분히 설명됨
- (2) 장관령에 지정된 등록 절차는 기술적, 행정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간단한 서비스 절차, 쉬운 기술 및 관리 요구 사항, 빠른 처리 시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위치, 서비스

표준 등 투명한 공공 서비스 제공 원칙을 충족한다. 명확하고 개방적인 서비스 정보, 공공 서비스의 구현은 대중과 정부 기관 서비스 부서의 상사 / 장 (책임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어야 한다.

제 16 조

충분히 설명됨

제 17 조

- a. “관광사업 보호 정책” 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영세기업,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을 보호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 b. 충분히 설명됨

제 18 조

“관리” 란 관광의 모든 일을 계획, 조직 및 통제함을 의미한다.

제 19 조

- (1) 충분히 설명됨
- (2) a. 충분히 설명됨
- b. “위탁” 이 의미하는 것은 모든 개인 또는 지역사회가 나중에 지불하는 관광사업을 통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이다.
- c. “운용” 이 의미하는 것은 모든 개인 또는 지역사회가 관광사업활동을 지원하는 데 가지고 있는 자원(예: 관광객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목적지 주변의 교통 제공)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제 20 조

- a. 충분히 설명됨
- b. “표준에 따른 관광 서비스” 란 비즈니스 자격 표준과 인적자원 표준역량에 따라 관광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 c. ~ f. 충분히 설명됨

제 21 조 ~ 제 25 조

충분히 설명됨

제 26 조

- a. ~ d. 충분히 설명됨
- e. “고위험 활동이 있는 관광사업” 이란 다이빙, 래프팅, 암벽 등반, 수상 놀이 기구 관광 및 야생에서 야생 동물 관찰과 같은 특정 관광 대상 방문이 포함한다.
- f. ~ n. 충분히 설명됨

제 27 조

- (1) 충분히 설명됨
- (2) “특정 중” 이 의미하는 것은 보호된 동식물 군의 그룹이다.
“고유성” 이란 사원, 동상 및 전통 가옥의 부조와 같이 관광객 방문의 대상 또는 목적 인 특수함 / 특별함을 가진 조건 또는 사물을 의미한다.
“진정한 가치” 가 의미하는 것은 문화 유산과 같은 관광객 방문의 대상 또는 목적인 진정성의 가치이다.

제 28 조 ~ 제 32 조

충분히 설명됨

제 33 조

- (1) 충분히 설명됨
- (2) a. 관세 분야의 전략적 조정에 관한 규정은 회의, 인센티브 여행, 컨퍼런스 및 전시회 목적으로 다양한 관광 활동을 위한 물품의 출입을 용이하게 하고 국제 관광 진흥 및 기타 국제 관광 활동을 위해 관세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과 함께 수행된다.
이민 분야의 전략적 조정에 관한 규정은 다음을 촉진하기 위해 관광 활동 측면에서 이민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과 함께 수행된다.
 - a. 무료 단기 방문 비자 (BVKS) 또는 비자 면제 및 도착 비자 (VKSK) 또는 도착 비자 (VOA) 부여, 및
 - b. BVKS 및 VKSK 시설을 제공하는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온 회의, 인센티브 여행, 컨퍼런스 및 전시회 참석자에게 비자 부여검역 분야의 전략적 조정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관련하여 명확하고 확고한 절차를 통해 검역 및 보건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과 함께 수행된다.
 - a. 관광 활동 / 회의, 인센티브 여행, 컨퍼런스 및 전시회와 관련된 동식물의 반입, 및
 - b. 관광객을 위한 자재 / 상품의 출입
 - b. 안보 및 질서 부문의 전략적 조정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국내 정부, 인도네시아 경찰, 인도네시아 국군 분야의 정부기관과 함께 수행된다.
 - a. 국가 및 지역 중요 관광지 환경의 보안 정책 및 서비스
 - b. 보안 및 질서 기준을 규정 및 도착부터 여행 중, 돌아갈 때까지의 관광여행을 감독, 및
 - c. 재난에 대한 조기 경보를 제공하여 방문하기에 유익하고 안전한 관광지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
 - c. 공공 인프라 부문의 전략적 조정에 관한 조항은 다음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과 함께 수행된다.
 - a. 관광지까지의 도로 인프라
 - b. 관광지의 공공 시설 및 관광 시설을 위한 깨끗한 물
 - c. 관광지의 공공 시설 및 관광 시설을 위한 전기
 - d. 관광지의 공공 시설 및 관광 시설을 위한 통신 시설
 - e. 하수도, 쓰레기 및 위생 시스템
 - d. 육상, 해상 및 항공 운송 부문의 전략적 조정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운송

부문의 정부 기관과 함께 수행된다.

- a. 외국 관광객 시장의 주요 원천에서 외국 및 국내 항공사의 노선 및 비행 빈도 증가
- b. 국제 선박 및 항만 보안 코드 (ISPS 코드)를 준수하는 공항 시설, 버스 터미널, 기차역 및 항구의 품질 개선
- c. 교통 시설의 편의성 증가
- d. 통합 운송 모드
- e. 개척 운송 서비스의 가용성, 및
- f. 관광명소 및 관광지에 대한 표지판 / 신호등의 가용성
- e. 관광 진흥 분야의 전략적 조정에 관한 규정은 관광, 무역, 산업, 투자 분야의 통합 진흥 측면에서 외교, 산업, 무역, 투자, 지방 정부를 담당하는 기관 및 정부와 함께 수행된다. 그리고 지방 정부, 항공사 및 관광산업이 참여하여 관광부문의 홍보를 함께 한다.

제 34 조 ~ 제 36 조

충분히 설명됨

제 37 조

“정책수립전담팀” 이 의미하는 것은 인도네시아 관광 진흥위원회의 의무 이행을 공식화하고 정책을 규정하는 결정 요소이다.

“집행 전담팀” 이 의미하는 것은 인도네시아 관광진흥위원회의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정책 시행자이다.

제 38 조 ~ 제 54 조

충분히 설명됨

제 55 조

역량인증은 국가 전문인증기관(BNSP)의 면허를 보유한 전문인증기관이 부여한다.

인증서는 관광부문의 정부 기관, 관광 협회, 기업가 및 학계가 공동으로 작성한 역량 표준을 기반으로 수행되는 역량 테스트를 통과한 후 수여된다.

제 56 조

(1) 관광부문의 외국인 전문인력에 관한 규정은 전문성을 충족할 수 없거나 국제 협약과 상충되지 않는 한 인도네시아인 근로자를 이용할 수 없는 한 필요하다.

(2) 충분히 설명됨

제 57 조 ~ 제 70 조

충분히 설명됨

인도네시아공화국 추가 관보 제4966 호

인도네시아 콘텐츠 법령집

Kumpul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Industri Konten Indonesia

발행일 : 2021년 11월

펴낸곳 :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비즈니스센터

무단 게재와 복제를 금하며 이 책 내용을 재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비지니
스센터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